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018. 1.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월
(주)은혜엔지니어링

목 차

I. 관리계획 수립의 개요

| | |
|-------------------------|----|
|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 8 |
|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 8 |
| 2. 계획수립의 의의 | 8 |
| ②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8 |
| 1. 배경 | 8 |
|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9 |
| ③ 계획의 범위 | 9 |
| 1. 공간적 범위 | 9 |
| 2. 시간적 범위 | 11 |
| 3. 내용적 범위 | 11 |
| ④ 계획 수립 절차 | 12 |
|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수립 절차 | 12 |
| ⑤ 계획수립 기본원칙 | 14 |

II. 개발제한구역 현황검토 및 관리목표 설정

| | |
|----------------------------------|----|
|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17 |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17 |
| 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19 |
|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 24 |
| 4.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 26 |
| 5. 2020 경기도 종합계획 | 31 |
| 6. 상위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사항 | 35 |
| 7. 해외사례 | 36 |
| ②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특성 | 38 |
|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38 |
| 2. 수도권개발제한구역 현황 | 40 |
| 3. 제1,2,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평가 | 51 |
| 4. 제1차~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성과와 한계 | 52 |
|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중점관리 방안 | 55 |
| 1.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 | 55 |
| 2. 중점관리방안 | 60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
|------------------------------|-----|
| ①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63 |
| 1. 토지이용 방향 | 63 |
|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종합관리방안 | 64 |
| 3.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방안 | 67 |
| ②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관리계획 | 82 |
| 1. 입지대상시설 입지기준 | 82 |
| 2. 입지대상시설 승인현황 및 평가 | 86 |
| 3.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수요 관리방안 | 98 |
| 4. 수도권 입지대상시설 수요 예측 | 100 |
| 5. 제4차 입지대상시설 설치계획 | 102 |
| 6. 제4차 입지대상시설(일반) 설치계획 | 105 |
| 7. 제4차 입지대상시설 승인 현황 | 107 |
| ③ 주민생활불편 해소방안 | 110 |
| 1. 취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10 |
| 2.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118 |
| ④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150 |
| 1.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 150 |
| 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 | 153 |
| 3.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 171 |
| 4. 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 183 |
| 5. 구역 관리의 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방안 | 187 |
| ⑤ 자원조달 방안 | 189 |

IV. 부록

| | |
|--------------------------------|-----|
| 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주민·관계기관 의견 등 | 197 |
| ② 환경성검토 결과서 | 233 |
| ③ 별지서식 | 235 |
| 1. 현황(별지1~8호), 취약지구 가능지(별지11호) | 236 |
| 2. 입지대상시설 입지타당성 검토서(별지9~10호) | 272 |

관리계획 수립의 개요

I

-
-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 ②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③ 계획의 범위
 - ④ 계획 수립 절차
 - ⑤ 계획 수립 기본원칙

I. 관리계획 수립의 개요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요

1.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2. 계획수립의 의의

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의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관리 방향과 목표 제시
 -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구역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
 - 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를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표준이 되는 행정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광역 통합 계획 수립

②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960년대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발생된 여러 가지 도시문제 중 도시 확산 및 도시주변부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추진
- 1971년 7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4차례 걸쳐 총 1,553km²를 지정하고 약 161km²를 해제하여 2016년 12월 현재 약 1,392km²

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주민불편과 관리방향 전환

- 40여 년간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 초래
 - [도시계획법]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
 -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적기반 마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차(2001~2006), 2차(2007~2011년), 3차(2012~2016) 관리계획 수립이후 금회 4차(2017~2021) 관리계획 수립시기 도래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걸쳐있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과 적합성을 확보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지대상시설의 체계적 관리·개발 도모
-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계획적인 정비와 주민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
- 이미 훼손된 지역의 현황 조사 및 훼손지 복구 방향 설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역관리의 전산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마련의 기준을 제시

라. 제4차 GB관리계획 수립방향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승인 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입지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 실질적 관리계획으로서 위상 제고
- 권역별 훼손지의 현황 파악 및 기승인 훼손지 복구사업의 관리
-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 강화

③ 계획의 범위

1.공간적 범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 1,392.89km²
- 서울특별시 19개구: 149.615km²
- 인천광역시 6개구: 72.048km²
- 경기도 21개 시·군: 1,171.235km²

(단위: km²)

| 구 분 | 개발제한구역 (A) | 행정구역 (B) | 도시계획구역 (C) | 행정구역 대비(A/B) | 도시계획구역 대비(A/C) |
|-----|---------------|-------------|---------------|-----------------|-------------------|
| 수도권 | 1,392,898 | 11,832.27 | 5,344,768 | 11.77% | 26.06% |
| 서울 | 149,615 | 605.96 | 605.96 | 24.69% | 24.69% |
| 인천 | 72,048 | 1,051.16 | 1,381,348 | 6.85% | 5.22% |
| 경기 | 1,171,235 | 10,175.15 | 3,357.46 | 11.51% | 34.91%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범례

개발제한구역

축적 : 1/750,000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17~2021년(5년간)
- 기준년도: 2016년
- 목표년도: 2021년

3. 내용적 범위.

가. 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기간 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목표 제시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마련

나. 구역의 현황 및 실태

-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다. 구역 내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및 구역 내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 여가 공간 등의 입지기준 제시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 증진방안 제시

라.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등의 설치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마련
- 대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마.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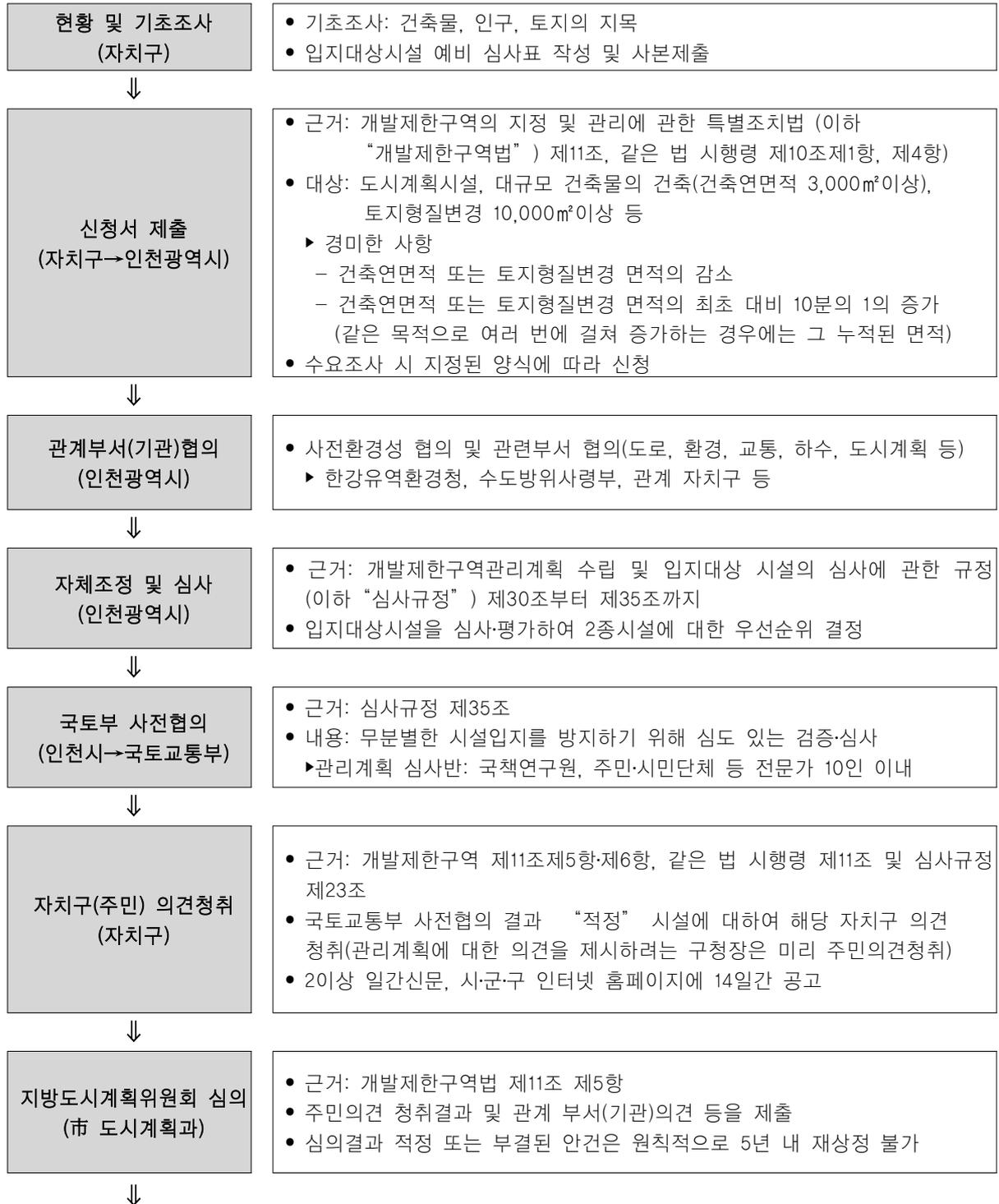
- 취약지구의 지정 및 정비의 기본방향 마련
- 구역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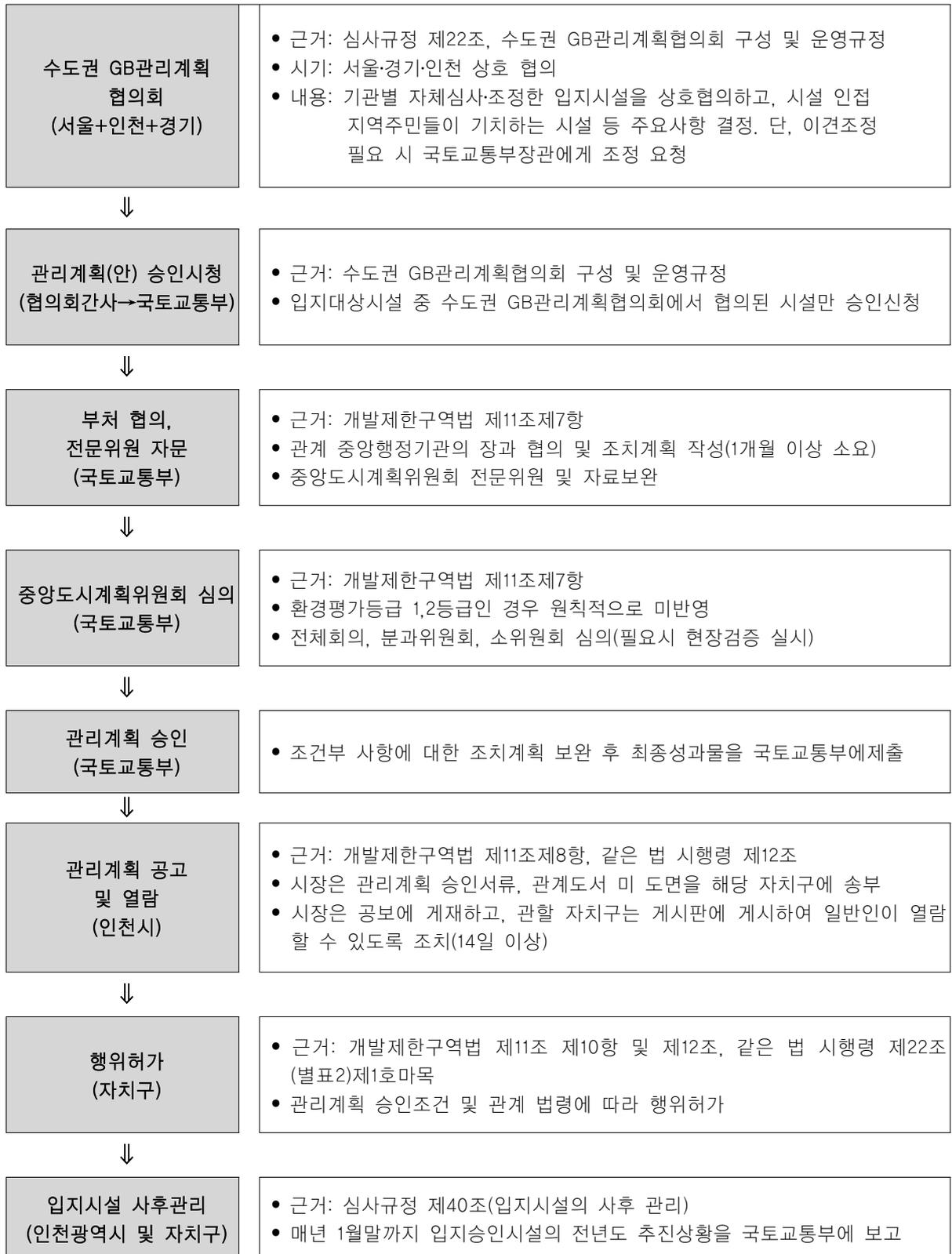
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불법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한 지도 및 단속 계획 마련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 주변의 난개발 확산 방지대책 제시
- 개발제한구역 내 복구가 필요한 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수립
- 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제시
-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계획 마련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계획 수립절차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절차





5 계획수립 기본원칙

- 개발제한구역 지정형태에 따라 7개 광역권별로 관계 시·도 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 국토종합계획, 광역권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
- 개발제한구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
-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 도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 시 기존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시·도지사는 관리계획 입안 시 유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
 - 서울시(1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6개 자치구), 경기도(21개 시·군)
- 주민불편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않음
-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
 - 국가적 행사의 개최
 - 재난의 예방 및 복구
 - 훼손지의 복구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 집단취락의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
 - 도로·철도 등 국가계획의 시행
 -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기타 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

개발제한구역 현황검토 및 관리목표 설정



-
-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②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특성
 -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중점관리 방안

Ⅱ. 개발제한구역 현황검토 및 관리목표 설정

① 상위계획 및 관련사례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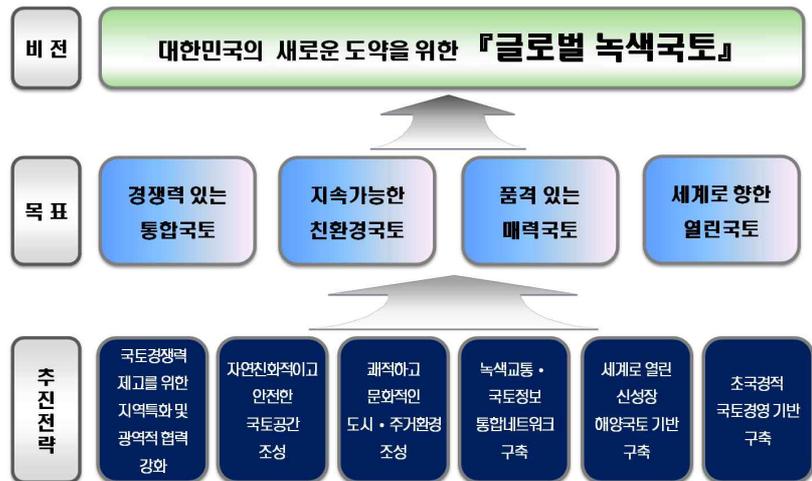
1) 계획 수립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반영
-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반영
-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계획의 비전과 목표



나. 수도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1) 비전

-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2) 기본목표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다. 발전방향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수도권 발전방향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거점을 형성하고 경인축을 국제업무축으로 육성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는 광역적 클러스터 추진주체를 조직하고 클러스터추진사업을 적극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도간 연계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한 물류거점과 지방의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간선네트워크 구축 -수도권내 주요 거점간 원활한 이동 및 연계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도입 추진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기반구축 및 활성화 유도 -서울 통과교통량의 저감을 위해 광역우회교통망을 확충하고, 버스 및 지하철 연계교통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TOD)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광역교통망 주변으로 훼손 최소화 및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철도망과 주요 교통중심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내 다른 도시와 기능 및 역할 분담 강화 -낙후된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개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수도권 자연환경보전권역인 경기 동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특화산업 및 청정산업의 입지를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추진 -경기 동북부 지역 및 서해안 일대에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가구 소득증대 도모 -도서 개발, 접경지역 지원 등 분산된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로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정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친화적 도시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간선도로망에 의한 녹지축 단절과 점·선 형태의 파편화된 고립녹지에 대하여 녹지 연계 및 녹지축 형성 등을 통해 도시내 녹색 공간 복원 -수도권의 역사·문화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도심의 전통문화공간을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DMZ 일원의 평화·생태·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평화생태관광벨트로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내 여가녹지·누리길 조성을 포함한 녹색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적 보전가치 관리방안 구축 -개발제한구역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차별화된 자원화 방안 마련 -접경지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과 DMZ 일원의 평화·생태·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평화생태관광벨트로 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의 광역행정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적 차원에서 자연특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보전할 지역은 先보전하고, 도시개발 수요에 대한 계획적 관리 체제 강화 -각 부문간 통합적·광역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기능부담체계 및 중앙정부와 충청권의 협력체계 마련 |

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배경

〈수도권 광역계획권 범위〉



1) 도시광역화 진행

- 1990년대에 들어와 수도권의 인구성장은 정체하기 시작한 반면, 서울 반경 30km 외곽에 위치한 시·군의 인구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서울로의 통근권 범위가 40km까지 확대되고, 경기도 시·군의 직주비율이 낮아지는 등 서울 중심 단핵공간구조가 보다 심화
- 1980년에서 2000년의 20년 동안 시가지 면적이 673km²에서 1,092km²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구역 지정수도 증가하고 도시계획구역 총면적도 확대

2)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 1999년 7월 확정 발표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기로 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
- 1999년 9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2001년 9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부분 개정

나.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의 범위

1) 수도권 광역계획권 지정

- 수도권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0.9.1)를 거쳐 수도권 전체를 범위로 하여 2000년 10월 결정
- 수도권 광역계획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704km²의 범위에 인구 2,135만인(2000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541km² 포함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2) 기본목표

-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시간적 및 내용적 범위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개편구상과 부문별계획으로서 토지이용, 여가공간·녹지관리, 환경보전, 방재, 광역교통, 공급·이용시설과 개발제한구역조정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총량을 설정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 광역계획권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및 부문별계획의 변경내용을 포함

다.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변경의 배경 및 필요성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개선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
-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 필요

라.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

1) 계획의 목표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2) 계획의 전략

-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
-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를 구축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수질·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

마. 공간구조의 구상

1) 주요 정책과제

-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도시 내의 재개발, 산업용지 구조조정, 한계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용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요를 최소화
 - 서민주택·산업·물류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방안 제시
 -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

〈수도권 광역녹지축〉



2) 녹지축 설정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
- 8개 녹지거점 사이에 중요녹지가 집중분포한 지역을 축선방향으로 연결하여 1개의 남북축과 4개의 동서축 등 5개의 주 녹지축을 설정, 4개의 동서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지역을 둘러싸면서 쉼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
- 한강축과 갯벌이 발달한 서해연안축을 수역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검토 시 다핵화 추진과 경인축, 경수축상의 시가지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체계 형성을 전제로 하고, 도시 간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km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서울 주요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중〉



3) 공간구조 보강: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간구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동·북부축,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유도
- 서울 반경 20km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전환 활용
-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자족기능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기능 확충
 - 도시자족기능 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물류단지 공급, 녹지의 활용도 제고 등에 우선적 활용

바.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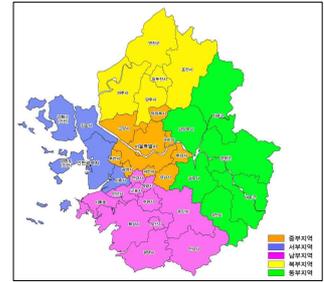
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공간구조상의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과 연계된 광역토지이용 구상을 수립
- 도시용지, 도시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
- 서울과의 연계성, 거점도시 분포,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특성에 의하여 수도권 전역을 다음과 같이 5개 지역으로 구분

〈수도권 내 5개 지역 구분〉

| 구 분 | 시 . 군 | 거점도시 |
|------|--|--------------------------|
| 중부지역 |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 주핵도시(서울) |
| 서부지역 | 인천, 김포, 시흥 | 1차거점도시(인천) |
| 남부지역 |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1차거점도시(수원) 2차거점도시(평택) |
| 북부지역 |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 2차거점도시(파주, 동두천) |
| 동부지역 |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 3차거점도시(남양주, 이천) |

〈수도권 5개 지역구분〉



2) 여가, 경관·녹지계획

- 광역녹지축의 설정과 녹지의 연계성 강화
- 도시 내 녹지창출과 광역녹지축과의 연계
-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리체제 강화
- 주 녹지축과 도시내부 녹지를 연결하는 부 녹지축의 설정
- 광역녹지축의 적극적인 연결과 관리
- 기존 산림과 공원녹지의 연결 강화
-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을 강화

〈수도권 여가관광권역〉



3) 미관 및 경관계획

- 주거지경관은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색채 및 형태 유지
- 주요 도로에서의 시가지 스카이라인 개선 및 도로변 경관특성 강화
- 주요 건축물, 도로, 교량에 대해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해 야간경관 조성
- 역사적 건축물, 미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적극보전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저층, 저밀도의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 도시개발 시 주변 자연경관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관대책 마련

4) 여가·문화계획

- 여가·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 지역별·지자체별 관광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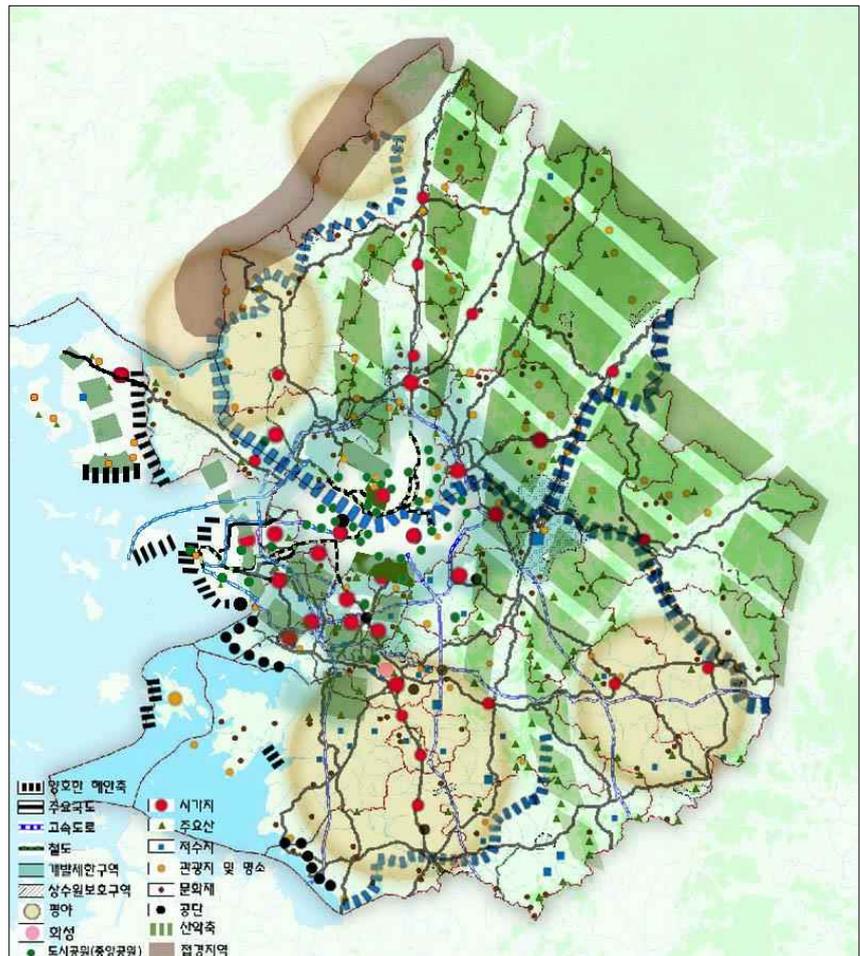
5) 환경보전

-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 및 핵심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
- 단절·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친자연적 생활공간의 창출 및 도시개발

6) 공간구조 보강: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간구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동·북부축,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유도
- 서울 반경 20km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전환 활용
-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자족기능 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기능 확충
 - 도시자족기능 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물류단지 공급, 녹지의 활용도 제고 등에 우선적 활용

〈수도권 골격경관〉



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

가. 계획의 배경 및 범위

1) 계획의 배경

-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음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도시계획구역 605.96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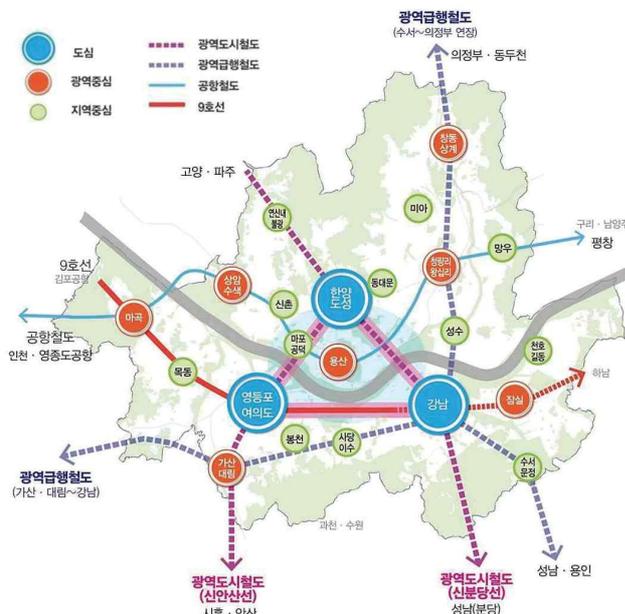
나. 공간구조 구상

1) 중심지 개편

-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단핵의 단순 위계적 공간구조에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다핵의 기능적 체계를 강조하여, 중심지별 특화육성과 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을 가능하도록 함

2) 광역교통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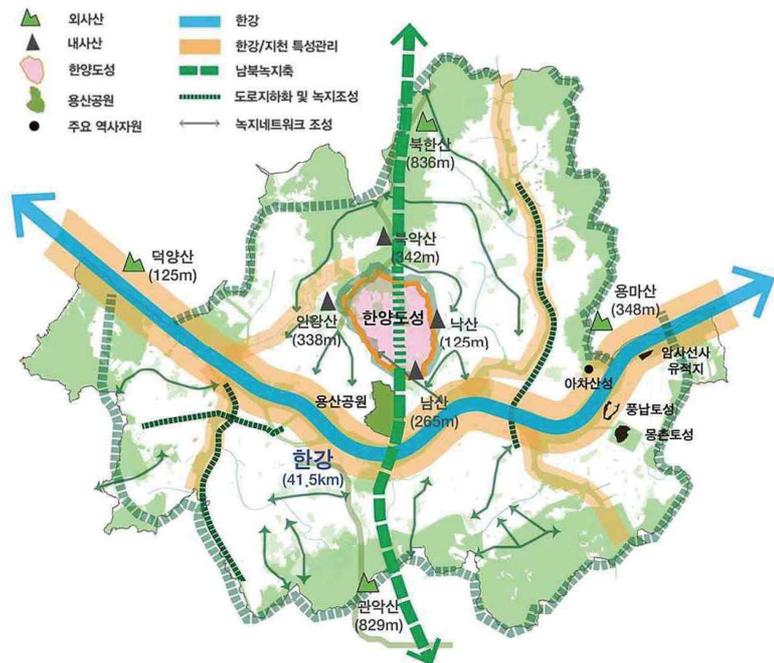
- 서울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행정구역 내부로 한정된 철도망을 대도시권 차원으로 확장·연장하고 중심지체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3) 공원·녹지축

- 서울의 녹지축은 북한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과 내사산과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는 환상녹지축을 주 녹지축으로 설정
- 서울의 도심과 외곽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 외사산을 각각 연결하고, 한강과 지천변 녹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탐방 공간으로 제공
-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환상녹지축은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하고, 외사산을 연결하는 외부환상녹지축은 녹지생태축으로 조성

〈 녹지축 구상 〉



4)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순환도시 실현

- 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 저탄소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 정착
-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5)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도화
- 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 기상 재난의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

4.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가. 계획의 배경

- 인천의 글로벌화 및 인접도시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
-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 확산에서 축소 도시로의 전환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한 삶의 질 개선 요구 증대
- 도시기능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디자인 및 가치창조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변화

나.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2011년
- 목표년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1,381.348km²)

다. 도시미래상 설정

- 시민이 지향하는 2030년 인천의 미래비전
- 인천의 도시 미래상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100명의 인천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과정을 거쳐 제시됨
- 시민계획단에 의해 제시된 2030년 미래 인천의 모습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으며,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정계획

누구나 살기좋은, 글로벌 인천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통도시
- ✧ 미래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녹색도시
- ✧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도시
- ✧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도시미래상 설정

국제, 문화, 관광 등 강조

변경(안)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

- ✧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추진
- ✧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 사람 중심의 의미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정책 추진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휴먼 도시(Human City) 지향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국제·문화·관광도시의 의미

국제는 관문도시로서의 교류, 다문화의 의미
문화관광은 인천의 지역특성과 문화정체성을 보존 활용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세계인의 교류의 장으로서 세계도시의 문화·관광중심**으로 발전



라. 정책목표 및 중점전략

| 정 책 목 표 | 중 점 전 략 |
|---|--|
| <p>1)도시주택분야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내 특화된 맞춤형 개발 ·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 공감 공원문화시설 보급 · 1인 가구 및 고령친화형 거주 공간 조성 · 대규모 개발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도시성장관리 ·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및 색채관리 · 역세권 중심의 도시 공간 재창조 ·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특화 · 입지구제 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개발 |
| <p>2)안전·환경분야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지속적인 생활안전교육 및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 고취 ·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안전예방대책 수립 · 인천고유의 특화공원 조성 · 민간공원을 통한 공원 활성화 · 해안선 개방 및 친수 공간 조성 |
| <p>3)산업·경제 분야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 다양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 혁신산업단지 개편 ·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
| <p>4)문화·관광 분야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섬을 활용한 명품섬·가고 싶은 섬 만들기 ·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 · 수도권매립지의 시민 여가 공간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거점 형성 · 특화거리 및 인천형 테마마을 조성 ·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한 인천 브랜드 업그레이드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추진 ·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 |
| <p>5)교통·물류 분야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만 등 해양물류시설의 세계화 · 인천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 · 공항물류체계의 강화 및 지원 · 해양관광도시다운 합리적 토지이용 · 도서지역 접근체계 확충 |
| <p>6)복지·의료 분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 · 주민 소통·친화형 사회복지행정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 ·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사회 구축 ·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도시조성 |
| <p>7)교육분야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 글로벌 교육인프라 확대 및 다양화 ·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마. 공원·녹지계획

- 생태축의 보존 및 복원으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산림 보존 및 복원
 - S자 녹지축의 연결
 - 도시공원 활용
 - 권역별,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관리 전략의 차별화
- 해안 변 친수 공간 조성
- 원도심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는 바람길 형성
- 도심과 부도심 및 원도심의 공원, 녹지 격차 해소
- 사람 중심의 공원, 녹지 확보
 - 원도심 내 공원녹지 확충
 -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활용
 - 구월 중앙근린공원의 녹지 연계
 - 친수 공간 조성
 - 도심의 주택 및 빌딩의 옥상 녹화
 - 건강도시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 등 도시림 조성

〈 공원·녹지축 구상 〉



바.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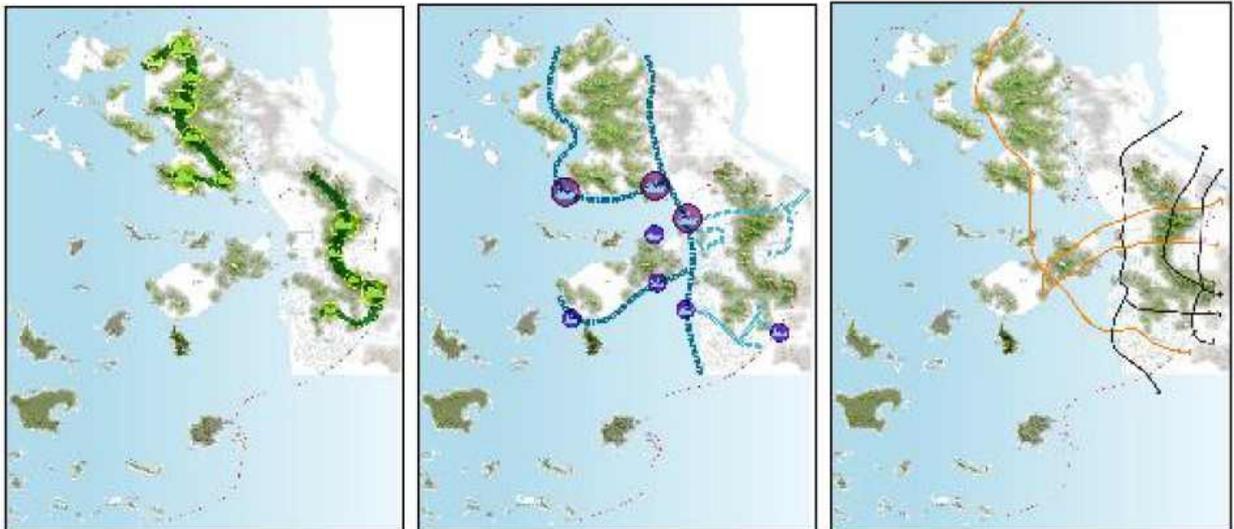
1) 도시경관자산

- **축경관:** 녹지경관축(내륙지역의 한잠정맥과 문학산, 청량산 등이 형성하고 있는 S자 녹지축과 강화도의 고려산, 퇴모산, 마니산 등이 형성하고 있는 S자 녹지축이 주요 경관축을 형성)
- **수경관:** 라이프 수계축(영종도 남측과 강화도 남측의 갯벌, 소래습지, 시가지 서측의 해안, 강화군 해안), 관문수로축(굴포천), 내부수로축(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청천천, 갈산천등의 주요 하천)
- **도로 경관축:** 국제도 약축(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간선도로) 내부 연결축(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시 경관기본구상〉



〈 인천광역시 녹지축, 수변축, 도로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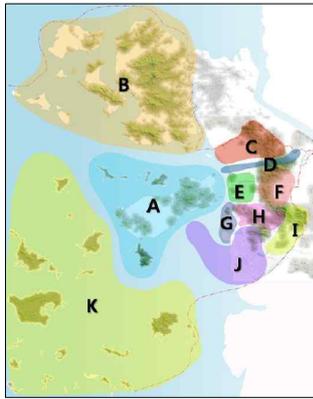


- **지표적 경관거점 :** 인천터미널, 시천교 워터프론트, 두물머리 생태공원, 김포터미널

〈 인천광역시 지표적 경관거점 〉



〈권역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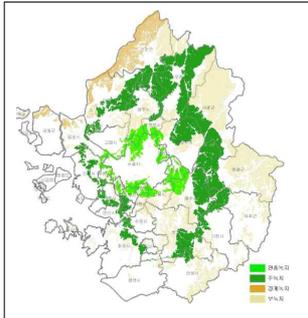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 기본방향
 -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경관 창출
 - 환경 친화적인 경관계획 수립
 - 국제관문의 독창적 경관연출
 - 인천만의 정체성을 갖는 장소성 확보
 - 역사·문화 가치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경관 계획 수립
 - 현존 문화재를 활용한 경관계획 수립

〈 권역의 구분 〉

| 표시 | 구분 | 권역 세분 | 목표 |
|----|-----------|--|---|
| A | 영종 권역 | 을왕,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공항진출입, 용종유수지, 구읍, 영종 주거, 북도면개발에 따른 해안경관의 연출 | -세계를 향해 열린도시에 적합한 연안의 이용-세계를 향해 열린 경관, 연안조망권 확보, 관문진출입 경관 및 가로경관 특화 |
| B | 강화 권역 | 계산, 제1경인고속도로, 굴포천, 계양·철마산, 강화, 길상, 강화남단, 외포 | -도서지역의 경관특화, 지속가능한 경관창출, 역사를 기억하는 경관역서와 사람의 경험을 기억하는 경관, 정주의식 고취 |
| C | 검단 권역 | 검단사거리, 금곡, 검단, 운림, 청라, 경인운하, 공촌천 · 심곡천 | -주거지와 공업지의 경관위화감 해소 -체계적인 주거지 경관정비 -도심지와 산림-평야-해양을 연결하는 완충경관 형성 -녹지경관의 창출 및 보존 |
| D | 공항 진출입 권역 | 운림지역, 경인아라뱃길 지역 | -국제관문 경관창출 -진출입 야간경관의 특화 -체험형, 레저형 수경관 창출 |
| E | 청라 권역 | 청라지역, 공촌천, 심곡천지역 | -국제자유도시 경관창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수변 생태경관 창출 -도로경관 개선 |
| F | 계양 부평 권역 | 계산지역, 제2경인고속도로지역, 굴포천지역, 부평지역, 예양 철마산 지역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시가지 상징경관 창출 -지역의 경관적 정체성 확보 -고속도로 주변지역 경관개선 |
| G | 임해 항만 권역 | 월미·북성지역, 연안부두지역, 내항지역 | -해양-항만-도심의 조화로운 공간형성 -해양과 도심의 완충공간 형성 -항만, 연안 경관 형성 |
| H | 도심 권역 | 임해도시지역, 서해로 지역, 용현지역, 주안지역, 간석지역, 신도심축지역 | -도심의 상징경관 구출 -차이나타운 중심의 근대역사 문화경관 개발 -도심개발사업지구의 경관증진 -도심야간경관 특화 |
| I | 남동 권역 | 소래지역, 남동공단지역, 간석지역 | -공업지의 경관개선 사업 -정주의식 고취, 수변경관의 개선 -야간경관 창출 |
| J | 송도 권역 | 송도업무지역, 송도산업지역, 인교대교의 건설과 인천대교와 송도신도시의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경관 조성 | -국제적 도시로서의 경관특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적 연안경관 형성 |
| K | 영흥 옹진 권역 | 영흥지역, 옹진도서지역 | -정주의식 고취, 도서지역의 경관특화 -우수한 자연경관 보존 및 활용 |

〈 경기도 광역 녹지축 〉



5. 2020 경기도 종합계획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도민의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의 필요

2) 계획의 목적

-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지역개발·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참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 및 도민의 비전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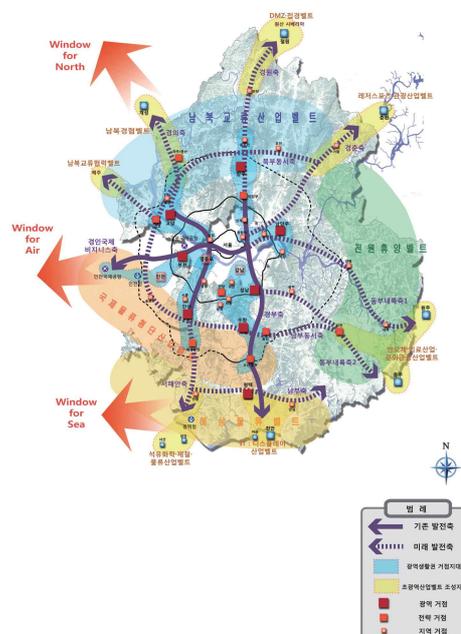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전역(10,167km²,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2년, 목표년도 2020년

다. 공간구조 형성전략 수립

- 글로벌 초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메가경제권 공간구조를 형성, 경기도가 핵심지역 담당
- 고속도로 중심의 공간구조를 GTX와 광역철도 중심의 역세권 공간구조로 변화
- “다중심 거점화와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 추진

〈 경기도 종합계획 공간구조 〉



라. 경관계획

1) 도시경관자산

〈 도시경관자산 선정기준 〉

| 구 분 | | 선정기준 | 비고 | |
|------|--------------------|---------------|--|----|
| 자연자원 | 녹지 경관 | 산악 | • 경기도 전체 463개 산 중, 각 시군에서 대표적인 산 • 시가지와 인접한 산을 중심으로 선정 | 19 |
| | 수변 경관 | 하천 | • 경기도 전체 516개 중 국토 보전 상, 또는 생활 상 중요 하나 국가하천과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위주로 선정 | 22 |
| | | 호수 /저수지 | • 시가지와 인접한 호수 및 저수지 선정 | 21 |
| | | 해안 | • 서해안 | 1 |
| 인공자원 | 시가지 경관 | 주거, 상업 | • 각 시군 내 활성화 되어있는 중심 시가지 • 경기도 전체 시, 군에서 시가화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 심으로 조사 | 9 |
| | 농어촌 경관 | 전, 답, 생산녹지 | •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농경지 중에서 대표적인 평야 | 5 |
| | 도 시 기반시설 경 관 | 고속도로 | • 각 권역을 지나는 주요한 도로로 연장과 교통량을 기준 으로 선정 | 6 |
| | | 국도 | • 각 권역과 지역의 중심지를 지나는 도로 중심 선정 | 26 |
| | | 철도 | • 이용이 활발하고 경기도 중심지역을 지나는 철도를 대 상으로 선정 | 5 |
| | | 산업단지 | • 조성 면적이 50,000㎡ 이상인 산업단지 대상 | 14 |
| | 역사문화 경 관 | 여가관광 | • 자원이 밀집되어 특화될 수 있고 •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 | 12 |
| | | 역사문화 | • 역사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 녹지 또는 수변자원과 함께 경관을 형성하는 자원을 대 상으로 선정 | 11 |
| 합 계 | | | 151 | |

〈 도시경관자산 종합도 〉



2) 경기도 도시경관 기본구상

- 경관권역의 구분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 경기도의 공간구상 및 경관구조분석을 통한 5개 권역 구분
 - 각 권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고려한 권역별 테마설정
 - 지자체 경관관리의 방향성 제시를 통한 지역성 강화

〈 경관권역별
경관관리 권역〉



- 경기도의 주요 수변축/녹지축/도로축에 대한 경관관리
 - 도차원의 특정경관계획을 통한 선도적인 경관관리추진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분포된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계획 공동수립 유도
 -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축경관 관리의 실행력 확보
- 지자체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거점경관 개선
 - 경관협정·사업의 홍보를 통해 경관개선 공감대 형성
 - 도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사업 및 협정 유도

3) 경기도 경관권역별 계획

- 동북 산악녹지 우세권역
 - 보전: ① 권역 내 주요 녹지자원인 연인산, 축령산 등 산악의 보전
② 한강, 북한강, 남한강 등 경기도의 주요 하천들의 보전
③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지 및 관광지의 경관 보전
 - 관리: ① 도립공원, 휴양림 및 유원지 주변 불량 경관의 관리
② 자연과 시가지의 조화를 위한 자연-시가지 연결부 관리
③ 노후화되고 무질서하게 형성된 중심시가지의 중점관리
④ 자연과 조화되며 노후화, 불량 도로의 경관의 관리
 - 형성: 시가지, 철도역에서 수변 접근성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 조망: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 자연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 북부 평야/개발 잠재권역
 - 보전: ① 권역 내 주요 녹지자원인 월롱산 등 산악의 보전
② 임진강, 곡릉천, 문산천 등 주요 수변자원의 보전
 - 관리: ① 접경지역내의 안보관광지 경관개선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② 자연환경 및 도시와 조화로운 산업단지 관리
③ 역세권 주변의 복잡하고 불량한 시가지경관관리
 - 형성: ① 도심과 연계한 수변경관의 여가, 휴식 공간 조성
② 관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을 형성
 - 조망: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 자연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 도시화 중심권역
 - 보전: ① 주요 녹지자원인 북한산, 관악산 등 산악의 보전
② 권역 내 주요 수자원인 한강, 안양천 등의 보전

- 관리: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경관 및 시가지 경관관리
 - ② 획일적이고 무질서한 시가지 정비 및 관리
 - ③ 시가지 내 고가도로 등 위압적 구조물 경관 관리
 - ④ 산업시설의 쾌적한 경관관리방안 수립
- 형성: ① 시가지 내 수변공간 조성 및 하천 변 녹화계획
 - ② 주요도로 상 시·군 진입부의 상징성, 인지성 형성
- 조망: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 자연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 서남 평야/산업화 잠재권역

- 보전: ① 주요 녹지자원인 태행산, 덕지산 등 산악의 보전
 - ② 서해안, 시화호, 안성천 등 주요 수자원의 보전
 - ③ 화성 남양, 평택, 오성 등 중심 농경지 보전
- 관리: ① 농경지와 조화되는 시가지, 산업지역 경관 관리
 - ② 무질서하고 훼손된 수변 경관의 관리
 - ③ 시가지, 농경지를 지나는 위압적 도로경관의 관리
- 형성: ①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 형성과 활성화
 - ② 산업단지 내 녹지대, 완충녹지 등의 조성
- 조망 :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 자연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 동남 평야권역

- 보전: ① 권역 내 주요 녹지자원, 수변자원의 보전
 - ② 전원적인 농경지 자원인 평야지역 보전
 - ③ 권역 내 중요 문화재, 관광자원의 보전
- 관리: ① 농경지와 조화되는 시가지 및 취락지 경관관리
 - ② 정비되지 않은 수변 경관의 관리
 - ③ 시가지의 개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경관 정비
 - ④ 문화재와 조화로운 경관의 형성을 위한 주변 경관 관리
- 형성: ① 도심형, 자연형 하천 등 특성에 따른 하천을 조성 및 시민의 휴식 공간 활용
 - ②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역사경관의 이미지 형성
- 조망: 주요 도로 및 시가지에서 자연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6. 상위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위상정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용하고, 도시의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 계획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 상위계획상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행정계획

나.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관리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 | 계획내용 | 제4차 수도권 관리계획 반영내용 |
|-----------------------------------|---|---|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 도시 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연계구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각종 불법 시설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훼손된 녹지를 복구·정비하여 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 |
|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존, 회복과 공익 기능 증대 •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을 제공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함 |
|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축의 보존 및 복원으로 친환경 공간 조성 • 사람중심의 공원·녹지 확보 • 원도심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는 바람길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광역녹지축의 단절, 정부추진사업 및 각종 개발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GB 내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환경평가 1~2등급지)은 엄격히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도시 주변 녹지대로서 기능 강화 필요 |
| 2020 경기도 종합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권역의 구분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 경기도의 공간구상 및 경관구조분석을 통한 5개권역 구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화자원을 토대로 환경문화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

7. 해외 사례

가. 독일(프랑크푸르트)의 그린벨트

1) 그린벨트 현황 및 이용 상황

- 규모: 약80km²(전체 도시의 약 30%)
- 이용 상황
 - 주차장, 도로, 철도, 수로, 고속도로 등과 같은 교통 공간으로 활용
 -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시설이 약 3%로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측면에서 새로운 시설의 신설은 허용되지 않으나, 시설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시설에 한하여 확장가능
 - 또한 그린벨트 내 약 30개의 역사·문화공간이 있어, 시민들의 유적지 방문 또는 유물관람 등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의 역사를 체험하고 공원, 카페 등과 같은 문화 공간에서 여가를 보냄

2) 그린벨트 관리체계

-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담당
 - 그린벨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활용 방안 등을 모색
 -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를 통한 그린벨트 관련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
 - 오픈스페이스로써 그린벨트의 활용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 및 생태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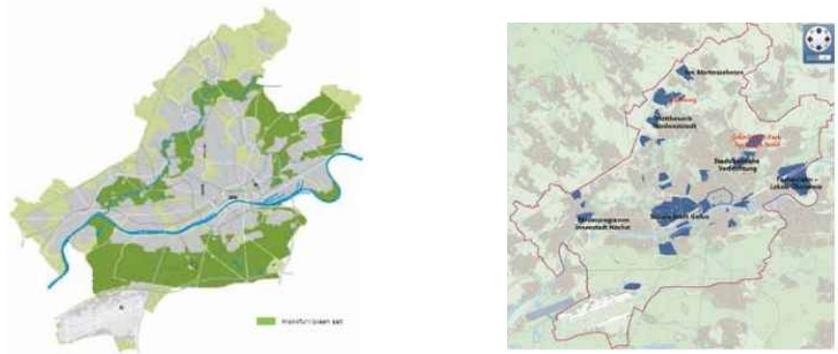
3) 관련 프로젝트

-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 199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심 외부 지역에 새로운 도시 및 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이슈가 대두, 그린벨트 일부지역을 포함한 도시개발이 도시계획부 주관으로 진행
- 레저 및 여가 관련 프로젝트
 - 그린벨트 자전거 순환 투어, 하이킹과 하이킹패스, 학교 및 주간 보호센터, 어린이를 위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서머워크숍, 그린벨트 포인트 패스, 자전거타기 등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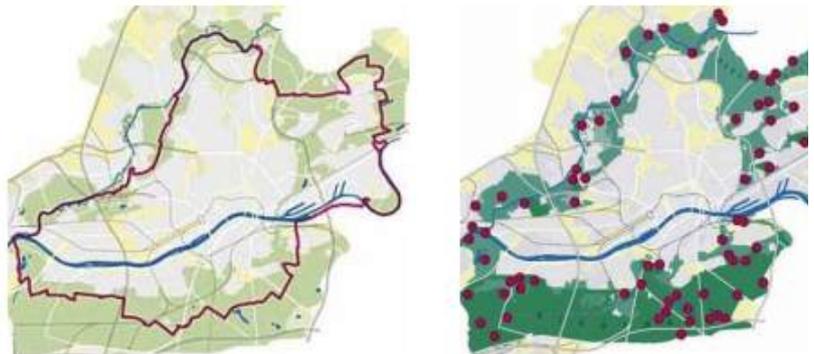
4) 프랑크푸르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

- 규제방식이 아닌 관리 및 유지
- 폐쇄적이거나 제한적 그린벨트가 아닌 도시민의 생활공간, 놀이, 스포츠, 여가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독일(프랑크푸르트)개발제한구역 현황(좌) 및 레저 및 여가
관련프로젝트(우)〉



〈그린벨트 내 순환로(좌) 및 여가시설 분포(빨간색)(우)〉



나.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의 목적과 취지는 독일과 비슷하나 관리체계와 방식에 있어서 선진사례에 비해 취약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
 - 구역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성 결여
 - 구역 운영자체를 규제위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도 친환경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설, 또는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2)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적, 계획적 차원에서 검토하며 기존의 수직-폐쇄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평-개방적 방식의 전환 필요
- 위와 같은 방식 전환을 통해 도시의 생활공간으로서 도시의 여과 기능, 스포츠 및 여가의 기능, 교육의 기능을 제공하고,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 마련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②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특성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가. 계획 수립의 배경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산업화, 도시화로 발생하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에서 1976년 12월 4일 4회에 걸쳐 1,553km² 지정

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경위

- 서울특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30일에서 1973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66.82km² 지정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개 구

〈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경위 〉

| 구분 | 지정일자 | 면적 (km ²) | 지 역 |
|----|------------|-----------------------|---|
| 지정 | 1971-07-30 | 129.40 |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 1972-08-25 | 23.40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각 일부지역 |
| | 1973-07-01 | 14.02 | 은평구 진관내·외동 (행정구역 편입) |
| | 계 | 166.82 | - |

다.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지정경위

- 인천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8월 지정
- 인천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현재 총 10개(8개 구와 2개 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6개구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경위 〉

| 구분 | 지정일자 | 면적(km ²) | 지 역 |
|----|------------|----------------------|----------------------------|
| 지정 | 1972-08-25 | 101.460 |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경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290.13km²가 지정된 이래 4차례에 걸쳐 확대 지정되어 총 1,302.84km² 지정
-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20개 시, 1개 군 등 21개 시·군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경위 〉

| 구분 | 지정일자 | 면적(k㎡) | 지역 | 비고 |
|----|----------|----------|--|---------------|
| 지정 | 71-07-30 | 290.14 |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양주, 남양주, 의왕, 하남, 김포 | 건설부고시 (제447호) |
| | 71-12-29 | 85.00 | 수원, 시흥, 군포, 용인 | 건설부고시 (제729호) |
| | 72-08-25 | 677.24 | 광주, 양평 | 건설부고시 (제385호) |
| | 76-12-04 | 250.46 | 안산, 화성 | 건설부고시 (제192호) |
| | 계 | 1,302.84 | | |

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경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2001년에서 2016년 약 161km²가 해제되었으며, 2016년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392km²
- 주요 해제 내용
 - 집단취락 우선해제: 48km²
 - 국민임대, 보금자리 등: 82km²
 - 지역현안 사업 등: 31km²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16년 12월 기준 총 1,392km²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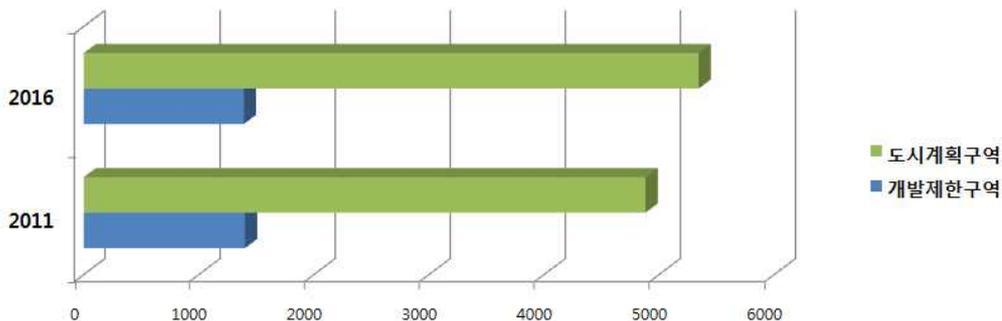
(단위: km²)

| 시·도 | 개발제한 구역 (A) | 행정구역 (B) | 도시계획 구역 (C) | 행정구역 대비 (A/B) | 도시계획 구역대비 (A/C) |
|-------|-------------------|-------------|-------------------|---------------------|-----------------------|
| 수도권 | | | | | |
| 2006년 | 1,467,180 | 5,726.61 | 3,365.68 | 25.6% | 43.6% |
| 2011년 | 1,402,787 | 11,804.68 | 4,883.35 | 11.9% | 28.7% |
| 2016년 | 1,392,898 | 11,832.27 | 5,344.77 | 11.8% | 26.1% |
| 증감률 | -5.6% | 106.6% | 58.8% | -54.1% | -40.2% |
| 서울시 | | | | | |
| 2006년 | 157,850 | 501.57 | 497.17 | 31.5% | 31.7% |
| 2011년 | 151,370 | 605.25 | 500.91 | 25.0% | 30.2% |
| 2016년 | 149,615 | 605.96 | 605.96 | 24.69% | 24.69% |
| 증감률 | -5.2% | 20.8% | 21.8% | -21.5% | -22.3% |
| 인천시 | | | | | |
| 2006년 | 81,470 | 294.63 | 378.74 | 27.7% | 21.5% |
| 2011년 | 72,808 | 1,032.40 | 1,154.20 | 7.1% | 6.3% |
| 2016년 | 72,048 | 1,051.16 | 1,381,348 | 6.85% | 5.22% |
| 증감률 | -11.6% | 256.8% | 264.7% | -75.2% | -75.8% |
| 경기도 | | | | | |
| 2006년 | 1,227,860 | 4,930.41 | 2,489.77 | 24.9% | 49.3% |
| 2011년 | 1,178,610 | 10,167.03 | 3,228.24 | 11.6% | 36.5% |
| 2016년 | 1,171,235 | 10,175.15 | 3,357.46 | 11.51% | 34.91% |
| 증감률 | -4.6% | 106.4% | 34.9% | -53.8% | -29.3% |

주: 2016년 12월 기준



단위: km²



나. 인구 및 가구 현황

1) 인구 및 가구 현황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는 2016년 현재 총 27,916가구에 61,570명 거주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16년 현재 5,235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8.5%이고, 가구수는 2,027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7.3%에 해당
- 2006년 대비 2016년 가구수 44.1%, 인구수는 50.1% 감소

〈 인구 및 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인)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 | | | |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 | | | | |
|---------|--------|---------|-------------|--------|--------|--------|--------|--------|-------------|---------|--------|--------|--------|--------|
| | | | 계 | | 자가 | | 세입 | | 계 | | 자가 | | 세입 | |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2006년 | 49,942 | 123,367 | 4,997 | 16,300 | 3,033 | 10,270 | 1,964 | 6,030 | 44,945 | 107,067 | 15,119 | 38,419 | 29,826 | 68,648 |
| 2011년 | 34,340 | 85,267 | 2,620 | 8,159 | 1,794 | 5,651 | 826 | 2,508 | 31,720 | 77,108 | 14,502 | 35,557 | 17,218 | 41,551 |
| 2016년 | 27,916 | 61,570 | 2,027 | 5,235 | 1,472 | 3,656 | 555 | 1,579 | 25,889 | 56,335 | 14,317 | 30,438 | 11,572 | 25,897 |
| 증감률 (%) | -44.1% | -50.1% | -59.4% | -67.9% | -51.5% | -64.4% | -71.7% | -73.8% | -42.4% | -47.4% | -5.3% | -20.8% | -61.2% | -62.3% |
| 수도권 | 27,916 | 61,570 | 2,027 | 5,235 | 1,472 | 3,656 | 555 | 1,579 | 25,889 | 56,335 | 14,317 | 30,438 | 11,572 | 25,897 |
| 서울 | 5,079 | 12,299 | 216 | 535 | 200 | 516 | 16 | 19 | 4,863 | 11,764 | 3,025 | 7,492 | 1,838 | 4,272 |
| 인천 | 651 | 1,377 | 24 | 56 | 20 | 45 | 4 | 11 | 627 | 1,321 | 414 | 932 | 213 | 389 |
| 경기 | 22,186 | 47,894 | 1,787 | 4,644 | 1,252 | 3,095 | 535 | 1,549 | 20,399 | 43,250 | 10,878 | 22,014 | 9,521 | 21,236 |

주: 2016년 12월 기준



(단위: 명)



다. 토지이용 현황

1) 지목별 토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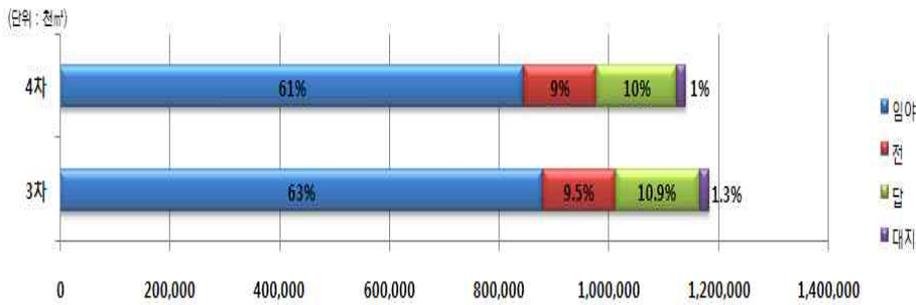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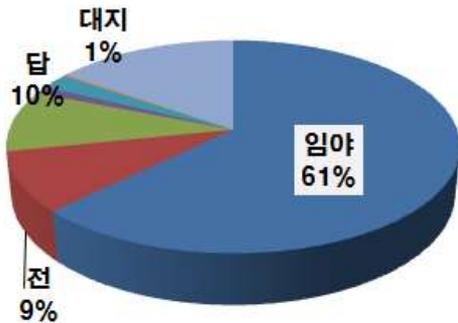
- 임야의 비중이 약 60.4%로 가장 높음
- 2006년 대비 2016년 답이 25.6%로 가장 많이 감소

〈 지목별 토지 현황 〉

(단위 : km²)

| 구분 | 합계 | 임야 | 전 | 답 | 대지 | 잡종지 | 과수원 | 기타 |
|-------|-----------|---------|---------|---------|--------|--------|-------|---------|
| 2006년 | 1,467,180 | 858,430 | 129,613 | 197,394 | 18,496 | 34,297 | 3,791 | 225,157 |
| 2011년 | 1,402,787 | 878,737 | 132,991 | 153,219 | 18,065 | 29,135 | 5,013 | 185,624 |
| 2016년 | 1,392,898 | 844,693 | 131,828 | 146,936 | 15,828 | 28,300 | 3,695 | 221,618 |
| 증감률 | -5.1% | -1.6% | 1.7% | -25.6% | -14.4% | -17.5% | -2.5% | -1.6% |
| 수도권 | 1,392,898 | 844,693 | 131,828 | 146,936 | 15,828 | 28,300 | 3,695 | 221,618 |
| 서울 | 149,615 | 101,070 | 7,260 | 7,240 | 2,630 | 9,380 | 0,040 | 21,995 |
| 인천 | 72,048 | 31,267 | 10,695 | 16,477 | 1,114 | 3,592 | 0,193 | 8,710 |
| 경기 | 1,171,235 | 712,356 | 113,873 | 123,219 | 12,084 | 15,328 | 3,462 | 190,913 |

주: 2016년 12월 기준



2) 토지소유권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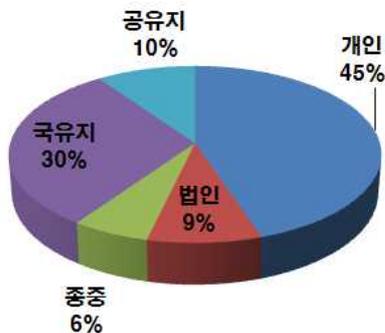
- 사유지와 국·공유지 비율은 각각 59.1%와 40.9%
- 사유지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토지로서 사유지면적의 75.7%이며, 그 외 법인 소유가 14.2%이고 종중소유의 토지는 10.1%
- 2006년 대비 2016년 소유별 분포현황은 개인소유 토지가 24.4%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반면 공유지 비율은 44.3% 증가

〈 토지 소유권 분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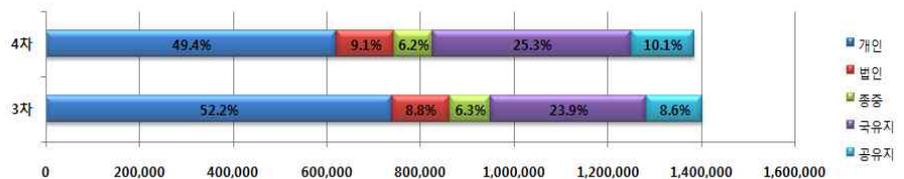
(단위 : km²)

| 구분 | 합계 | 사유지 | | | | 국·공유지 | | |
|-------|-----------|-----------|---------|---------|--------|---------|---------|---------|
| | | 소계 | 개인 | 법인 | 종중 | 소계 | 국유지 | 공유지 |
| 2006년 | 1,467,180 | 1,018,138 | 824,251 | 112,205 | 81,682 | 449,041 | 358,298 | 90,743 |
| 2011년 | 1,402,787 | 937,876 | 728,124 | 123,315 | 87,367 | 458,911 | 332,650 | 120,361 |
| 2016년 | 1,392,898 | 823,376 | 623,373 | 116,757 | 83,247 | 569,526 | 438,558 | 130,968 |
| 증감률 | -5.1% | -19.1% | -24.4% | 4.1% | 1.9% | 26.8% | 22.4% | 44.3% |
| 수도권 | 1,392,898 | 823,376 | 623,373 | 116,757 | 83,247 | 569,526 | 438,558 | 130,968 |
| 서울 | 149,615 | 63,811 | 48,280 | 11,411 | 4,121 | 85,806 | 68,385 | 17,420 |
| 인천 | 72,049 | 42,905 | 37,586 | 4,051 | 1,268 | 29,145 | 19,389 | 9,756 |
| 경기 | 1,171,235 | 716,660 | 537,507 | 101,295 | 77,858 | 454,575 | 350,783 | 103,792 |

주: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천m²)



라.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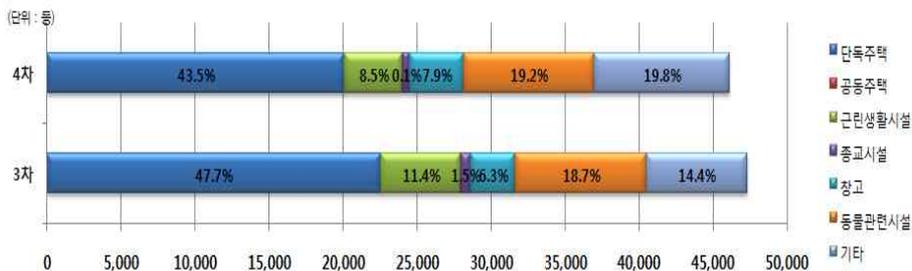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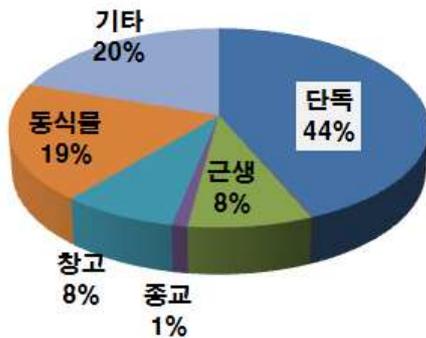
- 총 건축물수는 46,101동 이며 단독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43.5%, 20,066동
- 동물 관련 시설이 8,843동, 19.2%
- 2006년 대비 2016년 건축물현황은 동물관련시설이 50.2%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이 각각 약 35% 감소

〈 건축물 현황 〉

(단위 : 동)

| 구 분 | 합계 | 단 독 주택 | 공 동 주택 | 근린생활 시설 | 종 교 시설 | 창 고 | 동물관련 시설 | 기 타 |
|-------|--------|--------|--------|---------|--------|--------|---------|-------|
| 2006년 | 67,117 | 31,080 | 47 | 4,985 | 761 | 4,282 | 17,753 | 8,209 |
| 2011년 | 47,291 | 22,549 | 28 | 5,375 | 700 | 2,986 | 8,833 | 6,820 |
| 2016년 | 46,101 | 20,066 | 34 | 3,923 | 489 | 3,629 | 8,843 | 9,117 |
| 증감률 | -31.3% | -35.4% | -27.7% | -21.3% | -35.7% | -15.3% | -50.2% | 11.1% |
| 수도권 | 46,101 | 20,066 | 34 | 3,923 | 489 | 3,629 | 8,843 | 9,117 |
| 서울 | 4,297 | 2,811 | 30 | 371 | 103 | 87 | 52 | 843 |
| 인천 | 1,372 | 447 | 0 | 191 | 11 | 131 | 178 | 414 |
| 경기 | 40,432 | 16,808 | 4 | 3,361 | 375 | 3,411 | 8,613 | 7,860 |

주: 2016년 12월 기준



마. 도시계획시설 현황

1) 도시계획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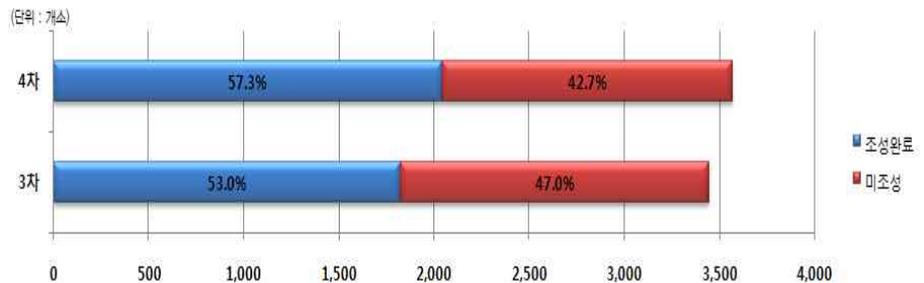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은 총 3,568개소이며 이 중 조성완료 2,044개소, 미조성 1,524개소
- 도로는 2,000개소이며, 공원 353개소
- 미조성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비중이 58.8%로 가장 높음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 합계 | | | 도로 | | | 공원 | | | 기타 | | |
|-------|-------|-------|-------|-------|-------|-------|-------|-------|-------|-------|-------|-------|
| | 계 | 조성 완료 | 미조성 | 소계 | 조성 완료 | 미조성 | 소계 | 조성 완료 | 미조성 | 소계 | 조성 완료 | 미조성 |
| 2006년 | 2,268 | 1,310 | 958 | 1,264 | 755 | 509 | 271 | 100 | 171 | 733 | 455 | 278 |
| 2011년 | 3,443 | 1,824 | 1,619 | 1,893 | 994 | 899 | 370 | 131 | 239 | 1,180 | 699 | 481 |
| 2016년 | 3,568 | 2,044 | 1,524 | 2,000 | 1,104 | 896 | 353 | 138 | 215 | 1,215 | 802 | 413 |
| 증감률 | 57.3% | 56.0% | 59.1% | 58.2% | 46.2% | 76.0% | 30.3% | 38.0% | 25.7% | 65.8% | 76.3% | 48.6% |
| 수도권 | 3,568 | 2,044 | 1,524 | 2,000 | 1,104 | 896 | 353 | 138 | 215 | 1,215 | 802 | 413 |
| 서울 | 236 | 190 | 46 | 146 | 135 | 11 | 42 | 24 | 18 | 48 | 31 | 17 |
| 인천 | 234 | 155 | 79 | 134 | 78 | 56 | 25 | 12 | 13 | 75 | 65 | 10 |
| 경기 | 3,098 | 1,699 | 1,399 | 1,720 | 891 | 829 | 286 | 102 | 184 | 1,092 | 706 | 386 |

주: 2016년 12월 기준



바. 중복규제지역 현황

1) 중복규제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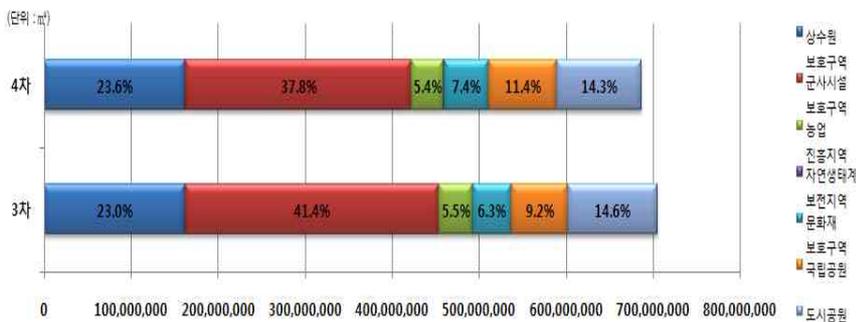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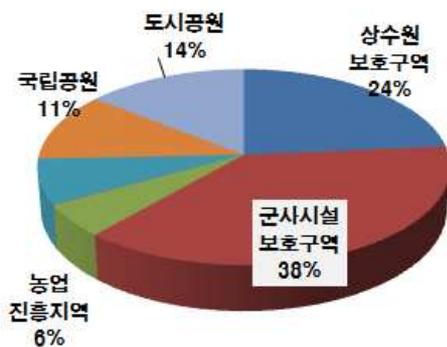
- 중복규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약 687,134,381㎡
- 이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9,793,745㎡로 전체 면적의 37.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162,249,648㎡로 23.6%
- 2006년 대비 2016년 중복규제지역현황은 국립공원면적이 23.3%로 가장 크게 감소

〈 중복규제지역 현황 〉

(단위 : ㎡)

| 구 분 | 합 계 | 상 수 원 보호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 농 업 진흥지역 | 자연생태 보전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 | 공 원 | |
|-------|-------------|---------------|--------------|-------------|--------------|-------------|-------------|-------------|
| | | | | | | | 국립공원 | 도시공원 |
| 2006년 | 722,533,273 | 165,188,846 | 297,248,238 | 45,725,293 | 283,333 | 16,434,547 | 101,588,036 | 96,064,980 |
| 2011년 | 704,979,467 | 162,067,743 | 292,064,200 | 38,460,289 | 283,333 | 44,586,926 | 64,753,426 | 102,763,550 |
| 2016년 | 687,134,381 | 162,249,648 | 259,793,745 | 37,306,891 | 503,570 | 50,951,101 | 78,195,266 | 98,134,160 |
| 증감률 | -4.9% | -1.8% | -12.6% | -18.4% | 77.71% | 210.0% | -23.0% | 2.2% |
| 수도권 | 687,134,381 | 162,249,648 | 259,793,745 | 37,306,891 | 503,570 | 50,951,101 | 78,195,266 | 98,134,160 |
| 서울 | 128,080,248 | 3,383,406 | 37,553,312 | 0 | 503,570 | 3,986,345 | 37,523,699 | 45,129,916 |
| 인천 | 20,362,991 | 0 | 14,662,436 | 0 | 0 | 2,702,020 | 0 | 2,998,535 |
| 경기 | 538,691,142 | 158,866,242 | 207,577,997 | 37,306,891 | 0 | 44,262,736 | 40,671,567 | 50,005,709 |

주: 2016년 12월 기준



사. 집단취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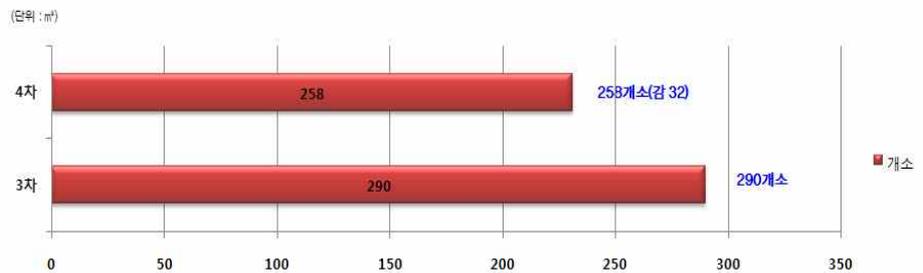
1) 집단취락 현황

- 집단취락은 258개소, 면적은 6,300,199㎡
- 인구는 5,520가구에 총15,575명 거주하며, 건축물은 14,604동
- 2006년 대비 2016년 현황은 면적이 17.5%, 인구수는 약 65.1%, 건축물은 15.9%감소

〈 집단취락 현황 〉

| 구분 | 총괄 | | 인 구 · 가 구 | | 건축물(동) | |
|-------|--------|------------|-----------|--------|--------|--------|
| | 개소 | 면 적 (㎡) | 인구 (명) | 가구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2006년 | 314 | 7,634,362 | 44,569 | 14,896 | 13,237 | 5,510 |
| 2011년 | 290 | 12,356,825 | 30,722 | 11,156 | 13,756 | 4,253 |
| 2016년 | 258 | 6,300,199 | 15,575 | 5,520 | 11,138 | 3,466 |
| 증감률 | -17.8% | -17.5% | -65.1% | -62.9% | -15.9% | -37.1% |
| 수도권 | 258 | 6,300,199 | 15,575 | 5,520 | 11,138 | 3,466 |
| 서울 | 22 | 340,814 | 2,712 | 1,037 | 755 | 41 |
| 인천 | 11 | 251,710 | 268 | 113 | 154 | 27 |
| 경기 | 225 | 5,707,675 | 12,595 | 4,370 | 10,229 | 3,398 |

주: 2016년 12월 기준



아.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1) 조성 시기별 나대지 현황

- 나대지는 전체 6,908개 필지, 총면적 2,667,464m²
- 구역 지정 이전의 나대지는 4,524개 필지, 1,924,670m²로 구역 내 나대지의 65.6%
- 취약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조성된 나대지는 2,384개 필지 742,794m²
- 2006년 대비 2016년 나대지현황은 구역지정 이전에 조성된 나대지 면적이 약 30.0% 감소, 구역 지정 이후 나대지 면적은 39.1%, 필지수는 5.6%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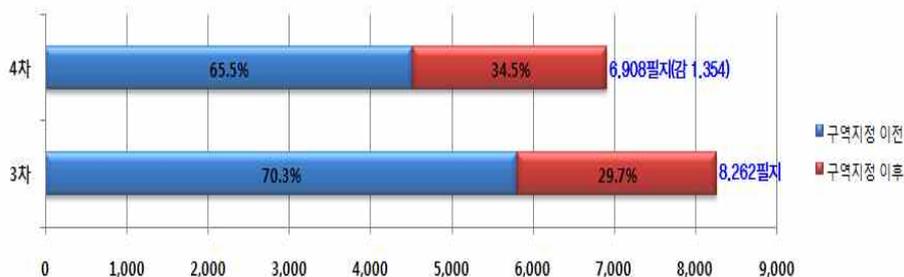
〈 나대지 현황 〉

| 구분 | 합 계 | | 구역지정 이전 | | 구역지정 이후 | |
|--------|--------|----------------------|---------|----------------------|---------|----------------------|
| | 필지수 | 면 적(m ²) | 필지수 | 면적 (m ²) | 필지수 | 면적 (m ²) |
| 2006년 | 8,452 | 3,968,183 | 5,927 | 2,749,113 | 2,525 | 1,219,070 |
| 2011년 | 8,262 | 3,450,924 | 5,812 | 2,467,495 | 2,450 | 983,429 |
| 2016년 | 6,908 | 2,667,464 | 4,524 | 1,924,670 | 2,384 | 742,794 |
| 증감률(%) | -18.3% | -32.8% | -23.7% | -30.0% | -5.6% | -39.1% |
| 수도권 | 6,908 | 2,667,464 | 4,524 | 1,924,670 | 2,384 | 742,794 |
| 서울 | 1,721 | 476,509 | 753 | 313,691 | 968 | 162,818 |
| 인천 | 373 | 222,405 | 282 | 183,424 | 91 | 38,981 |
| 경기 | 4,814 | 1,968,550 | 3,489 | 1,427,555 | 1,325 | 540,995 |

주: 2016년 12월 기준



(단위: 필지)



자. 이축적지 현황

1) 이축적지 현황

-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축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토지는 총 면적 10,836,035㎡
- 이축적지의 약 97.3%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조성토지이며, 123,874㎡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조성된 토지
- 2006년 대비 2016년 이축적지현황은 구역 지정 이전 대지가 57.9% 감소하였으며 구역지정 이후 이축적지 중 대지는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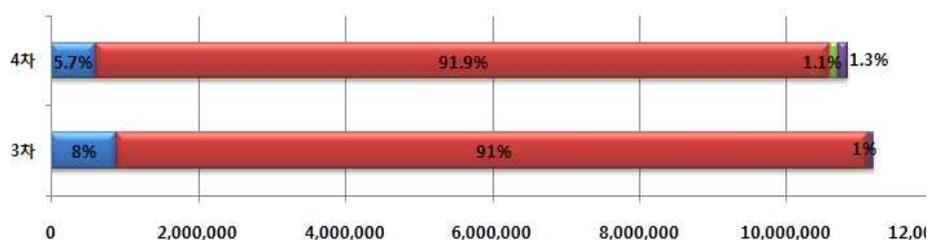
〈 이축적지 현황 〉

| 구분 | 합계(㎡) | 구역지정 이전 (㎡) | | | 구역지정 이후 (㎡) | | |
|-------|------------|-------------|-----------|------------|-------------|---------|---------|
| | | 계 | 대지 | 기타 | 계 | 대지 | 기타 |
| 2006년 | 13,993,008 | 13,853,975 | 1,462,608 | 12,391,367 | 139,033 | 21,952 | 117,081 |
| 2011년 | 11,179,713 | 11,109,906 | 898,029 | 10,211,877 | 69,807 | 13,765 | 56,042 |
| 2016년 | 10,836,035 | 10,547,137 | 616,191 | 9,957,946 | 261,898 | 123,874 | 138,024 |
| 증감률 | -22.6% | -23.9% | -57.9% | -19.6% | 88.4% | 464.3% | 17.9% |
| 수도권 | 10,836,035 | 10,574,137 | 616,191 | 9,957,946 | 261,898 | 123,874 | 138,024 |
| 서울 | 77,577 | 3,728 | 3,728 | 0 | 73,849 | 73,849 | 0 |
| 인천 | 74,684 | 0 | 0 | 0 | 74,684 | 19,365 | 55,319 |
| 경기 | 10,683,774 | 10,570,409 | 612,463 | 9,957,946 | 113,365 | 30,660 | 82,705 |

주: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차. 군사국방시설의 밀집

-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군사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의 밀집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 경기도 권역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수요 집중

카. 현황종합분석

| 구분 | 분석내용 | 착안사항 |
|--------|---|--|
| 가구·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가구) 감소 - 제3차(85,267명) → 제4차(61,570명) • 구역지정 이후 외부 유입인구 감소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GB내 인구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내 주민은 감소하지만, 구역 외 인구는 증가하므로, 공원 등 조성하여 주민여가시설 확충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844,693km²로 전체의 약60.4% 차지 • 사유지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임야는 누리길 등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 매수토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 조례에 따라 토지분할 기준 마련 |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건축물 수 감소 •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은 증가 • 공공시설 입지로 인한 대규모 건축물 설치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은 향후 복구 계획 수립 • 창고의 불법행위 단속 필요 |
| 도시계획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은 증가 - 제3차(3,443개소) → 제4차(3,568개소)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위한 시설은 부족 - 공원 집행율은 타 시설에 비해 낮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승인시설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녹지시설 조속집행 |
| 중복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내 중복규제 면적은 전체면적의 약44.3%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59,793,745m²이며, 중복규제면적의 37.8%로 가장 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규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하되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고려 |
| 종합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건축물은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노후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국·공유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평가등급이 높은지역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야 함 • 중복규제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7.8%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승인시설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양호한 임야 및 중복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

3. 제1·2·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평가

| 구 분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개선방향 |
|---|--|--|--|
| 입지대상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시설, 공원 및 실외체육 시설 등 설치로 기반시설 확충 • 여가활용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지역현안 시설의 입지로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 입지대상시설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에 기여 434개(1차) → 208개(2차) → 132개(3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반시설이 구역내 편중되어 구역내 주민들의 민원발생 • 군사시설 및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입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약화 • 승인시설 중 추진부진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추진부진시설의 추진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입지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능별 집단화를 통해 환경훼손 최소화 • 입지대상시설 계획시 경관계획 부문 강화 -경관체크리스트 활용으로 환경요소 보호 • 혐오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추진부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 주민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편익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사업의 다양성 부족 • 제3차 관리계획시 주민지원사업 선정율 향상방안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 다양성 모색 -여가녹지·누리길, 전통문화증진 등 환경문화사업 • 보전부담금 부과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선정율 향상방안 마련 |
| 개발제한 구역 관리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의 항공촬영등을 활용한 단속강화로 불법행위 점차 감소 • 기 훼손된 시설물 및 토지를 활용하여 여가휴식공간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휴식공간의 확대로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증가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경관기본계획 설계지침을 반영하여 자연 경관을 보존 • 수도권의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특성을 분석하여 수도권형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 구축 |
| 총 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관리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가능 • 도시의 허파 기능 수행 등 도시주변의 환경보전 • 입지대상시설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군사시설 및 국가연구시설로 입지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한계성 • 입지 대상시설 추진부진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수도권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보존(국방·군사시설의 입지를 최대한 억제) • 부진시설은 추진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소방안 마련 • 수도권형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 구축 |
| <p>⇒ 상위·관련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있는 정책실현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p> | | | |

4. 제1차 ~3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체계 정립
-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민원 해소

나. 한계

- 입지대상시설 위주의 계획수립, 그 외 계획내용 부족
- 수도권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적 계획수립 미흡
- 국가정책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해제 발생

1) 입지대상시설 관리적 측면

- 입지대상시설 위주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 수도권 특성 상 국방·군사시설을 비롯한 입지대상시설 수요 과다

2) 집단취락 관리적 측면

- 서울특별시: 취락지구 지정 및 고시절차가 2차 관리계획 이후인 2009년부터 진행
- 인천광역시, 경기도: 집단취락에 대한 관리계획은 있으나 취락지구 지정 미흡
- 경기도 성남시 등: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에서 건축행위 및 상업시설 증가 등 집단취락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미흡

3)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적 측면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행위 지속
- 관리계획이 집행계획으로서 실천성 부족
- 과도한 국책사업의 지방 자치행정에 부담 제공, 적절한 범위에서 국책사업 등의 관리계획 수립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 요망

다. 기 수립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계

1) 제1차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계

-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자체별 관리계획으로 따로 승인받았기에 통합성 낮음
- 수도권은 법정 관리계획 수립 이후 총 14회의 변경을 통해 308건을 추가 승인

2) 제2차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았으나,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계획 수립 후 결과물을 통합하여 승인
- 2차 관리계획 수립 이후 총 7회의 변경을 통해 93건을 추가 승인

3) 제3차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았으나,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계획 수립 후 결과물을 통합하여 승인
- 3차 관리계획 수립 이후 경기도는 본 계획에서 72건 1차 변경을 통해 35건을 추가 승인 받았으며 인천시는 총 6건, 서울시의 경우는 총 14건을 승인

〈기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한계〉

| 구분 | 변경승인 | 세부 내역 |
|----------|--------|--|
| 1차 관리 계획 | 서울 특별시 | 본 계획: 16건 변경계획: 19건 1차 16건(2002년 12월 30일 승인) 1차 일부변경 2건 (2004년 12월 30일 1건, 2005년 5월 12일 1건) 2차 일부변경 2건 (2005년 7월 20일) 3차 일부변경 6건 (2005년 12월 12일 5건, 2005년 12월 22일 1건) 4차 일부변경 9건 (2006년 1월 17일 7건, 2006년 4월 13일 2건) |
| | 인천 광역시 | 본 계획: 11건 변경계획: 44건 1차 11건(2001년 8월 20일 승인), 1차 일부변경 18건 (2002년 9월 17일 18건) 2차 일부변경 9건 (2003년 4월 11일 5건, 2003년 12월 18일 4건) 3차 일부변경 1건(2004년 4월 7일 1건) 4차 일부변경 15건 (2005년 5월 12일 13건, 2005년 6월 17일 2건) 5차 일부변경 1건(2006년 4월 13일 1건) |
| | 경기도 | 본 계획: 89건 변경계획: 245건 1차 89건 (2001년 7월 13일 승인) 1차 일부변경 93건 (2002년 4월 1일 29건, 2002년 10월 24일 64건) 2차 일부변경 78건 (2003년 7월 25일 22건, 2003년 12월 18일 29건, 2004년 1월 7일 20건, 2004년 8월 11일 6건, 2004년 9월 14일 1건) 3차 일부변경 29건 (2004년 12월 30일 29건) 4차 일부변경 2건 (2004년 12월 30일 2건) 5차 일부변경 21건 (2005년 4월 16일 21건), 6차 일부변경 22건 (2005년 5월 12일 1건, 2005년 7월 12일 7건, 2005년 8월 31일 13건, 2005년 11월 21일 1건) |
| 2차 관리 계획 | 서울 특별시 | 본 계획: 11건 변경계획: 12건 1차 11건 (2008년 3월 11일 7건, 2008년 4월 24일 4건) 1차 일부변경 4건 (2009년 6월 16일 4건) 2차 일부변경 7건 (2009년 12월 28일 4건, 2011년 1월 4일 3건) 3차 일부변경 1건 (2011년 3월 31일 1건) |
| | 인천 광역시 | 본 계획: 7건 변경계획: 9건 1차 7건 (2008년 3월 11일 1건, 4월 24일 6건 승인) 1차 일부변경 5건 (2009년 6월 16일 2건, 2009년 12월 28일 3건) 2차 일부변경 4건 (2011년 1월 4일 4건) |
| | 경기도 | 본 계획: 84건 변경계획: 72건 1차 84건 (2008년 3월 11일, 2008년 4월 24일 승인) 1차 일부변경 47건 (2009년 6월 16일 21건, 2009년 12월 28일 26건) 2차 일부변경 25건 (2011년 1월 4일 10건, 2011년 3월 30일 15건) |

| 구분 | 변경승인 | 세부 내역 |
|----------------|-------|---|
| 3차 관리 계획 | 서울특별시 | 1차 11건 (2012년 11월 28일 6건, 2013년 1월 2일 5건) 1차 일부변경 1건 (2013년 12월 18일 1건) 2차 일부변경 2건 (2015년 12월 17일 2건) |
| | 인천광역시 | 1차: 4건(2012년 12월 3일) 2차: 1건(2013년 1월 28일) 일부변경: 14건 |
| | 경기도 | 1차 72건 (2012년 10월 19일 12건, 2012년 11월 19일 4건, 2012년 11월 28일 18건, 2013년 9월 17일 12건 2013년 11월 7일 5건, 2013년 12월 18일 9건, 2014년 1월 24일 2건, 2014 년 4월 8일 3건, 2014년 5월 30일 5건승인) 1차 일부변경 14건 (2014년 11월 6일 5건, 2014년 12월 31일 9건) 2차 일부변경 21건 (2015년 3월 27일 1건, 2015년 10월 20일 2건, 2015년 12월 8일 2건, 2016년 3월 10일 2건, 2016년 3월 15일 1건, 2016년 6월 1일 1건, 2016년 6월 7일 1건, 2016년 7월 25일 1건, 2016년 8월 17일 1건, 2016년 12월 23일 1건) |

라. 제4차 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1) 제4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기승인 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입지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 실질적 관리계획으로서 위상 제고
 - 권역별 훼손지의 현황과악 및 기 승인 훼손지 복구사업의 관리
 -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강화

2) 제4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세부 수립 방향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 승인 시설의 현재 추진 현황을 작성하고, 추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추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토대로 상시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관리체계를 강화
- 권역별로 훼손지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훼손지 복구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
 - 또한 기 선정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모
-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목표, 중점 추진할 사업의 분야, 추진 사업리스트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 해당 권역별로 중점 추진할 주민지원사업의 리스트는 상·중·하로 구분하여 관리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중점관리 방안

1. 개발제한구역 관리목표

가. 기본방향

자연과 도시의 공존,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나. 관리대상 설정 및 관리방향

1) 해제가능지역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 해제 추진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
-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 시 해제를 추진하며, 지역현안사업 및 상위계획상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해제 추진

2) 해제지역

- 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진실적을 평가
-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해제 주변지역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강화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축사 설치 등
- 지가급등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필요시)
-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필요시)

4)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 승인 입지대상 시설의 모니터링체계 강화
- 훼손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현가능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관리방안 마련
- 주민지원사업의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

다. 해제 가능지역

1) 조정대상지역

●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
- 지정·해제대상지의 선정과 제척, 그 경계선의 설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관련 기준 등 정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
- 해제 가능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외에 기존 해제예정 총량의 30%에 상당하는 면적과 국정과 제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면적 범위 내에 설정
-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총량과 관계없이 관례지침에 따라 별도로 인정하며 해제가능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면적은 전환 해제

● 조정대상지역 설정

- 관련법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일반조정대상지역,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토지로 설정

〈조정대상지역 설정〉



● 해제 대상지 선정기준

- 환경적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정(환경평가등급 고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규정에 따른 환원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연도 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

- 해제대상지는 지역여건, 토지측면, 단위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지역을 선정

| 지역여건 | 토지측면 | 단위규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가지·공단·항만등과 인접하여 여건상 주거·산업·물류단지 개발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 •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은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평가등급 3~5등급지를 중심으로 선정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확인 후 시정 -우량농지는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으로 설정 -기 해제 지역 등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은 완화 적용 가능 |

라. 조정가능지역 선정

1) 기본방향

-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 없이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배분·제시하되 도 지역 내에서는 시·군 또는 일정 권역을 설정하여 배분·제시
 - 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시 가능
 - 구체적인 해제대상지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제시하며, 이때 도시성장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지 여부, 개발수요가 명확하고 중요·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도심 재개발이나 기타 용지로 개발수요 충족이 불가한지 등을 제시
- 다만, 국가계획(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전체에 대한 해제가능총량만 제시
-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 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지를 선정

2) 개발방향

-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 단지로 조성
-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토록 유도

3)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자연취락지구)

● **법적기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3-3)**

- 주택수: 20호 이상(100호 이상으로 까지 강화하여 적용 가능)
- 호수밀도: 10호/ha 이상(20호/ha 이상으로까지 강화하여 적용 가능)
- 주택수 산정기준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일(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봄) 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 및 무허가주택은 주택 호수의 산정 시 이를 산입 하되 공동주택은 가구당 1호로 무허가 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1호로 산정
 -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 영 별표1 제5호의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건축법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垓)인 토지로서 영 별표1 제5호다(주택) 및 라(근린생활시설)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던 토지

● 집단취락의 해제가능면적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m²)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호수밀도(10호/ha) + 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m² 초과부분의 면적 + 도시계획시설 부
지면적(m²)
- 추가해제 관련 규정
 - 이미 해제된 취락도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시계획시
설 면적조정,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취락지
구 해제가능면적의 범위 내에서 해제 가능

● 편입검토

- 기 해제된 지역 주변의 추가해제 요청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
과 추가해제 가능지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마. 해제 주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1) 주변지역 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축사 설치 등
- 지가급등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필요시)
-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필요시)

2)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상위계획상 도시성장축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관리
 - 해제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 대규모 입지대상시설의 신규 입지를 지양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 형성
- 훼손지 전수 조사 및 실현가능한 훼손지 복구계획을 마련
- 여가녹지·누리길 조성 및 경관·전통문화증진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과 연계한 복지 증진사업 발굴

2. 중점관리방안

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리방향

1)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여 가용지 확보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및 보전가치가(환경평가등급 3등급 이상) 낮은 지역을 가용지로 확보, 수도권 중점사업(국가, 지역현안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이용

2) 개발제한구역에서 확보된 가용지는 친환경적·저밀도 개발유도

-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통하여 환경, 경관, 생태, 녹색교통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계획 수립
- 기존 산림(수변)축의 보전과 충분한 공원·녹지율(20% 이상) 확보를 통해 저밀도의 쾌적한 개발유도

3) 해제대상지와 그 주변지역의 관리

- 개발압력의 증가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예상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 개발제한구역 해체에 따른 기대 심리로 토지의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대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나.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의 주요 녹지축 및 생태축 연결

1) 단절된 주요 녹지축 연결

- 선형시설(도로, 철도 등)로 단절된 주요 녹지축을 연결
-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수도권 내 주요 산악축을 연결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기존 녹지축의 연결

-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활용을 통해서 녹지축 연결
- 도로 등으로 단절되는 구간은 녹지축 연결(친환경 Eco-Bridge)

3) 동물의 이동경로 구간의 생태연결통로 확보

- 야생동물 보호 및 로드킬 방지를 위한 생태연결통로 계획
-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생태통로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①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②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관리계획
 - ③ 주민생활불편 해소방안
 - ④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 ⑤ 재원조달 방안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①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방향

가. 구역 내 토지를 농업생산활 등 위주로 활용 원칙

- 구역 내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생산활동 장려를 통해 농업생산 위주로 활용
- 주택의 신축허용은 나대지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추가적인 훼손 억제

나. 대규모 훼손행위 억제

- 대규모시설 중 입지불가피성이 적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관리계획 수립 시 선별적으로 반영하여 구역 내 입지 최소화
- 대규모 시설은 가능한 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정된 조정 가능 지역 내에 설치
- 쓰레기 매립장, 체육여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은 기 훼손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

다. 토지분할 제한(안)

-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토지분할은 200㎡이상으로 제한
-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 제한
-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시행령 별표2)

라.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규제완화 방안 수립

- 취약지구 내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주민편의 위주로 시행
- 취약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소요재원의 확보대책을 마련
- 취약지구 중심으로 집단화하여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마.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된 환경의 복구

- 양호한 산림 및 자연생태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은 원칙적 금지
- 훼손지 복구를 통해 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
- 토취장, 군사훈련장 등 자연환경이 이미 훼손된 토지를 골프장 등 녹지형 체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복원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종합관리방안

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토지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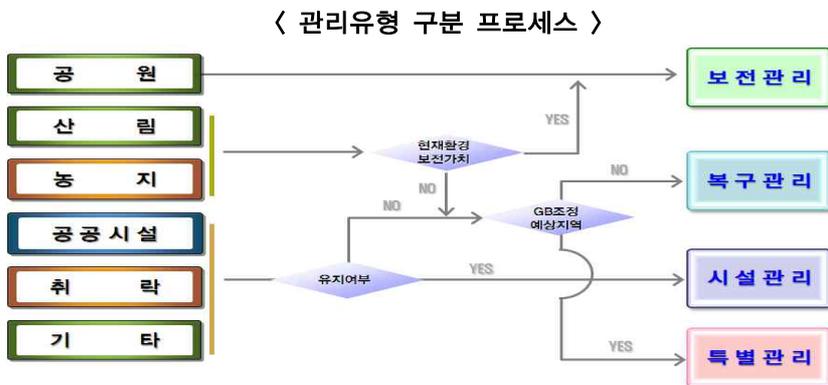
나. 관리유형 설정

1) 설정기준

- 다양한 가치달성을 위하여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법규중심의 관리에서 유형별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설정하되 개발제한구역 관리유형은 친환경성 및 이용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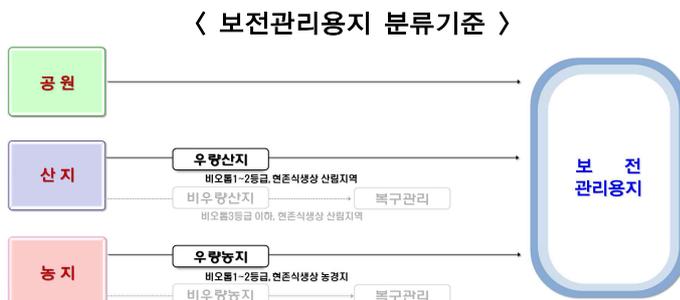
2) 관리유형 설정 프로세스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특성/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 복구관리, 시설관리, 특별관리 4가지 관리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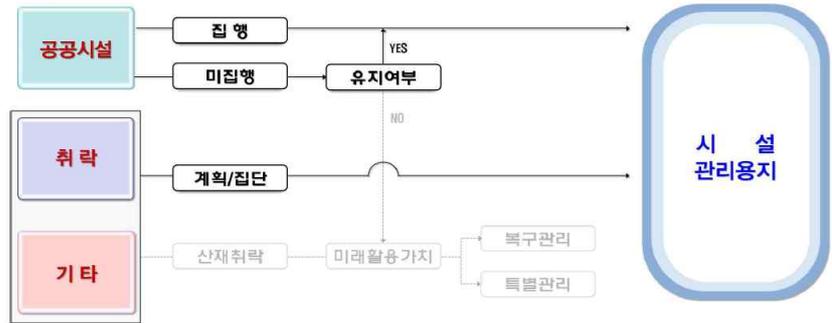
3) 관리유형 설정

- 보전관리용지
 -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한 지역, 자연 환경 및 산림보호, 양호한 우량농경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 확보가 시급한 지역 등 도시녹지지대로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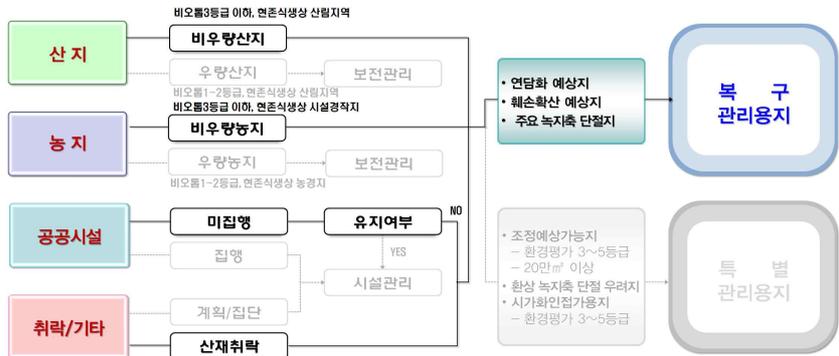
- 시설관리용지
 - 집단화된 계획형 취락,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지역으로 생활 환경 쾌적성 제공과 훼손확산 방지가 필요한 지역

〈 시설관리용지 분류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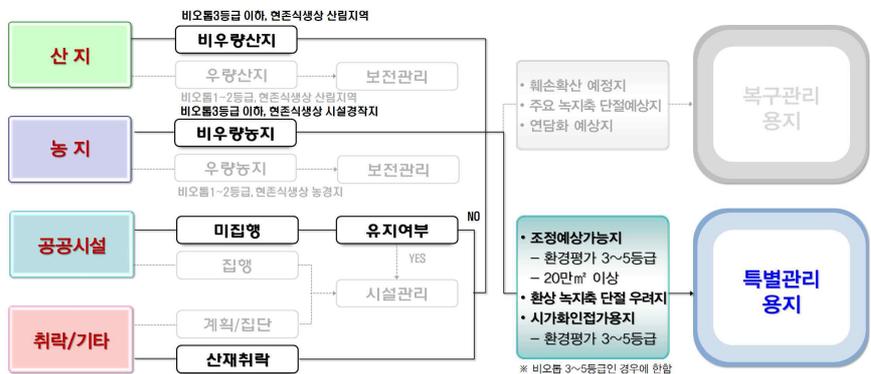
- 복구관리용지
 - 연담화 예상지, 훼손확산 예정지, 주요녹지축 단절지등 복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복구관리용지 분류기준 〉



- 특별관리용지
 - 향후 주변 여건변화 및 개발압력에 의하여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환상녹지축 보전을 위하여 관리강화가 필요한 지역

〈 특별관리용지 분류기준 〉



다.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1)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권역설정 및 관리유형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역할에 부합하는 관리방안 설정
- 규제일변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정

2) 관리유형별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보전관리용지: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생태적 위상 제고”
 - 자연환경이 양호한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우수한 자연생태계·경관의 절대보전을 통하여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

〈 보전관리용지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현황 | 주요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 •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공원유지 (공원구역/시설) • 실현수단: 공원녹지기본계획 연계 |
| •산지 (수림양호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훼손시설 입지역제 • 실현수단: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
| •농경지 (우량농경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훼손시설 입지 억제 및 농업활동 장려 • 실현수단: 성토기준 강화, 여가영농지구 신설 (주말농장 등 설치) |

- 복구관리용지: 훼손된 지역의 자연경관 복원
 - 훼손지 또는 단절된 생태녹지축 복원을 통하여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제공
 - 생태공원, 여가영농(주말농장) 등의 조성으로 거주민의 활력 있는 여가생활 향유 추구

〈 복구관리용지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현황 | 주요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지 - 기존산림으로 위요된 지역 - 계곡부 훼손 침투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1) 훼손촉진시설 입지 억제 2) 산림으로 복구 • 실현수단: 1) 입지대상시설 기준 강화 2) GB관리계획 반영, 훼손지 복구사업추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지 - 시설경작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환경친화적 농지로 복구 • 실현수단: GB관리계획 반영, 훼손지 복구사업, 농업공원, 여가영농지구 지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훼손지 - 위법시설 입지 - 조경수목식 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원래 지목에 부합하는 형태로 복구 • 실현수단: GB관리계획 반영,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

- 시설관리용지
 - 양호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취락의 지정 및 계획적 정비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 시설관리용지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현황 | 주요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입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시설 및 주변지역 행위변화 모니터링 • 실현수단: 경미한 변경 범위 축소/복구사업 후순위 대상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취락지구 - 산재된 취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1) 취락지구 정비사업 추진 2) 집단화 관리 위한 이축 유도 • 실현수단: 1)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추진 2) 이축 예정지로 이축 유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락 및 시설 인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에 의한 훼손예상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1) 훼손시설 입지 억제 2) 농경지 유지 / 취락 이축 예정지 관리 • 실현수단: 1) 행위허가 기준 강화 2) 주말농장, 텃밭 활용 3) 취락 이축 예정지 관리 |

- 특별관리용지: 미래수요 대비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활용방안 도모”
 -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래 공공수요에 대비
 - 환상녹지축의 보전을 통하여 도시확장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특별관리용지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현황 | 주요 관리방안 및 실현수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1) 지역여건 고려한 사업 • 실현수단: 1) 조정지 + 인근지 + 환상녹지축 단절우려지 포함한 단위지역 종합계획 수립 2) 부지내 양호 녹지 공원 조성 및 주변 녹지축 고려한 신규 공원녹지 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상녹지축 단절 우려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2) 해제 요청시 원칙적 제척(환상녹지축 단절 우려지) • 실현수단: 관련지침에 의거 해제대상 제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화지역 인접 개발가능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방안: 우선 복구사업대상 및 시설설치지역에서 제외 • 실현수단: 1) 행위허가기준 강화 2) 지역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 |

3.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방안

가.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1) 기본방향

- 보전을 위한 녹지와 이용을 위한 녹지로 구분하여 계획수립
 - 도시연담화 방지,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대부분의 녹지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 관리방안 강구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훼손지, 개발예정지역, 상위계획 상 공원녹지 거점 지역,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 등은 주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녹지계획 수립
-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 관련사항에 부합되는 공원 및 녹지 등은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상위계획 상 녹지축 및 녹지거점이더라도 불가피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2) 목적

-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지 내 각종 공원 등과 연계하는 녹색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보전가치 증진방안 강구
- 보전을 위한 녹지는 지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녹지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기회의 장으로 제공

3)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통한 녹색인프라 구축 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등)현황
- 수도권 개발계획구역 내 위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 현황을 파악하고 미조성 공원의 재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녹색인프라 구축

4)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통한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 여가녹지 조성 현황 〉

| 연번 | 소재지 | 조성면적 (㎡) | 사업비(억원) | | | 선정 연도 | 비고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 수도권 | 총 13개소 | 110,838 | 102.9 | 70.8 | 40.2 | - | |
| 서울시 | 3개구 3개소 | 21,108 | 14 | 11.1 | 11 | - | |
| |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157-1 | 12,040 | 6 | 5 | 1 | 2009 | |
| | 2 서울 강서구 개화동 산9번지 일원 | 7,977 | 5 | 4 | 1 | 2011 | |
| | 3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39-27번지 일원 | 1,091 | 3 | 2.1 | 9 | 2012 | |
| 인천시 | 2개구 2개소 | 18,304 | 8 | 6.8 | 0.8 | - | |
| | 1 인천시 서구 가좌동 산19 | 3,825 | 2 | 1.8 | 0.2 | 2010 | |
| | 2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산7-4 | 14,479 | 5.6 | 5 | 0.6 | 2012 | |
| 경기도 | 7개시(市) 8개소 | 71,426 | 81.3 | 52.9 | 28.4 | - | |
| | 1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308-1외 1필지 | 16,594 | 10 | 7 | 3 | 2010 | |
| | 2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9-4외 8 | 14,972 | 8.1 | 5.4 | 2.7 | 2010 | |
| | 3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 279-1외 1 | 9,589 | 20 | 14 | 6 | 2010 | |
| | 4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286 | 4,514 | 10 | 7 | 3 | 2009 | |
| | 5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108 | 5,733 | 12 | 5 | 7 | 2012 | |
| | 6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산72외 4 | 10,224 | 7.2 | 5 | 2.2 | 2012 | |
| | 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 87 | 5,000 | 5 | 3.5 | 1.5 | 2013 | |
| | 8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92-20 일원 | 4,800 | 9 | 6 | 3 | 2013 | |

- 여가녹지 조성사업 후보지 검토
 -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 후보지는 국토교통부 매수 토지현황을 대상으로 검토함
 - 여가녹지 조성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여건,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 할 계획임

5) 훼손지의 지목 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등의 활성화 유도

- 구역 내 훼손된 토지 중 전, 답 등 지목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용 텃밭 조성 유도
- 도시농업 텃밭 27개소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 14개 텃밭 존재

〈 도시농업 텃밭 현황 〉

| 자치구 | 개소 | 농장명 | 주소 | 규모 |
|-----|----|---------------|------------------|-----------------|
| 합계 | 27 | - | - | 184,700㎡, 2000주 |
| 서초구 | 6 | 대원 텃밭농장 외 5개 | 서초구 원지동 227 외 | 33,400㎡ |
| 강남구 | 4 | 대모산텃밭농장 외 3개 | 강남구 자곡동 515 외 | 16,900㎡ |
| 강동구 | 4 | 상일 텃밭농장 외 3개 | 강동구 상일동 468-3 외 | 47,600㎡ |
| 도봉구 | 7 | 도봉산 텃밭농장 외 6개 | 도봉구 도봉1동 384-1 외 | 37,200㎡ |
| 노원구 | 2 | 천수 텃밭농장 외 1개 | 노원구 중계본동 114 외 | 18,200㎡ |
| 양천구 | 1 | 신정 텃밭농장 | 양천구 신월동 산175-5 | 16,500㎡ |
| 강서구 | 2 | 옥천 텃밭농장 외 1개 | 강서구 가양동 193 외 | 14,900㎡ |
| 중랑구 | 1 | 햇님 밭농장 | 중랑구 시내동 산34 | 2,000주 |

- 강동구, 서초구 등 훼손지 밀집지역 위주로 도시농업 사업지 후보지 집중 검토
- 기존 도시농업과 연계하여 텃밭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제안

6)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을 통한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 슬로시티(slow-city) 운동의 확산 및 걷기운동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전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길(그린웨이, 누리길 등) 조성사업이 각 기관 및 지자체별로 추진 중
- 개발제한구역 내 녹색길 조성은 주민 이용 유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적 환경보전 운동 활성화에 기여
- 따라서, 수도권 전반에 걸친 여가녹지 조성사업 및 체험 숲길 등의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연속적인 친환경 녹색길 조성 추진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녹색길 구축 현황 〉

| 연번 | 소재지 | 명 칭 | 연장(km) |
|----|--------|---|------------------|
| 1 | 서울시 전역 | 생태 문화길 -2010년 110개 코스, 2011년 23개 코스 추가, 총 4개 유형 중 숲길과 숲속여행길 일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함 | 총 연장 842km |
| 2 | 서울시 | 서울 둘레길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 중 외사산 둘레길(관악산, 북한산, 대모산, 수락산, 봉산, 아차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됨 | 외사산 둘레길 157km |
| 3 | 서울시 | 서울 자락길 -서울 근교산 등산코스 중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경사가 완만한 숲을 산책로로 조성하고 있음 -북한산 자락길 2.4km, 관악산 자락길 2.3km 등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됨 | 북한산, 관악산 등 4.7km |

〈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녹색길 구축 현황 〉

| 연번 | 소재지 | 명 칭 | 연장(km) |
|----|---------|--|--------|
| 1 | 인천시 남동구 | 문화생태 누리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소래습지 생태공원 | 8 |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녹색길 구축 현황 〉

| 연번 | 소재지 | 명 칭 | 연장(km) |
|----|-----|--------------|--------|
| | | 13개 도시 13개소 | 188 |
| 1 | 서울 | 은평 북한산 누리길 | 2.5 |
| 2 | 서울 | 노원 누리길 | 10 |
| 3 | 인천 | 문화·생태 누리길 | 8 |
| 4 | 인천 | 계양산 누리길 | 5 |
| 5 | 경기 | 수원 광교 누리길 | 8.7 |
| 6 | 경기 | 양평 누리길 | 9.4 |
| 7 | 경기 | 양주 누리길 | 10.8 |
| 8 | 경기 | 부천 누리길 | 8 |
| 9 | 경기 | 시흥 누리길 | 40 |
| 10 | 경기 | 안산 장하동 누리길 | 6 |
| 11 | 경기 | 의왕 누리길 | 26 |
| 12 | 경기 | 고양 누리길 | 33.6 |
| 13 | 경기 | 수락산, 불암산 누리길 | 20 |

● 세부조성계획 개요

① 서울 은평 북한산 누리길 조성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은평 북한산 누리길
 - 위 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 입구 ~ 백화사
 - 사업규모: 총 2.5km
 - 예상도보시간: 60분
- 주요 특징
 - 진관사, 삼천사 등 주변에 전통사찰이 위치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곳에 조성
 -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 누리길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고, 생태탐방, 체험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 가능

② 인천 문화·생태 누리길 조성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인천 문화·생태 누리길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소래습지 생태공원
 - 사업규모: 총 8km
 - 예상도보시간: 120분
- 주요 특징
 - 생태하천인 장수천이 구간에 포함되어 자연경관이 탁월
 - 구간의 시점인 인천대공원은 환경미래관 뿐만 아니라 식물원, 어린이대공원등의 테마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고 종점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옛 염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 해안풍경과 함께하는 산책과 조깅 등 다양한 탐방이 가능

〈경기 안산 장하동 누리길 위치도〉



③ 경기 안산 장하동 누리길 조성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장하동 누리길
 - 위 치: 안산시 장하동 일대
 - 사업규모: 6km(승마 및 마차 체험시설 조성, 자연체험 시설)
 - 예상도보시간: 120분
- 주요특징
 - 동 지역은 조선시대 역마를 제공했던 “석곡역” 과 고려시대 현대의 출장관사에 해당하는 “쌍록원” 이 있던 지역임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생태체험 등 다양한 테마형 산책로 조성예정
- 누리길 중앙에는 승마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게 되고 승마 및 마차 체험, 농촌 체험, 역사 체험 등도 가능

④ 경기 의왕 청계산-백운호수-왕송호수 누리길 조성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청계산-백운 누리길
 - 위 치: 청계산-백운호수-왕송호수
 - 사업규모: 5km(전체 구간은 26km)
 - 예상도보시간: 180분
- 주요특징
 - 사색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평탄한 숲속 길,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왕송호수, 박운호수 길, 전원의 풍경과 함께 할 수 있는 들길 등 주변경관이 탁월함
 - 지역적 특색이 있는 역사, 예술, 생태체험 등 다양한 테마형 산책로 조성예정

〈경기 의왕 청계산-백운호수-왕송호수 누리길 위치도〉



⑤ 경기 고양 누리길 조성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고양 누리길
 - 위 치: 고양시 덕양구 일대
 - 사업규모: 행주~서삼릉~송강~고양 구간 33.6km
 - 1구간 11.9km/ 2구간 8.28km/
 - 3구간 5.86km/ 4구간 7.56km
 - 예상도보시간: 570분
- 주요특징
 - 행주산성, 최영 장군묘, 백제관지, 고양향교, 서삼릉, 송강문학관, 월산대군사당 등 역사유적지 및 문화시설이 산책로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함
 - 삼송지구, 원흥 보금자리, 화정·행신지구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3호선 삼송, 원당, 화정역이 누리길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음

〈경기 고양 누리길 위치도〉



7) 생활공원 조성사업

〈 생활공원 조성사업 〉

| 연번 | 소재지 | 명 칭 | |
|----|------------|----------|---|
| 1 | 도봉구 도봉동 | 생활 공원 | -위치: 도봉구 도봉동 산68-13 일원 -사업면적: 2,012㎡ -사업내용: 기초체력, 숲체험장, 모험 숲체험장, 야생화원 등 |
| 2 | 은평구 녹번동 | 생활 공원 | -위치: 녹번동 산1-1외 6필지 -사업면적: 8,000㎡ -사업내용: 휴게쉼터, 습지원 조성 등 |
| 3 | 서초구 우면동 | 생활 공원 | -위치: 우면동 산34-1 -사업면적: 9,800㎡ -사업내용: 숲속교실, 산책로,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

나. 경관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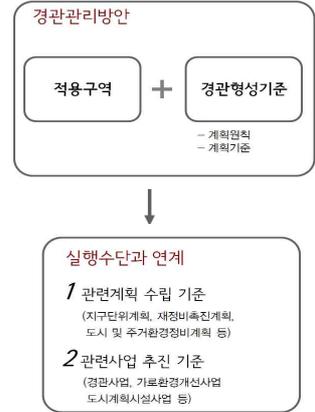
1) 목적

-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요구되며, 시민들의 도시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등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향
- 개발제한구역의 경관관리는 각 지자체별 경관기본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 지침을 수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을 도모

2) 경관관리 방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대규모 신개발지 경관 관리방안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구축
 - 경관적 생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유도
 - 수변이나 산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녹지축 확보 적극 유도
 - 입지 및 생태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친환경개발 패턴 유도
- 전통 건축물 경관 확산 방안
 - 기존 주택의 증·개축 및 학교, 마을회관 등 신규 건립 시 한옥 설계를 유도하여 경관향상 기대
- 조망경관지 활용 방안
 -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조망장소를 여가공간으로 활용
 - 산지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조망점은 친환경 녹색길과 연계하여 조망 장소로 조성
- 시범경관 사업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대상으로 마을길, 담장, 가로등, 주택개보수 등 종합적 사업추진
 - 시범경관사업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시범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

〈경관관리방안에 의한
실행수단 연계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 경관사업 조성 현황 〉

| 연번 | 명칭 | 조성면적 (㎡) | 사업비(억원) | | | 비고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서울시 | 해당없음 | - | - | - | - | |
| 인천시 | 해당없음 | - | - | - | - | |
| 경기도 | 2개시(市) 2개소 | 22,529 | 19.2 | 10 | 9.2 | |
| 1 | 하남 이성산성 경관 정비사업 | 22,199 | 12 | 5 | 7 | |
| 2 | 의왕 한글둘레길 경관 조성사업 | 330 | 7.2 | 5 | 2.2 | |

다. 전통문화유산 보전방안

1)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대상으로 마을길, 담장, 가로등, 주택개보수 등 종합적 사업추진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문화 확산 등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근대문화유산, 수중문화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계획 필요
-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보물, 사적, 유형문화재 등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2) 전통문화유산의 정의

- 광의의 정의
 -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인류 사회의 문화소산, 정신적·물리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 협의의 의미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족문화재 등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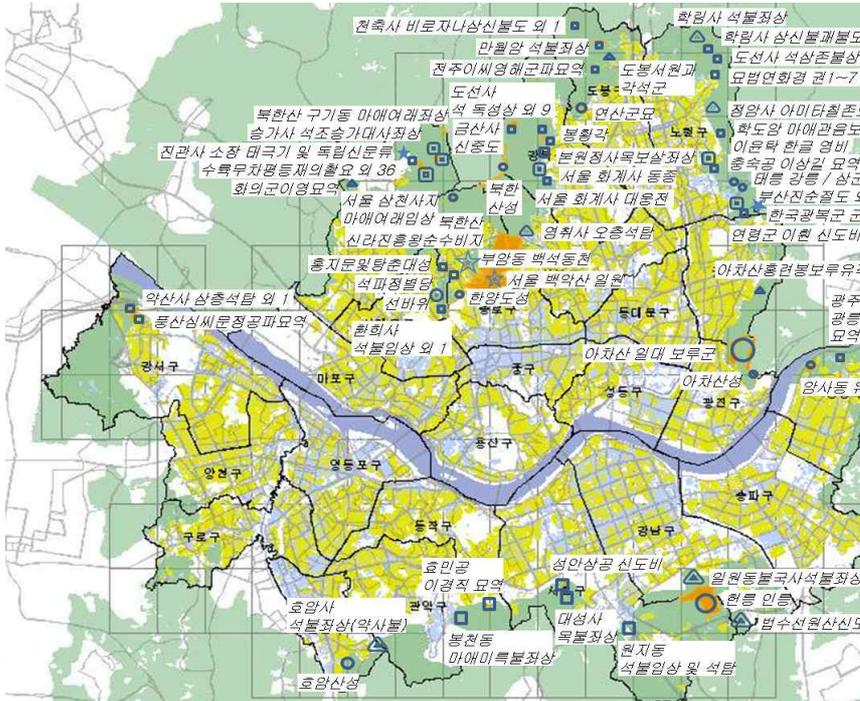
3) 문화재 현황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143개, 유형문화재 125개, 사적 29개, 기념물 46개, 문화재자료 35개, 민속자료 3개를 포함한 총 381개의 전통문화유산이 분포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32개, 유형문화재 80개, 사적 9개, 기념물 3개, 문화재자료 6개, 민속자료 1개를 포함한 총 131개의 전통문화유산 분포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 현황 〉

| 구 분 | 총계 | 문화재 유형 | | | | | | |
|-------|-----|--------|--------|----|--------|-----|--------|------|
| | | 전통사찰 | 유형 문화재 | 사적 | 천연 기념물 | 기념물 | 문화재 자료 | 민속자료 |
| 서울특별시 | 131 | 32 | 80 | 9 | - | 3 | 6 | 1 |

〈 서울시 문화재 현황도 〉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유형문화재 1개, 사적 1개, 기념물 8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전통문화유산 분포

〈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 현황 〉

| 구 분 | 총계 | 문화재 유형 | | | | | | |
|-------|----|--------|--------|----|--------|-----|--------|------|
| | | 전통사찰 | 유형 문화재 | 사적 | 천연 기념물 | 기념물 | 문화재 자료 | 민속자료 |
| 인천광역시 | 10 | - | 1 | 1 | - | 8 | - | -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111개, 유형문화재 44개, 사적 19개, 기념물 35개, 문화재자료 29개, 민속자료 2개를 포함한 총 240개의 전통문화유산 분포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 현황 〉

| 구 분 | 총계 | 문화재 유형 | | | | | | |
|-----|-----|--------|--------|----|--------|-----|--------|------|
| | | 전통사찰 | 유형 문화재 | 사적 | 천연 기념물 | 기념물 | 문화재 자료 | 민속자료 |
| 경기도 | 240 | 111 | 45 | 19 | - | 35 | 29 | 2 |

4) 문화재 보전방향

- 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활용하기 위해 원형 보전 방안을 제시
 -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충실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체계적·예방적 보존기반 구축
 -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

〈 전통문화유산 보전방안 〉

| 구 분 | 보 전 방 안 |
|----------------------------|---|
| <p>동산 문화재 보존 관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문화재는 종합실태조사, 기록화 사업추진 •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및 범죄 예방 체계 강화 |
| <p>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 석조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우구, 건조물의 전통 배치 양식 등에 의거 문화재 주변 역사적 경관 유지상 필요한 경우 복원 • 석조문화재는 석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고, 고풍 유지·관리 • 개별 문화재의 연차적 보수정비 세부계획은 문화재의 개별 특성과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시·도에서 실태 조사 후 수립 추진 • 체계적,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상시 점검 체계 확립 |
| <p>사적보수정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고증 등을 토대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에 부합되게 보존·정비 추진 (건물의 복원은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증을 거쳐 복원) • 선사유적, 성곽, 고분 등 유형별로 특성화되게 보존, 정비하되 활용측면 적극 고려 • 사적의 보존·정비는 유적의 보존상태와 주변 사문화환경·자연경관 등을 고려 추진 |
| <p>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전 자원 보존·복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분야는 희귀종의 인공증식으로 적정 개체수 유지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특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 및 경관 보호 강화 - 식물분야는 보호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생지에 다른 종의 침입을 억제하며, 보존가치가 큰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지정·보존 추진 - 천연보호구역은 공개제한의 적정 운용으로 훼손 방지와 복구를 추진 - 명승·지질·광물분야는 전국적 전수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유형별 지정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 <p>중요 민속 자료 보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정비는 전통가옥별 기초조사 후 보수정비 실시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건조물의 종합조사 및 멸실·훼손 방지 |
| <p>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근대건축·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관리 실태 조사 및 사진실측 등 • 소유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존 및 활용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에서 문화재의 가치 홍보 등을 통해 소유자의 보존의식 고취 - 세제감면 등 간접적 지원 방안 강구 •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통한 보존 다양화 추구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구역 내 문화재 주변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육성
 -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마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촌을 조성
 - 친환경 녹색길 조성 시 숲대와 장승 등을 활용한 시설물 설치로 전통문화 보급 및 확산기여
 - 천연기념물 및 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개발
 -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기금 등 국비 지원 시 효율적 추진가능
-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향토성, 생활민속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자원을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보급 (전통의례, 전통공예체험, 다도체험 등)
 - 전통예술공연을 문화상품으로 확대개발보급
 - 향토사학 연구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대중화 촉진

< 전통문화사업 조성 현황 >

| 연번 | 명칭 | 조성 면적 (㎡) | 사업비(억원) | | | 비고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서울시 | 1개구 1개소 | 12,190 | 5 | 4 | 1 | |
| | 구로구 정선옹주묘역 일대 전통문화사업 | 12,190 | 5 | 4 | 1 | |
| 인천시 | 해당없음 | - | - | - | - | |
| 경기도 | 1개시(市) 1개소 | 4,831 | 6 | 4.2 | 1.8 | |
| | 구리 아차산 고구려 전통문화 탐방사업 | 4,831 | 6 | 4.2 | 1.8 | |

라. 재해 저감방안

1) 목적

- 재해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방재대책 수립
-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예방
- 방재교육 및 홍보 강화

2) 피해영향 유형별 위험지구 분류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 예상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우수흐름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이 직접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제방유실로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① 주택지 인접 절개사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 되어 붕괴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프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우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3규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3) 재해취약지역 관리방안

- 풍수해 저감사업·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자연재해대책법), 산지사방사업(사방사업법),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연계 가능성 검토

4) 재해 저감방안

- 기본방향
 - 재해유형별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방재대책 수립
 -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예방 및 방재교육·홍보 강화
- 재해유형별 방재대책
 - 태풍, 가뭄, 피해예방 및 해일 재해예방대책 실시
 - 지역별 녹지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재공간 확보
 - 방재시설물, 배수펌프 및 하천관리 정비 추진
 - 봄철 안전점검, 하수도 및 하천의 지장물 제거 등 재해위험요소의 사전 예방 조치
- 방재 교육 및 홍보 강화
 - 방재교육 및 방재훈련(도상훈련, 실제훈련, 종합시범훈련) 실시와 방재홍보 강화

〈 재해유형별 방재대책〉

| 재해유형 | 저감대책 |
|--|---|
| <p>하천 관련 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의 유실 • 제방의 붕괴 및 변형 • 하상 안정시설의 유실 • 제방 도로 피해 • 하천 횡단 구조물 피해 • 외수에 의한 범람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한 시공으로 피해 재발 방지 및 하천 횡단 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 설정 등 • 강수량 및 홍수량 변동을 고려한 제방(호안)의 재평가 • 하천의 총수위를 정확히 고려한 시공으로 피해 재발 방지 • 상습피해구간의 경우 피해구간의 제방 규모 구조를 인접 개수 완료 시설에 맞추는 개량복구 실시 • 여유고가 낮은 경우 부유물 포집 요인이 되는 시설 철거 • 침사지, 사방댐 및 스크린댐 설치, 하천횡단구조물 개선 • 신설 교량가설시 구교량 반드시 철거 • 산사태 방지시설, 임도의 배수 및 사면 안정 사업, 벌채목 방지 금지 등 실시 • 제방도로나 산책로 노면에 홍수방지턱 설치 • 대홍수 직후 통수능을 신속히 복원 • 하천 이용 시설에 의해 통수 단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규제 |
| <p>내수 침수 관련 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거 관련 문제 •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 •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 빗물 펌프장 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 노면 및 위치적 문제에 의한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에 따른 우수배제 상황 파악 및 시설의 기설계 용량 점검 • 상수관의 파열 대책 수립시행 • 역류방지 시설 설치 확대 • 우수 침투 및 저류 시설 충분히 활용 • 확률강우량 적정산정 및 외수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신설 및 확대 • 지류 소하천 하상 정비 및 준설 • 외수에 인접한 도로나 산책로 노면에 홍수방지 설치 • 빗물받이를 증설 및 개량 • 단지내 우수 저류시설 적극 활용 • 지하 공간 출입구에 빗물 유입 방지 시설을 설치 확대 |
| <p>토사 유출 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침식 및 홍수 피해 • 하천시설물 피해 •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 농경지 피해 • 양식장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사면보호공, 침사지 등의 비상대책 마련 • 수목의 활착을 통한 토사유출저감방안 수립 • 벌목지의 경우 벌목한 목재 이용 횡방향 배수 유도 • 계곡수 유입구 등에 저류기증을 겸하는 침사지 설치 • 자연재료 이용, 현재 유로 유지 방법으로 제방보강 실시 • 계곡수 유입구나 복개시작시점 직상류부에 저류기능을 겸하는 침사지 설치 |
| <p>사면 붕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석 및 사면붕괴로 인한 사면 취약지 매몰 •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처리 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 옹벽 등 토사방지 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사면취약지역 조사, 산사태 위험지구를 확대 지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면안정공법을 도입 적용 • 사면에 위치한 배수관로는 수평 및 수직배수가 원활하도록 시공 • 옹벽, 토사방지시서러 설계시 집중호우로 인한 활동력 충분히 고려 / 시공 감리 등의 지도 감독 활동 강화 • 해당지역 사면의 지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획일적 시공 지양 • 지방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지정 시공 |

②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 시설의 관리계획

1. 입지대상시설 입지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포함 시설

- 입지대상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관리계획(수립·승인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음
 - 도시계획시설
 -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10,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시설의 입지 가능성 판단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은 관련법령의 적합여부, 설치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설치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시설의 허용여부 결정

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설치의 예외

- 도로·철도의 본선 등 선형의 통과시설로서 성격상 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하거나 구역의 효과적 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 행위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사전에 관리계획에 반영

라. 관련법령에 입각한 시설설치

-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규정과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최소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계획

마. 기결정 및 결정 시설의 설치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의 불가피성, 시설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여부 판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시설의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

- 도시계획시설의 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구역 내 입지하여야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국방·군사시설, 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
-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명, 설치주체(사업시행자), 위치, 규모 등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도작성 후 관리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가. 공공녹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바. 실내체육관 사. 골프장 아. 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자. 청소년수련시설 차. 자연공원, 카. 도시공원,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파. 탑 또는 기념비 하. 개발제한구역관리, 전시, 홍보관련시설 거. 수목장림 너. 방재시설 더. 저수지 및 유수지 러. 서바이벌게임 관련시설 머. 자전거이용시설 |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 | 가. 철도 나. 궤도 다. 도로 및 광장 라. 삭제(2012.11.12.) 마. 관개 및 발전용수로 바. 삭제(2012.11.12.) 사. 수도 및 하수도 아. 공동구 자. 전기공급시설 차.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카. 송유관 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하. 가스공급시설 |
|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가. 공항(헬기장을 포함한다) 나. 항만 다. 환승센터 라. 주차장 마. 학교 바. 지역공공시설 사. 국가의 안전, 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아. 폐기물 처리시설 자.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차. 유류저장 설비 카. 기상시설 타. 장사 관련 시설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거. 동물보호센터 너.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더. 경찰훈련시설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머. 택시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버. 수소연료공급시설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
|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가. 동식물 관련시설 1) 축사 2) 잠실(蠶室) 3) 저장창고 4) 양어장 5) 사육장 6) 작물 재배사 7) 삭제<2015.9.8.>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2) 담배 건조실 3) 임시 가설건축물 4)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5) 관리용건축물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라.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원 7) 당구장 8)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9) 수리점 10) 사진관·표구점·학원·장 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마. 주민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8) 미곡종합처리장 9) 목욕장 10) 휴게소(고속도로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를 포함한다.)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1) 버스 간이승강장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3)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 14)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 시설 바. 공중화장실 사. 야영장(제1호 타목에 따른 야영장 제외)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 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제외) |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

| | |
|--|--|
| <p>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p> | <p>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p> |
| <p>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p> | <p>가. 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 중 정거장(역사, 조차장, 환승시설 등)·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단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광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경관광장 2) 교통광장(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시설중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위치·규모 등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공동구 바.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사.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1)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배전선로·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 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3) 송유설비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p> |
| <p>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p> | <p>가.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동호 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 나. 보건소(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육시설 마. 도서관 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시설 (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가스공급시설 2) 유류저장설비 3) 기상시설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p> |
| <p>기타</p> | <p>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연공원시설 나. 관개 및 발전용수로 다.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라.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 보안시설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바.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000㎡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p> |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입지대상시설 승인현황 및 평가

가. 관리계획에 반영된 입지대상시설 승인 현황(2001~2016)

1) 관리계획 승인시설 총괄표(2001~2016)

〈 관리승인시설 총괄표(2001~2016) 〉

| 구분 | | 면적 | | | 비고 |
|-----------|----|-----|-------------------------|------------------------|----|
| | | 건수 | 형질변경면적(m ²) | 건축연면적(m ²) | |
| 수도권 | - | 781 | 50,292,604.2 | 6,205,474.7 | |
| 서울 특별시 | 1차 | 35 | 1,055,733 | 441,566 | |
| | 2차 | 23 | 1,409,588 | 204,188 | |
| | 3차 | 19 | 264,322 | 148,617.08 | |
| 인천 광역시 | 1차 | 55 | 8,601,507 | 671,895.11 | |
| | 2차 | 16 | 2,218,858 | 105,429.6 | |
| | 3차 | 13 | 288,283.2 | 36,688.1 | |
| 경기도 | 1차 | 344 | 28,426,029 | 1,832,456 | |
| | 2차 | 169 | 6,749,284 | 1,402,470.81 | |
| | 3차 | 107 | 1,279,000 | 1,362,164 | |

〈 1·2·3차 관리계획 시설 유형별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 시설 구분 합계 | 제1종시설 | | | | | | | | 제2종시설 | | | | | | | | | | |
|-----|----------------|-------|------------|---------|----------------|-----------------|--------|----------|----|-------|-------------|------------------|----------|-----------------------------|--------|--------------------|---------------------------|----------|-------------|--------|
| | | 소계 | 실외 체육시설 | | 여가 활용 시설 | 국방· 군사 시설 | 공 항 | 선형 시설 | | 소계 | 주 차 장 | 수 하 수 도 | 장사 시설 | 여가 활용 시설 (1종 외) | 학 교 | 폐기 물 · 환경 | 전기 통신 방송 에너 지 | 공공 청사 | 차 고 지 | 기 타 |
| | | | 체육 | 골프 장 | | | | 철도 | 도로 | | | | | | | | | | | |
| 수도권 | 781 | 365 | 11 | 15 | 104 | 128 | 3 | 54 | 50 | 416 | 15 | 77 | 11 | 8 | 199 | 18 | 23 | 9 | 29 | 21 |
| 서울 | 77 | 39 | 1 | 1 | 9 | 13 | 1 | 6 | 8 | 38 | 1 | 2 | - | - | 11 | 5 | 4 | - | 6 | 10 |
| 인천 | 84 | 42 | 1 | 2 | 15 | 14 | 1 | 9 | - | 42 | 1 | 4 | 2 | - | 29 | - | 1 | 1 | 4 | - |
| 경기 | 620 | 284 | 9 | 12 | 80 | 101 | 1 | 39 | 42 | 336 | 14 | 71 | 9 | 8 | 165 | 13 | 18 | 8 | 19 | 11 |

나. 기 승인 입지대상시설의 추진현황

1) 추진현황 및 분석

- 제1차 승인시설(433개소): 정상추진308, 추진부진 78, 기타(GB해제지역내 사업)47
- 제2차 승인시설(209개소): 정상추진 177, 추진부진25, 기타(GB해제지역내 사업)7
- 제3차 승인시설(139개소): 정상추진 125, 추진부진13, 기타(GB해제지역내 사업)1

〈 기 승인 입지대상시설의 추진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 합계 | 정상추진* | 추진부진 ** | | | | 기타*** (GB해제) | 비고 |
|-----|----|-------|---------|------|-----------|-----|-----------------|----|
| | | | 소계 | 추진불가 | 예산 미확보 | 미추진 | | |
| 수도권 | 계 | 781 | 610 | 116 | 54 | 20 | 42 | 55 |
| | 1차 | 433 | 308 | 78 | 47 | 6 | 25 | 47 |
| | 2차 | 209 | 177 | 25 | 6 | 11 | 8 | 7 |
| | 3차 | 139 | 125 | 13 | 1 | 3 | 9 | 1 |
| 서울 | 계 | 77 | 67 | 4 | 1 | 2 | 1 | 6 |
| | 1차 | 35 | 28 | 2 | 1 | 1 | 0 | 5 |
| | 2차 | 23 | 20 | 2 | 0 | 1 | 1 | 1 |
| | 3차 | 19 | 19 | 0 | - | - | - | - |
| 인천 | 계 | 84 | 64 | 17 | 8 | 4 | 5 | 3 |
| | 1차 | 54 | 43 | 9 | 5 | 0 | 4 | 2 |
| | 2차 | 17 | 10 | 6 | 3 | 3 | 0 | 1 |
| | 3차 | 13 | 12 | 1 | - | 1 | - | - |
| 경기 | 계 | 620 | 479 | 95 | 45 | 14 | 36 | 46 |
| | 1차 | 344 | 238 | 66 | 41 | 5 | 20 | 40 |
| | 2차 | 169 | 147 | 17 | 3 | 7 | 7 | 5 |
| | 3차 | 107 | 94 | 12 | 1 | 2 | 9 | 1 |

주)* (정상추진) 관리계획(변경) 승인 또는 착공 후 1년 이내 사업 →정상추진=완료, 진행중, 변경)
 ** (부진사업) 정상추진 사업 외 모든 사업 →추진불가=사업취소, (예산미확보=예산부족, 미확보), (기타=미추진)
 *** (기타) GB 해제지역 내 사업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서울시

- 제1차 입지시설 35개소 중 현재까지 정상추진중인 시설이 28개소이며, 추진부진시설 2개소, 그 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입지시설 5개소
- 제2차 입지시설 23개소 중 현재까지 정상추진중인 시설이 20개소이며, 추진부진시설 2개소, 그 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입지시설 1개소
- 제3차 입지시설 19개소 중 현재까지 정상추진중인 시설이 17개소이며, 추진부진 시설은 없음

〈 서울시 1·2·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현황 〉

| 구분 | 합계 | | 1차 | | 2차 | | 3차 | | |
|--------------------|--------------------|-----|-------|-------|-------|--------|-------|--------|-------|
|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 | | | 35 | 100 | 23 | 100.00 | 19 | 100.00 | |
| 제 1 종 시 설 | 소계 | | 14 | 40.00 | 12 | 52.17 | 13 | 68.41 | |
| | 실외체육시설 | 체육 | 0 | 0.00 | 1 | 4.35 | 0 | 0.00 | |
| | | 골프장 | 0 | 0.00 | 1 | 4.35 | 0 | 0.00 | |
| | 여가활용시설 | | 7 | 20.00 | 2 | 8.70 | 0 | 0.00 | |
| | 국방·군사시설 | | 1 | 2.86 | 3 | 13.04 | 9 | 47.37 | |
| | 공항 | | 1 | 2.86 | 0 | 0.00 | 0 | 0.00 | |
| | 선형시설 | 철도 | 2 | 5.71 | 2 | 8.70 | 2 | 10.53 | |
| | | 도로 | 3 | 8.57 | 3 | 13.04 | 2 | 10.53 | |
| | 제 2 종 시 설 | 소계 | | 21 | 60.00 | 11 | 47.83 | 6 | 31.57 |
| | | 주차장 | | 0 | 0.00 | 0 | 0.00 | 0 | 0.00 |
| 수도·하수도 | | 2 | 5.71 | 0 | 0.00 | 0 | 0.00 | | |
| 장사시설 | | 0 | 0.00 | 0 | 0.00 | 0 | 0.00 | | |
| 여가활용시설(1종외) | | 0 | 0.00 | 0 | 0.00 | 0 | 0.00 | | |
| 학교 | | 4 | 11.43 | 6 | 26.09 | 1 | 5.26 | | |
| 폐기물·환경 | | 4 | 11.43 | 0 | 0.00 | 1 | 5.26 | | |
| 전기통신방송에너지 | | 2 | 5.71 | 1 | 4.35 | 1 | 5.26 | | |
| 공공청사 | | 0 | 0.00 | 0 | 0.00 | 0 | 0.00 | | |
| 차고지 | | 4 | 11.43 | 2 | 8.70 | 0 | 0.00 | | |
| 기타 | | 5 | 14.29 | 2 | 8.70 | 3 | 15.79 | | |

● 추진부진 시설

〈 서울시 추진부진 시설 〉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합계 | 4개소 | - | - | - | - | | |
| 1 | 육군사관 학교 | 군사 | 국방부 장관 | 02.12.30. | 사업취소 (BTL사업으로 통합) | 추진불가 | 1차 |
| 2 | 육군사관 학교 | 군사 | 국방부 장관 | 02.12.30.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1차 |
| 3 | 육군사관 학교 | 군사 | 국방부 장관 | 08.04.24.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2차 |
| 4 | 거여 초등학교 | 학교 | 서울특별시 교육청 | 09.06.16. | 건축물 안전성 평가 후 추진여부 결정 | 미추진 | 2차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인천광역시

- 제1차 입지시설 55개소 중 추진부진 총 10개소(추진불가 5개소, 미추진 5개소)
- 제2차 입지시설 16개소 중 추진부진 총 6개소(추진불가 3개소, 예산미확보 3개소)
- 제3차 입지시설 13개소 중 추진부진 총 1개소(예산미확보 1개소)

〈 인천시 1·2·3 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현황 〉

| 구분 | 합계 | | 1차 | | 2차 | | 3차 | |
|--------------------|-------------|-----|----|-------|----|-------|----|-------|
|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 | | 55 | 100 | 16 | 100 | 13 | 100 |
| 제 1 종 시 설 | 소계 | | 20 | 36.36 | 10 | 62.5 | 12 | 83.33 |
| | 실외체육시설 | 체육 | 1 | 1.82 | 0 | 0 | 0 | 0 |
| | | 골프장 | 0 | 0 | 2 | 12.5 | 0 | 0 |
| | 여가활용시설 | | 9 | 16.36 | 4 | 25 | 2 | 33.33 |
| | 국방·군사시설 | | 6 | 10.91 | 0 | 0 | 8 | 16.67 |
| | 공항 | | 0 | 0 | 1 | 6.25 | 0 | 0 |
| | 선형시설 | 철도 | 4 | 7.27 | 3 | 18.75 | 2 | 33.33 |
| | | 도로 | 0 | 0 | 0 | 0 | 0 | 0 |
| 제 2 종 시 설 | 소계 | | 35 | 63.64 | 6 | 37.5 | 1 | 16.67 |
| | 주차장 | | 0 | 0 | 1 | 6.25 | 0 | 0 |
| | 수도·하수도 | | 3 | 5.45 | 1 | 6.25 | 0 | 0 |
| | 장사시설 | | 0 | 0 | 0 | 0 | 0 | 0 |
| | 여가활용시설(1종외) | | 0 | 0 | 2 | 12.5 | 0 | 0 |
| | 학교 | | 28 | 50.91 | 0 | 0 | 1 | 16.67 |
| | 폐기물·환경 | | 0 | 0 | 0 | 0 | 0 | 0 |
| | 전기통신방송에너지 | | 1 | 1.82 | 0 | 0 | 0 | 0 |
| | 공공청사 | | 1 | 1.82 | 0 | 0 | 0 | 0 |
| | 차고지 | | 2 | 3.64 | 2 | 12.5 | 0 | 0 |
| | 기타 | | 0 | 0 | 0 | 0 | 0 | 0 |

● 추진부진 시설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계 | 17개소 | - | - | - | - | | |
| 1 | 상정여자 중학교 | 학교 | 북부 교육청장 | 02.9.17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2 | 용종 초등학교 | 학교 | 북부 교육청장 | 02.9.17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3 | 동운 중학교 | 학교 | 북부 교육청장 | 02.9.17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4 | 오봉 초등학교 | 학교 | 동부 교육청장 | 03.12.18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5 | 관모 초등학교 | 학교 | 동부 교육청장 | 03.12.18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6 | 변전소 | 철도 | 신공항 철도 | 03.4.11 | 미착공 | 미추진 | 1차 |
| 7 | 남동 배수지 | 수도 | 상수도사업 본부장 | 03.5.12 | 미착수 | 미추진 | 1차 |
| 8 | 남촌 초등학교 | 학교 | 동부 교육청장 | 02.9.17 | 미착수 | 미추진 | 1차 |
| 9 | 정화 초등학교 | 학교 | 북부 교육청장 | 02.9.17 | 미착수 | 미추진 | 1차 |
| 10 | 봉수 중학교 | 학교 | 서부 교육청장 | 03.5.12 | 미착수 | 미추진 | 1차 |
| 11 | 다남동 근린공원 | 도시 공원 | 롯데건설 (주) | 08.4.24 | 시설 폐지 | 추진불가 | 2차 |
| 12 | 남촌지구 골프장 | 골프장 | 인천광역시 장 | 08.4.24 | 사업취소 | 추진불가 | 2차 |
| 13 | 다남동 대중 골프장 | 골프장 | 롯데건설 (주) | 08.4.24 | 사업취소 | 추진불가 | 2차 |
| 14 | 인천자연 생태박물관 | 박물관 | 인천 광역시장 | 08.4.24 | 미착공 | 미추진 | 2차 |
| 15 | 도림 근린공원 | 도시 공원 | 남동 구청장 | 11.1.4 | 미착공 | 미추진 | 2차 |
| 16 | 주적 체육공원 | 도시 공원 | 남동 구청장 | 11.1.4 | 미착공 | 미추진 | 2차 |
| 17 | 도림 고등학교 | 학교 | 인천광역시 교육감 | 12.11.28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3차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경기도

- 제1차 입지시설 344개소 중 추진부진시설 총 66개소(추진 불가 42개소, 예산미확보 5개소, 미추진 19개소)
- 제2차 입지시설 169개소 중 추진부진시설 총 17개소(추진 불가 3개소, 예산미확보 7개소, 미추진 7개소)
- 제3차 입지시설 107개소 중 추진부진시설 총 12개소(추진 불가 1개소, 예산미확보 2개소, 미추진 9개소)

〈 경기도 1·2·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현황 〉

| 구분 | 합계 | | 1차 | | 2차 | | 3차 | | |
|--------------------|--------------------|-----|------|-------|------|-------|------|-------|------|
|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 | | | 344 | 100 | 169 | 100 | 107 | 100 | |
| 제 1 종 시 설 | 소계 | | 75 | 21.8 | 129 | 76.9 | 80 | 74.8 | |
| | 실외체육시설 | 체육 | 5 | 1.5 | 3 | 1.8 | 1 | 0.9 | |
| | | 골프장 | 4 | 1.2 | 6 | 3.6 | 2 | 1.8 | |
| | 여가활용시설 | | 27 | 7.8 | 42 | 24.9 | 11 | 10.3 | |
| | 국방·군사시설 | | 6 | 1.7 | 42 | 24.9 | 53 | 49.5 | |
| | 공항 | | 0 | 0 | 1 | 0.6 | 0 | 0 | |
| | 선형시설 | 철도 | 19 | 5.5 | 12 | 7.1 | 8 | 7.5 | |
| | | 도로 | 14 | 4.1 | 23 | 13.6 | 5 | 4.7 | |
| | 제 2 종 시 설 | 소계 | | 269 | 78.2 | 40 | 23.7 | 27 | 25.2 |
| | | 주차장 | | 9 | 2.6 | 2 | 1.2 | 3 | 2.8 |
| 수도·하수도 | | 51 | 14.8 | 11 | 6.5 | 9 | 8.4 | | |
| 장사시설 | | 6 | 1.7 | 0 | 0 | 3 | 2.8 | | |
| 여가활용시설(1종외) | | 5 | 1.5 | 3 | 1.8 | 0 | 0 | | |
| 학교 | | 151 | 43.9 | 11 | 6.5 | 3 | 2.8 | | |
| 폐기물·환경 | | 11 | 3.2 | 1 | 0.6 | 1 | 0.9 | | |
| 전기통신방송에너지 | | 15 | 4.4 | 3 | 1.8 | 0 | 0 | | |
| 공공청사 | | 5 | 1.5 | 2 | 1.2 | 1 | 0.9 | | |
| 차고지 | | 13 | 3.8 | 4 | 2.4 | 2 | 1.8 | | |
| 기타 | | 3 | 0.9 | 3 | 1.8 | 5 | 4.7 | | |

● 추진부진 시설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계 | 95개소 | - | - | | - | | |
| 1 | 명서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2.10.24 | 설립계획 없음 | 추진불가 | 1차 |
| 2 | 율동 초등학교 | 학교 | 수원교육청 교육장 | 04.12.30 | | 추진불가 | 1차 |
| 3 | 분일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2.10.24 | 취소(저출산) | 추진불가 | 1차 |
| 4 | 수진 제1 초등학교 | 학교 | 성남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취소(저출산) | 추진불가 | 1차 |
| 5 | 성광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3.07.25 | 취소(저출산) | 추진불가 | 1차 |
| 6 | 태평1동 공영주차장 | 주차장 | 성남시장 | 05.08.31 | 수진1초 지하 | 추진불가 | 1차 |
| 7 | 사래 초등학교 | 학교 | 부천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8 | 사래 중학교 | 학교 | 부천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9 | 부이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교육감 | 04.12.30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10 | 안양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 차고지 | 안양시장 | 03.07.25 | 사업철회 | 추진불가 | 1차 |
| 11 | 석수 분뇨처리장증설 | 환경오염 방지시설 | 안양시장 | 06.07.31 | 광역하수시설로 처리 | 추진불가 | 1차 |
| 12 | 비산2도시자연공원 | 도시공원 | 안양시장 | 01.07.13 | | 미추진 | 1차 |
| 13 | 해수 중학교 | 학교 | 광명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14 | 하안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2.04.01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15 | 한길 초등학교 | 학교 | 광명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16 | 해강 중학교 | 학교 | 광명교육청 교육장 | 02.04.01 | | 미추진 | 1차 |
| 17 | 광남 고등학교 | 학교 | 광명교육청 교육장 | 04.01.07 | | 미추진 | 1차 |
| 18 | 대야 중학교 | 학교 | 군포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사업취소 | 추진불가 | 1차 |
| 19 | 능내 중학교 | 학교 | 군포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20 | 무진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2.10.24 | 시설폐지 | 추진불가 | 1차 |
| 21 | 수청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도 | 광주시장 | 01.07.13 | 부지이전 추진 중 | 추진불가 | 1차 |
| 22 | 수청 하수처리장 증설 | 하수도 | 광주시장 | 03.12.18 | 부지이전 추진 중 | 추진불가 | 1차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23 | 하일 초등학교 | 학교 | 광주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신축 불필요 | 추진불가 | 1차 |
| 24 | 창우 중학교 | 학교 | 광주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신축 불필요 | 추진불가 | 1차 |
| 25 | 더우개 초등학교 | 학교 | 광주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신축 불필요 | 추진불가 | 1차 |
| 26 | 더우개 중학교 | 학교 | 광주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신축 불필요 | 추진불가 | 1차 |
| 27 | 배알미동 하수처리장 | 하수도 | 하남시장 | 03.12.18 | 대체부지확보 중 | 추진불가 | 1차 |
| 28 | 신원당 초등학교 | 학교 | 고양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추진불가 | 1차 |
| 29 | 국방 대학교 증·개축 | 학교 | 국방대학교 | 04.12.30 | | 추진불가 | 1차 |
| 30 | 고양 분노축산 폐수처리장 | 환경오염 방지시설 | 고양시장 | 05.04.16 | | 추진불가 | 1차 |
| 31 | 의일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2.04.01 | | 추진불가 | 1차 |
| 32 | 국토3호선 의정부 영업소 | 도로 | 의정부시장 | 03.07.25 | 미군부대이전지연 | 미추진 | 1차 |
| 33 | 신의 초등학교 | 학교 |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추진불가 | 1차 |
| 34 | 퇴계원2 초등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35 | 금곡2 초등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36 | 도농2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37 | 퇴계원2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2.04.01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38 | 청학 초등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39 | 사능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01.07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40 | 금곡2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12.30 | 시설결정 철회 | 추진불가 | 1차 |
| 41 | 구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 차고지 | 구리시장 | 05.08.31 | 시설결정 폐지 | 추진불가 | 1차 |
| 42 | 사사 초등학교 | 학교 | 안산교육청 교육장 | 03.07.25 | 재검토 | 추진불가 | 1차 |
| 43 | 삼막 중학교 | 학교 | 안양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재검토 | 미추진 | 1차 |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44 | 관악 중학교 | 학교 | 안양교육청 교육장 | 02.10.24 | 재검토 | 미추진 | 1차 |
| 45 | 석수 중학교 | 학교 | 안양교육청 교육장 | 02.10.24 | 보류 | 미추진 | 1차 |
| 46 | 신현 중학교 | 학교 | 안산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미추진 | 1차 |
| 47 |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 도시공원 | 광명시장 | 01.07.13 | | 예산 미확보 | 1차 |
| 48 | 왕곡 중학교 | 학교 | 군포교육청 교육장 | 02.04.01 | | 추진불가 | 1차 |
| 49 | 포일 중학교 | 학교 | 군포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추진불가 | 1차 |
| 50 | 삼동 중학교 | 학교 | 군포교육청 교육장 | 03.07.25 | | 추진불가 | 1차 |
| 51 | 갈현 초등학교 | 학교 | 안양교육청 교육장 | 06.12.22 | 수립중 | 미추진 | 1차 |
| 52 | 갈현 중학교 | 학교 | 안양교육청 교육장 | 06.12.22 | 수립중 | 미추진 | 1차 |
| 53 |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이전 | 하수도 | 과천시장 | 04.12.30 | | 미추진 | 1차 |
| 54 | 원중 고등학교 | 학교 | 경기도 교육감 | 03.07.25 | 보류 | 예산 미확보 | 1차 |
| 55 | 고국 중학교 | 학교 | 고양교육청 교육장 | 04.12.30 | 보류 | 예산 미확보 | 1차 |
| 56 | 주흥 초등학교 | 학교 | 고양교육청 교육장 | 05.04.16 | 보류 | 예산 미확보 | 1차 |
| 57 | 한양컨트리클럽 대중 골프장 증설 | 골프장 | 서울한양컨트 리클럽(주) | 05.08.31 | 추진중 | 관리계획변경 | 1차 |
| 58 | 녹양 초등학교 | 학교 |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미추진 | 1차 |
| 59 | 금오 초등학교 | 학교 |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미추진 | 1차 |
| 60 | 고산 초등학교 | 학교 |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 02.10.24 | | 미추진 | 1차 |
| 61 | 덕소2 초등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12.30 | 유보 | 미추진 | 1차 |
| 62 | 덕소2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12.30 | 유보 | 미추진 | 1차 |
| 63 | 인창2 초등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01.07 | 보류 | 미추진 | 1차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64 | 인창2 중학교 | 학교 |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 04.01.07 | 보류 | 미추진 | 1차 |
| 65 | 성남 소각장 | 폐기물 처리시설 | 성남시장 | 01.07.13 | 사업취소 | 미추진 | 1차 |
| 66 | 관악 공영 주차장 | 주차장 | 안양시장 | 05.08.31 | 사업기간 조정 | 미추진 | 1차 |
| 67 | 시흥 매화동근린 공원 | 도시공원 | 시흥시장 | 08.04.24 | 시가화 예정용지 포함 | 미추진 | 2차 |
| 68 | 연꽃역사공원 | 도시공원 | 시흥시장 | 10.01.27 | | 미추진 | 2차 |
| 69 | 구리 조선왕조역사공원 | 도시공원 | 구리시장 | 09.12.28 | | 예산 미확보 | 2차 |
| 70 | 안양 문화방송 관악산 중계탑 | 방송시설 | (주)문화 방송 | 08.04.24 | 추진중 | 예산 미확보 | 2차 |
| 71 | 부천문화 예술회관 | 문화예술 회관 | 부천시장 | 08.04.24 | 시설폐지예정 | 추진불가 | 2차 |
| 72 | 광명 경전철차량기지 | 철도 | 광명시장 | 08.04.24 | 협의중 | 예산 미확보 | 2차 |
| 73 |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 | 공원 | 광명시장 | 08.04.24 | | 예산 미확보 | 2차 |
| 74 | 의왕 포일하수처리장 | 하수도 | 의왕시장 | 08.04.24 | 기본계획 확정 후 진행 | 미추진 | 2차 |
| 75 | 의왕문화 예술회관 | 문화 예술회관 | 의왕시장 | 08.03.11 |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 | 추진불가 | 2차 |
| 76 | 과천용마골근린공원 | 도시공원 | 과천시장 | 08.04.24 | | 예산 미확보 | 2차 |
| 77 | 성남 대왕저수지 공원 | 도시공원 | 성남시장 | 08.04.24 | | 미추진 | 2차 |
| 78 | 제5067부대 공병대 (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 장관 | 09.12.28. | | 미추진 | 2차 |
| 79 | 제5067부대 병영생활관 | 국방군사 | 국방부 장관 | 11.03.31 | | 미추진 | 2차 |
| 80 | 고양 911정비중대 증설 | 국방·군 사에 관한 시설 | 국방부 장관 | 08.03.11 | 보류 | 예산 미확보 | 2차 |
| 81 | 고양 30기계화 사단 51전차대대 증설 | 국방·군 사에 관한 시설 | 국방부 장관 | 08.03.11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2차 |
| 82 | 고양7163부대 증설 | 국방·군 사시설 | 국방부 장관 | 09.12.28 | 허가 취소 | 추진 불가 | 2차 |

| 구분 | 시설명 | 시설 유형 | 사업 시행자 | 승인 일자 | 추진부진 사유 | 향후 처리계획 | 비고 |
|----|-----------------------------|-------------|---------------|----------|------------|---------|----|
| 83 | 제6501부대 병영시설 | 국방·군 사시설 | 국방 부장관 | 11.11.25 | 하가 취소 | 미추진 | 2차 |
| 84 | 성남 시립화장장 주차장 | 화장장 | 성남시장 | 13.12.18 | | 미추진 | 3차 |
| 85 | 성남 버스공영차고지 | 차고지 | 성남시장 | 14.05.30 | | 미추진 | 3차 |
| 86 | 성남 우남정거장 | 철도 | 서울도시철도 공사 | 16.07.25 | | 미추진 | 3차 |
| 87 | 부천 상록특수학교 (증설) | 학교 | 경기도교육감 | 13.11.07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3차 |
| 88 | 화성골프클럽 (증설) | 골프장 | (주)리더스 홍경선 | 15.03.27 | | 미추진 | 3차 |
| 89 | 광주 엄미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증설) | 하수도 | 광주시장 | 13.09.17 | | 추진불가 | 3차 |
| 90 | 의왕 청계체육공원 | 공원 | 의왕시장 | 13.12.18 | | 미추진 | 3차 |
| 91 | 고양물류 수색역 북부선로 및물류시설 | 철도 | 한국철도 공사 | 13.09.17 | 예산 미확보 | 예산 미확보 | 3차 |
| 92 | 고양 육군 제56사단 216연대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12.10.19 | | 미추진 | 3차 |
| 93 | 고양 육군 제56사단 217연대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12.10.19 | | 미추진 | 3차 |
| 94 | 고양 제7950부대(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14.12.31 | | 미추진 | 3차 |
| 95 | 양주 제56사단219연대 (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14.12.31 | | 미추진 | 3차 |

3.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수요관리 방안

가. 현행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수요관리의 한계

1) 공공분야 입지대상시설

- 입지대상시설 총량과 단계별 수요관리의 한계
 - 예산반영 및 민·관 협약 시기에 따라 입지대상시설 반영 시점이 결정되므로 단계별 입지대상시설 수요관리가 어려움
 - 정책계획에서 제시되는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의 실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시기에 대한 예측불가로 총량수요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부서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사전협의 미흡
 - 사업화 단계에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으로 계획 및 설계변경, 관리계획 승인 난항 등 사회적 손실 발생
 -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시설 입지 우려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제어장치의 한계
 -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은 적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설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상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움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방안 강구 필요
 - 시설 성격상 사전협의, 현황여건분석, 시설적정성에 대한 파악이 힘든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한 별도의 수요관리 대책이 요구됨

2) 민간분야 입지대상시설

- 개별사업주체에 의해 관리계획 반영시기 결정
 - 단기간의 계획수립 기간 내 사업주체에 의해 제안되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실상 수요예측 및 관리가 어려움
- 시설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부재
 - 민간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의 개발 추진 시 개별적 판단에 의해 입지 반영 요청함으로써 설계비용,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 초래

나.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수요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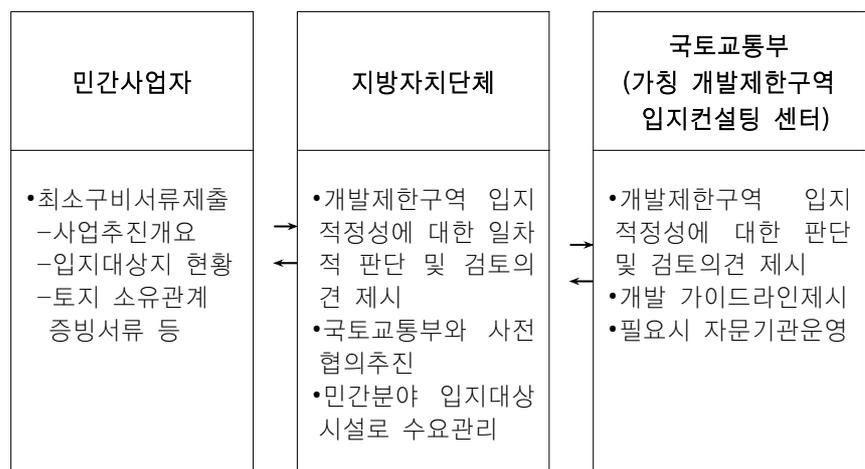
1) 공공분야 입지대상시설

-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사전협의체계 구축
 - 사전협의체계 구축으로 입지대상시설 반영 요청 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한 수요관리 효율 도모(입지적정성, 시설규모의 적정성, 반영시기, 기타 유의사항)
- 사전협의된 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반영되어야 할 입지대상 시설의 총량적 관리
 - 민간투자 사업에 있어서도 사전협의체계가 구축될 시 사전제어적 장치로서의 기능 발휘 가능
-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별도 관리
 -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정책 건의함

2) 민간분야 입지대상시설

- 개발제한구역 입지컨설팅제 도입 정책건의
 - 민간에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서 컨설팅함으로써 민간수요의 입지대상시설 수요 관리와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 절감

〈개발제한구역 입지컨설팅제 주체별 역할〉



4. 수도권 입지대상 시설의 수요예측

가. 수도권 중·장기적 개발계획 현황

〈수도권 중·장기적 개발계획 현황〉

| 구분 | 상위 및 관련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되는 시설 및 행위 |
|------------------------------------|--|--|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지자체별 공원녹지기본계획 | 녹지, 하천,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체력단련시설, 휴양림 및 수목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시·홍보시설 등 |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국가 철도망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 철도, 도로 및 광장, 방재시설, 저수지 및 유수지, 수도 및 하수도, 전기 및 방송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지자체별 상수도기본계획 지자체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공항, 항만, 환승센터, 주차장, 학교, 지역공공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시설, 폐기물, 유류저장, 기상시설, 장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용 임시가설 건축물 및 임시시설, 문화재관리용 시설 |
| 기타 (국방·군사시설,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 시설 등) | 기타(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군 병영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등 | 국방·군사시설 |

나. 수도권 입지대상시설 수요 예측

1) 수요예측 총괄표

〈수요예측 총괄표〉

| 구분 | 1종시설 (14개소) | | | | | | | | | 2종시설 (10개소) | | | | | | 기타 | |
|-----|-------------|-----|----|------|-----|----------|----------|----|--------|-------------|----|--------|-----|--------|------|----|---|
| | 보전관리 도움시설 | | | | | 군사 교정 시설 | 선형·필수 시설 | | | 선형·필수 시설 | | 목적달성시설 | | | | | |
| 시설별 | 실내·외 체육 | 골프장 | 공원 | 수목장림 | 휴양림 | 군사 | 도로 | 철도 | 수도 하수도 | 전기 공급 설비 | 학교 | 공공청사 | 폐기물 | 사회복지시설 | 체육시설 | | |
| 계 | 24 | 2 | - | 2 | - | - | 8 | 2 | - | 2 | 1 | 3 | 1 | 1 | - | 1 | 1 |
| 서울 | 2 | - | - | - | - | - | 1 | - | - | - | - | 1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22 | 1 | - | 2 | - | 1 | 7 | 2 | - | 2 | 1 | 2 | 1 | 1 | - | 1 | 1 |

2) 입지대상시설 수요예측

〈 입지대상시설 수요예측(서울특별시) 〉

| | |
|---------------------------------|--|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 | • 해당 없음 |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 특수학교의 성격상 도심지 내 존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선정 |
| 국방·군사시설 | • 수도권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시설구축 및 수용능력 증가에 따른 증설 |

〈 입지대상시설 수요예측(인천광역시) 〉

| | |
|---------------------------------|---------|
| 개발제한구역의보전 및 관리에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 해당 없음 |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 | • 해당 없음 |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 해당 없음 |
| 기타(국방·군사시설,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시설 등) | • 해당 없음 |

〈 입지대상시설 수요예측(경기도) 〉

| | |
|---------------------------------|--|
| 개발제한구역의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후된 서울대공원 시설의 고객관람환경 및 동물복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증설 도모 • 과천시울 경마공원내 입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 증설 • 난지야구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부지의 필요에 따른 가용부지 확보 • 미군공여부지 이전적지에 대한 상위계획상 공원용지로 반영된 사항을 의정부시청 인근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조성 |
|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산고속도로사업관련 도로노선 및 고양휴게소 계획 • 장암변전소의 설비노후화에 따른 변전설비를 옥내화하여 변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혐오인식개선 및 시설이용의 관리도모 |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부하로 유입하수량의 시설용량초과일수가 1년중 32%에 달할 정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어려움 •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가 및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부족 • 비봉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시기 압박에 따른 하수적정처리 시급 •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전 추가부지 확보 및 부속동 등 건립 • 특수학교의 성격상 도심지 내 존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 선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점진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증설 • 건설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
| 기타(국방·군사시설,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장비 전력화로 부족시설 확충 필요하고 • 20년 이상 경과된 군 시설의 노후가 심각하며, 대책 사업인 현대화/군사시설 통합 및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인원 및 장비 수용 시설물의 부족, 협소로 인해 시설 보강이 불가피함 |

5. 제4차 입지대상시설 설치계획

가. 입지대상시설 설치계획 개요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토지 형질변경 1만㎡ 이상의 행위를 대상
- 계획기간 내 입지예정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의 협의 및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한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단위 : 개소, ㎡)

| 구분 | 합계 | 보전관리 도움 | | 선형·필수 | 선형·필수 | | 목적달성 | | | | 기타 | |
|----|-------|-----------|---------|-----------|--------|----------|--------|--------|---------|--------|-----------|--------|
| | | 실내외 체육 | 공원 | 도로 | 수도 하수도 | 전기 공급 설비 | 학교 | 공공 청사 | 폐기물 | 체육 | | |
| 합계 | 개소 | 15 | 1 | 2 | 2 | 2 | 1 | 3 | 1 | 1 | 1 | 1 |
| | 형질 변경 | 5,255,741 | 902,367 | 2,633,864 | 58,871 | 98,570 | 20,349 | 39,211 | 434,944 | 16,065 | 1,042,967 | 8,533 |
| | 연면적 | 738,888 | 29,781 | 237,909 | 5,883 | 4,575 | 3,506 | 31,901 | 181,543 | 66 | 228,658 | 15,062 |
| 서울 | 개소 | 1 | - | - | - | - | - | 1 | - | - | - | - |
| | 형질 변경 | 10,162 | - | - | - | - | - | 10,162 | - | - | - | - |
| | 연면적 | 9,870 | - | - | - | - | - | 9,870 | - | - | - | - |
| 인천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 | 개소 | 14 | 1 | 2 | 2 | 2 | 1 | 2 | 1 | 1 | 1 | 1 |
| | 형질 변경 | 5,245,579 | 902,367 | 2,633,864 | 58,871 | 98,570 | 20,349 | 29,049 | 434,944 | 16,065 | 1,042,967 | 8,533 |
| | 연면적 | 729,018 | 29,781 | 237,909 | 5,883 | 4,575 | 3,506 | 22,030 | 181,543 | 66 | 228,658 | 15,062 |

다.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단위 : 개소, ㎡)

| 구분 | 합계 | 보전관리도움(휴양림) | 군사·교정(군사) | |
|----|------|-------------|-----------|---------|
| 합계 | 개소 | 9 | 1 | 8 |
| | 형질변경 | 392,581 | 67,477 | 325,104 |
| | 연면적 | 158,899 | 6,265,50 | 152,634 |
| 서울 | 개소 | 1 | | 1 |
| | 형질변경 | 11,512 | | 11,512 |
| | 연면적 | 2,330 | | 2,330 |
| 인천 | 개소 | - | - | - |
| 경기 | 개소 | 8 | 1 | 7 |
| | 형질변경 | 381,069 | 67,477 | 313,592 |
| | 연면적 | 156,568 | 6,265 | 150,303 |

라.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 현황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 설치계획

- 서울시 대규모 시설 1개소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m ²) | 건축 연면적(m ²) | 비고 |
|------------|-----------|---------|---------|------------------------|--------------------------|-------------------------|----|
| 계 | 1개소 | - | - | - | 11,512.22 | 2,330.97 | - |
| 국방 · 군사 시설 | 공군 제714사업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산6-15번지 일원 | 11,512.22 | 2,330.97 | 신설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3)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6개소, 대규모 시설 7개소

〈 경기도 시급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m ²) | 건축 연면적(m ²) | 비고 | |
|-------------|------------------------|---------|------------------|------------------------|--------------------------|-------------------------|------------|----------------------|
| 총계 | 6개소 | - | - | - | 4,027,689.32 | 511,300.11 | - | |
| 소계 | 4개소 | - | - | - | 3,971,175.32 | 505,416.41 | - | |
| 보전 관리 도움 시설 | 과천 서울 대공원 (증설) | 근린 공원 | 서울특별시장 (서울대 공원장) |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 일원 | 기존 | 2,554,064 | 187,105.07 | 증)조류보전 센터, 물새습 지 등 |
| | | | | | 변경(금회) | - | 5,363.20 | |
| | | | | | 계 | 2,554,064 | 192,468.27 | |
|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신설) | 도시 공원 | 의정부시장 |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 | 기존 | - | - | 증)근린공원 및 공원시설 신설 |
| | | | | | 변경(금회) | 79,800 | 99,680 | |
| | | | | | 계 | 79,800 | 99,680 | |
| |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증설) | 공공 청사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일원 | 기존 | 434,944.32 | 176,991.69 | 증)청사 업무시설 |
| | | | | | 변경(금회) | - | 4,552.17 | |
| | | | | | 계 | 434,944.32 | 181,543.86 | |
| | 고양 난지물재생 센터 난지야구장 (신설) | 실외 체육시설 | 서울시장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8번지 일원 | 기존 | 902,367 | 31,380.28 | 증)야구장 신설(난지물 재생센터 내) |
| | | | | | 변경(금회) | (94,720) | 344 | |
| | | | | | 계 | 902,367 | 31,724.28 | |
| 소계 | 2개소 | - | - | - | 56,514 | 5,883.7 | - | |
| 선형 · 필수 시설 | 고양휴게소 (서울방향) | 도로 시설 | 서울문산고속 도록주식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기존 | - | - | 신설 |
| | | | | | 변경(금회) | 25,964 | 2,941.85 | |
| | | | | | 계 | 25,964 | 2,941.85 | |
| | 고양휴게소 (문산방향) | 도로 시설 | 서울문산고속 도록주식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기존 | - | - | 신설 |
| | | | | | 변경(금회) | 30,550 | 2,941.85 | |
| | | | | | 계 | 30,550 | 2,941.85 |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경기도 시급시설(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 |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 | | | | 기존 | 변경(금회) | | |
| 소계 | 7개소 | - | - | - | 301,164.98 | 149,537.37 | - | |
| 국방 · 군사 시설 | 성남육군 제2176부대 (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41번지 일원 | 기존 | 27,790.86 | 7,591 | 증)병영생 활관 등 25동 |
| | | | | | 변경(금회) | 5,753.84 | 3,796 | |
| | | | | | 계 | 33,544.7 | 11,387 | |
| | 고양 제5161부대 (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4 -15 일원 | 기존 | 85,468 | 35,230.45 | 증)차량정 비고,창고 등 증설 |
| | | | | | 변경(금회) | 14,679 | 8,512 | |
| | | | | | 계 | 100,147 | 43,742.45 | |
| | 고양 제5322부대 (신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71-3번지 일원 | 13,138 | 7,795 | 증)급식유 통센터 등 신설 | |
| | 광명 육군 제5226부대 (신설) | 국방 군사 | 국방부장관 | 광명시 가학동 1053-1번지 일원 | 기존 | - | - | |
| | | | | | 변경(금회) | 52,299 | 11,253.49 | |
| | | | | | 계 | 52,299 | 11,253.49 | |
| | 남양주 제56사단 220연대 (증설) | 국방 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별내동 2358번지 일원 | 기존 | 48,801.28 | 39,674.34 | 증)사격장 등 증설 |
| | | | | | 변경(금회) | 11,138 | 569 | |
| | | | | | 계 | 59,939.2 8 | 40,243.34 | |
|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 (증설) | 국방 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6번지 일원 | 기존 | 7,956 | 13,043 | 증)병영식 당 등 증설 |
| 변경(금회) | | | | | 11,070 | 5,360 | | |
| 계 | | | | | 19,026 | 18,403 | | |
| 양주 육군 제8276부대 (증설)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47-3 일원 | 기존 | 22,061 | 8,865.09 | 증)병영식 당 등 증설 | |
| | | | | 변경(금회) | 14,628 | 7,848 | | |
| | | | | 계 | 36,689 | 16,713.09 | | |

6. 제4차 입지대상시설 (일반) 설치계획

가. 입지대상시설 설치계획 개요

- 제4차 입지대상시설 중 일반시설 10건(서울시1건, 경기도9건)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 구 분 | | 수 립 | | 비 고 |
|---------|--------|-----|--------|-----|
| | | 개소 | 면적(㎡) | |
| 계 | 형질변경면적 | 1 | 10,162 | |
| | 건축연면적 | | 9,870 | |
| 목적·달성시설 | 형질변경면적 | 1 | 10,162 | |
| | 건축연면적 | | 9,870 |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 없음

3)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 구 분 | | 수 립 | | 비 고 |
|----------------|--------|-----|-------------|----------|
| | | 개소 | 면적(㎡) | |
| 계 | 형질변경면적 | 8 | 1,215,533.3 | 전체 면적 |
| | 건축연면적 | | 274,705.96 | |
| 보전·관리 도움 시설 | 형질변경면적 | | - | |
| | 건축연면적 | | - | |
| 선형·필수시설 | 형질변경면적 | 3 | 118,919 | 전체 면적 |
| | 건축연면적 | | 9,881.57 | |
| 목적·달성시설 | 형질변경면적 | 4 | 1,088,081.3 | 전체 면적 |
| | 건축연면적 | | 249,761.75 | |
| 국방·군사시설 | 형질변경면적 | - | - | - |
| | 건축연면적 | | - | |
| 기타 | 형질변경면적 | 1 | 8,533 | 전체 면적 |
| | 건축연면적 | | 15,062.64 | |

다.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1) 서울특별시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2) 인천광역시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3) 경기도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

〈 경기도 대규모시설 설치계획 〉

| 구 분 | | 수 립 | | 비 고 |
|----------------|--------|-----|--------|-----|
| | | 개소 | 면적(㎡) | |
| 계 | 형질변경면적 | 1 | 67,477 | |
| | 건축연면적 | | 6,265 | |
| 보전·관리 도움 시설 | 형질변경면적 | 1 | 67,477 | |
| | 건축연면적 | | 6,265 | |

라. 일반시설(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현황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1건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 |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계 | 1개소 | - | - | - | 10,162 | | 9,870.23 | - |
| 목적 달성 시설 | 공립특수학교 (나래학교) | 학교 |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일원 | 기존 | 9,441 | 1,940.84 | |
| | | | | | 변경(금회) | 721 | 7,929.39 | |
| | | | | | 계 | 10,162 | 9,870.23 |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3)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8건, 대규모 시설 1건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설치계획〉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 |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총계 | 9개소 | - | - | - | 1,215,533.3 | | 247,705.96 | - |
| 소계 | 3개소 | - | - | - | 118,919 | | 9,881.57 | - |
| 선형 · 필수 시설 | 의정부 장암변전소 (증설) | 전기 공급 설비 | 한국전력 공사 | 의정부시 장암동 221번지 일원 | 기존 | 20,349 | 340.5 | 증) 변전설비 옥내화 등 |
| | | | | | 변경(금회) | - | 3,165.53 | |
| | | | | | 계 | 20,349 | 3,506.03 | |
| |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하수도 | 화성시장 |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 -148 번지 일원 (기 정: 야목리 1204 -4 일원) | 기존 | 23,550 | 2,112 | 증)하수 처리장 위치변경 |
| | | | | | 변경(금회) | 감)2,480 | 증)1,088 | |
| | | | | | 계 | 21,070 | 3,200 | |
| |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하수도 | 수원시장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 기존 | - | - | 신설 |
| | | | | | 변경(금회) | 증)77,500 | 증)3,175.54 | |
| | | | | | 계 | 77,500 | 3,175.54 | |
| 소계 | 1개소 | - | - | - | 52,840 | | 6,401 | - |
| 보전 도움 | 남양주월문 자연휴양림 (신설) | 휴양림 | 싸이컨 힐딩스 |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읍 산 130번지 일원 | 기존 | - | - | 신설 |
| | | | | | 변경 | 52,840 | 6,401 | |
| | | | | | 계 | 52,840 | 6,401 | |
| 소계 | 4개소 | - | - | - | 1,088,081.3 | | 249,761.75 | - |
| 목적 달성 시설 | 과천 서울경마공원 (증설) | 체육 시설 | 한국 마사회 |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일원 | 기존 | 1,042,967.3 | 213,785.05 | 증)차장, 휴게시설, 마방, 관람대 등 |
| | | | | | 변경(금회) | - | 14,873.48 | |
| | | | | | 계 | 1,042,967.3 | 228,658.43 | |
| | 의왕 부곡중학교 (증설) | 학교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 투자 (주) | 의왕시 월암동 431번지 일원 | 기존 | 11,052. | 6,732.92 | 증)본관증축 및 체육관 신축 |
| | | | | | 변경(금회) | 2,634.00 | 2,218.64 | |
| | | | | | 계 | 13,686.0 | 8,951.56 | |
| | 의왕 특수학교 (신설) | 학교 | 경기 교육청 | 의왕시 포일동 28번지 일원 | 기존 | - | - | 신설 |
| | | | | | 변경(금회) | 15,363 | 12,085.76 | |
| | | | | | 계 | 15,363 | 12,085.76 | |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처리시설(증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윤일용 한은실 | 고양시 도내동 707번지 일원 | 기존 | 16,065 | 66 | 증)기존 부지 내 콘크리트 포장 11,100㎡ | |
| | | | | 변경(금회) | (11,100) | - | | |
| | | | | 계 | 16,065 | 66 | | |
| 소계 | 1개소 | - | - | - | 8,533 | | 15,062.64 | - |
| 기타 |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증설) | 노인요양 시설 | 경기 도시사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53-9번지 일원 | 기존 | 8,647 | 8,386.92 | 증)치매전문 병동, 재활센터 증설 |
| | | | | | 변경(금회) | 감)114 | 6,675.72 | |
| | | | | | 계 | 8,533 | 15,062.6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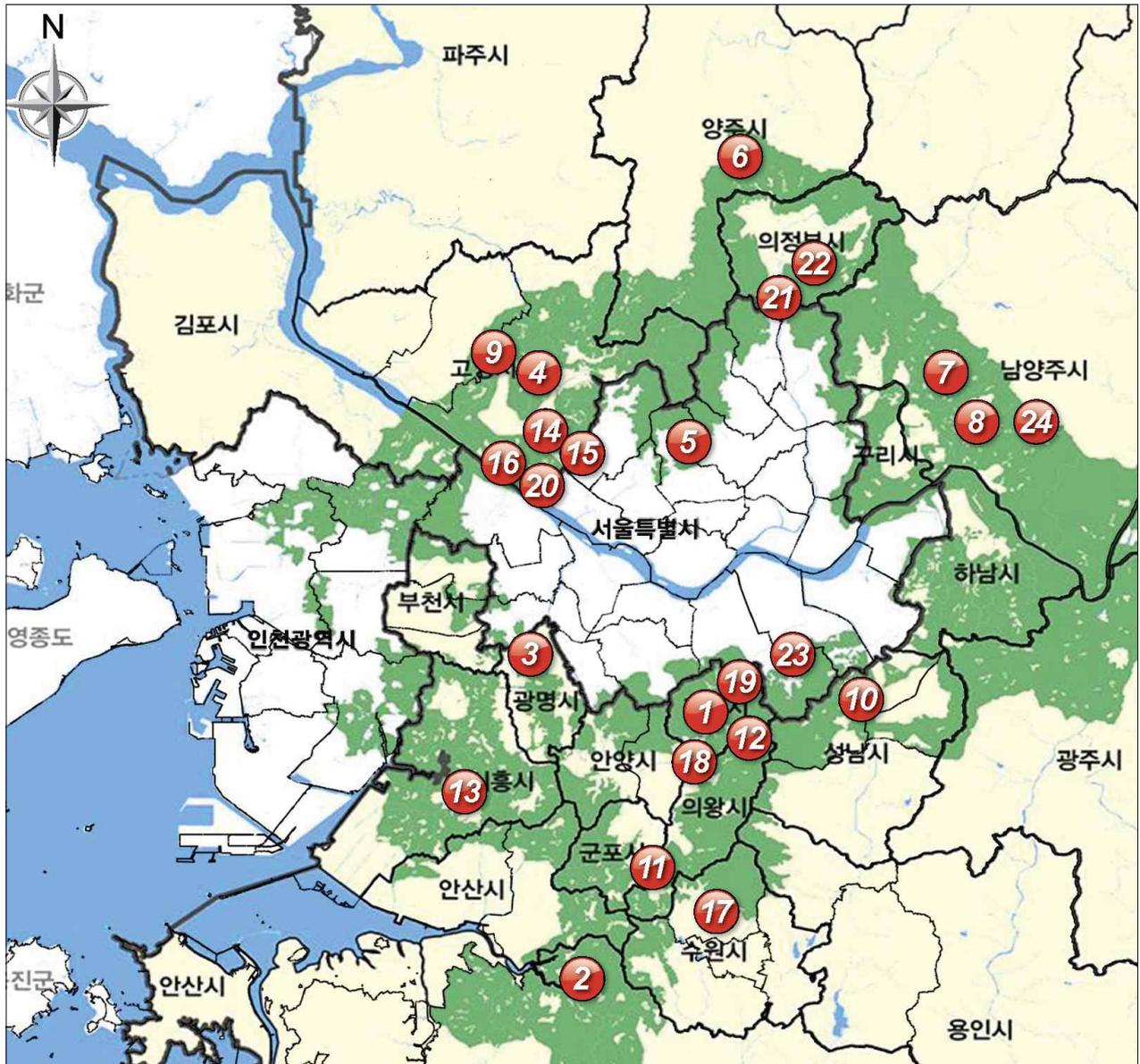
7. 제4차 입지대상시설 승인 현황

| 연번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입지관련 | | 사업시행자 | 위치 | 부지면적(㎡) | 신청면적(㎡) | | | 비고 |
|----|----------------------|---------|------|-------|-----------------|--|------------|---------|------------|------------|-------------|
| | | | 종별 | 입지유형 | | | | 토지형질변경 | | 건축연면적 | |
| 1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설) | 공공청사 | 2 | 목적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일원 | 10,256 | 기존 | 434,944.32 | 176,991.69 | 17.12.1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 | 4,552.17 | |
| | | | | | | | | 계 | 434,944.32 | 181,543.86 | |
| 2 | 화성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하수도 | 2 | 목적달성 | 화성시장 |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148 번지 일원 (기 정: 야목리 1204 -4 일원) | 23,550 | 기존 | 23,550 | 2,112 | 17.12.18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감)2,480 | 감)712 | |
| | | | | | | | | 계 | 21,070 | 1,400 | |
| 3 | 광명 육군 제5226부대 (신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광명시 가학동 1053-1번지 일원 | 52,299 | 기존 | - | - | 17.12.1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52,299 | 11,253.49 | |
| | | | | | | | | 계 | 52,299 | 11,253.49 | |
| 4 | 고양 제5161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4 -15 일원 | 458,736 | 기존 | 85,468 | 35,230.45 | 17.12.18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14,679 | 8,512 | |
| | | | | | | | | 계 | 100,147 | 43,742.45 | |
| 5 | 서울 공군 제714사업 (신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산 6-15일원 | 15,800 | 기존 | - | - | 17.12.18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11,512.22 | 2,330.97 | |
| | | | | | | | | 계 | 11,512.22 | 2,330.97 | |
| 6 | 양주 육군 제8276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47-3 일원 | 220,464 | 기존 | 22,061 | 8,865.09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4,628 | 7,848 | |
| | | | | | | | | 계 | 36,689 | 16,713.09 | |
| 7 | 남양주 제56사단 220연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별내동 2358번지 일원 | 489,798 | 기존 | 48,801.28 | 39,674.34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1,138 | 569 | |
| | | | | | | | | 계 | 59,939.28 | 40,243.34 | |
| 8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6번지 일원 | 822,683.41 | 기존 | 7,956 | 13,043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0,720 | 5,360 | |
| | | | | | | | | 계 | 18,676 | 18,403 | |
| 9 | 고양 제5322부대 (신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71-3번지 일원 | 46,838 | 기존 | -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3,226 | 9,043 | |
| | | | | | | | | 계 | 13,226 | 9,043 | |
| 10 | 성남육군 제2176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성남시 수정구 금도동 산41번지 일원 | 284,902 | 기존 | 27,978 | 7,684.71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4,638 | 3,220.12 | |
| | | | | | | | | 계 | 32,616 | 10,904.83 | |
| 11 | 의왕 부곡중학교 (증설) | 학교 | 2 | 목적달성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의왕시 월암동 431번지 일원 | 13,686 | 기존 | 11,052 | 6,732.92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2,634 | 3,212.24 | |
| | | | | | | | | 계 | 13,686 | 9,945.16 | |
| 12 | 의왕 특수학교 (신설) | 학교 | 2 | 목적달성 | 경기교육청 | 의왕시 포일동 28번지 일원 | 15,363 | 기존 | -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5,363 | 12,085.76 | |
| | | | | | | | | 계 | 15,363 | 12,085.76 | |
| 13 | 경기도노인 전문시흥병원 (증설) | 노인요양 시설 | 2 | 기존 시설 | 경기도지사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53-9번지 일원 | 8,467 | 기존 | 8,647 | 8,386.92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감)114 | 6,675.72 | |
| | | | | | | | | 계 | 8,533 | 15,062.64 | |
| 14 | 고양휴게소 (서울방향) | 도로 시설 | 1 | 선형필수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26,281 | 기존 | 7,740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8,541 | 2,941.85 | |
| | | | | | | | | 계 | 26,281 | 2,941.85 |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연번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입지관련 | | 사업 시행 자 | 위 치 | 부지 면적 (㎡) | 신청면적(㎡) | | | 비고 |
|----|-----------------------------------|----------------|------|----------|------------------------------------|------------------------------|-----------------|------------|-------------|------------|----------------|
| | | | 종별 | 입지 유형 | | | | 토지 형질변경 | | 건축 연면적 | |
| 15 | 고양휴게소 (문산방향) | 도로 시설 | 1 | 선형 필수 | 서울 문산 고속 도로 주식 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32,590 | 기존 | 11,555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21,035 | 2,941.85 | |
| | | | | | | | | 계 | 32,590 | 2,941.85 | |
| 16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 폐기물 처리시설 | 2 | 목적 달성 | 윤일 용 한은 실 | 고양시 도내동 707번지 일원 | 16,065 | 기존 | - | 66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6,065 | - | |
| | | | | | | | | 계 | 16,065 | 66 | |
| 17 |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 시설(신설) | 하수도 | 2 | 목적달 성 | 수원 시장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 77,500 | 기존 | -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중)77,500 | 중)3,175.54 | |
| | | | | | | | | 계 | 77,500 | 3,175.54 | |
| 18 | 과천 서울 대공원 (증설) | 근린 공원 | 1 | 보전 도움 | 서울 특별 시장 (서울 대공 원장) |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 일원 | 6,670,000 | 기존 | 2,554,064 | 187,105.07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 | 5,363.20 | |
| | | | | | | | | 계 | 2,554,064 | 192,468.27 | |
| 19 | 과천 서울경마 공원(증설) | 체육 시설 | 2 | 목적 달성 | 한국 마사 회 |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일원 | 1,042,967. 3 | 기존 | 1,042,967.3 | 213,785.05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 | 14,873.38 | |
| | | | | | | | | 계 | 1,042,967.3 | 228,658.43 | |
| 20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 폐기물 처리시설 | 2 | 목적 달성 | 윤일 용 한은 실 | 고양시 도내동 707번지 일원 | 16,065 | 기존 | - | 66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16,065 | - | |
| | | | | | | | | 계 | 16,065 | 66 | |
| 21 | 의정부 장암변전소 (증설) | 전기 공급 설비 | 2 | 선형 필수 | 한국 전력 공사 | 의정부시 장암동 221번지 일원 | 20,349 | 기존 | 20,349 | 340.5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 | 3,165.53 | |
| | | | | | | | | 계 | 20,349 | 3,506.03 | |
| 22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신설) | 도시 공원 | 1 | 보전 도움 | 의정 부시 장 |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 | 79,800 | 기존 | -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79,800 | 45,441.62 | |
| | | | | | | | | 계 | 79,800 | 45,441.62 | |
| 23 | 남양주월문 자연휴양림 (신설) | 휴양림 | 1 | 보전 도움 | 사이 칸홀 당스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30번지 일원 | 1,340,630 | 기존 | - | - | 향후 승인 예정 |
| | | | | | | | | 변경(금회) | 52,840 | 6,401 | |
| | | | | | | | | 계 | 52,840 | 6,401 | |
| 24 | 공립특수학교 (가칭나래 학교) | 학교 | 2 | 목적 달성 | 서울 특별 시교 육감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일원 | 10,162 | 기존 | 9,441 | 1,940.84 | 17,12.29 승인 |
| | | | | | | | | 변경(금회) | 721 | 7,929.39 | |
| | | | | | | | | 계 | 10,162 | 9,870.23 | |

〈 수도권 금회 반영 입지대상시설 위치도 〉



■ 개발제한구역

| 일련번호 | 시설명 |
|------|---------------------|
| 1 |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증설) |
| 2 | 화성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 3 | 광명 육군 제5226부대(신설) |
| 4 | 고양 제5161부대(증설) |
| 5 | 서울 공군제714사업(신설) |
| 6 | 양주 육군 제8276부대(증설) |
| 7 | 양주 제56사단220연대(증설) |
| 8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증설) |
| 9 | 고양 제5322부대(신설) |
| 10 | 성남육군제2176부대(증설) |
| 11 | 의왕 부곡중학교(증설) |
| 12 | 의왕 특수학교(신설) |
| 13 |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증설) |
| 14 | 고양휴게소(서울방향) |
| 15 | 고양휴게소(문산방향) |
| 16 | 고양 남지물재생센터단지아구장(신설) |
| 17 | 수원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
| 18 | 과천 서울 대공원(증설) |
| 19 | 과천 서울경마공원(증설) |
| 20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처리시설(증설) |
| 21 | 의정부 장암변전소(증설) |
| 22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신설) |
| 23 | 공립특수학교(가칭 나래학교) |
| 24 | 남양주 월문자연휴양림(신설) |

③ 주민생활불편 해소방안

1.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취락지구의 정비방향 설정

1) 도입목적

- 기 훼손된 집단취락 내 에서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이축을 취락지구 내부로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 산재된 기존 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 해소
- 계획적 정비 및 지원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구역관리 여건 마련

2) 법적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3) 취락지구지정의 기본방향

-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호수밀도 기준은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호수밀도 기준에 따름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하며
 - 주택호수 10호 이상인 이주단지는 가능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주민생활편의를 증진
- 취락지구 지정 시에는 대상취락의 도로·상하수도·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 도로의 경우 현황도로의 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도로망을 계획
 -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공급시설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
 - 취락의 특성, 인구구성 및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
 -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마을회관, 편의시설 등 정비계획 수립
 - 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의 설치는 주민지원사업과 연계 고려
 - 특히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집단취락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취락지구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

4) 취락지구내에서의 행위규제 완화내용

〈 취락지구 내에서의 행위규제 완화내용 〉

| 항 목 | 취락지구 지정전 | 취락지구 지정 후 | 비 고 |
|-----------------------|--|---|---------------------------|
| 건축물 용도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행령 별표 1제5호 라목), 보육시설, 양로원, 종교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 소 및 안마원 제외),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 건축물 용도변경 범위확대 |
| 건축물 및 공작물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60%이하로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 이 : 3층 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연면적 : 232~3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60%이하로 건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 이 : 3층 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연면적 : 300㎡이하 | 거주기간 상관없이 연면적 상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20%이하로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 이 : 3층 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40%이하로 건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 이 : 3층 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건폐율 상향 |

나.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장점

1) 소규모 취락의 도시계획적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가 가능
- 기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생활권을 보장
-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우선해제보다 높은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 선택가능
- 대지의 면적과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우선해제보다 높은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 선택가능
- 주변 자연환경 관리가 용이

2) 취락지구의 지정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
- 입안권자(시장·군수), 결정권자(시·도지사)
-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지정

3)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지구 외 주택의 이축 또는 부족한 도로의 확충을 위하여 대상취락안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가능
-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이 가능

다.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1) 서울시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

- 서울시의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는 2016년 12월 현재 12개이며, 2006년 제2차 관리계획에서 분석했던 49개를 기준으로 11개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타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그 외 33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 및 고시
- 4차 관리계획에서 추가되는 신규 지정가능 대상지는 없음
- 서울시의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는 2016년 현재 12개소

〈 서울시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 〉

| 구 분 | 총괄 | | 인구·가구 | | 건축물(동) | |
|------|----|---------------------|-------|-----|--------|-------|
| | 개소 | 면적(m ²)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계 | 12 | 200,037 | 1,174 | 500 | 425 | 11 |
| 강동구 | 10 | 164,737 | 968 | 420 | 352 | - |
| 서대문구 | 1 | 19,300 | 190 | 70 | 59 | 11 |
| 종로구 | 1 | 16,000 | 16 | 10 | 14 | - |

2) 인천광역시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

- 인천광역시의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는 2016년 현재 없음

3) 경기도 취락지구 지정 가능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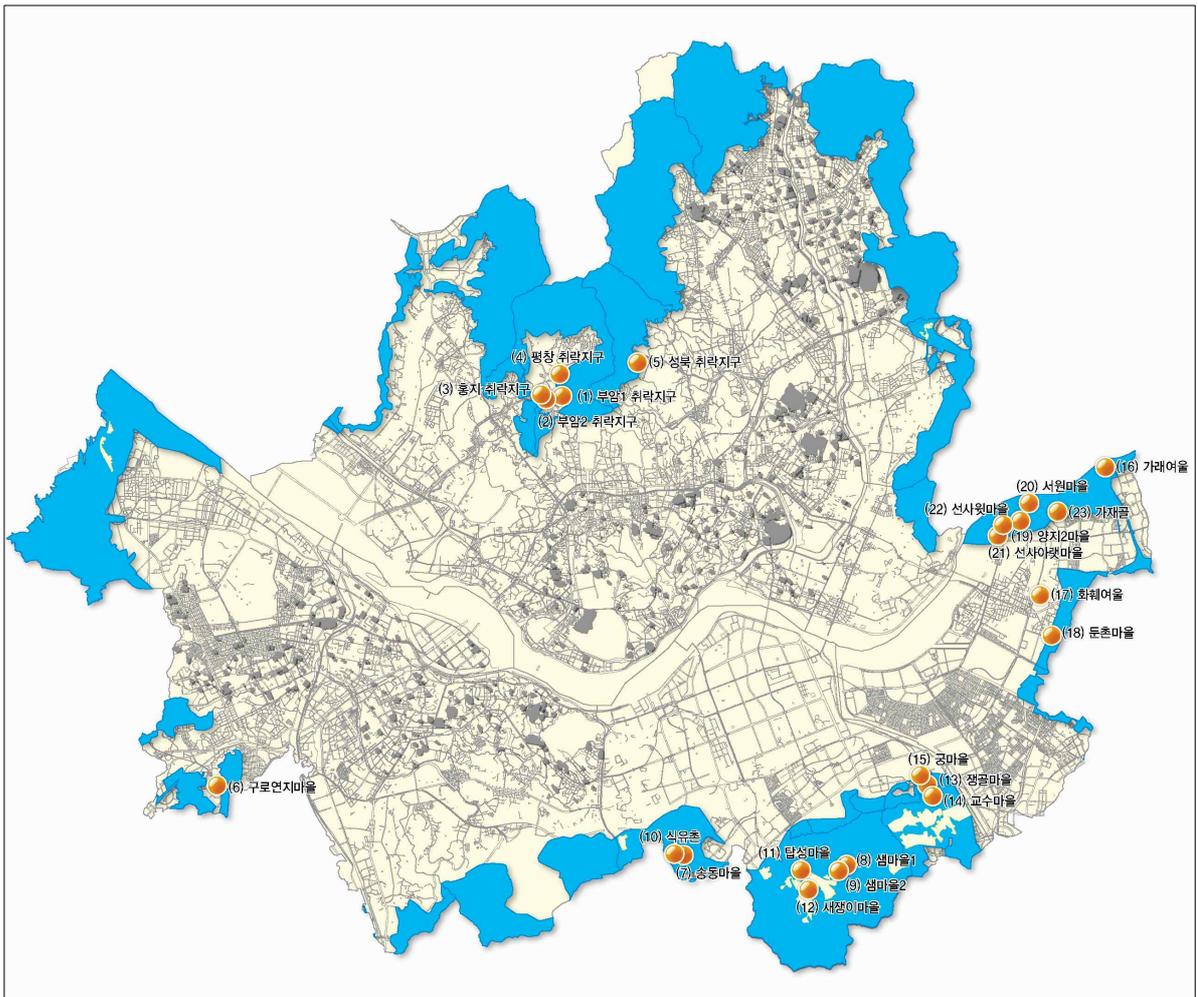
- 경기도의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는 2016년 현재 13개소로 파악, 지난 2006년 수립된 제2차 관리계획에서 지정가능 대상지였던 집단취락은 182개소

| 구분 | 총괄 | | 인구·가구 | | 건축물(동)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계 | 13 | 228,102 | 546 | 401 | 174 | 91 |
| 남부 | 8 | 138,980 | 450 | 125 | 98 | 91 |
| 수원시 | 0 | 0 | 0 | 0 | 0 | 0 |
| 성남시 | 2 | 4,200 | 65 | 35 | 33 | |
| 부천시 | 0 | 0 | 0 | 0 | 0 | 0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 안산시 | 6 | 134,780 | 385 | 90 | 65 | 91 |
| 안양시 | 0 | 0 | 0 | 0 | 0 | 0 |
| 시흥시 | 0 | 0 | 0 | 0 | 0 | 0 |
| 화성시 | 0 | 0 | 0 | 0 | 0 | 0 |
| 광명시 | 0 | 0 | 0 | 0 | 0 | 0 |
| 군포시 | 0 | 0 | 0 | 0 | 0 | 0 |
| 광주시 | 0 | 0 | 0 | 0 | 0 | 0 |
| 김포시 | 0 | 0 | 0 | 0 | 0 | 0 |
| 하남시 | 0 | 0 | 0 | 0 | 0 | 0 |
| 의왕시 | 0 | 0 | 0 | 0 | 0 | 0 |
| 양평군 | 0 | 0 | 0 | 0 | 0 | 0 |
| 과천시 | 0 | 0 | 0 | 0 | 0 | 0 |
| 북부 | 5 | 89,122 | 96 | 276 | 76 | 0 |
| 고양시 | 5 | 89,122 | 96 | 276 | 76 | 0 |
| 의정부시 | 0 | 0 | 0 | 0 | 0 | 0 |
| 남양주시 | 0 | 0 | 0 | 0 | 0 | 0 |
| 구리시 | 0 | 0 | 0 | 0 | 0 | 0 |
| 양주시 | 0 | 0 | 0 | 0 | 0 | 0 |

〈 서울특별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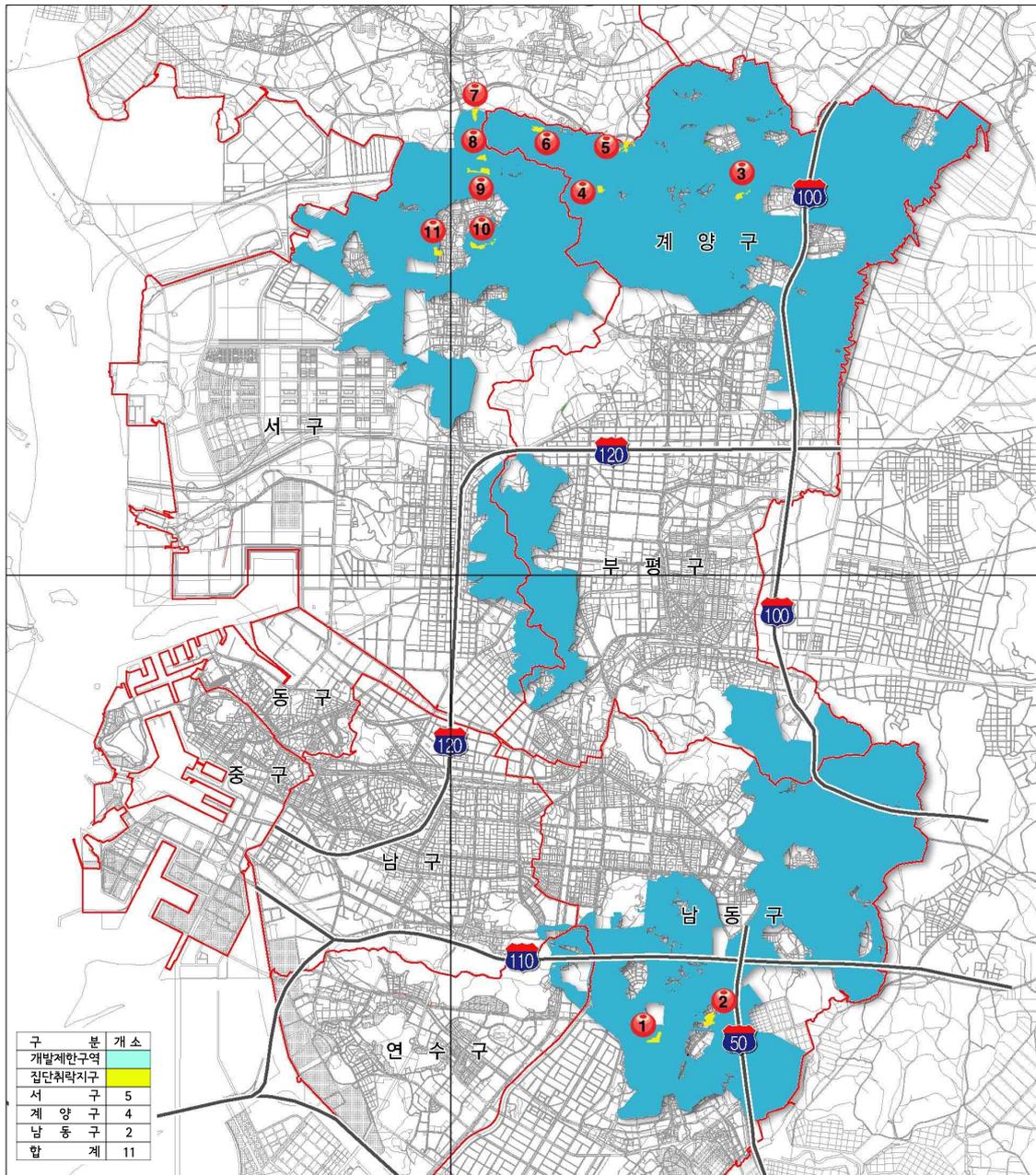
| 연번 | 구별 | 지구명 | 위치 | 면적(㎡) | | 집단취락지구 결정고시일 |
|----|----|------------|----------------|--------|--------|--------------------------|
| | | | | 당초 | 변경 | |
| 1 | 종로 | 부암1 | 부암동100일원 | 12,208 | 12,235 | '09.2.19 ('15.12.31) |
| 2 | | 부암2 | 부암동191-6일원 | 11,110 | 11,403 | |
| 3 | | 흥지 | 흥지동129 일원 | 15,395 | 16,250 | |
| 4 | | 평창 | 평창동 260일원 | 15,033 | 15,086 | |
| 5 | 성북 | - | 정릉동 941-1일원 | 4,746 | 4,746 | '09.4.16 |
| 6 | 구로 | 연지마을 | 천왕동10-8일원 | 9,781 | 9,781 | '14.12.4 |
| 7 | 서초 | 송동마을 | 우면동500-4일원 | 20,745 | 20,745 | '09.8.20 |
| 8 | | 샘마을1 | 내곡동1-2003일원 | 10,058 | 10,058 | |
| 9 | | 샘마을2 | 내곡동1-2046 | 19,858 | 19,858 | '09.9.10 |
| 10 | | 식 유 촌 | 우면동603-42일원 | 20,860 | 20,860 | |
| 11 | | 탑성마을 | 염곡동208일원 | 17,488 | 17,488 | |
| 12 | | 새쟁이마을 | 신원동 14일원 | 28,419 | 28,419 | |
| 13 | 강남 | 쟁골마을 | 자곡동 220일원 | 26,507 | 26,507 | '09.5.14 |
| 14 | | 교수마을 | 자곡동 271일원 | 27,269 | 27,412 | '09.9.24 ('13.01.24) |
| 15 | | 궁 마 을 | 수서동 451일원 | 25,836 | 25,836 | '09.9.24 |
| 16 | 강동 | 가래여울 | 하일동 141일원 | 15,812 | 16,492 | '09.2.12 ('13.05.16) |
| 17 | | 화훼마을 | 길 동 264일원 | 13,705 | 13,705 | |
| 18 | | 둔촌마을 | 둔촌동 108번지일원 | 14,111 | 14,383 | |
| 19 | | 양지2마을 | 암사동 281-5일원 | 2,919 | 3,199 | |
| 20 | | 서원마을 | 암사동 102일원 | 28,062 | 32,882 | '09.2.12 ('10.10.21) |
| 21 | | 선사아랫 마을 | 암사동 607일원 | 14,201 | 14,201 | - |
| 22 | | 선사윗마을 | 암사동 178일원 | 19,003 | 19,003 | - |

〈 서울특별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현황도 〉



〈 인천광역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현황 〉

| 일련 번호 | 지구명 | 위 치 | 면적현황(㎡) | | | 비고 |
|----------|------|--------------|----------|----------|------------|----|
| | | | 가능 면적 | 지정 면적 | 지정률 (%) | |
| 계 | | | 290,410 | 251,710 | 86.7 | |
| 1 | 도림2 | 도림동 438-1일원 | 28,315 | 27,160 | 95.9 | 남동 |
| 2 | 도림3 | 도림동 266-1일원 | 42,589 | 39,400 | 92.5 | 남동 |
| 3 | 굴현 | 굴현동 427-4일원 | 19,843 | 16,576 | 83.5 | 계양 |
| 4 | 이축단지 | 목상동 212-1일원 | 28,516 | 14,282 | 50.1 | 계양 |
| 5 | 독실3 | 독실동 7-14 일원 | 27,223 | 24,929 | 91.6 | 계양 |
| 6 | 독실2 | 독실동 194-1 일원 | 20,751 | 18,623 | 89.7 | 계양 |
| 7 | 백석 | 백석동 22-6 일원 | 23,131 | 21,144 | 91.4 | 서구 |
| 8 | 독가촌 | 백석동 산10-3일원 | 16,106 | 15,472 | 96.1 | 서구 |
| 9 | 시천2 | 시천동 149-2 일원 | 28,356 | 27,880 | 98.3 | 서구 |
| 10 | 공촌 | 공촌동 40-1 일원 | 27,903 | 26,555 | 95.2 | 서구 |
| 11 | 경서 | 경서동 4 일원 | 27,677 | 19,689 | 71.1 | 서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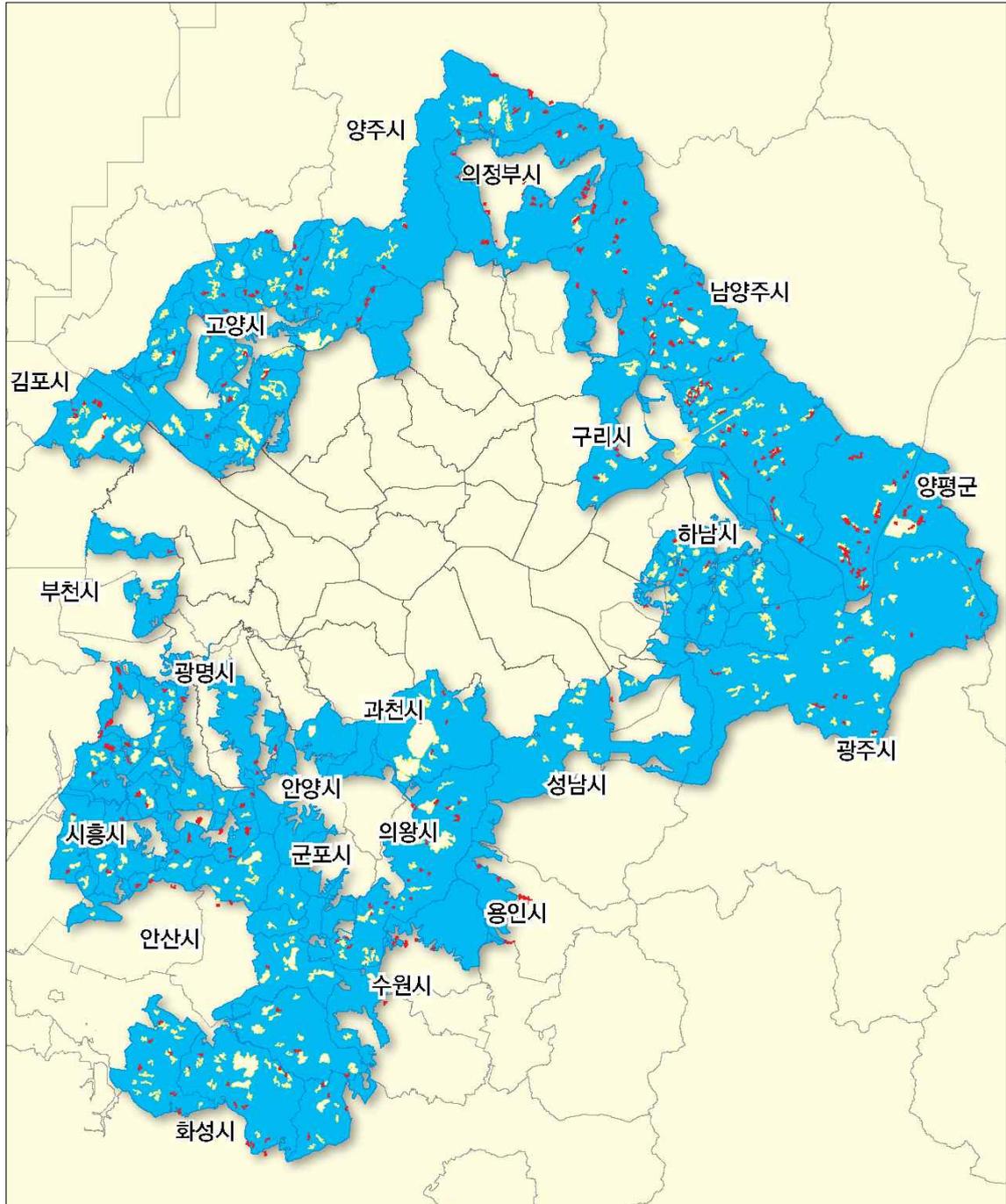


〈 경기도 집단취락지구 지정 현황 〉

단위: 개소, m²

| 구분 | 합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동)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경기도 | 계 | 225 | 5,707,675 | 12,595 | 4,370 | 10,229 | 3,398 |
| | 남부 | 125 | 3,353,831 | 5,789 | 2,009 | 7,068 | 2,535 |
| | 수원시 | 0 | 0 | 0 | 0 | 0 | 0 |
| | 성남시 | 0 | 0 | 0 | 0 | 0 | 0 |
| | 부천시 | 2 | 41,921 | 120 | 47 | 27 | 0 |
| | 용인시 | 2 | 495 | 0 | 0 | 495 | 0 |
| | 안산시 | 6 | 133,773 | 243 | 81 | | |
| | 안양시 | 0 | 0 | 0 | 0 | 0 | 0 |
| | 시흥시 | 28 | 1,165,376 | 1,457 | 638 | 5,399 | 2,201 |
| | 화성시 | 24 | 542,285 | 624 | 233 | 278 | 108 |
| | 광명시 | 3 | 58,406 | 175 | 72 | 60 | 7 |
| | 군포시 | 0 | 0 | 0 | 0 | 0 | 0 |
| | 광주시 | 10 | 275,275 | 190 | 121 | 115 | 33 |
| | 김포시 | 5 | 162,450 | 220 | 88 | 115 | 18 |
| | 하남시 | 10 | 234,980 | 1,021 | 222 | 87 | 0 |
| | 의왕시 | 23 | 364,257 | 991 | 251 | 249 | 21 |
| | 양평균 | 6 | 225,261 | 286 | 146 | 135 | 118 |
| | 과천시 | 6 | 149,352 | 462 | 110 | 108 | 29 |
| | 북부 | 100 | 2,353,844 | 6,806 | 2,361 | 3,161 | 863 |
| | 고양시 | 20 | 449,636 | 977 | 389 | 1,563 | 0 |
| | 의정부시 | 16 | 545,105 | 825 | 363 | 307 | 70 |
| 남양주시 | 54 | 1,129,029 | 4,165 | 1,310 | 1,021 | 672 | |
| 구리시 | 3 | 74,607 | 545 | 190 | 183 | 29 | |
| 양주시 | 7 | 155,467 | 294 | 109 | 87 | 92 | |

〈 경기도 집단취락지구 지정 현황도 〉



2.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각종 개발사업 규제로 인해 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서, 사업유형별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유도

| | | |
|-------------|----------------|----------------|
|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 주민지원사업 혜택대상 확대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
|-------------|----------------|----------------|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추진 및 지원대상 확대

- 도로개설사업 외 여러 종류의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
-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자격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주민만족도 향상

나. 주민지원사업 기준

1)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생활편익사업 |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화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
| 복지증진사업 |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 |
| 소득증대사업 |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 | |
| 주택개량사업 | • 노후주택 개축, 리모델링, 지붕개량 등 | 2017년 |
| LPG소형저장탱크 | • 중소규모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 2017년 |
| 연구·조사사업 | •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 |
| 환경문화사업 | •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전통문화, 생활공원사업 등 | |
| 생활비용 보조사업 |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세대당 60만원 이내 현금지원) | |

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및 특성
 -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지방비 부담액 포함) / 기타사항

3) 주민지원사업비용 지원 비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사업비의 90% 이내 범위에서 지원

| 재정자립도 | 국고지원비율 | 비 고 |
|-----------|-------------|------------|
| 30% 이하 | 사업비의 90% 이내 | |
| 30~40% 이하 | 사업비의 80% 이내 | |
| 40% 초과 | 사업비의 70% 이내 | 서울, 인천, 경기 |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재정자립도 통계 참조

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1) 우선순위별 기준

- 1순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 시행중에 있는 사업
- 2순위: 공원·녹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3순위 : 주민공동이용시설
- 4순위 : 도로 등 선형시설

| 구 분 | 상위사업 판단기준 | 하위사업 판단기준 |
|-----|---|--|
| 필요성 | • 구역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것 | • 다른 국고금으로 기 보존된 사업 - 제외 |
| 효과성 | • 취락규모가 크고 수혜 주민이 많을 것 - 인근소규모 취락에 파급효과가 클 것 | • 다른 국고금으로 보조 가능성이 있는 사업 - 검토서 및 의견서 필요 |
| 환경성 | • 훼손면적이 적을 것 환경보전 또는 복원효과가 있음. | • 구역의 단순 통과 시설 - 제외 |
| 실효성 | •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을 것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 | • 지자체 현안사업(공약사업 등) - 구역 주민들의 위한 현안사업 여부 |

2) 사업종류별 우선순위 판단기준

- 도로 등 기반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진입로, 제방,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공공용시설(도로, 하천, 주차장 등)보다 우선 선정
- 복지회관 등
 -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등은 행정안전부(청사인 경우), 도서관, 체육회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여부 등을 검토
- 소하천 및 구거
 -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방재 목적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구역 내 주민 현안사업인지 등을 검토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우수처리시설 등
 - 환경부의 지원사업(생태습지 조성사업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인지 검토
- 그 밖에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우선선정대상에서 제외
 - ※ 단, 기 지원받은 사업이나 장래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
- 공원
 - 대규모 공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광역적 공원 기능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는 거리가 있음.(우선순위를 후위로 배치)
 - ※ 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은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적용
- 소득중대사업은 마을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 기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인정

라. 계획 기간 내 반영할 주민지원사업

1) 사업유형별 선정현황

- 지난 2012년~2016년까지의 주민지원사업 유형을 보면, 생활편익사업이 총 259건으로 전체 사업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보조가 357건 54.8%, 환경문화사업이 21건 3.2%로 나타남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사업비(백만원) | | | 일 반 사 업 유 형 | | | | | | | | 재해위험 우려지역 복구사업 |
|-----|----------|---------|---------|-------------|----------|----------|----------|----------|----------|----------|----------|----------------------|
| |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계 | 생활 편익 | 복지 증진 | 생활 보조 | 소득 증대 | 주택 보조 | 연구 조사 | 환경 문화 | |
| 수도권 | 279,260 | 169,090 | 110,170 | 651 | 259 | 7 | 357 | 2 | - | 1 | 21 | - |
| 서울 | 72,393 | 41,300 | 31,093 | 88 | 61 | - | 16 | - | - | 1 | 10 | - |
| 인천 | 12,014 | 8,564 | 3,450 | 14 | 10 | - | - | - | - | - | 4 | - |
| 경기 | 194,853 | 119,226 | 75,627 | 549 | 188 | 7 | 341 | 2 | - | - | 11 | - |

● 주민지원사업 특성 및 추진방향

- 1차·2차에 비해 3차 관리계획 수립 시 생활편익사업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에 있어서는 불만족한 상황
- 2017년 신규로 도입된 주택개량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실생활과 관련된 지원 강화
-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발굴 및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개발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여가녹지 조성, 누리길 조성 등 사업증가로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 되어 생활편익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친환경·문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아이템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취락단위의 사업을 개발

마. 주민지원사업 신규사업 및 배분기준

1) 주민지원사업 신규사업

가) 주택개량보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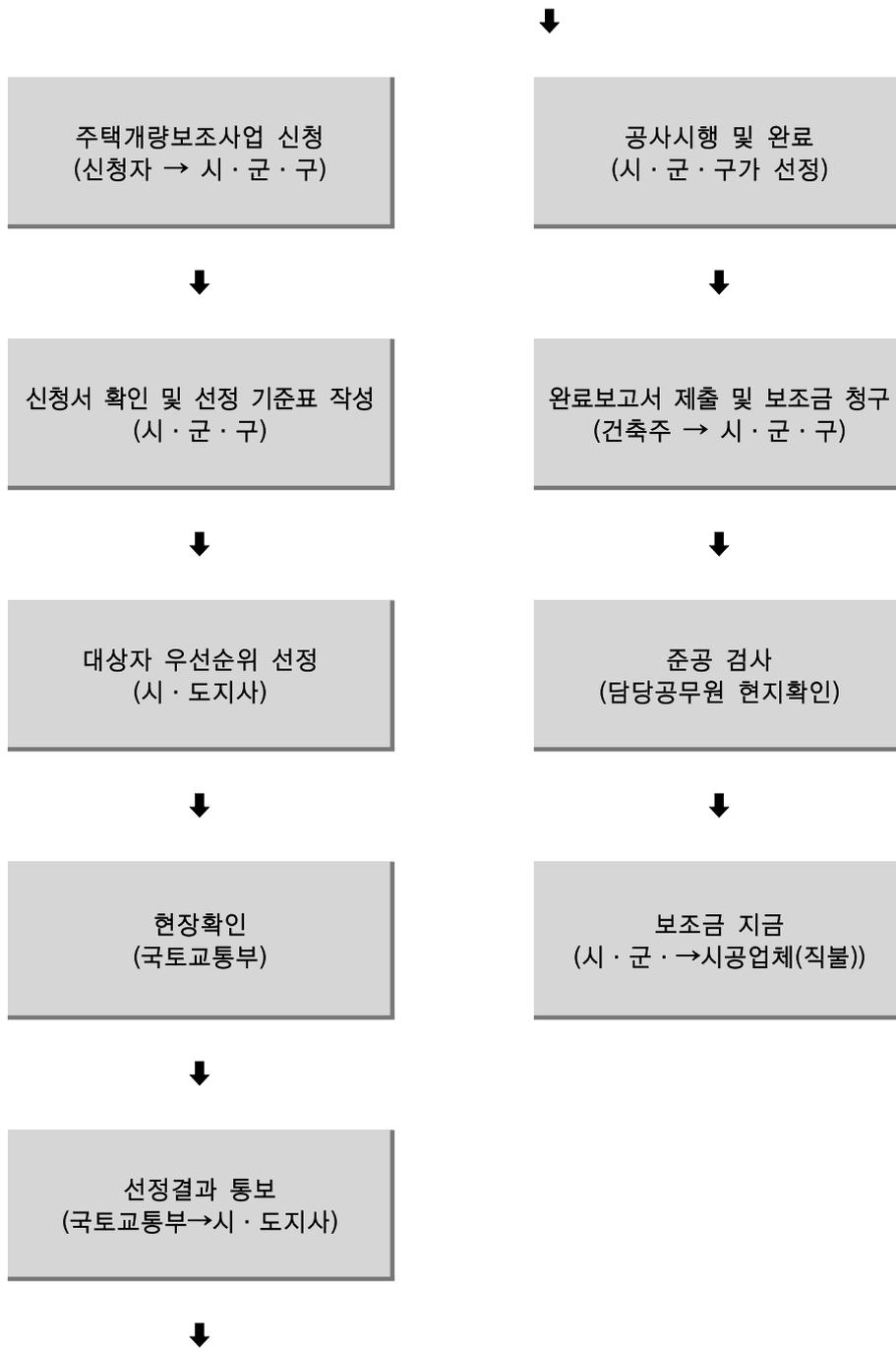
■ 지원기준

- 지원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주택
- 지원범위: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지붕개량, 마감 등 기능개선 행위(부속건축물은 제외)
- 지원자격: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 충족 필요
 -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건축물, 토지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영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자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외
- 지원금액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신청자 → 시장·군수·구청장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절차]



나)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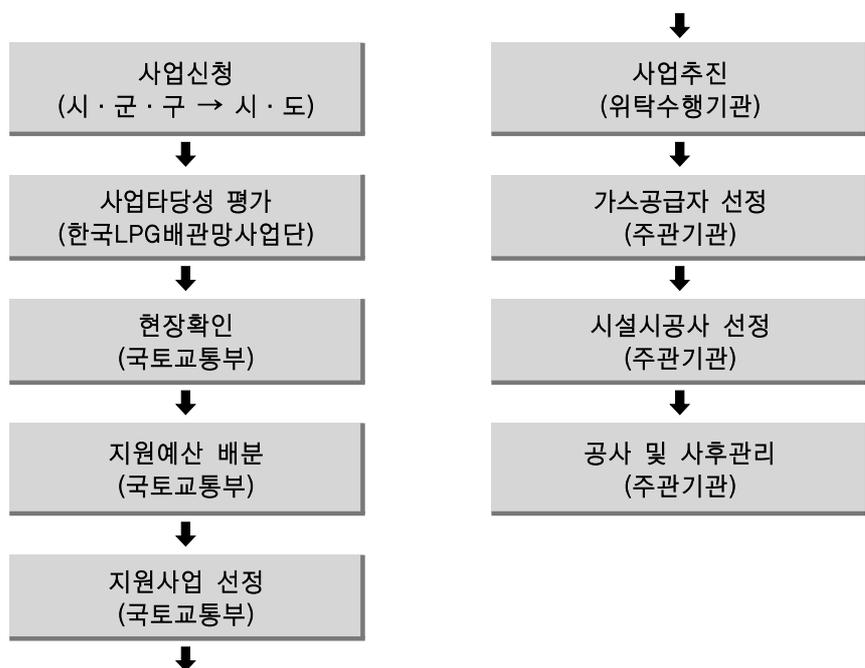
- 지원범위: LPG 저장시설(소형저장탱크), LPG 배관망, 옥내배관, LPG 보일러 설치, 부대시설 등을 지원
 - 토지매입비 및 건물공사비는 지원 없이, LPG 공급시설 설치 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 등 기타 소요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대상마을에 가구당 600만원, 최대 3억원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비의 10%를 사용자가 부담
 - 총사업비 중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가 70%~90%, 시·군·구 10~30% 부담

■ 사업추진 체계

- 국토교통부: 마을단위 LPG 지원사업 운영기준 마련
 - 계획수립, 사업선정, 예산지원, 위탁수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등
- 주관기관: 수요조사, 마을선정, 우선순위부여, 부담금산정 및 징수, 각종 인·허가 등 지원
- 위탁수행기관: 타당성 평가, 컨설팅, 가스공급자 및 시공사 선정, 사후관리 등

■ 추진절차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추진절차]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2012~2016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서울특별시 총 29개 사업 지원

〈 서울특별시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 사 도 | 시·군· 구 | 사업유형 | 사 업 명 | 지 원 내 역 | | | 사업기간 | 비고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 서울 | 구로구 | 생활편익 | 공동 공원조성 | 4,300,000 | 3,440,000 | 860,000 | 2012-2014 | |
| | 은평구 | " | 도시가스관 매설 | 740,000 | 666,000 | 74,000 | 2012 | |
| | 구로구 | 연구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 | 150,000 | 120,000 | 30,000 | 2012 | |
| | 도봉구 | 생활편익 | 무수골생태공원 조성 | 1,795,000 | 1,195,000 | 298,750 | 2012 | |
| | 종로구 | 생활비용보조 | 생활비용보조 | 1,200 | 840 | 360 | 2012 | |
| | 강북구 | " | " | 600 | 540 | 60 | 2012 | |
| | 도봉구 | " | " | 600 | 480 | 120 | 2012 | |
| | 강서구 | " | " | 1,200 | 960 | 240 | 2012 | |
| 강동구 | 강동구 | 생활편익 | 암사역사공원조성 | 22,766,000 | 8,002,000 | 14,764,000 | 2013-2016 | |
| | 강북구 | 기타 | 인수천 교량설치 | 500,000 | 400,000 | 100,000 | 2013 | |
| | 강동구 | 생활편익 | 둔촌동 도로개설 | 1,180,000 | 651,000 | 529,000 | 2013 | |
| | 도봉구 | 환경문화 | 무수골경관사업 | 500,000 | 400,000 | 100,000 | 2013 | |
| | 은평구 | " | 북한산누리길 조성 | 150,000 | 120,000 | 30,000 | 2013 | |
| | 구로구 | " | 정선옹주 묘역 전통문화 | 500,000 | 400,000 | 100,000 | 2013 | |
| | 서초구 | 생활편익 | 새정리마을 도시가스공급 | 1,050,872 | 705,872 | 345,000 | 2014 | |
| | 강동구 | " | 보훈병원 앞 도로확장 | 2,420,000 | 1,840,000 | 580,000 | 2014-2015 | |
| | 노원구 | 환경문화 | 누리길 조성 | 480,000 | 430,000 | 50,000 | 2014 | |
| | " | " |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 | 400,000 | 360,000 | 40,000 | 2014 | |
| | 구로구 | 생활편익 |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 | 375,904 | 320,000 | 55,904 | 2014 | |
| 서울시 | " | 서울대공원 생활공원조성 | 350,000 | 245,000 | 105,000 | 2014 | | |
| 강서구 | 종로구 | 생활비용보조 | 생활비용보조 | 1,200 | 840 | 360 | 2014 | |
| | 강서구 | 생활비용보조 | 생활비용보조 | 1,800 | 1,620 | 180 | 2014 | |
| | 강동구 | 생활편익 | 캠핑장 집입도로 개설 | 200,000 | 200,000 | 0 | 2015 | |
| | " | " | 둔촌마을 도로개설 | 858,928 | 379,928 | 480,000 | 2015 | |
| | " | " | 진황도로 개설 | 430,000 | 50,000 | 380,000 | 2015 | |
| | 구로구 | " | 푸른수목원 시설조성 | 1,900,000 | 1,710,000 | 190,000 | 2016 | |
| | " | " | 연지마을 소공원조성 | 220,000 | 200,000 | 20,000 | 2016 | |
| 강남구 | " | 교수마을 도로확충 | 1,428,600 | 1,000,000 | 428,600 | 2016 | | |
| 노원구 | 환경문화 | 불암산 불법훼손지 경관 | 200,000 | 180,000 | 20,000 | 2016 | | |

● 서울특별시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서울특별시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는 생활편익, 복지 증진, 소득증대, 주택개량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목표를 정함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구 분 | | 정비대상 (A) | 정비실적 (B) | 추진목표 (B/A) |
|----------------|---------------------|--------------|--------------|------------|
| 생활 편익 | 도로 | 74.91km | 26.44km | 35.29% |
| | 주차장 | 2건(231.7㎡) | 2건(231.7㎡) | 100% |
| | 상·하수도 | | | |
| | 소하천 및 교량 | | | |
| | 소공원 | 5건(179,776㎡) | 5건(179,776㎡) | 100% |
| | 농배수로 | | | |
| | 기타(실내배드민턴장, 실외테니스장) | 2건(5,800㎡) | 2건(5,800㎡) | 100% |
| 복지 증진 | 마을회관 (경로당) | 1건(1동, 150㎡) | 1건(1동, 150㎡) | 100% |
| | 어린이놀이터 | | | |
| 소득 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 | |
| | 자연생태, 화훼마을 | | | |
| | 주택개량 | | | |
| | LPG 소형저장탱크 | | | |
| | 연구조사 | | | |
| 환경 문화 사업 | 누리길 | | | |
| | 여가녹지 | 2,000㎡ | 2,000㎡ | 100% |
| | 경관(전통문화) | | | |
| | 생활공원 | | | |
| | 생활비용보조 | | | |

| 구분 | 대상지(개소) | 사업비(백만원)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합계 | 48 | 103,009 | 72,783 | 30,216 | 10 |
| 2017 | 11 | 24,160 | 7,616 | 16,534 | 10 |
| 2018 | 19 | 31,247 | 25,773 | 5,474 | - |
| 2019 | 16 | 23,605 | 19,328 | 4,277 | - |
| 2020 | 8 | 18,485 | 15,146 | 3,339 | - |
| 2021 | 3 | 5,512 | 4,920 | 592 | -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017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백만원) | | | | 중요도 (상·중·하)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11개소 | | 24,160 | 7,616 | 16,534 | 10 | |
| 구로구 | 생활편익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 공원조성 60,000㎡ | 1,000 | 900 | 100 | 0 | 상 |
| 강동구 | 생활편익 |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 | 공원조성 110,198㎡ | 17,227 | 2,000 | 15,227 | 0 | 상 |
| 강동구 | 생활편익 | 보훈병원 앞 도로확장 | B 6m→12m L 245m | 533.4 | 480 | 53.4 | 0 | 상 |
| 강동구 | 생활편익 | 둔촌마을 기반시설 확충 | B 4m→6m L 25~100mm | 1,296.7 | 1,167 | 129.7 | 0 | 상 |
| 강남구 | 생활편익 | 교수마을(취락) 기반시설 확충 | L 928m | 1,108.6 | 776 | 332.6 | 0 | 상 |
| 종로구 | 생활편익 | 홍지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 B 4m L 125m | 714.3 | 500 | 214.3 | 0 | 상 |
| 종량구 | 환경문화 | 구룡산 여가녹지 조성 | 55,173㎡ | 1,000 | 900 | 100 | 0 | 상 |
| 강북구 | 주택개량 | 노후주택개량 | 145.4㎡ | 30 | 18 | 2 | 10 | 상 |
| 도봉구 | 생활공원 | 모험놀이터 조성 | 2,012㎡ | 400 | 280 | 120 | 0 | 상 |
| 은평구 | 생활공원 | 녹번 생활공원 조성사업 | 8,000㎡ | 450 | 315 | 135 | 0 | 상 |
| 서초구 | 생활공원 |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 9,800㎡ | 400 | 280 | 120 | 0 | 상 |

(2018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19개소 | | 31,247 | 25,773 | 5,474 | - | |
| 구로구 | 생활편익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 공원조성 60,000㎡ | 4,000 | 3,600 | 400 | 0 | 상 |
| 구로구 | " |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 공원조성 431㎡ | 200 | 180 | 20 | 0 | 상 |
| 구로구 | " | 연지마을 도로개설 | 도로개설 L=369m | 1,000 | 900 | 100 | 0 | 중 |
| 구로구 | 복지증진 | 연지마을 경로당 건립 | 건물신축 150㎡ | 300 | 270 | 30 | 0 | 중 |
| 구로구 | 생활편익 | 공동 오리로23길 도로개설 | 도로개설 L=183m | 280 | 252 | 28 | 0 | 중 |
| 구로구 | " | 공동 오리로13길 도로개설 | 도로개설 L=180m | 800 | 720 | 80 | 0 | 중 |
| 강동구 | " |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 | 공원조성 110,198㎡ | 10,000 | 8,000 | 2,000 | 0 | 상 |
| 강동구 | " | 진황도로 개설 | 도로개설 L=370m | 1,187 | 950 | 237 | 0 | 상 |
| 강동구 | "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800㎡ | 1,500 | 1,200 | 300 | 0 | 하 |
| 강동구 | " | 천호대로213길 도로확장 | 도로확장 L=126m | 542 | 434 | 108 | 0 | 하 |
| 강동구 | " | 실외테니스장 조성 | 코트 6면 | 10,000 | 800 | 200 | 0 | 하 |
| 강동구 | " | 가래여울마을 진입도로 개설 | 도로개설 | 650 | 520 | 130 | 0 | 하 |
| 강남구 | " | 교수마을 공원확충 | 공원 307㎡ | 46 | 32 | 14 | 0 | 중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 도로개설 L=125m | 1,500 | 1,050 | 450 | 0 | 상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7면 | 300 | 210 | 90 | 0 | 상 |
| 종로구 | " | 평창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2면 | 300 | 210 | 90 | 0 | 중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019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16개소 | | 23,605 | 19,328 | 4,277 | - | |
| 구로구 | 생활편익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 공원조성 60,000㎡ | 4,000 | 3,600 | 400 | 0 | 상 |
| 구로구 | " |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 공원조성 431㎡ | 200 | 180 | 20 | 0 | 상 |
| 구로구 | " | 연지마을 도로개설 | 도로개설 L=369m | 1,000 | 900 | 100 | 0 | 중 |
| 구로구 | 복지증진 | 연지마을 경로당 건립 | 건물신축 150㎡ | 300 | 270 | 30 | 0 | 중 |
| 구로구 | 생활편익 | 공동 오리로23길 도로개설 | 도로개설 L=183m | 280 | 252 | 28 | 0 | 중 |
| 구로구 | " | 공동 오리로13길 도로개설 | 도로개설 L=180m | 800 | 720 | 80 | 0 | 중 |
| 강동구 | " |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 | 공원조성 110,198㎡ | 10,000 | 8,000 | 2,000 | 0 | 상 |
| 강동구 | " | 진황도로 개설 | 도로개설 L=370m | 1,187 | 950 | 237 | 0 | 상 |
| 강동구 | "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800㎡ | 1,500 | 1,200 | 300 | 0 | 하 |
| 강동구 | " | 천호대로213길 도로확장 | 도로확장 L=126m | 542 | 434 | 108 | 0 | 하 |
| 강동구 | " | 실외테니스장 조성 | 코트 6면 | 10,000 | 800 | 200 | 0 | 하 |
| 강동구 | " | 가래여울마을 진입도로 개설 | 도로개설 | 650 | 520 | 130 | 0 | 하 |
| 강남구 | " | 교수마을 공원확충 | 공원 307㎡ | 46 | 32 | 14 | 0 | 중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 도로개설 L=125m | 1,500 | 1,050 | 450 | 0 | 상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7면 | 300 | 210 | 90 | 0 | 상 |
| 종로구 | " | 평창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2면 | 300 | 210 | 90 | 0 | 중 |

(2020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8개소 | | 18,485 | 15,146 | 3,339 | - | |
| 구로구 | 생활편익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 공원조성 60,000㎡ | 4,000 | 3,600 | 400 | 0 | 상 |
| 구로구 | " | 연지마을 도로개설 | 도로개설 L=369m | 1,270 | 1,143 | 127 | 0 | 중 |
| 강동구 | " | 암사역사 생태공원조성 | 공원조성 110,198㎡ | 10,000 | 8,000 | 2,000 | 0 | 상 |
| 강동구 | " | 천호대로213길 도로확장 | 도로확장 L=126m | 520 | 416 | 104 | 0 | 하 |
| 강동구 | " | 가래여울마을 진입도로 개설 | 도로개설 | 1,000 | 800 | 200 | 0 | 하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 도로개설 L=125m | 1,391 | 974 | 417 | 0 | 상 |
| 종로구 | " | 홍지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7면 | 10 | 7 | 3 | 0 | 상 |
| 종로구 | " | 평창취락지구 주차장조성 | 주차장 12면 | 294 | 206 | 88 | 0 | 중 |

(2021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3개소 | | 5,512 | 4,920 | 592 | - | |
| 구로구 | 생활편익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 공원조성 60,000㎡ | 5,100 | 4,590 | 510 | 0 | 상 |
| 강동구 | " | 화훼마을 도로개설 | 도로개설 | 362 | 290 | 72 | 0 | 중 |
| 강동구 | " | 양지마을 도로개설 | 도로개설 | 50 | 40 | 10 | 0 | 중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인천광역시 2012~2016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인천광역시 총 5개구 28개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사·군 | 사업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지방비 | |
| 5 개구 | 28건 | 19,445 | 14,230 | 35,215 | |
| 남동구 |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공사(보상) | 521 | 416 | 105 | 2012년도 |
| 계양구 | 다남동 산71~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1구간) | 1,549 | 1,394 | 155 | 2012년도 |
| 계양구 | 여가녹지 조성사업(임학동 산7-4 일원) | 556 | 500 | 56 | 2012년도 |
| 남동구 | 도림3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공사(시공) | 521 | 365 | 156 | 2013년도 |
| 계양구 | 다남동 산71~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1구간) | 1,347 | 1,212 | 135 | 2013년도 |
| 계양구 | 다남동 산71~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2구간) | 230 | 207 | 23 | 2013년도 |
| 계양구 | 계양역 주변 벚꽃길 조성사업 | 556 | 500 | 56 | 2013년도 |
| 서 구 | 백석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 498 | 349 | 149 | 2013년도 |
| 남동구 | 도림3지구 소3-3~6 호선 도로개설(보상비) | 1,371 | 960 | 411 | 2014년도 |
| 남동구 |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 도로개설 | 143 | 100 | 43 | 2014년도 |
| 계양구 | 다남동 산71~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2구간) | 1,111 | 1,000 | 111 | 2014년도 |
| 서 구 | 공촌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 594 | 414 | 180 | 2014년도 |
| 남동구 | 소래철교 경관사업(환경문화사업) | 2,317 | 517 | 1,800 | 2014년도 |
| 부평구 |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공사(환경문화사업) | 700 | 630 | 70 | 2014년도 |
| 남동구 | 도림3지구(소3-3~6호선)도로개설 | 806 | 645 | 161 | 2015년도 |
| 남동구 | 능골지구(소로2-2호선)도로개설 | 1,550 | 1,240 | 310 | 2015년도 |
| 남동구 | 도림지2지구(소로3-1호선)도로개설 | 675 | 495 | 180 | 2015년도 |
| 서구 | 공촌지구(소로3-5호선)도로개설 | 300 | 240 | 60 | 2015년도 |
| 연수구 | 선학동69-2번지 일원 도로개설 | 130 | 104 | 26 | 2016년도 |
| 남동구 | 능골지구(소2-2호선)도로개설 | 507 | 456 | 51 | 2016년도 |
| 남동구 | 도림2지구(소3-1호선)도로개설 | 725 | 653 | 72 | 2016년도 |
| 서구 | 시천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 650 | 520 | 130 | 2016년도 |
| 부평구 | 백운섬터공원 조성(생활편익사업·공원) | 348 | 313 | 35 | 2016년도 |
| 계양구 | 계양산 삼림욕장 조성(환경·문화사업) | 1,740 | 1,000 | 740 | 2016년도 |

● 인천광역시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인천광역시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는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주택개량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목표 설정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구 분 | | 정비대상 (A) | 정비실적 (B) | 추진목표 (B/A) |
|------------|-------------|----------|----------|------------|
| 생활편익 | 도로 | 1,999m | 1,999km | 100% |
| | 주차장 | 3건 | 3건 | 100% |
| | 상·하수도 | | | |
| | 소하천 및 교량 | | | |
| | 소공원 | 3건 | 3건 | 100% |
| | 농배수로 | | | |
| | 기타 | | | |
| 복지증진 | 마을회관 | | | |
| | 어린이놀이터 | 5건 | 5건 | 100% |
| 소득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 | |
| | 자연생태, 화훼마을 | | | |
| 주택개량 | | 10건 | 10건 | 100% |
| LPG 소형저장탱크 | | | | |
| 연구조사 | | | - | |
| 환경문화 사업 | 누리길 | 3km | 3km | 100% |
| | 여가녹지 | 10,000㎡ | 10,000㎡ | 100% |
| | 경관(전통문화) | | | |
| | 생활공원 | 5건 | 5건 | 100% |
| 생활비용보조 | | | | |

| 구분 | 대상지(개소) | 사업비(백만원)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합계 | 15 | 18,145 | 11,357 | 6,788 | - |
| 2017 | 3 | 5,880 | 1,694 | 4,186 | - |
| 2018 | 6 | 7,122 | 5,124 | 1,998 | - |
| 2019 | 4 | 4,638 | 4,135 | 503 | - |
| 2020 | 1 | 250 | 200 | 50 | - |
| 2021 | 1 | 255 | 204 | 51 | -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추진계획 사업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및 취약지구 해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등)정비 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고 있어 최우선 지원대상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추진
-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경우 자격소득기준 완화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추진(예정)사업 〉

〈2017년〉

| 시·군·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상·중·하)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4개소 | | 5,880 | 1,694 | 4,186 | - | |
| 연수구 | 생활편익 | 선학동69-2번지 일원 도로개설 | B=10m L=224m | 400 | 320 | 80 | - | 상 |
| 계양구 | 생활편익 | 선주지동 주진입도로개설 | B=12~15m L=800m | 312 | 200 | 112 | - | 상 |
| 부평구 | 생활편익 | 백운쉼터공원 조성 | 공원조성 | 652 | 587 | 65 | - | 상 |
| 남동구 | 생활편익 |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 체육시설 1식 | 4,516 | 587 | 3,929 | - | 상 |

〈2018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6개소 | | 7,122 | 5,124 | 1,998 | | |
| 계양구 | 생활편익 | 선주지동 도로개설 | B=12~15m L=800m | 1,452 | 1,130 | 322 | - | 상 |
| 연수구 | 생활편익 | 선학동69-2일원 도로개설 | B=10m L=224m | 570 | 399 | 171 | - | 상 |
| 서구 | 생활편익 | 경서지구 소3-1호도로개설 | B=6m L=321m | 1,500 | 1,050 | 450 | - | 중 |
| 부평구 | 생활편익 | 청천농장 도로확장 | B=8→10m H=3.5m, L=70m | 810 | 729 | 81 | - | 중 |
| 남동구 | 생활편익 |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 체육시설 1식 | 1,770 | 1,000 | 770 | - | 중 |
| 남동구 | 생활편익 | 도림2지구 도로개설 | B=6m L=543m | 1,020 | 816 | 204 | - | 중 |

〈2019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4개소 | | 4,638 | 4,135 | 503 | - | |
| 부평구 | 생활편익 | 청천농장 도로확장 | B=8→10m H=3.5m L=70m | 790 | 711 | 79 | - | 상 |
| 계양구 | 생활편익 | 선주지동 도로개설 | B=12~15m L=800m | 2,688 | 2,420 | 268 | - | 상 |
| 서구 | 생활편익 | 경서지구 소3-3호도로개설 | B=6m, L=69m | 400 | 320 | 80 | - | 중 |
| 남동구 | 생활편익 | 도림2지구 도로개설 | B=6m, L=543m | 760 | 684 | 76 | - | 중 |

<2020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1개소 | | 250 | 200 | 50 | - | |
| 서구 | 생활편익 | 경서지구 소3-4호도로개설 | B=6m L=42m | 250 | 200 | 50 | - | 상 |

<2021년>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1개소 | | 255 | 204 | 51 | - | |
| 서구 | 생활편익 | 경서지구 소3-4호도로개설 | B=6m L=42m | 255 | 204 | 51 | - | 상 |

● 사후 평가 및 관리방안

- 사후평가: 주민지원사업 완료 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관리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차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 개선과제

-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편익시설 지원대상에 실외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추가가 필요
 - 지역 농업협동조합등과 연계한 소득증대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외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 주민지원사업 혜택대상 확대 노력
 -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대상자 자격기준이 지정당시 거주자 및 소득기준이 있어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는바 자격기준 완화 필요
-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 해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 정비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필요
 - 완료된 주민지원사업 정기적인 점검 및 순찰 등으로 관리 철저
 - 장기 미집행시설(도로 등) 추진

● 경기도 2012~2016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경기도 및 20개 시·군 개 232사업 지원

〈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2012)

| 시군명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비 | 구·군비 | |
| 계 | 17개 시·군 32건/ 생활비용 124세대 | 17,531 | 8,650 | 8,881 | |
| 수원시 | 오룡골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 | 330 | 231 | 99 | 2012년 |
| 수원시 | 광고 누리길 조성사업 | 715 | 500 | 215 | 2012년 |
| 성남시 | 북정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 1,200 | 500 | 700 | 2012년 |
| 부천시 | 뒷골취락 주차장 조성공사 | 200 | 140 | 60 | 2012년 |
| 부천시 | 옥길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 715 | 500 | 215 | 2012년 |
| 안산시 | 석탑 취락지구 도로개설 | 860 | 602 | 258 | 2012년 |
| 안양시 |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 450 | 315 | 135 | 2012년 |
| 시흥시 | 신천동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 | 3,682 | 567 | 3,115 | 2012년 |
| 화성시 | 서원말 도로 확포장공사 | 570 | 399 | 171 | 2012년 |
| 광명시 | 안터길 확포장공사 | 270 | 189 | 81 | 2012년 |
| 광주시 | 지월3리 농로개설(포장) 및 구거정비공사 | 331 | 232 | 99 | 2012년 |
| 광주시 | 광동리 농로포장공사 | 23 | 16 | 7 | 2012년 |
| 광주시 | 금사리 구거정비공사 | 23 | 16 | 7 | 2012년 |
| 광주시 | 하번천리 구거정비공사 | 23 | 16 | 7 | 2012년 |
| 하남시 | 개미촌천 정비사업 | 480 | 336 | 144 | 2012년 |
| 하남시 |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 | 2,900 | 500 | 2,400 | 2012년 |
| 의왕시 | 손골(2)취락 도로개설 | 562 | 364 | 198 | 2012년 |
| 의왕시 | 한글둘레길 경관정비 | 720 | 500 | 220 | 2012년 |
| 양평군 | 양서 골용진길 확포장공사 | 1,000 | 900 | 100 | 2012년 |
| 양평군 | 양평 누리길 조성사업 | 500 | 450 | 50 | 2012년 |
| 고양시 | 원흥동 도로확포장 | 1,000 | 700 | 300 | 2012년 |
| 고양시 | 성사동 도로확포장 | 300 | 210 | 90 | 2012년 |
| 남양주 | 명우취락 마을안길 정비사업 | 500 | 350 | 150 | 2012년 |
| 남양주 | 마들취락 체육시설 설치공사 | 177 | 117 | 60 | 2012년 |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의정부 | 본둔야 도로 및 주차장 등 조성 | 1,319 | 922 | 397 | 2012년 |
| 구리시 |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 750 | 525 | 225 | 2012년 |
| 구리시 | 아차산 고구려 문화탐방 조성 | 600 | 420 | 180 | 2012년 |
| 양주시 | 마전동 응달말 도로포장공사 | 58 | 41 | 17 | 2012년 |
| 양주시 | 삼하리 구거정비공사 | 107 | 75 | 32 | 2012년 |
| 양주시 | 광사동 등 도로포장사업 | 41 | 28 | 12 | 2012년 |
| 양주시 | 양주 누리길 조성사업 | 714 | 500 | 214 | 2012년 |
| 양주시 | 장흥면 일영리 체육시설 및 쉼터 조성 | 244 | 171 | 73 | 2012년 |
| | 생활비용보조 | 76 | 55 | 21 | 2012년 |

(2013)

| 구,군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계 | 18개 시·군 31건/ 생활비용 101세대 | 17,789 | 12,532 | 5,258 | |
| 수원시 | 광고마을공동구판장및창고조성공사 | 700 | 490 | 210 | 2013년 |
| 부천시 | 뒷골취락 주차장 조성공사 | 100 | 70 | 30 | 2013년 |
| 안산시 | 취락지역(석탑마을) 도로 개설공사 | 1,373 | 961 | 412 | 2013년 |
| 안양시 |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 975 | 683 | 293 | 2013년 |
| 시흥시 | 신천동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 | 756 | 529 | 227 | 2013년 |
| 시흥시 | 하우고개 하천정비사업 | 500 | 350 | 150 | 2013년 |
| 화성시 | 비봉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 700 | 490 | 210 | 2013년 |
| 화성시 | 집단취락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3년 |
| 광명시 |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공사 | 5,715 | 4,000 | 1,715 | 2013년 |
| 광주시 | 귀여리 수리울 하천석축공사 | 600 | 420 | 180 | 2013년 |
| 하남시 | 개미촌천 정비사업 | 1,030 | 721 | 309 | 2013년 |
| 하남시 |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1,000 | 700 | 300 | 2013년 |
| 의왕시 |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 1,800 | 1,260 | 540 | 2013년 |
| 의왕시 | 초평동 새말취락 | 1,140 | 798 | 342 | 2013년 |
| 양평군 | 양수리 보행자도로 및 주차시설 조성공사 | 400 | 360 | 40 | 2013년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구,군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고양시 | 원흥동 도로확·포장공사 | 1,100 | 770 | 330 | 2013년 |
| 고양시 | 원당동 도로확·포장공사 | 800 | 560 | 240 | 2013년 |
| 남양주 |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 700 | 490 | 210 | 2013년 |
| 의정부 | 본둔야 공공공지 및 주차장 조성공사 | 1,000 | 700 | 300 | 2013년 |
| 구리시 |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1,310 | 917 | 393 | 2013년 |
| 구리시 |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57 | 180 | 77 | 2013년 |
| 양주시 | 백석읍 방성리 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 290 | 232 | 58 | 2013년 |
| 양주시 | 장흥면 울대2리 도로확장공사 | 900 | 720 | 180 | 2013년 |
| 시흥시 | 갯골 생태공원 | 500 | 350 | 150 | 2013년 |
| 시흥시 | 하우, 여우고개 경관조성 | 478 | 334 | 144 | 2013년 |
| 의왕시 | 포일2 숲속마을 여가녹지 조성 | 720 | 500 | 220 | 2013년 |
| 양평군 | 두물머리 경관개선 | 500 | 450 | 50 | 2013년 |
| 고양시 | 산영루 복원 | 500 | 350 | 150 | 2013년 |
| 남양주시 | 재재기로 경관조성 | 500 | 350 | 150 | 2013년 |
| 남양주시 | 황금산 문화공원 | 500 | 350 | 150 | 2013년 |
| 의정부시 |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조성 | 600 | 480 | 120 | 2013년 |
| | 생활비용보조 | 61 | 45 | 15 | 2013년 |

<2014>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계 | 13개 시·군 33건 | 4,475 | 3,039 | 1,436 | |
| 부천시 |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 1,133 | 700 | 433 | 2014년 |
| 부천시 |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 1,000 | 700 | 300 | 2014년 |
| 부천시 | 부천 도당어울림 생활공원 | 200 | 140 | 60 | 2014년 |
| 부천시 | 부천 참살이 생활공원 | 300 | 210 | 90 | 2014년 |
| 안산시 | 우산리 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 | 60 | 42 | 18 | 2014년 |
| 안양시 | 호암 생활공원 | 352 | 246 | 106 | 2014년 |
| 안양시 |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 1,430 | 1,001 | 429 | 2014년 |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시흥시 | 군자동 하천정비사업 | 500 | 350 | 150 | 2014년 |
| 시흥시 | 흥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 320 | 224 | 96 | 2014년 |
| 시흥시 | 방산 청백자요지 전통문화 | 640 | 448 | 192 | 2014년 |
| 화성시 | 소공원 설치사업 10개소 | 1,000 | 700 | 300 | 2014년 |
| 김포시 | 신동취락지구 공원조성사업 | 1,400 | 980 | 420 | 2014년 |
| 하남시 | 개미촌천 정비사업 | 1,280 | 896 | 384 | 2014년 |
| 하남시 |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 | 500 | 350 | 150 | 2014년 |
| 의왕시 | 의왕시 생활공원 조성사업(고천동 100-2) | 600 | 420 | 180 | 2014년 |
| 의왕시 | 초평동 도로개설공사 | 1,000 | 700 | 300 | 2014년 |
| 의왕시 | 바라산 여가녹지 | 1,000 | 700 | 300 | 2014년 |
| 양평군 | 골용진, 가정상촌지구 도로 | 600 | 540 | 60 | 2014년 |
| 양평군 | 양평군 누리길 | 700 | 630 | 70 | 2014년 |
| 고양시 | 원당동 도로확포장공사 | 1,430 | 1,001 | 429 | 2014년 |
| 고양시 | 효자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 500 | 350 | 150 | 2014년 |
| 고양시 | 섬말천 정비공사 | 449 | 314 | 135 | 2014년 |
| 남양주 |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 1,200 | 840 | 360 | 2014년 |
| 남양주 | 썬플라워 프로젝트 | 300 | 210 | 90 | 2014년 |
| 남양주 |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 700 | 490 | 210 | 2014년 |
| 남양주 | 수락산, 불암산 누리길 | 700 | 490 | 210 | 2014년 |
| 의정부 | 귀락 도로개설 | 1,140 | 912 | 228 | 2014년 |
| 의정부 | 쇄쟁이등 도로개설 | 1,251 | 1,001 | 250 | 2014년 |
| 의정부 | 소풍길 여가녹지 | 400 | 320 | 80 | 2014년 |
| 구리시 |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 1,430 | 1,001 | 429 | 2014년 |
| 양주시 | 유양동 구거정비공사 | 200 | 160 | 40 | 2014년 |
| 양주시 | 백석읍 복지리 도로정비공사 | 150 | 120 | 30 | 2014년 |
| 양주시 | 광사동 도로포장 및 배수로 | 100 | 80 | 20 | 2014년 |

〈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2015)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계 | | 21,394 | 14,901 | 6,494 | |
| 경기도 | 군포 속달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 2,500 | 1,500 | 1,000 | 2015년 |
| 부천시 | 부천 도당 어울림 여가녹지 조성사업 | 1,400 | 980 | 420 | 2015년 |
| 안산시 | 창말 생활편익체육시설 조성공사 | 100 | 70 | 30 | 2015년 |
| 안산시 | 우산리 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 | 302 | 211 | 91 | 2015년 |
| 안산시 | 안산수암꿈나무체육공원여가녹지 | 1,500 | 1,000 | 500 | 2015년 |
| 안양시 |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공사 | 520 | 364 | 156 | 2015년 |
| 시흥시 |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 | 1,000 | 700 | 300 | 2015년 |
| 시흥시 |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 150 | 105 | 45 | 2015년 |
| 시흥시 | 시흥 연꽃산책 누리길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5년 |
| 화성시 | 비봉면 유포리(대장골)소득증대사업 | 19 | 14 | 6 | 2015년 |
| 화성시 | 매송면 소하천(학교내천)정비사업 | 1,257 | 880 | 377 | 2015년 |
| 화성시 | 화성 봉선지구 전통문화사업 | 1,140 | 798 | 342 | 2015년 |
| 화성시 | 화성 송림마을 전통문화사업 | 490 | 343 | 147 | 2015년 |
| 화성시 | 화성 수화(원천)마을 경관사업 | 470 | 329 | 141 | 2015년 |
| 광명시 | 광명구름산·가학산·서독산누리길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5년 |
| 광주시 | 삼성리 구거정비사업 | 150 | 105 | 45 | 2015년 |
| 김포시 |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670 | 469 | 201 | 2015년 |
| 하남시 | 남박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1,000 | 700 | 300 | 2015년 |
| 의왕시 |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 | 1,430 | 1,001 | 429 | 2015년 |
| 의왕시 | 의왕 산들길 경관사업 | 500 | 350 | 150 | 2015년 |
| 양평군 | 골용진~가정상촌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 | 926 | 833 | 93 | 2015년 |
| 양평군 | 양평 몽양길 경관사업 | 200 | 180 | 20 | 2015년 |
| 고양시 | 능골천정비공사 | 870 | 609 | 261 | 2015년 |
| 고양시 | 원당동도로확포장공사 | 1,000 | 700 | 300 | 2015년 |
| 남양주 | 용암리마을진입로개설공사 | 1,800 | 1,260 | 540 | 2015년 |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남양주 | 월문1리-월문5리 확포장공사 | 400 | 280 | 120 | 2015년 |
| 남양주 | 남양주수락·불암산누리길조성사업 | 700 | 490 | 210 | 2015년 |
| 남양주 | 남양주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 | 700 | 490 | 210 | 2015년 |
| 의정부 | 귀락도로개설 | 1,088 | 870 | 218 | 2015년 |
| 의정부 | 곤제길도로개설 | 1,500 | 1,200 | 300 | 2015년 |
| 구리시 | 사노동도시계획도로개설 | 714 | 500 | 214 | 2015년 |
| 구리시 | 아치울마을현황구정비공사 | 750 | 525 | 225 | 2015년 |
| 양주시 | 유양공단도로정비사업 | 400 | 320 | 80 | 2015년 |
| 양주시 | 어둔동배수로정비공사 | 130 | 104 | 26 | 2015년 |
| 양주시 | 어둔동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1,000 | 800 | 200 | 2015년 |
| | 생활비용보조 | 52 | 39 | 13 | 2015년 |

〈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2016〉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계 | 도 및 16개 시·군 39건/ 생활비용79세대 | 9,942 | 6,634 | 3,308 | |
| 경기도 | 군포 속달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 3,000 | 1,500 | 1,500 | 2016년 |
| 고양시 | 효자동 매미골 도로환경정비사업 | 1,000 | 700 | 300 | 2016년 |
| 고양시 | 능골천 정비공사 | 445 | 311 | 134 | 2016년 |
| 고양시 | 섬말천 정비공사 | 1,091 | 764 | 327 | 2016년 |
| 광주시 | 서하리 구정비사업 | 60 | 42 | 18 | 2016년 |
| 광주시 | 한양(漢陽) 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6년 |
| 군포시 | GB 현황조사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 18 | 14 | 4 | 2016년 |
| 군포시 | 죽암천 누리길 조성사업 | 860 | 688 | 172 | 2016년 |
| 김포시 |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590 | 413 | 177 | 2016년 |
| 남양주 |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 1,000 | 800 | 200 | 2016년 |
| 남양주 | 월문1리~5리 도로확포장공사 | 708 | 566 | 142 | 2016년 |
| 남양주 | 삼패2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170 | 136 | 34 | 2016년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시군명 | 사 업 명 | 사 업 비(백만원) | | | 비고 |
|-----|----------------------------|------------|-------|-------|-------|
| | | 계 | 국 비 | 구·군비 | |
| 남양주 | 수락·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 | 900 | 720 | 180 | 2016년 |
| 남양주 | 월문천 누리길 조성사업 | 89 | 71 | 18 | 2016년 |
| 부천시 | 춘의동 밤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6년 |
| 부천시 | 솔안말 농업생태공원 경관사업 | 1,400 | 980 | 420 | 2016년 |
| 성남시 | 성남시 고등동 도시가스 공급 | 1,940 | 645 | 1,295 | 2016년 |
| 수원시 | 주민지원 연구조사사업 | 20 | 14 | 6 | 2016년 |
| 수원시 | 오룡골 마을진입 도로개설공사 | 80 | 56 | 24 | 2016년 |
| 수원시 | 당수동727-6번지 일원배수로 설치공사 | 200 | 140 | 60 | 2016년 |
| 수원시 | 당수동730번지 일원배수로 설치공사 | 400 | 280 | 120 | 2016년 |
| 시흥시 |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 1,359 | 951 | 408 | 2016년 |
| 시흥시 | 군자, 장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 560 | 392 | 168 | 2016년 |
| 시흥시 | 시흥 바라지 물길 누리길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2016년 |
| 시흥시 | 신천근린 여가녹지 조성사업 | 2,500 | 1,000 | 1,500 | 2016년 |
| 안산시 | 화정동 너비울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 800 | 330 | 470 | 2016년 |
| 안산시 | 우산리 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15 | 150 | 65 | 2016년 |
| 안산시 |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787 | 551 | 236 | 2016년 |
| 양주시 | 울대2리 구거정비사업 | 300 | 240 | 60 | 2016년 |
| 양주시 | 울대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등 | 750 | 600 | 150 | 2016년 |
| 양주시 | 양주 관아 여가녹지 조성사업 | 1,000 | 800 | 200 | 2016년 |
| 양평군 | 골용진~가정상촌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 | 412 | 370 | 42 | 2016년 |
| 양평군 | 몽양길 경관사업 | 300 | 270 | 30 | 2016년 |
| 의왕시 | 초평동 새말취락 도로개설 | 888 | 621 | 267 | 2016년 |
| 의정부 | 귀락도로개설(중로3-1호선) | 540 | 486 | 54 | 2016년 |
| 의정부 | 곤제길 도로개설 | 334 | 300 | 34 | 2016년 |
| 하남시 |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1,243 | 870 | 373 | 2016년 |
| 화성시 | 매송면소하천(학교내천) 정비사업 | 1,158 | 810 | 348 | 2016년 |
| | 생활비용보조 12개시군 79세대 | 47 | 37 | 10 | 2016년 |

● 경기도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경기도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는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주택개량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목표를 정함

〈향후 5년 간 사업별 추진목표(2017~2021)〉

| 구분 | 정비대상 (A) | 정비실적 (B) | 추진목표 (B/A) | |
|--------|-------------|----------|-----------------------------|-----------------------------------|
| 생활편익 | (비법정)도로 | 586.80km | 374.73km (향후5년정비계획4.2km) | (378.93km) 65% (향후5년정비 실적0.7%) |
| | 주차장 | 4,000㎡ | 4,000㎡ | 100% |
| | 상·하수도 | 1.8km | 1.8km | 100% |
| | (비법정)소하천및교량 | 644.87km | 309.34km (향후5년정비계획2.2km) | (311.54km) 49% (향후5년정비 실적0.3%) |
| | 소공원 | 5,500㎡ | 5,500㎡ | 100% |
| | 농배수로 | 1.11km | 1.11km | 100% |
| | 기타 (도시가스) | 19.6km | 19.6km | 100% |
| | 기타 (체육시설) | 48,684㎡ | 48,684㎡ | 100% |
| 복지증진 | 마을회관 | 1개소 | 1개소 | 100% |
| | 어린이놀이터 | 160㎡ | 160㎡ | 100% |
| 소득증대 | 공동작업장,공동창고 | - | - | 100% |
| | 자연생태,화훼마을 | - | - | 100% |
| | 주택개량 | 2건 | 2건 | 100% |
| | LPG소형저장탱크 | 8건 | 8건 | 100% |
| | 연구조사 | - | - | 100% |
| 환경문화사업 | 누리길 | 15km | 15km | 100% |
| | 여가녹지 | 590,046㎡ | 590,046㎡ | 100% |
| | 경관(전통문화) | 1.1km | 1.1km | 100% |
| | 생활공원 | 2,311㎡ | 2,311㎡ | 100% |
| | 생활비용보조 | 250세대 | 250세대 | 100% |

| 구분 | 대상지(개소) | 사업비(백만원)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합계 | 264 | 489,584 | 334,369 | 154,807 | 408 |
| 2017 | 62 | 34,281 | 23,625 | 10,248 | 408 |
| 2018 | 75 | 97,232 | 66,913 | 30,319 | - |
| 2019 | 51 | 113,626 | 77,828 | 35,798 | - |
| 2020 | 43 | 156,798 | 105,120 | 51,678 | - |
| 2021 | 33 | 87,647 | 60,883 | 26,764 | - |

● 추진계획 사업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 해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등)정비 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고 있어 최우선 지원대상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추진
-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경우 자격소득기준 완화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선정현황 〉

(2017)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62개소 | 34,281 | 23,625 | 10,248 | 408 | |
| 경기도 | 환경문화 | 군포 속달동 여가녹지 | 2,700 | 1,200 | 1,500 | 0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섬말천(효릉천)정비공사 | 800 | 500 | 300 | 0 | 상 |
| 고양시 | 복지증진 | 행신2동28통마을회관정비 | 260 | 182 | 78 | 0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중모루천 정비공사 | 775 | 602 | 173 | 0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자유로 부체도로 개설공사 | 900 | 630 | 270 | 0 | 상 |
| 고양시 | 환경문화 | 선유, 오금동 누리길 | 200 | 140 | 60 | 0 | 상 |
| 과천시 | 생활편익 | 궁말지구 도로조성사업 | 806 | 564 | 242 | 0 | 상 |
| 광명시 | 생활편익 | 구석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 498 | 398 | 100 | 0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양지촌취락도로, 주차장, 소공원 | 614 | 430 | 184 | 0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정지1리 구거정비사업 | 90 | 63 | 27 | 0 | 상 |
| 광주시 | 환경문화 | 한양(漢陽) 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0 | 상 |
| 광주시 | 환경문화 |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사업 | 500 | 350 | 150 | 0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초월읍 서하(안골)리 LPG지원 | 156 | 98 | 42 | 16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광주시 초월읍서하리 241번지 | 22 | 14 | 6 | 2 | 상 |
| 구리시 | 생활편익 |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 | 600 | 480 | 120 | 0 | 상 |
| 구리시 | 환경문화 | 곤충생태공원 조성사업 | 1,250 | 1,000 | 250 | 0 | 상 |
| 군포시 | 환경문화 | 초막골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 1,000 | 800 | 200 | 0 | 상 |
| 김포시 | 생활편익 | 고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 530 | 371 | 159 | 0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월문1리-월문5리도로확포장공사 | 900 | 720 | 180 | 0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월문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 725 | 580 | 145 | 0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월문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 600 | 480 | 120 | 0 | 상 |
| 남양주 | 환경문화 |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사업 | 700 | 560 | 140 | 0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진 개소읍 용정1리 아랫독정 | 240 | 173 | 43 | 24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조안면 시우리 광명부락 | 334 | 241 | 60 | 33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조안면 시우리 동간부락 | 394 | 284 | 71 | 39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진 개소읍 용정4리 지세부락 | 223 | 161 | 40 | 22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조안면 능내리 능내역전2마을 | 258 | 186 | 46 | 26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조안면 능내리 능내역전마을 | 268 | 193 | 48 | 27 | 상 |
| 부천시 | 환경문화 | 춘의 나눔 여가녹지 조성사업 | 1,000 | 800 | 200 | 0 | 상 |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성남시 | 생활편익 | 성남시고등동 도시가스공급 | 1,658 | 829 | 829 | 0 | 상 |
| 수원시 | 생활편익 | 오룡골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 856 | 599 | 257 | 0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 | 1,000 | 700 | 300 | 0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군자유소년 축구장 조성사업 | 363 | 254 | 109 | 0 | 상 |
| 시흥시 | 환경문화 | 신천근린여가복지조성사업 | 2,500 | 1,000 | 1,500 | 0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과림동 208-4일원 과림저수지 취락 | 207 | 130 | 56 | 21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월곡동 221-1 별감취락 | 99 | 62 | 27 | 10 | 상 |
| 안산시 | 생활편익 | 우산리 취락 도시계획 도로 | 316 | 221 | 95 | 0 | 상 |
| 안산시 | 생활편익 |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606 | 501 | 105 | 0 | 상 |
| 안산시 | 생활편익 | 반월동삼천리마을도시가스공급관 | 800 | 400 | 400 | 0 | 상 |
| 안양시 | 생활편익 | 비산3동비산체육공원주변도로개설 | 671 | 470 | 201 | 0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강춘천 사면보강사업 | 185 | 148 | 37 | 0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어둔동 위험사면 보강사업 | 110 | 88 | 22 | 0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마전동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 | 784 | 627 | 157 | 0 | 상 |
| 양주시 | 환경문화 | 남방 새뜰休 여가복지 조성사업 | 400 | 320 | 80 | 0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장흥면 울대1리 울대1마을 | 435 | 300 | 91 | 43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골용진~가정상촌지구연결도로개설 | 792 | 712 | 80 | 0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양평군양서면부용리가정·상촌마을 | 393 | 300 | 54 | 39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양서면 양수리 골용진 마을 | 145 | 117 | 13 | 14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17-3 | 22 | 18 | 2 | 2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 | 623 | 498 | 125 | 0 | 상 |
| 의왕시 | 환경문화 | 오봉산 맑은숲 공원 여가복지 | 1,250 | 1,000 | 250 | 0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백운로 158-7 | 22 | 16 | 4 | 2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백운로 154 | 90 | 16 | 4 | 70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골우물길 19 | 22 | 16 | 4 | 2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백운로 158-8 | 22 | 16 | 4 | 2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백운로 152-1 | 30 | 16 | 4 | 10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의왕시 새말길 32-7 | 22 | 16 | 4 | 2 | 상 |
| 의정부 | 생활편익 | 구성말2취락도로개설공사 | 590 | 531 | 59 | 0 | 상 |
| 의정부 | 생활편익 | 부용터널 상부 유희공간 체육시설 | 155 | 135 | 20 | 0 | 상 |
| 의정부 | 환경문화 | 수락산·용암산누리길조성사업 | 650 | 585 | 65 | 0 | 상 |
| 하남시 | 생활편익 |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100 | 70 | 30 | 0 | 상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018〉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75개소 | 97,232 | 66,913 | 30,319 |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중모루천 정비공사 | 525 | 349 | 176 | 상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자유로부체도로 개설공사 | 715 | 500 | 215 | 상 | |
| 남양주 | 생활편익 |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 1,574 | 1,102 | 472 | 상 | |
| 의왕시 | 생활편익 | 하늘침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 | 323 | 226 | 97 | 상 | |
| 화성시 | 생활편익 | 동학~벌말 도로 확포장공사 | 271 | 190 | 81 | 상 | |
| 의정부 | 생활편익 | 구성말2취락 도로개설 공사 | 999 | 799 | 200 | 상 | |
| 의정부 | 생활편익 | 부용터널 상부 유희공간 체육시설 | 95 | 76 | 19 | 상 | |
| 구리시 | 생활편익 |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 | 1,057 | 740 | 317 | 상 | |
| 안양시 | 생활편익 | 비산3동 비산체육공원 도로개설 | 1,250 | 875 | 375 | 상 | |
| 광주시 | 생활편익 | 양짓촌 취락 도로 조성사업(2차분) | 710 | 497 | 213 | 상 | |
| 과천시 | 생활편익 | 궁말지구 도로 조성사업 | 195 | 136 | 59 | 상 | |
| 안산시 | 생활편익 | 우산리 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 | 600 | 420 | 180 | 상 | |
| 안산시 | 생활편익 | 창말 체육시설 조성공사 | 124 | 87 | 37 | 상 | |
| 양평군 | 생활편익 | 골용진~가정상촌지구 도로개설공사 | 278 | 250 | 28 | 상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새말천 정비공사 | 715 | 500 | 215 | 상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작고개천 소하천정비사업 | 1,658 | 1,326 | 332 | 상 | |
| 시흥시 | 생활편익 | 방산로 확포장공사(3단계) | 1,371 | 960 | 411 | 상 | |
| 의왕시 | 생활편익 |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 | 1,000 | 700 | 300 | 상 | |
| 화성시 | 생활편익 | 소하천(서호천)정비공사 | 1,050 | 735 | 315 | 상 | |
| 광주시 | 생활편익 | 검복리 남벽수 도로 조성사업 | 549 | 384 | 165 | 상 | |
| 광명시 | 생활편익 | 밤일안로42번길 도로개선 공사 | 903 | 632 | 271 | 상 | |
| 하남시 | 생활편익 | 상수도 급수관 설치 | 900 | 630 | 270 | 상 | |
| 수원시 | 생활편익 | 상광교동 도로개설 | 566 | 396 | 170 | 상 | |
| 김포시 | 생활편익 | 풍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380 | 190 | 190 | 상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죽울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 | 3,000 | 2,100 | 900 | 중 | |
| 시흥시 | 생활편익 |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200 | 1,500 | 700 | 중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중고개취락도로개설공사 | 1,835 | 1,285 | 551 | 중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오리천 소하천정비사업 | 1,000 | 800 | 200 | 중 | |
| 남양주 | 생활편익 |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공급사업 | 2,286 | 1,600 | 686 | 중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울포마을회관 재건축 | 258 | 181 | 77 | 중 | |
| 의정부 | 생활편익 | 금곡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 1,588 | 1,270 | 318 | 중 | |
| 구리시 | 생활편익 | 아치울마을 보행로개설공사 | 480 | 336 | 144 | 중 | |
| 광주시 | 생활편익 | 서하리 도로 정비사업 | 30 | 21 | 9 | 중 | |
| 안산시 | 생활편익 | 양상동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 2,178 | 1,089 | 1,089 | 중 | |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신원동 물구리 도로개설공사 | 1,492 | 1,044 | 448 | | 중 |
| 양주시 | 생활편익 | 불곡천 소하천정비사업 | 1,890 | 1,512 | 378 | | 중 |
| 남양주 | 생활편익 |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공사 | 2,000 | 1,400 | 600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불당리 도로조성사업 | 300 | 210 | 90 | | 중 |
| 안산시 | 생활편익 | 벌터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 1,500 | 1,050 | 450 | | 중 |
| 고양시 | 생활편익 | 오금동 큰골취락 도로개설공사 | 2,020 | 1,414 | 606 | | 중 |
| 남양주 | 생활편익 | 수석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300 | 210 | 90 | | 중 |
| 시흥시 | 생활편익 | 정왕~신길온천역 도로개설공사 | 3,000 | 2,100 | 900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검천2리 구거정비사업 | 100 | 70 | 30 | | 중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도내동 도로개설공사 | 1,170 | 819 | 351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정지1리 구거정비사업 | 100 | 70 | 30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서하리 구거 정비사업 | 60 | 42 | 18 | | 중 |
| 고양시 | 생활편익 | 원당동길 도로확장공사 | 800 | 560 | 240 | | 중 |
| 남양주 | 생활편익 | 적성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2,500 | 1,750 | 750 | | 하 |
| 광주시 | 생활편익 | 영동리 석둔 도로 조성사업 | 240 | 168 | 72 | | 하 |
| 구리시 | 생활편익 | 사노동 언제말 도로개설사업 | 6,743 | 4,720 | 2,023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소하천(항골천) 정비사업 | 6,857 | 4,800 | 2,057 | | 하 |
| 화성시 | 생활편익 | 상기~내리 도로 확포장공사 | 10,000 | 7,000 | 3,000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소하천(고양골천) 정비사업 | 7,000 | 4,900 | 2,100 | | 하 |
| 시흥시 | 노후주택 | 월곶동215번지(최완진) | 22 | 14 | 6 | | 상 |
| 의왕시 | 노후주택 | 골우물길9-4(이장우) | 22 | 14 | 6 | | 상 |
| 남양주 | LPG | 북한강로 113번길 92-1일원 | 200 | 126 | 54 | | 상 |
| 남양주 | LPG | 조안면 152-3 일원 | 400 | 252 | 108 | | 상 |
| 남양주 | LPG | 일패동 414-47 | 170 | 107 | 46 | | 상 |
| 남양주 | LPG | 별내면 청학리 105-13 일원 | 250 | 158 | 68 | | 상 |
| 남양주 | LPG | 조안면 송촌2리 854번지 | 346 | 218 | 93 | | 상 |
| 남양주 | LPG | 와부읍 도곡4리 912번지 | 110 | 69 | 30 | | 상 |
| 광주시 | 환경문화 |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 | 700 | 490 | 210 | | 중 |
| 김포시 | 환경문화 | 굴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 650 | 455 | 195 | | 중 |
| 남양주시 | 환경문화 |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사업 | 900 | 630 | 270 | | 상 |
| 양평군 | 환경문화 | 부용산 임금님 방귀길 조성사업 | 1,000 | 900 | 100 | | 상 |
| 의정부 | 환경문화 | 소풍길 대구간 2코스 | 500 | 400 | 100 | | 상 |
| 과천시 | 환경문화 | 갈현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 2,350 | 1,000 | 1,350 | | 상 |
| 구리시 | 환경문화 | 곤충생태공원화 조성사업 | 1,250 | 1,000 | 250 | | 상 |
| 부천시 | 환경문화 | 원미산 너나들이 힐링숲 여가녹지 | 1,000 | 700 | 300 | | 상 |
| 부천시 | 환경문화 |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 | 700 | 490 | 210 | | 상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시흥시 | 환경문화 | 조남 삼림욕장 힐링 여가녹지 | 800 | 560 | 240 | | 상 |
| 시흥시 | 환경문화 | 죽울 체육 여가녹지 조성사업 | 3,000 | 1,000 | 2,000 | | 하 |
| 의왕시 | 환경문화 | 모락산 휴양공간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 하 |
| 광주시 | 환경문화 | 팔당호반 수청나루 일대 경관사업 | 1,000 | 700 | 300 | | 상 |
| 용인시 | 환경문화 | 서봉사지 복원정비 사업 | 280 | 210 | 70 | | 중 |

〈2019〉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51개소 | 113,626 | 77,828 | 35,798 | | |
| 남양주 | 생활편익 |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 2,000 | 1,600 | 40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동산취락(소로1-151호선) 도로개설 | 1,775 | 1,243 | 533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삼성리 수반 도로, 주차장, 소공원 | 2,000 | 1,400 | 600 | | 상 |
| 화성시 | 생활편익 | 소하천(서호천)정비공사 | 300 | 210 | 90 |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방산로 확포장공사 | 5,000 | 3,500 | 1,500 |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작고개천 등) | 1,530 | 1,224 | 306 | | 상 |
| 하남시 | 생활편익 | 청뜰취락 진입로 개설공사 | 5,800 | 4,060 | 1,710 | | 상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부용터널 상부 유희공간 체육시설 | 798 | 652 | 146 | | 상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금곡취락지구 도로개설 | 947 | 758 | 189 |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초평동 취락간 도로개설공사 | 2,786 | 1,950 | 836 | | 상 |
| 안산시 | 생활편익 | 부곡동 옹기마을 도시가스 공급 | 720 | 360 | 360 | | 상 |
| 구리시 | 생활편익 |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 6,780 | 4,725 | 2,055 |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골용진 ~ 가정상촌지구 도로 | 1,500 | 1,350 | 50 | | 상 |
| 남양주 | 생활편익 | 적성골 마을안길 확장공사 | 2,500 | 1,750 | 75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새말천 정비공사 | 1,000 | 700 | 30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독곶천 정비공사 | 100 | 70 | 3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대자동 새원취락 도로개설공사 | 500 | 350 | 15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지축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 520 | 364 | 156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놀이천 정비공사 | 100 | 70 | 30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귀여리 수리울 도로, 주차장, 소공원 | 2,000 | 1,400 | 600 | | 상 |
| 화성시 | 생활편익 | 동학~별말간 도로 확포장공사 | 3,250 | 2,275 | 975 |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계란마을천 정비공사 | 2,855 | 1,999 | 857 | | 상 |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오리천) | 675 | 540 | 135 |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불곡천) | 879 | 703 | 176 | | 상 |
| 하남시 | 생활편익 | 풍산~초일간 도시계획도로 | 6,900 | 4,830 | 2,070 | | 상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능안말취락지구 도로개설 | 2,535 | 2,028 | 507 |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하늘쉼터 진입도로 공사 | 3,000 | 2,100 | 900 | | 상 |
| 구리시 | 환경문화 | 곤충생태공원화 조성사업(2차년도) | 3,470 | 2,776 | 694 |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두물머리 주차장 개설사업 | 550 | 500 | 50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오전리노후소교량재가설및 | 70 | 49 | 21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검복리 구거정비공사 | 80 | 56 | 24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셋말천 정비공사 | 100 | 70 | 30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삼성3리 LPG소형저장탱크사업 | 150 | 105 | 45 | | 상 |
| 시흥시 | 환경문화 | 놀자숲 여가복지조성사업 | 500 | 350 | 15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삼송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 600 | 420 | 180 | | 하 |
| 고양시 | 생활편익 | 흥도동 솔밭1길 도로개설공사 | 805 | 564 | 242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달월역사~고잔마을 진입도로 | 1,000 | 700 | 300 | | 하 |
| 시흥시 | 환경문화 | 약초식물원 조성사업 | 1,000 | 700 | 300 | | 하 |
| 고양시 | 생활편익 |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 1,300 | 910 | 39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신천대야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2,000 | 1,000 | 1,0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매화동 도로(중2-102호선)개설 | 2,200 | 1,540 | 660 | | 하 |
| 구리시 | 생활편익 |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 | 2,500 | 2,000 | 5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신현매화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목감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월곶정왕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과림,계수지역 취락지구 진입로 | 4,000 | 2,000 | 2,00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매화천 정비공사 | 3,511 | 2,458 | 1,053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 3,630 | 2,541 | 1,089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청들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700 | 2,590 | 1,11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정왕~신길온천역간 도로개설공사 | 6,343 | 4,440 | 1,900 | | 하 |
| 화성시 | 생활편익 | 상기~내리 도로 확포장공사 | 5,500 | 3,850 | 1,650 | | 하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020)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43개소 | 156,798 | 105,120 | 51,679 | | |
| 남양주시 | 생활편익 |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 1,286 | 1,029 | 257 | 상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새말천 정비공사 | 500 | 350 | 150 | 상 | |
| 광주시 | 생활편익 | 수청리 구황동 도로 조성사업 | 600 | 420 | 180 | 상 | |
| 화성시 | 생활편익 | 상기~내리 도로 확포장공사 | 4,000 | 2,800 | 1,200 | 상 | |
| 시흥시 | 생활편익 | 방산로 확포장공사 | 10,005 | 7,003 | 3,002 | 상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작고개천 등) | 1,530 | 1,224 | 306 | 상 | |
| 하남시 | 생활편익 | 성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 6,300 | 4,410 | 1,890 | 상 |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금곡취락지구 도로개설 | 956 | 765 | 191 | 상 | |
| 의왕시 | 생활편익 | 하늘쉼터 진입도로 공사 | 1,500 | 1,050 | 450 | 상 | |
| 안산시 | 생활편익 | 팔곡일동 도시가스 공급관 | 940 | 470 | 470 | 상 | |
| 양평군 | 생활편익 | 골용진 ~ 가정상촌지구 도로 | 770 | 695 | 75 | 상 | |
| 남양주시 | 생활편익 | 적성골 마을안길 확장공사 | 1,300 | 1,120 | 180 | 상 |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동산취락(소로1-151호선) 도로개설 | 300 | 210 | 90 | 상 | |
| 광주시 | 생활편익 | 상번천리 앞말 도로, 주차장, 공원 | 2,000 | 1,400 | 600 | 상 | |
| 화성시 | 생활편익 |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 개설 | 3,000 | 2,100 | 900 | 중 | |
| 시흥시 | 생활편익 | 덕석골천 정비공사 | 15,137 | 10,596 | 4,541 | 중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오리천) | 675 | 540 | 135 | 중 | |
| 하남시 | 생활편익 | 개미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600 | 1,820 | 780 | 중 |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능안말취락지구 도로개설 | 1,280 | 1,024 | 256 | 중 | |
| 의왕시 | 생활편익 | 이동 양회기지 도로개설공사 | 10,217 | 7,152 | 3,065 | 중 | |
| 양평군 | 생활편익 | 신원2리 어린이놀이터, 마을간판 | 110 | 100 | 10 | 중 |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독곶천 정비공사 | 3,000 | 2,100 | 900 | 중 | |
| 광주시 | 생활편익 | 남종면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 30,000 | 21,000 | 9,000 | 중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신현매화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중 |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불곡천) | 879 | 703 | 176 | 중 | |
| 광주시 | 생활편익 | 광지원리 농로포장공사 | 40 | 28 | 12 | 중 | |
| 광주시 | 생활편익 | 엄미리 구거정비공사 | 100 | 70 | 30 | 중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지축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 110 | 77 | 33 | 중 | |
| 고양시 | 생활편익 | 대자동 새원취락 도로개설공사 | 177 | 124 | 53 | 하 | |
| 고양시 | 생활편익 | 흥도동 솔밭1길 도로개설공사 | 750 | 525 | 225 | 하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삼송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 1,000 | 700 | 300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신천대야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2,000 | 1,000 | 1,000 | 하 | |
| 시흥시 | 환경문화 | 물왕 여가녹지조성사업 | 2,500 | 1,000 | 1,500 | 하 | |
| 시흥시 | 환경문화 | 뒷방울 여가녹지조성사업 | 2,000 | 1,000 | 1,000 | 하 | |
| 시흥시 | 환경문화 | 효문화 공원 조성 사업 | 2,500 | 1,000 | 1,500 | 하 |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도내동 셋말취락 도로개설공사 | 2,021 | 1,415 | 606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목감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월곶정왕지역 취락지구 마을진입로 | 4,000 | 2,000 | 2,000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과림,계수지역 취락지구 진입로 | 4,000 | 2,000 | 2,000 | 하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셋말천 정비공사 | 3,000 | 2,100 | 900 | 하 | |
| 고양시 | 생활편익 | 놀이천 정비공사 | 3,400 | 2,380 | 1,020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소래천 정비공사 | 3,581 | 2,507 | 1,074 | 하 | |
| 시흥시 | 생활편익 | 양오재천 정비공사 | 18,734 | 13,114 | 5,620 | 하 | |

〈2021〉

| 구별 | 유형 | 사업명 | 사업비(백만원) | | | | 중요도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 합계 | | 33개소 | 87,647 | 60,883 | 26,764 | | |
| 고양시 | 생활편익 | 삼송동 삼송취락 도로개설공사 | 300 | 210 | 90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상번천리 내곡 도로,소공원 | 1,500 | 1,050 | 450 | | 상 |
| 화성시 | 생활편익 | 집단취락지구 내 도로 개설 | 3,000 | 2,100 | 900 | | 상 |
| 시흥시 | 생활편익 | 양오재천 정비공사 | 18,734 | 13,114 | 5,620 | | 상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작고개천 등) | 1,530 | 1,224 | 306 | | 상 |
| 하남시 | 생활편익 | 광암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400 | 1,680 | 720 | | 상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금곡취락지구 도로개설 | 89 | 71 | 18 | | 상 |
| 의왕시 | 생활편익 | 새말(이동)도시계획도로 | 2,089 | 1,463 | 626 | | 상 |
| 안산시 | 생활편익 | 신길동 능길지역 도시가스 공급 | 370 | 185 | 185 | | 상 |
| 양평군 | 생활편익 | 분점천 개수사업(신원2리) | 1,650 | 1,500 | 150 | | 상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독곶천 정비공사 | 2,400 | 1,680 | 720 | | 상 |
| 광주시 | 생활편익 | 삼성1리 구거 정비사업 | 100 | 70 | 30 | | 중 |
| 시흥시 | 생활편익 | 소래천 정비공사 | 3,581 | 2,507 | 1,074 | | 중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오리천) | 675 | 540 | 135 | | 중 |
| 하남시 | 생활편익 | 개뎡이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300 | 2,310 | 990 | | 중 |
| 의정부시 | 생활편익 | 능안말취락지구 도로개설 | 455 | 364 | 91 | | 중 |
| 의왕시 | 생활편익 | 독정 도로개설공사 | 1,658 | 1,161 | 497 | | 중 |
| 양평군 | 생활편익 | 부용2리하천변경관사업 (재방산책로,공원,임야수종) | 220 | 200 | 20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오전리 농로포장공사 | 30 | 21 | 9 | | 중 |
| 광주시 | 생활편익 | 엄미리 농로포장공사 | 50 | 35 | 15 | | 중 |
| 고양시 | 생활편익 | 흥도동 솔밭1길 도로개설공사 | 550 | 385 | 165 | | 중 |
| 양주시 | 생활편익 | 소하천정비사업(불곡천) | 879 | 703 | 176 | | 중 |
| 고양시 | 생활편익 | 불당골취락 도로개설공사 | 1,050 | 735 | 315 | | 하 |
| 고양시 | 생활편익 | 셋말천 정비공사 | 1,100 | 770 | 330 | | 하 |
| 시흥시 | 환경문화 | 물왕 여가녹지조성사업 | 2,500 | 1,000 | 1,500 | | 하 |
| 시흥시 | 환경문화 | 뒷방울 여가녹지조성사업 | 2,000 | 1,000 | 1,000 | | 하 |
| 고양시 | 생활편익 | 도내동 셋말취락 도로개설공사 | 1,500 | 1,050 | 450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하산골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2,500 | 1,750 | 750 | | 하 |
| 고양시 | 생활편익 | 놀이천 정비공사 | 3,000 | 2,100 | 900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000 | 2,800 | 1,200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춘장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400 | 3,080 | 1,320 | | 하 |
| 하남시 | 생활편익 | 버섯골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900 | 3,430 | 1,470 | | 하 |
| 시흥시 | 생활편익 | 덕석골천 정비공사 | 15,137 | 10,596 | 4,541 | | 하 |

4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1.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가. 기존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총량 설정
- 지자체별 조정총량은 4·5등급지 비율, 도시여건, 공간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총량을 산정한 후 조정가능지역 내 4·5등급지 포함 비율을 감안하여 허용총량을 산정
- 기준 총량은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도시여건, 공간정책등과 관련한 변수를 선정한 뒤, 변수간 상대적 비중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한 시·군별 표준화 종합점수를 선정
- 시·군별 조정가능지역(허용총량) 설정규모는 기준 총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정가능지역의 4·5등급 포함비율을 50%(수도권60%)이상으로 환경훼손 억제

•변수
 - 환경평가결과 : 개발제한구역면적대비 4·5등급지 비율
 - 도시여건: 행정구역면적대비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 1인당 시가화 면적
 - 공간정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비수도권, 부핵육성대상 여부
 표준화 종합점수: 환경평가결과 표준화점수X0.6(가중치)+ 도시여건 표준화점수 X 0.2 + 공간정책 표준화점수 X 0.2

나. 조정가능지역 선정

- 조정가능지역(집단취락 포함)은 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설정
- 일정기준 이상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 집단취락]으로 지정하여 해제 추진
-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4·5등급 토지가 일정비율이상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
- 대규모 국책사업지구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공간구조 상 개발이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지구는 허용총량과 별도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
- 국책사업지구와 지역현안사업지구는 조정가능지역과 같이 수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국책사업 중 임대주택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중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다.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1) 개발행위허가 제한

-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은 높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일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여 난개발 확산을 방지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5장
-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 녹지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공고의 시행일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 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2) 관련정보 누설 금지 대책

- 해제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 해제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용역, 검토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청구하며,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대상지 조사 개시일 부터 지구지정 제안일, 지구지정 제안일에서 주민의견 청취의 기간 최소화
 - 대상지조사 및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등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협의내용·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 기록·관리

3) 투기과열지구 지정

- 해제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투기방지 대책 수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반드시 관계 서류 등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사후에는 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행위 세부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 심의 강화 및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법령 위반자에게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
- 관련 법규
 - 『주택법』 제41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6장

4) 불법행위 단속 강화

-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점검 강화를 통하여 관리함

5)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주변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복구사업 시행을 통하여 관리방안 수립
- 관련 법규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

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훼손지 복구 또는 복구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에 대해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훼손지 현황 파악 및 복구대상사업 지역을 선정

나.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 5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다. 훼손지복구사업의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시 해제면적의 10~20%의 해당하는 훼손지에 대해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훼손지 현황파악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하여 관리계획에 반영

라. 훼손지 정의

-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농업용, 화훼용 제외), 공장, 창고, 주택, 상가 등의 시설물 설치로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토지

마. 훼손지 판정

-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필지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
- 단, 훼손시설 면적이 20%미만이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해당 훼손시설면적을 훼손지로 판정
-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

바. 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1) 관리계획에 반영된 복구대상지 우선 선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의 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 계획”이 반영된 지역을 우선 선정

2)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제대상지로부터 인접한 훼손지
 - 10km이내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시·군·구내의 인접지와 해제대상지로부터 5km이내 훼손지 우선 선정
- 해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달성 효과가 큰 곳
 - 친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경관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서식처 등
 -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
-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
 -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 개발제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하지 않은 공원

3) 복구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훼손지역

- 개발제한구역 해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중이거나 건축 또는 설치가 완료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은 복구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

사.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설정 기준

1) 포함 할 수 있는 지역

- 사실상 대지화되는 등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복구사업지역 구역경계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훼손지 주변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훼손지 포함 범위

-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훼손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된 훼손지를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함
 - 복구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경우 훼손지를 100분의 40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3) 복구사업지역의 개소당 면적

- 복구사업지역의 개소 당 면적은 1만㎡이상으로 설정하나, 훼손지가 점형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태에 따라 1만㎡미만으로 소규모의 복구사업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음

아. 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기준

1)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경계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을 기준으로 경계설정
- 경계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성격, 기설치 또는 사업계획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 설정

2) 자연환경요인에 의한 경계 설정

- 하천, 산지, 구릉지, 경사지 등 자연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

3) 재해요인에 의한 경계 설정

- 침수·붕괴 등 심각한 재해요인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되, 복구사업으로 인해 지역 전체의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지에 포함
- 지구경계에 연접하여 하천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서 기수립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설정

4)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의한 경계 설정

- 이미 형성된 도시지역과의 연접으로 인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중 복구 사업에 의해 연담화 방지가 예상되는 지역

5) 도시방재 및 그린네트워크 고려 등

- 주변지역의 도시방재 및 그린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자. 훼손지 복구 방안

1) 복구 원칙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녹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
 -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기능을 확보
 -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휴식공간으로 활용

2) 복구사업의 유형

- 원형복구: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로 복구
 - 원형복구가 가능한 지목은 과, 전, 담, 목, 임, 천, 공원 등으로 한정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은 철거
 - 토지는 매수하되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원래 지목의 용도로 원형 복구하고 유지 관리
 - 도시민의 여가 및 영농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 영농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공원 · 녹지조성사업
 -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 최소화하여 생태복원적 녹지기능이 제고되도록 복구
 -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 자연적인 공간조성을 통한 도시민들의 친 환경적인 휴식 공간 제공
 -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 도시림, 생활림 등
 - 도시공원: 도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 녹지: 소음, 공해 등의 방지,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차. 훼손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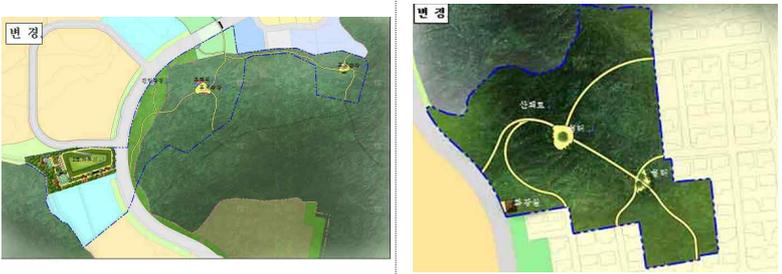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 기 선정된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계획 〉

| 구 분 | 복구사업 선정지 | | 현황 |
|-----|----------|----------------------|----------------|
| | 개소 | 면적(km ²) | |
| 계 | 5 | 0.19 | |
| 강남구 | 2 | 0.21 | 세곡2 보금자리 |
| 서초구 | 2 | 0.14 | 서초보금자리, 내곡보금자리 |
| 송파구 | 1 | 0.01 | 오금지구 공공주택 |

| 사업구분 | 계획 상세 내용 | | 향후 처리계획 (연도별 상세 계획 명시) | 비고 |
|--|--|---|----------------------------------|-----|
| 세곡2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 강남구 자곡동 574-8번지 일원 (99,881m ²) |  | 사업비:12,757억원 사업기간 : 2009~2013 | 완료 |
| 세곡2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 강남구 율현동 77-9 (105,963m ²) |  | 사업비:8,876억원 사업기간 : 2010~2017 | 조성중 |
| 서울오금지구 공공주택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 오금동97-2 (12,795m ²) |  | 사업비:2,240억원 사업기간 : 2012~2017 | 조성중 |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 서초구 우면동 418 (38,950m ²) |  | 사업비:4,788억원 사업기간 : 2009~2013 | 완료 |
| 서울 내곡보금자리 주택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 서초구 신원동 296번지 일원 (99,070m ²) |  | 사업비:10,280억원 사업기간 : 2009~2014 | 완료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 | | | 연번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장 | | |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 |
| ① 위치 | 강남구 자곡동 574-8번지 일원 | | ② 면적 (㎡) | 99,881 | ②-1 훼손지율 | 60% |
| ③ 유형 | 공원 및 녹지조성 | | ④ 사업비(억원) | 1,121 | | |
| ⑤ 복구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⑥ 사업기간 | 2009 ~ 2013 | |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0. 12. 14. | | ⑦-1 관련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서초단지개발부-303호 (2010.12.14.) | |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 |
| ① 개발사업명 |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 ② 관련 법령 |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
| ③ 입안권자 | 국토해양부 | ③-1 입안일자 | 2009.6.3. | ④ 개발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 ⑤ 사업비(억원) | 12,757 | | ⑥ 사업기간 | 2009 ~ 2013 | | |
| ⑦ 해제면적(㎡) | 874,334.6 | | ⑧ 해제일자 | 2009. 9. 28. | | |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제2009-933호 | | | | |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 |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조건사항 없음 | | | |
| 4. 대상지 현황 | | | | | | |
| ■ 강남구 율현동 77-9번지 일대 | | |  | | | |
| | | | 현황도 | | | |
| ■ 강남구 율현동 77-9번지 일대 | | |  | | | |
| | | | 복구후 도면(A지역) | | (B지역) | |

| | | | | 연번 |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상 | | |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 |
| ① 위치 | 강남구 율현동 77-9번지 일원 | | ② 면적 (㎡) | 105,963 | ②-1 훼손지율 | 80% |
| ③ 유형 | 공원 및 녹지조성 | | ④ 사업비(억원) | 1,261 | | |
| ⑤ 복구사업자 | SH공사 | | ⑥ 사업기간 | 2010 ~ 2017 | |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1. 7. 19. | | ⑦-1 관련문서번호 | SH공사 개발계획팀-3734호 (2011.7.19.) | |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 |
| ① 개발사업명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 ② 관련 법령 |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
| ③ 입안권자 | 국토해양부 | ③-1 입안일자 | 2009.12.3. | ④ 개발사업자 | SH공사 | |
| ⑤ 사업비(억원) | 8,876 | | ⑥ 사업기간 | 2010 ~ 2017 | | |
| ⑦ 해제면적(㎡) | 650,557 | | ⑧ 해제일자 | 2010. 4. 27. | | |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제2010-242호 | | | | |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 |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조건사항 없음 | | | |
| 4. 대상지 현황 | | | | | | |
| <p>■ 강남구 율현동 77-9번지 일대</p> | | |  | | | |
| | | | 현황도 | | | |
| <p>■ 강남구 율현동 77-9번지 일대</p> | | |  | | | |
| | | | 복구후 도면 | | |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 | | | | 연번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장 | | | |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 | |
| ① 위치 | 오금동 97-2 | | | ② 면적 (㎡) | 12,795 | ②-1 훼손지율 | 4.9 |
| ③ 유형 | 공원 및 녹지조성 | | | ④ 사업비(억원) | 39 | | |
| ⑤ 복구사업자 | sh공사 | | | ⑥ 사업기간 | 2012~2017. | |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6.10.27 | | | ⑦-1 관련문서번호 | 택지조성부-5490 | |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 | |
| ① 개발사업명 | 서울오금지구 공공주택사업 | | | ② 관련 법령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 ③ 입안권자 | 국토해양부 | ③-1 입안일자 | 2012.1.4. | ④ 개발사업자 | sh공사 | | |
| ⑤ 사업비(억원) | 2,240 | | | ⑥ 사업기간 | 2012. ~ 2017. | | |
| ⑦ 해제면적(㎡) | 115,462 | | | ⑧ 해제일자 | 2012.12.20. | | |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8호 | | | | | |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 | | | | | |
| 4. 대상지 현황 | | | | | | | |
| <p>■ 송파구 오금동 97-2</p> | |  | | | | | |
| | | 현황도 | | | | | |
| <p>■ 송파구 오금동 97-2</p> | |  | | | | | |
| | | 복구후 도면 | | | | | |

2) 인천광역시

《 기 선정된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계획 》

| 사업 구분 | 계획 상세 내용 | | 향후 처리계획 (연도별 상세 계획 명시) | 비고 |
|----------------------|---------------------------------------|---|-------------------------------|----|
| 인천AG근처 공원조성 | 가. 서구 연희동 산148-15번지 일원(43,949㎡) |  | 사업비:345억원 사업기간 : 2015~2017 | 완료 |
| | 나.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일원 (18,074㎡) |  | | 완료 |
| | 다. 서구 연희동 200번지일원 (23,541㎡) |  | | 완료 |
| 서운산단공원 및 녹지 조성 | 가.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45,289㎡) |  | 사업비:128억원 사업기간 : 2013~2017 | 완료 |
| | 나. 계양구 방축동 80번지 일원 (8,093㎡) |  | | 완료 |
| 인천농산물도매 시장 경관녹지조성 | 남동구 도림동 518번지 (17,483㎡) |  | 사업비:76억원 사업기간 : 2015~2019 | 완료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훼손지 복구대장 〉

| | | | | 연번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장 | |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
| ① 위치 | 가. 인천시 서구 연희동 산148-15번지 일원 나. 인천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다. 인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 ② 면적 (㎡) | 85,564 | ②-1 훼손지율 | 가 : 50.8 나 : 50.0 다 : 62.9 |
| ③ 유형 | 공원조성 | ④ 사업비(억원) | 345억원 | | |
| ⑤ 복구사업자 | 인천광역시청 | ⑥ 사업기간 | 2015~2017 | |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3.12.27 | ⑦-1 관련문서번호 | 녹색도시과-3806 | |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
| ① 개발사업명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사업 | ② 관련 법령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 |
| ③ 입안권자 | 인천광역시청 | ③-1 입안일자 | '09.10.29 '10.2.16 | ④ 개발사업자 | 인천광역시청 |
| ⑤ 사업비(억원) | 12,796 | ⑥ 사업기간 | 2009 ~ 2015 | | |
| ⑦ 해제면적(㎡) | 1,370,149 | ⑧ 해제일자 | '10.5.14 '10.10.22 | | |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96호(2010.5.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4호(2010.10.22), | | | |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보전부담금 납부 방법과 병행 결정 | | | | |
| 4. 대상지 현황 | | | | | |
| 가. 서구 연희동 산148-15번지 일원 (43,949㎡) |  | |  | | |
| | 현황도 | | 복구후 도면 | | |
| 나.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일원 (18,074㎡) |  | |  | | |
| | 현황도 | | 복구후 도면 | | |
| 다. 서구 연희동 200번지일원 (24,351㎡) * 면적조정:23,541→24,351 (2016.5.10., 녹색도시과-2507) |  | |  | | |
| | 현황도 | | 복구후 도면 | | |

| | | 연번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장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①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0번지 일원 | ② 면적 (㎡) | 53,382 |
| ③ 유형 | 공원 및 녹지조성 | ④ 사업비(억원) | 126억원 |
| ⑤ 복구사업자 |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 ⑥ 사업기간 | 2013~2017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3.7.1 | ⑦-1 관련문서번호 | 녹색도시과-1275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① 개발사업명 | 인천계양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②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③ 입안권자 | 인천광역시 | ③-1 입안일자 | '12.07.26 |
| ④ 개발사업자 | (주)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 ⑤ 사업비(억원) | 3,322 |
| ⑥ 사업기간 | 2013 ~ 2017 | ⑦ 해제면적(㎡) | 524,910 |
| ⑧ 해제일자 | 2014.10.30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해양부고시제2014-630호(2014.10.30)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조건사항 없음 | | |
| 4. 대상지 현황 | | | |
| 가. 계양구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45,289㎡) | 현황도 | 복구후 도면 | |
| |  |  | |
| 나. 계양구 방축동 80번지 일원 (8,093㎡) | 현황도 | 복구후 도면 | |
| |  |  | |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 | | 연번 | |
|---|------------------------------|----------|--|------------------------|----------------|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대장 | | | | | |
| 1. 훼손지 복구 현황 | | | | | |
| ①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18번지 일원 | | ② 면적 (m ²) | 17,483 | ②-1 훼손지율 50.1% |
| ③ 유형 | 경관녹지조성사업(일부 근린공원) | | ④ 사업비(억원) | 76억원 | |
| ⑤ 복구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 ⑥ 사업기간 | 2015~2019 | |
| ⑦ 복구계획 통보일자 | 2014.12.26.(중도위 결과) | | ⑦-1 관련문서번호 | 녹색도시과-5819 | |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 | | | | |
| ① 개발사업명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 | ②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
| ③ 입안권자 | 인천광역시장 | ③-1 입안일자 | '13.10.18 | ④ 개발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
| ⑤ 사업비(억원) | 3,060(훼손지복구 포함) | | ⑥ 사업기간 | 2015~2019 | |
| ⑦ 해제면적(m ²) | 173,188 | | ⑧ 해제일자 | 2015.2.4 | |
| ⑨ 관보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호(2015.2.4) | | | | |
| 3. 특이사항(중도위 심의조건, 존치시설, 국·공유지, 해제취락 등) | | |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조건사항 등 특이사항 없음 | | |
| 4. 대상지 현황 | | | | | |
| 현황도 | | | 복구후 도면 | | |
|  | | |  | | |

3) 경기도

〈 훼손지 복구 현황 〉

| 지구명 | 위치 | 해제면적 (km ²) | 해제일 | 사업 시행자 | 사업 준공 | 훼손지 복구계획(㎡) | | | |
|------------------|------------------------|-------------------------|-------------------------|-------------------|----------------------------------|-------------|-----------|---------|-------------|
| | | | | | | 복구면적 (a) | 지구내 (b) | 지구외 (c) | 복구유형 |
| 합계 | | 21,225 | | | | 2,063,611 | 1,656,535 | 407,076 | |
| 고양 수중촬영장 | 고양시 오금동 | 0.026 | '10.12.23 | 고양시장 | '11.06.03 | 4,763 | | 4,763 | 장기미집행 공원 복구 |
| 지역현안2 지구 | 하남시 신장동 | 0.57 | '10.2.18 | 하남도시공사 | '15.12월 예정 | 57,826 | | 57,826 | 공원녹지 조성 |
| 지금지구 | 남양주 지금동 | 1,535 | '10.6.29 | 경기도시공사 | '18.06월 예정 | 154,503 | 154,503 | | 공원녹지 조성 |
| 부곡첨단 산업단지 | 군포시 부곡동 | 0.264 | '11.8.25 | 군포시장 | '16.12월 예정 | 28,045 | | 28,045 | 공원녹지 조성 |
| 매화 산업단지 | 시흥시 매화동 | 0.395 | '11.4.12 | 시흥 매화산업단 개발(주) | '18년 예정 | 47,759 | | 47,759 | 공원녹지 조성 |
| 월곶 역세권개발 | 시흥시 월곶동 | 0.236 | '11.9.21 | 시흥시장 | 미정 | 31,722 | | 31,722 | 공원녹지 조성 |
| 백운지식 문화밸리 | 의왕시 학의동 | 0.955 | '12.1.18 | 의왕백운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 '18.12월 예정 | 103,650 | | 103,650 | 공원녹지 조성 |
|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 | 의왕시 삼동 | 0.24 | '12.7.18 | 의왕장안 프로젝트 금융투자(주) | '18.12월 예정 | 24,242 | | 24,242 | 공원녹지 조성 |
| 과천화훼 종합센터 | 과천시 주암동 | 0.21 | '12.2.16 | 미정 | 미정 | - | | | |
| 덕은지구 도시개발 사업 | 고양시 덕은동 | 0.28 | '12.5.18 | LH | '19.12월 예정 | 33,844 | | 33,844 | 공원녹지 조성 |
| 안산팔곡 산업단지 | 안산시 팔곡동 | 0.141 | '13.7.15 | 안산도시공사 | '18.12월 예정 | 16,794 | | 16,794 | 공원녹지 조성 |
| 화성 비봉 | 화성시 | 0.791 | '13.08.23 | LH | '18.12.31 | - | | | |
| 하남미사 | 하남시 망월동 등 | 4,333 | ' 09.09.28 | LH | '17.12.31 | 456,355 | 456,355 | | 공원녹지 조성 |
| 고양원흥 | 고양시 원흥동 등 | 0.986 | ' 09.09.28 (' 12.06.21) | LH | '15.12.31 | 110,481 | 110,481 | | 공원녹지 조성 |
| 부천옥길 | 부천시 범박동 등 | 1,169 | ' 10.04.27 (' 11.12.29) | LH | 16.12.31 | 122,731 | 122,731 | | 공원녹지 조성 |
| 시흥은계 | 시흥시 대야동등 | 1,644 | ' 10.04.27 | LH | '17.12.31 | 225,022 | 225,022 | | 공원녹지 조성 |
| 구리갈매 | 구리시 갈매동 | 1,088 | ' 10.04.27 | LH | '15.12.31 | 115,407 | 115,407 | | 공원녹지 조성 |
| 남양주진건 | 남양주 지금동 등 | 2,399 | ' 10.04.27 (' 11.11.16) | 경기도시공사 | '18.06.30 | 286,421 | 286,421 | | 공원녹지 조성 |
| 하남감일 | 하남시 감일·감이동 | 1,257 | ' 10.11.15 | LH | '18.12.31 | 141,572 | 141,572 | | 공원녹지 조성 |
| 성남고등 | 성남시 고등동 | 0,395 | ' 11.10.13 | LH | '18.12.31 | 44,043 | 44,043 | | 공원녹지 조성 |
| 과천지식 정보타운 | 과천시 문원동 등 | 1,353 | ' 12.12.20 (' 14.04.29) | LH | '18.12.31 | | | | |
| 김포 고촌물류 단지 및 마리나 | 김포시 고촌읍태리 등 (인천계양구굴현동) | 0,958 | '10.05.14 '11.04.05 | 한국수자원공사 | '13.06.18 (물류단지) '14.03.31 (마리나) | 58,431 | | 58,431 | 여가공간 조성 |

타. 복구사업지역 선정 현황 사례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 복구사업 선정지는 향동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계획, 암사역사생태공원 등 2개소
-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의한 복구사업 등에 의해 추가 진행 예정

〈 서울특별시 복구사업지역 선정 현황 〉

| 구 분 | 복구사업 선정지 | | 검토 내용 |
|----------------------|----------|---------------------|-----------------------------|
| | 개소 | 면적(m ²) | |
| 향동지구 훼손지 | 1 | 80,652 | 향동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 수립 |
| 복구계획 암사역사 생태공원 | 1 | 110,133 |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훼손지 복구계획 |

〈 서울 향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위치도 〉



〈 서울 향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항공사진 〉



〈개발제한지역 훼손지 복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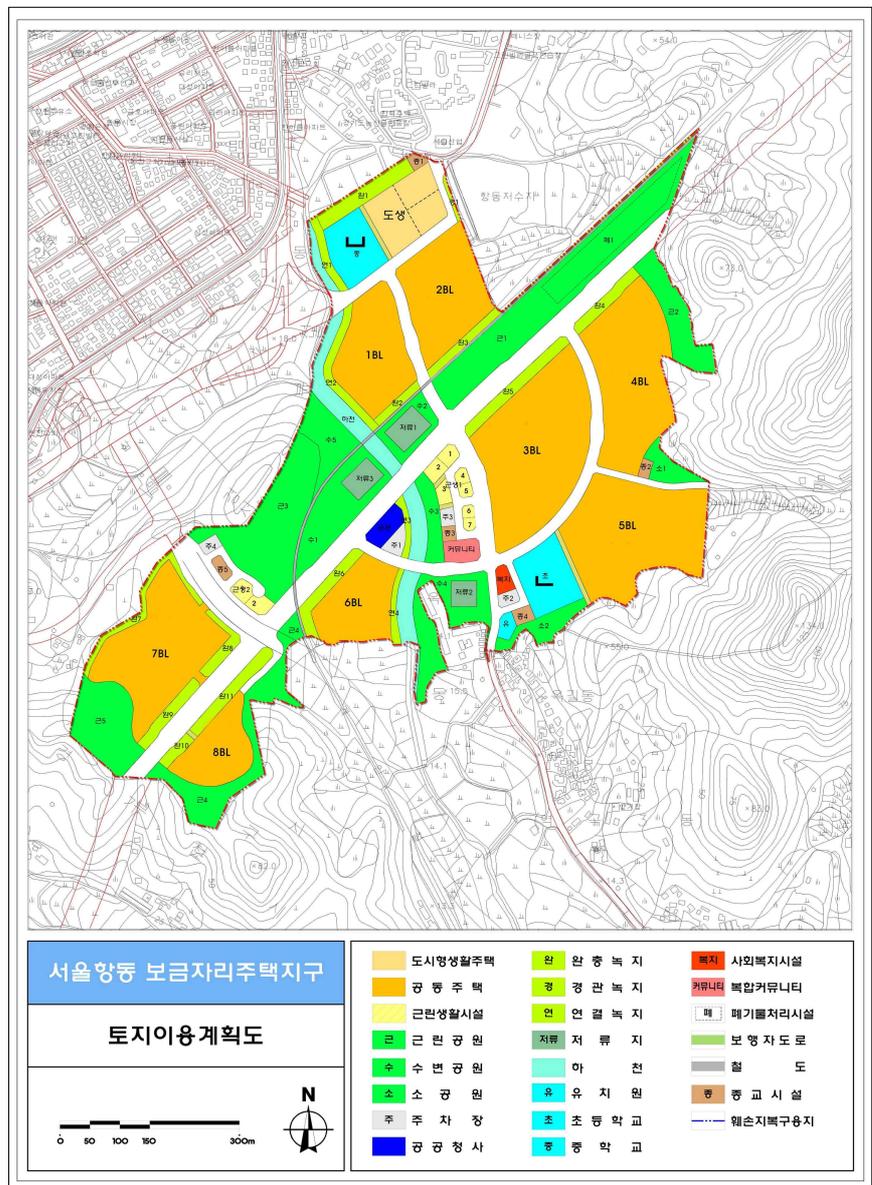
- 사업명: 서울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 사업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향동 일원
 - 면적: 664,431m²
 - 수용인구: 11,943
 - 사업비: 6,153억원
 - 사업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0. 5.26) ~ 2015. 12. 31
 - 시행자: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유민근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2010. 5. 26.: 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317호)
 - 2010. 11.15.: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 제 2010-806호)
 - 2015. 12.: 사업준공(예정)
- 훼손지 복구계획
 - 위치: 서울시 구로구 향동 82-1번지 일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83,779m²
 - 복구대상 면적: 사업지구 내 80,652(해제면적의 13.8%)
 - 사업비: 1,435억원
 - 복구사업 유형: 공원·녹지조성사업(도로, 철도 등 포함)
 - 세부시설조서

〈 서울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세부시설 조사 〉

| 구분 | 시설명 | 면적(㎡) | | | 비율 (%) | 비고 |
|---------------|------|--------|--------|-----|--------|-------------------------|
| | | 계 | 지구 내 | 지구외 | | |
| 공원 · 녹지 | 근린공원 | 38,409 | 38,409 | - | 47.6 | 폐기물처리 시설 (지하중복결정) |
| | 수변공원 | 33,281 | 33,281 | - | 41.3 | |
| | 완충녹지 | 1,300 | 1,300 | - | 1.6 | |
| | 하천 | 2,270 | 2,270 | - | 2.8 | |
| | 소계 | 75,260 | 75,260 | - | 93.3 | |
| 도로 | | 3,289 | 3,289 | - | 4.1 | |
| 철도 | | 2,103 | 2,103 | - | 2.6 | |
| 계 | | 80,652 | 80,652 | - | 100.0 | |

- 토지이용계획도

〈 서울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서울 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 구 분 |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
|----------------------|----------------|--------------|------------------|--|--|--|---|
| | | | 전체 | 구분별 | | | |
| 총 계 | | 664,431 | 100.0 | | | | |
| 보금 자리 주택 용지 | 계 | 583,779 | 87.9 | 100.0 | | |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271,492 | 40.9 | 46.5 | · 4,606세대 | |
| |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14,123 | 2.1 | 2.4 | · 191세대 | |
| | | 공동주택 건설용지 | 아 파 트 249,600 | 37.6 | 42.8 | · 4,415세대 | |
| | | 근생시설용지 | | | | | 7,769 |
| | | 소 계 | 312,287 | 47.0 | 53.5 | | |
| | 도시지원 시설용지 | 소 계 | 6,786 | 1.0 | 1.2 | | |
| | | 공공청사 | 2,857 | 0.4 | 0.5 | · 1개소 | |
| | | 사회복지시설 | 1,330 | 0.2 | 0.2 | · 1개소 | |
| | | 커뮤니티센터 | 2,599 | 0.4 | 0.5 | · 1개소 | |
| | | 공원녹지 | 소 계 | 162,564 | 24.5 | 27.9 | |
| | | | 소 공원 | 8,796 | 1.3 | 1.5 | · 2개소 |
| | | | 수변공원 | 19,179 | 2.9 | 3.3 | · 2개소 · 중복면적(저류지 2,153㎡, 하수도 333㎡) 포함 |
| | | | 근린공원 | 69,726 | 10.5 | 11.9 | · 4개소 |
| | | | 완충녹지 | 37,529 | 5.6 | 6.4 | · 11개소 |
| | | | 경관녹지 | 484 | 0.1 | 0.1 | · 1개소 |
| | 연결녹지 | | 9,101 | 1.4 | 1.6 | · 4개소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9㎡포함) | |
| | 하 천 | 17,571 | 2.6 | 3.0 | · 역곡천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1,123㎡, 하수도1,158㎡포함) | | |
| | | 교육시설 | 소 계 | 22,593 | 3.4 | 3.8 | |
| | 초등학교 | | 11,271 | 1.7 | 1.9 | · 1개소 | |
| | 중 학 교 | | 10,088 | 1.5 | 1.7 | · 1개소 | |
| | 유 치 원 | | 1,234 | 0.2 | 0.2 | · 1개소 | |
| | 도로 | 소 계 | 109,794 | 16.6 | 18.8 | | |
| | | 일반도로 | 107,139 | 16.2 | 18.3 | · 가각 포함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13㎡, 하수도 183㎡, 하천2,534㎡포함) | |
| | | 보행자전용도로 | 2,655 | 0.4 | 0.5 | | |
| | 종교시설 | 4,042 | 0.6 | 0.7 | · 5개소 | | |
| 주 차 장 | 4,037 | 0.6 | 0.7 | · 4개소 (노외주차장) | | | |
| 철 도 | 2,649 | 0.4 | 0.5 |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20㎡, 하수도 9㎡, 도로 332㎡, 하천 135㎡포함) | | | |
| 계 | 80,652 | 12.1 | 100.0 | | | | |
| 훼손지 복구 용지 | 공공 시설 용지 | 공원 녹지 | 소 계 | 74,250 | 11.2 | 92.0 | |
| | | | 수변공원 | 32,481 | 4.9 | 40.3 | · 3개소 · 중복면적(저류지 6,425㎡, 수도공급시설 405㎡포함) |
| | | | 근린공원 | 38,200 | 5.8 | 47.3 | · 1개소 · 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 13,000㎡포함) |
| | | | 완충녹지 | 1,300 | 0.2 | 1.6 | |
| | | | 하 천 | 2,269 | 0.3 | 2.8 | · 역곡천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77㎡, 하수도 148㎡포함) |
| | | 도로 | 3,597 | 0.5 | 4.5 | · 중복면적(하천 8㎡, 하수도 4㎡ 포함) | |
| | | 철도 | 2,805 | 0.4 | 3.5 | | |



2)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복구사업 선정지는 4개구, 7개소, 면적 272,724㎡
- 경인아라뱃길, 서운산업단지, 구월보금자리, AG경기장 GB해제 등의 복구계획

< 인천시 복구사업지역 선정 현황 >

| 구 분 | 복구사업 선정지 | | 검토 내용 |
|-----|----------|-------|------------------------------------|
| | 개소 | 면적(㎢) | |
| 계 | 7 | 0.27 | • GB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계획 |
| 계양구 | 3 | 0.11 | • 경인아라뱃길사업과서운산업단지GB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계획 |
| 남동구 | 1 | 0.07 | • 구월 보금자리사업GB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계획 |
| 서구 | 2 | 0.07 | • AG경기장 GB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계획 |
| 연수구 | 1 | 0.02 | • AG경기장 GB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계획 |

- 경인아라뱃길사업(김포 고촌물류단지)
 - 위치: 김포시 고촌읍 태리 251-2 일원(인천시 계양구 일부 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957,971㎡
 - 복구대상 면적: 58,431(훼손지율 52%), 보전부담금 추가
 - 사업비: 376억원
 - 복구사업 유형: 여가공간 조성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서운산업단지 내 복구계획
 - 위치: 계양구 다남동 산71-4일원, 방축동 80일원
- 구월보금자리 내 복구계획
 - 위치: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 AG경기장 GB해제 관련 훼손지 복구계획
 - 위치: 서구 연희동 산148-15일원, 연희동 200일원, 연수구 선학동 210일원



3) 경기도

- 하남 지역현안2지구(도시개발사업) 내 복구계획
 - 위치: 하남시 하사창동 257번지 일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70,000㎡
 - 복구대상 면적: 55,606㎡(훼손지율 70.1%)
 - 사업비: 172억원
 - 복구사업 유형: 여가공간 조성

- 김포 고촌물류단지(물류시설개발) 내 복구계획
 - 위치: 김포시 고촌읍 태리 251-2 일원(인천시 일부 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70,000㎡
 - 복구대상 면적: 55,606㎡(훼손지율 70.1%)
 - 사업비: 172억원
 - 복구사업 유형: 여가공간 조성

3.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가.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단속(순찰·점검)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내실화 추진
-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 제고

나.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 단속으로 지정목적이 달성
-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 실시
- 항공사진 관리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불법사항 추적관리 및 특별법에 의한 행정조치

다. 단속점검대상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불법행위 현황

- 농·축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구역 내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지가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등의 행위가 지속됨
-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불법행위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16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연도별 불법행위 현황 〉

| 구분 | 총 계 (건) | 2012년 이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수도권 | 79,199 | 72,317 | 1,660 | 1,765 | 1,560 | 1,897 |
| 서울 | 2,335 | 1,689 | 186 | 160 | 135 | 165 |
| 인천 | 2,971 | 1,876 | 314 | 245 | 216 | 320 |
| 경기 | 73,893 | 68,752 | 1,160 | 1,360 | 1,209 | 1,412 |

마. 용도 및 연도별 불법행위 현황

1) 서울시 불법행위 적발현황

- 2016년 용도별 불법행위를 보면, 창고 50건, 음식점 21건, 주택20건, 토지형질변경 1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용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

(단위:건수)

| 구 분 | | 계 | 주택, 부속사 | 창고 | 축사 | 공장, 작업장 | 음식점, 점포 | 형질 변경 | 종교 시설 | 기타 | |
|-----|--------|------|---------|----|----|---------|---------|-------|-------|----|----|
| 시도명 | 적발, 조치 | | | | | | | | | | |
| 서울 | 계 | 165 | 20 | 50 | 0 | 2 | 21 | 17 | 12 | 43 | |
| | 적발 | 불법건축 | 118 | 19 | 40 | 0 | 2 | 12 | 2 | 11 | 32 |
| | | 용도변경 | 4 | 0 | 1 | 0 | 0 | 0 | 0 | 1 | 2 |
| | | 형질변경 | 17 | 0 | 2 | 0 | 0 | 0 | 15 | 0 | 0 |
| | | 물건적치 | 12 | 1 | 5 | 0 | 0 | 1 | 0 | 0 | 5 |
| | | 기타 | 14 | 0 | 2 | 0 | 0 | 8 | 0 | 0 | 4 |
| | | 계 | 69 | 5 | 21 | 0 | 0 | 14 | 12 | 1 | 16 |
| | 조치 | 불법건축 | 42 | 5 | 14 | 0 | 0 | 14 | 1 | 1 | 7 |
| | | 용도변경 | 3 | 0 | 0 | 0 | 0 | 0 | 0 | 0 | 3 |
| | | 형질변경 | 11 | 0 | 0 | 0 | 0 | 0 | 11 | 0 | 0 |
| | | 물건적치 | 11 | 0 | 7 | 0 | 0 | 0 | 0 | 0 | 4 |
| | | 기타 | 2 | 0 | 0 | 0 | 0 | 0 | 0 | 0 | 2 |
| 계 | | 2 | 0 | 0 | 0 | 0 | 0 | 0 | 0 | 2 | |

● 불법행위 처분현황

- 2016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총 165건이며, 이 중에서 서 69건이 시정 되었으며 9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음

| 구 분 | 위법행위 적발실적 | | | | | | 조치완료 | | | 조치중 |
|-----|-----------|-----|-------|-------|-------|----|------|-------|-------|-----|
| | 합계 | 건축 | 용도 변경 | 형질 변경 | 물건 적치 | 기타 | 계 | 자진 철거 | 강제 철거 | |
| 서울 | 165 | 100 | 6 | 19 | 17 | 23 | 69 | 59 | 10 | 96 |

| 시도명 | 합계 | 기 처 리 | | | | | 처 리 중 | | | |
|-----|-----|-------|-----|--------|----|-----|-------|-----|-----|-----|
| | | 계 | 구 속 | 불구속 입건 | 벌금 | 기 타 | 계 | 계 고 | 고 발 | 기 타 |
| 서울 | 165 | 69 | 0 | 0 | 0 | 69 | 96 | 0 | 4 | 92 |

● 연도별 위법행위 현황

- 서울특별시의 2012년 이후 위법현황은 총 646건
 - 위법행위는 2013년 이후 차츰 감소하다 2016년 다시 증가
 - 강남구의 위법행위가 372건으로 서울시 전체의 위법행위 중 15.9%를 차지함

〈 서울시 연도별 위법행위 단속 실적 〉

(단위 : 건수)

| 구분 | 계 | 2012년이전 | 2013 | 2014 | 2015 | 2016 | 비고 |
|------|-------|---------|------|------|------|------|----|
| 합계 | 2,335 | 1,689 | 186 | 160 | 135 | 165 | |
| 강남구 | 372 | 339 | 3 | 4 | 12 | 14 | |
| 강동구 | 294 | 243 | 18 | 12 | 10 | 11 | |
| 강북구 | 90 | 64 | 10 | 5 | 6 | 5 | |
| 강서구 | 179 | 105 | 2 | 33 | 30 | 9 | |
| 관악구 | 17 | 13 | 1 | 0 | 1 | 2 | |
| 광진구 | 3 | 1 | 0 | 0 | 0 | 2 | |
| 구로구 | 132 | 85 | 3 | 5 | 4 | 35 | |
| 금천구 | 10 | 8 | 0 | 1 | 0 | 1 | |
| 노원구 | 296 | 146 | 53 | 36 | 28 | 33 | |
| 도봉구 | 54 | 39 | 0 | 4 | 4 | 7 | |
| 마포구 | 14 | 14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33 | 24 | 1 | 0 | 3 | 5 | |
| 서초구 | 329 | 222 | 53 | 32 | 14 | 8 | |
| 성북구 | 54 | 34 | 3 | 4 | 4 | 9 | |
| 송파구 | 71 | 67 | 1 | 1 | 1 | 1 | |
| 양천구 | 45 | 40 | 0 | 1 | 1 | 3 | |
| 은평구 | 174 | 145 | 4 | 9 | 3 | 13 | |
| 종로구 | 40 | 26 | 5 | 3 | 4 | 2 | |
| 중랑구 | 128 | 74 | 29 | 10 | 10 | 5 | |

2) 인천광역시 불법행위 적발현황

- 2016년 12월 기준 용도별 불법행위를 보면, 형질변경 1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4건, 음식점 10건, 창고 14건

〈 용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

| 구 분 (단위:건수) | 합 계 | 주택, 부속사 | 창 고 | 축 사 | 공 장, 작업장 | 음식점 · 점포 | 형질 변경 | 종교 시설 | 기 타 |
|----------------|-----|------------|-----|-----|-------------|----------------|----------|----------|-----|
| 인천광역시 | 53 | 4 | 14 | 4 | 1 | 10 | 16 | 0 | 7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수구 | 2 | 0 | 2 | 0 | 0 | 0 | 0 | 0 | 0 |
| 남동구 | 10 | 0 | 0 | 3 | 0 | 6 | 3 | 0 | 1 |
| 부평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계양구 | 31 | 4 | 10 | 1 | 1 | 3 | 9 | 0 | 3 |
| 서구 | 10 | 0 | 2 | 0 | 0 | 1 | 4 | 0 | 3 |

주) 2016년 12월 기준

● 불법행위 처분현황

- 불법행위는 총 3,721건이며, 이 중에서 3,476건인 93.2%가 시정 되었으며 245건은 현재 조치 중

| 구 분 (단위: 건수) | 적발건수 | 시정건수 | 조치 중 | 비 고 |
|-----------------|-------|-------|------|-----|
| 인천광역시 | 3,721 | 3,476 | 245 | |
| 남 구 | 0 | 0 | 0 | |
| 연수구 | 149 | 147 | 2 | |
| 남동구 | 2,017 | 1,949 | 68 | |
| 부평구 | 230 | 215 | 15 | |
| 계양구 | 915 | 785 | 130 | |
| 서 구 | 410 | 380 | 30 | |

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 2017년 1분기 까지

● 연도별 위법현황

- 위법행위는 2013년 이후 점점 감소하다 2016년 다시 증가
- 남동구의 위법행위가 1,312건으로 인천시 전체의 위법행위 중 44.2%

〈 인천시 연도별 위법행위 단속 실적 〉

(단위 : 건수)

| 구 분 | 계 | 2012년이전 | 2013 | 2014 | 2015 | 2016 | 비고 |
|-----|-------|---------|------|------|------|------|----|
| 합 계 | 2,971 | 1,876 | 314 | 245 | 216 | 320 | |
| 남 구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129 | 114 | 5 | 6 | 2 | 2 | |
| 남동구 | 1,312 | 856 | 153 | 88 | 75 | 140 | |
| 부평구 | 230 | 171 | 16 | 13 | 9 | 21 | |
| 계양구 | 900 | 495 | 108 | 86 | 90 | 121 | |
| 서 구 | 400 | 240 | 32 | 52 | 40 | 36 | |

3) 경기도 불법행위 적발현황

- 2016년 12월까지 용도별 불법행위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508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고 442건, 주택 116건, 음식점 97건

[용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

| 구분 (단위 : 건수) | 합계 | 주택 | 창고 | 축사 | 공장 | 음식점 | 형질변경 | 종교시설 | 기타 |
|-----------------|-------|-----|-----|----|----|-----|------|------|-----|
| 경기도 | 1,409 | 116 | 442 | 44 | 44 | 97 | 508 | 4 | 154 |
| 수원시 | 50 | 2 | 25 | 0 | 2 | 4 | 12 | 0 | 5 |
| 성남시 | 44 | 4 | 9 | 2 | 0 | 1 | 19 | 0 | 9 |
| 부천시 | 28 | 0 | 4 | 2 | 0 | 8 | 13 | 0 | 1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안산시 | 100 | 3 | 46 | 3 | 7 | 9 | 30 | 0 | 2 |
| 안양시 | 53 | 3 | 7 | 2 | 0 | 14 | 11 | 1 | 15 |
| 시흥시 | 211 | 9 | 58 | 4 | 17 | 6 | 105 | 0 | 12 |
| 화성시 | 58 | 8 | 4 | 5 | 0 | 1 | 37 | 0 | 3 |
| 광명시 | 1 | 0 | 0 | 0 | 0 | 0 | 1 | 0 | 0 |
| 군포시 | 29 | 3 | 7 | 0 | 0 | 1 | 13 | 0 | 5 |
| 광주시 | 35 | 7 | 7 | 1 | 1 | 0 | 17 | 0 | 2 |
| 김포시 | 11 | 0 | 2 | 0 | 2 | 0 | 7 | 0 | 0 |
| 하남시 | 195 | 12 | 97 | 19 | 0 | 9 | 49 | 0 | 9 |
| 의왕시 | 129 | 11 | 35 | 0 | 2 | 19 | 52 | 1 | 9 |
| 양평군 | 20 | 3 | 0 | 0 | 0 | 10 | 5 | 0 | 2 |
| 과천시 | 41 | 20 | 5 | 0 | 2 | 1 | 12 | 0 | 1 |
| 고양시 | 126 | 10 | 31 | 2 | 5 | 5 | 35 | 0 | 38 |
| 남양주시 | 47 | 5 | 12 | 3 | 1 | 1 | 19 | 1 | 5 |
| 의정부시 | 52 | 3 | 8 | 1 | 1 | 2 | 33 | 0 | 4 |
| 구리시 | 134 | 1 | 73 | 0 | 2 | 2 | 35 | 0 | 21 |
| 양주시 | 45 | 12 | 12 | 0 | 2 | 4 | 3 | 1 | 11 |

주) 2016년 12월 기준

● 불법행위 처분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총 1,409건이며, 이 중에서 1,033건인 73.3%가 시정 되었으며 37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음

[경기도불법행위처분현황]

| 구분 (단위 : 건수) | 합계 | 처리완료 | 처리중 | | | | 비고 |
|-----------------|-------|-------|-----|-----|----|---------------|----|
| | | | 계 | 계고 | 고발 | 기타 (이행감제금) | |
| 경기도 | 1,409 | 1,033 | 376 | 302 | 33 | 41 | |
| 수원시 | 50 | 41 | 9 | 6 | 1 | 2 | |
| 성남시 | 44 | 44 | 0 | 0 | 0 | 0 | |
| 부천시 | 28 | 17 | 11 | 11 | 0 | 0 |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
| 안산시 | 100 | 35 | 65 | 65 | 0 | 0 | |
| 안양시 | 53 | 28 | 25 | 8 | 4 | 13 | |
| 시흥시 | 211 | 211 | 0 | 0 | 0 | 0 | |
| 화성시 | 58 | 31 | 27 | 14 | 5 | 8 | |
| 광명시 | 1 | 0 | 1 | 1 | 0 | 0 | |
| 군포시 | 29 | 25 | 4 | 3 | 1 | 0 | |
| 광주시 | 35 | 32 | 3 | 2 | 1 | 0 | |
| 김포시 | 11 | 6 | 5 | 4 | 0 | 1 | |
| 하남시 | 195 | 195 | 0 | 0 | 0 | 0 | |
| 의왕시 | 129 | 67 | 62 | 36 | 12 | 14 | |
| 양평군 | 20 | 7 | 13 | 5 | 8 | 0 | |
| 과천시 | 41 | 17 | 24 | 20 | 1 | 3 | |
| 고양시 | 126 | 119 | 7 | 7 | 0 | 0 | |
| 남양주시 | 47 | 47 | 0 | 0 | 0 | 0 | |
| 의정부시 | 52 | 44 | 8 | 8 | 0 | 0 | |
| 구리시 | 134 | 33 | 101 | 101 | 0 | 0 | |
| 양주시 | 45 | 34 | 11 | 11 | 0 | 0 | |

주) 2016년 12월 기준

● 연도별 위법현황

- 2013년 이후 증가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남부 지역의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함
- 고양시의 위법행위가 904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위법행위 중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하남시가 630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연도별 위법행위 단속 실적 〉

(단위 : 건수)

| 구 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 계 | 5,141 | 1,160 | 1,360 | 1,209 | 1,412 | |
| 남 부 | 3,202 | 630 | 813 | 751 | 1,008 | |
| 북 부 | 1,939 | 530 | 547 | 458 | 404 | |

| 구 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 계 | 5,141 | 1,160 | 1,360 | 1,209 | 1,412 | |
| 수원시 | 138 | 15 | 36 | 37 | 50 | |
| 성남시 | 123 | 15 | 18 | 46 | 44 | |
| 부천시 | 101 | 20 | 27 | 26 | 28 | |
| 용인시 | 4 | | 3 | 1 | | |
| 안산시 | 505 | 161 | 167 | 77 | 100 | |
| 안양시 | 209 | 58 | 46 | 52 | 53 | |
| 시흥시 | 474 | 41 | 56 | 166 | 211 | |
| 화성시 | 236 | 66 | 64 | 45 | 61 | |
| 광명시 | 41 | 15 | 16 | 9 | 1 | |
| 군포시 | 59 | 8 | 9 | 13 | 29 | |
| 광주시 | 160 | 23 | 76 | 26 | 35 | |
| 김포시 | 84 | 28 | 35 | 10 | 11 | |
| 하남시 | 630 | 112 | 152 | 171 | 195 | |
| 의왕시 | 274 | 41 | 56 | 48 | 129 | |
| 양평군 | 37 | 7 | 6 | 4 | 20 | |
| 과천시 | 127 | 20 | 46 | 20 | 41 | |
| 고양시 | 904 | 296 | 294 | 188 | 126 | |
| 남양주 | 305 | 95 | 73 | 90 | 47 | |
| 의정부 | 172 | 42 | 24 | 54 | 52 | |
| 구리시 | 433 | 76 | 125 | 98 | 134 | |
| 양주시 | 125 | 21 | 31 | 28 | 45 | |

마. 단속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관련 현황

1) 이행 강제금 제도 개요

- 구역 단속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자진 시정유도 및 처벌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에 따라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시행(2010.02.07)
- 이행강제금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스스로 자진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며, 이행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도록 함
-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행 강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담완화 등 이행 강제금 제도 합리적 개선 및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유도 필요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2) 이행 강제금 부과현황

- 이행 강제금이 강화된 법 개정(2010.02.07)이후 2012년부터 현재(2016년 12월)까지 총 5,013건(서울 300건, 인천 746건, 경기 4,371건) 부과
-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이행 강제금 제도 강화에 따라 불법시설물이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이행 강제금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시설물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연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서울시)]

| 구 분 (천원) | 합 계 |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 서울시 | 14,974,149 | 419,509 | 456,071 | 45,113 | 977,330 | 115,404 | 1,474,750 | 67,748 | 10,604,340 | 141,784 | 1,461,658 | 49,460 |
| 종로구 | 104,586 | 14,200 | 0 | 0 | 32,082 | 1,995 | 28,559 | 0 | 33,010 | 1,270 | 10,935 | 10,935 |
| 광진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중랑구 | 519,749 | 10,196 | 0 | 0 | 219,308 | 0 | 247,012 | 0 | 50,529 | 10,196 | 2,900 | 0 |
| 성북구 | 24,007 | 0 | 0 | 0 | 0 | 0 | 0 | 0 | 5,003 | 0 | 19,004 | 0 |
| 강북구 | 331,089 | 22,195 | 0 | 0 | 87,570 | 5,189 | 144,746 | 0 | 91,911 | 17,006 | 6,862 | 0 |
| 도봉구 | 8,922,552 | 2,298 | 6,114 | 0 | 0 | 0 | 0 | 0 | 8,897,456 | 2,298 | 18,982 | 0 |
| 노원구 | 1,259,559 | 87,323 | 0 | 0 | 95,829 | 68,417 | 324,206 | 9,722 | 596,702 | 5,281 | 242,822 | 3,903 |
| 은평구 | 247,944 | 0 | 17,024 | 0 | 26,296 | 0 | 0 | 0 | 4,192 | 0 | 200,432 | 0 |
| 서대문 | 3,846 | 2,662 | 0 | 0 | 0 | 0 | 813 | 813 | 1,018 | 1,018 | 2,015 | 831 |
| 마포구 | 6,318 | 6,318 | 3,150 | 0 | 0 | 3,150 | 3,168 | 2,052 | 0 | 1,116 | 0 | 0 |
| 양천구 | 23,797 | 3,496 | 0 | 0 | 0 | 0 | 0 | 0 | 0 | 0 | 23,797 | 3,496 |
| 강서구 | 806,767 | 136,043 | 160,624 | 45,113 | 33,321 | 13,481 | 120,303 | 33,492 | 244,391 | 28,273 | 248,128 | 15,684 |
| 구로구 | 1,046,798 | 27,830 | 0 | 0 | 228,686 | 21,367 | 131,072 | 6,463 | 368,315 | 0 | 318,725 | 0 |
| 금천구 | 12,624 | 6,412 | 0 | 0 | 0 | 0 | 6,412 | 6,412 | 6,212 | 0 | 0 | 0 |
| 관악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초구 | 835,432 | 19,100 | 50,000 | 0 | 165,990 | 1,805 | 266,351 | 8,794 | 122,182 | 0 | 230,909 | 8,501 |
| 강남구 | 339,539 | 8,432 | 0 | 0 | 88,248 | 0 | 52,108 | 0 | 169,146 | 8,432 | 30,037 | 0 |
| 송파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동구 | 489,542 | 73,004 | 219,159 | 0 | 0 | 0 | 150,000 | 0 | 14,273 | 66,894 | 106,110 | 6,110 |

[연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인천시)]

| 구분 천원 (건) | 합계 |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 인천광역시 | 5,246,744 | 2,727,220 | 930,190 | 615,231 | 1,079,991 | 735,558 | 1,191,308 | 715,759 | 946,648 | 425,917 | 1,098,607 | 234,755 |
| | (746) | (558) | (152) | (152) | (157) | (115) | (153) | (114) | (143) | (108) | (141) | (69)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수구 | 3,781 | 2,205 | 861 | 861 | 735 | 735 | 609 | 609 | 1,576 | 0 | 0 | 0 |
| | (5) | (3) | (1) | (1) | (1) | (1) | (1) | (1) | (2) | (0) | (0) | (0) |
| 남동구 | 1,626,894 | 588,379 | 381,605 | 111,542 | 439,769 | 220,894 | 336,544 | 130,661 | 289,586 | 82,176 | 179,390 | 43,106 |
| | (186) | (108) | (45) | (27) | (58) | (31) | (34) | (20) | (34) | (22) | (15) | (8) |
| 부평구 | 366,932 | 93,480 | 20,922 | 20,199 | 54,795 | 12,534 | 64,781 | 17,724 | 37,281 | 36,360 | 189,153 | 6,663 |
| | (49) | (31) | (15) | (14) | (6) | (4) | (8) | (6) | (5) | (4) | (15) | (3) |
| 계양구 | 2,701,061 | 1,829,628 | 513,351 | 469,550 | 543,460 | 475,032 | 545,727 | 455,598 | 534,422 | 291,731 | 564,101 | 137,717 |
| | (427) | (338) | (79) | (71) | (82) | (74) | (83) | (71) | (91) | (74) | (92) | (48) |
| 서구 | 548,073 | 216,528 | 13,451 | 13,079 | 41,232 | 26,363 | 243,647 | 111,167 | 83,780 | 15,650 | 165,963 | 50,269 |
| | (79) | (50) | (12) | (11) | (10) | (5) | (27) | (16) | (11) | (8) | (19) | (10) |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연도별 불법행위 적발현황(경기도)]

| 구 분 (천원) | 합 계 |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2016년 | |
|-------------|------------|------------|------------|-----------|------------|-----------|------------|-----------|------------|-----------|------------|-----------|
|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부과 | 징수 |
| 경기도 | 85,131,334 | 26,408,502 | 10,354,396 | 7,549,382 | 10,940,184 | 6,857,347 | 11,508,370 | 6,173,275 | 23,181,038 | 3,071,644 | 29,147,346 | 2,756,854 |
| 수원시 | 692,349 | 366,908 | 285,326 | 152,428 | 21,534 | 21,534 | 243,656 | 91,608 | 35,510 | 20,826 | 106,323 | 80,512 |
| 성남시 | 1,277 | 1,277 | 0 | 0 | 1,277 | 1,277 | 0 | 0 | 0 | 0 | 0 | 0 |
| 부천시 | 65,651 | 62,741 | 10,074 | 10,074 | 41,628 | 41,628 | 817 | 817 | 7,312 | 7,312 | 5,820 | 2,910 |
| 용인시 | 1,290 | 1,290 | 0 | 0 | 0 | 0 | 1,290 | 1,290 | 0 | 0 | 0 | 0 |
| 안산시 | 1,224,710 | 789,739 | 87,615 | 56,233 | 344,683 | 248,062 | 437,878 | 236,250 | 228,562 | 182,545 | 125,972 | 66,649 |
| 안양시 | 543,003 | 314,125 | 702 | 0 | 15,136 | 10,127 | 178,348 | 137,439 | 225,386 | 69,134 | 123,431 | 97,425 |
| 시흥시 | 4,806,154 | 1,597,925 | 956,817 | 650,436 | 1,537,325 | 687,236 | 621,648 | 90,019 | 1,037,727 | 126,864 | 652,637 | 43,370 |
| 화성시 | 648,042 | 344,605 | 174,259 | 143,382 | 100,189 | 44,910 | 251,918 | 151,547 | 72,970 | 4,327 | 48,706 | 439 |
| 광명시 | 1,352,756 | 888,373 | 120,835 | 97,948 | 185,316 | 185,316 | 274,953 | 184,376 | 417,639 | 292,345 | 354,013 | 128,388 |
| 군포시 | 61,905 | 27,383 | 32,098 | 14,765 | 13,436 | 4,826 | 13,784 | 7,792 | 2,587 | 0 | 0 | 0 |
| 광주시 | 235,909 | 182,671 | 110,190 | 100,840 | 39,193 | 34,857 | 48,363 | 23,602 | 38,163 | 23,372 | 0 | 0 |
| 김포시 | 326,511 | 93,856 | 129,551 | 33,503 | 63,185 | 13,185 | 17,435 | 17,435 | 72,885 | 15,748 | 43,455 | 13,985 |
| 하남시 | 10,047,055 | 2,077,214 | 716,456 | 376,501 | 621,490 | 312,107 | 1,596,568 | 583,232 | 2,648,229 | 417,208 | 4,464,312 | 388,166 |
| 의왕시 | 744,894 | 257,110 | 21,098 | 17,399 | 147,988 | 104,467 | 74,369 | 20,463 | 135,853 | 63,151 | 365,586 | 51,630 |
| 양평군 | 358,982 | 210,045 | 76,885 | 52,495 | 140,076 | 99,605 | 105,276 | 53,357 | 3,000 | 3,000 | 33,745 | 1,588 |
| 과천시 | 1,070,047 | 273,637 | 0 | 0 | 305,473 | 180,590 | 254,992 | 70,748 | 435,845 | 16,722 | 73,737 | 5,577 |
| 고양시 | 3,656,675 | 2,474,950 | 724,868 | 352,062 | 434,653 | 390,238 | 823,046 | 683,740 | 486,990 | 266,697 | 1,187,118 | 782,213 |
| 남양주시 | 51,740,636 | 13,754,659 | 6,568,515 | 5,153,469 | 4,664,573 | 3,373,876 | 5,669,849 | 3,418,756 | 15,628,406 | 1,032,180 | 19,209,293 | 776,378 |
| 의정부시 | 96,206 | 51,188 | 21,274 | 21,274 | 7,015 | 7,015 | 10,352 | 1,329 | 14,388 | 800 | 43,177 | 20,770 |
| 구리시 | 5,568,563 | 1,743,940 | 77,912 | 76,652 | 1,488,560 | 667,475 | 743,752 | 311,295 | 1,255,678 | 431,769 | 2,002,661 | 256,749 |
| 양주시 | 1,888,719 | 894,866 | 239,921 | 239,921 | 767,454 | 429,016 | 140,076 | 88,180 | 433,908 | 97,644 | 307,360 | 40,105 |

바. 지도·단속 계획 관리방안

1) 지도·단속 기본방향

- 구역 해제·조정으로 인한 규제완화 분위기 및 미온적 관리 등으로 인해 불법건축(창고, 작업장, 축사 등)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단속업무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위법행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자진 시정 유도 및 처벌기준 강화
- 불법행위 만연지역은 불법 용도변경이 우려되는 버섯 재배사 및 축사 설치를 금지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조치
- 적발된 위법행위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
-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점검 강화
- 주민의 불만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호별 방문은 지양하고 취약지역 위주의 집중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
- 기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역 관리

2) 단계별 관리체계

〈 개발제한구역의 단계별 관리체계 〉

| | |
|------|------------------|
| 제1단계 | 읍·면·동장에 의한 관리 |
| 제2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관리 |
| 제3단계 | 시·도지사에게 의한 관리 |

- 단속·점검 방법
 - 일상점검: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점검
 - 특별점검: 시·군·구(3개월마다 1회 이상), 시·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합동점검: 국토교통부, 시·도 관계공무원 (연1회 이상)
- 위법행위 단속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적법한 행위가 아닌 위법적인 개발행위
 - 허가·신고 없이 행하는 건축행위, 용도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 신고·허가 없이 행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Ⅲ.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
 - 폐기물의 불법투기는 일상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한 불법폐기물은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전
- 기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등
- 항공사진 촬영계획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형질변경·불법건축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 촬영 실시
 - 항공사진 촬영 시기는 녹음에 의한 단속효과 저하를 감안하여 동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불필요한 중첩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촬영은 시·도지사의 주관 하에 실시함
 - 변형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합법적인 행위가 아닌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항공사진의 활용
 - 위법 토지형질변경 및 위법 건축행위의 적발
 - 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의 추적 등
- 항공사진의 관리 및 이용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상황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은 별도의 장소에 특별히 관리함
 - 촬영된 항공사진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중첩·비교하여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약식 현황도를 작성함

● 관리방안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자연환경의 보호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음
- 방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측면의 접근이 요구됨
- 기존의 목적 3가지 (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②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③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외에 문화·여가·관광 기회를 증대하고 지역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가. 관리시설·인원·장비 현황

〈 수도권 구역관리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

| 구 분 | | 보유현황 | 기 준 | 계 획 | |
|-----------|----------|------|---------|---|------------|
| 서울 특별시 | 관리인원 | 91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인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공익요원 등으로 보충하는 방안 강구 필요 (전문단속원과 2인1조로 투입) | |
| | 관리 시설 | 경계표석 | 2,823개 | | 100m 간격 |
| | | 초소 | 42개 | | 10km 간격 |
| | | 입간판 | 142개 | | |
| 관리 장비 | 차량 | 15대 | | - | |
| 인천 광역시 | 관리인원 | 19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인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공익요원 등으로 보충하는 방안 강구 필요 (전문단속원과 2인1조로 투입) | |
| | 관리 시설 | 경계표석 | 2,765개 | | 100m 간격 |
| | | 초소 | 2개 | | 10km 간격 |
| | | 입간판 | 98개 | | - |
| 관리 장비 | 차량 | 5대 | - | - | |
| 경기도 | 관리인원 | 132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족인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공익요원 등으로 보충하는 방안 강구 필요 (전문단속원과 2인1조로 투입) | |
| | 관리 시설 | 경계표석 | 17,339개 | | 100m 간격 |
| | | 초소 | 38개 | | 10km 간격 |
| | | 입간판 | 789개 | | - |
| | 관리 장비 | 차량 | 52개 | | - |
| 기타(카메라 등) | | 43 | - | | |

1) 서울특별시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인원은 91명이며, 1인당 관할 면적은 1.6km²임
- 확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시설은 총 3,007, 장비는 15개
- 표석은 19개구에 2,823개소 분포
- 초소는 42개소 설치되어 있음
- 입간판은 총 142개소 분포
- 단속장비 중 차량은 15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인천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인원은 19명이며, 1인당 관할 면적은 3.79km²임
- 확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은 총 2,765, 장비는 10개, 단속인원은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석은 서구가 878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양구 821개소, 남동구 615개소, 부평구 357개소, 연수구 94개소 순으로 분포됨.
- 초소는 사회여건 변화로 현재 서구에 2개소만이 설치
- 입간판은 총 98개소이며, 부평구가 42개소, 남동구가 20개소, 계양구가 19개소, 서구 12개소, 연수구 5개소 순으로 분포
- 단속장비 중 차량은 남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각 구청에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포크레인은 부평구에 1대가 운영
- 단속인원은 총 19명이며, 계양구 6명, 서구와 남동구 각 5명, 부평구 2명, 연수구 1명

[관리시설·장비·인원 총괄표]

| 구 분 | 시설(개) | | | 단속장비(개) | | | | 단속인원 (인) | 비고 |
|-------|-------|----|-----|---------|----|-----|----|-------------|----|
| | 표석 | 초소 | 입간판 | 포크레인 | 차량 | 이륜차 | 기타 | | |
| 인천광역시 | 2,765 | 2 | 98 | 1 | 4 | 0 | 0 | 19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94 | 0 | 5 | 0 | 0 | 0 | 0 | 1 | |
| 남동구 | 615 | 0 | 20 | 0 | 1 | 0 | 0 | 5 | |
| 부평구 | 357 | 0 | 42 | 1 | 1 | 0 | 0 | 2 | |
| 계양구 | 821 | 0 | 19 | 0 | 1 | 0 | 0 | 6 | |
| 서구 | 878 | 2 | 12 | 0 | 1 | 0 | 0 | 5 | |

3) 경기도

[관리시설·장비·인원 총괄표]

| 구 분 | 시설(개) | | | 장비(개) | | | | 단속인원 (인) | 비고 (GPS) |
|------|--------|----|-----|-------|-----|-----|-----------|-------------|-------------|
| | 표석 | 초소 | 안내판 | 차량 | 카메라 | 망원경 | 항측 판독기 | | |
| 경기도 | 17,339 | 38 | 789 | 52 | 42 | 1 | 0 | 132 | 1 |
| 수원시 | 648 | 0 | 104 | 1 | 1 | 0 | 0 | 2 | 0 |
| 성남시 | 802 | 3 | 57 | 3 | 3 | 0 | 0 | 9 | 0 |
| 부천시 | 424 | 0 | 47 | 1 | 1 | 0 | 0 | 4 | 0 |
| 용인시 | 41 | 4 | 10 | 2 | 0 | 0 | 0 | 4 | 0 |
| 안산시 | 312 | 0 | 60 | 2 | 1 | 0 | 0 | 4 | 0 |
| 안양시 | 617 | 5 | 27 | 2 | 0 | 0 | 0 | 6 | 0 |
| 시흥시 | 2,101 | 0 | 21 | 4 | 3 | 0 | 0 | 10 | 1 |
| 화성시 | 1,413 | 1 | 69 | 1 | 3 | 0 | 0 | 5 | 0 |
| 광명시 | 121 | 0 | 9 | 2 | 3 | 0 | 0 | 4 | 0 |
| 군포시 | 1,041 | 0 | 10 | 1 | 2 | 1 | 0 | 2 | 0 |
| 광주시 | 875 | 0 | 45 | 5 | 0 | 0 | 0 | 16 | 0 |
| 김포시 | 1,130 | 0 | 12 | 0 | 1 | 0 | 0 | 3 | 0 |
| 하남시 | 784 | 10 | 43 | 4 | 7 | 0 | 0 | 11 | 0 |
| 의왕시 | 371 | 0 | 23 | 5 | 0 | 0 | 0 | 8 | 0 |
| 양평균 | 136 | 1 | 23 | 1 | 1 | 0 | 0 | 2 | 0 |
| 과천시 | 760 | 1 | 37 | 1 | 2 | 0 | 0 | 5 | 0 |
| 고양시 | 1,948 | 4 | 8 | 6 | 0 | 0 | 0 | 15 | 0 |
| 남양주시 | 1,129 | 7 | 58 | 7 | 7 | 0 | 0 | 7 | 0 |
| 의정부시 | 1,019 | 2 | 57 | 1 | 2 | 0 | 0 | 6 | 0 |
| 구리시 | 287 | 0 | 33 | 2 | 3 | 0 | 0 | 5 | 0 |
| 양주시 | 1,380 | 0 | 36 | 1 | 2 | 0 | 0 | 4 | 0 |

[단속인원 현황 및 1인당 관할면적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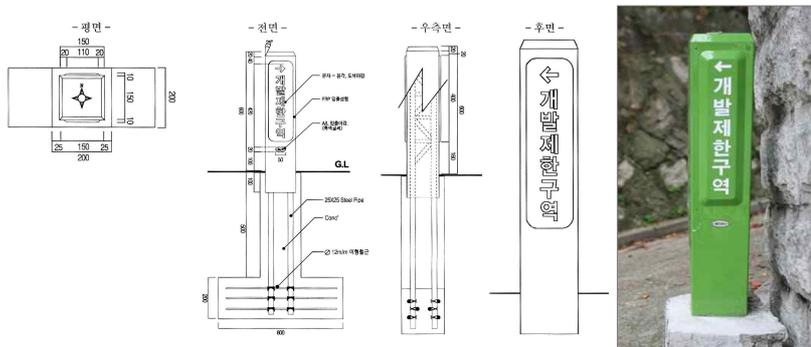
| 구 분 | 개발제한구역 (km ²) | 단속인원 | 개발제한구역 5km ² 당 | |
|------|------------------------------|------|---------------------------|------|
| | | | 필요인원 | 부족인원 |
| 경기도 | 1,171,235 | 132 | 233 | 103 |
| 수원시 | 33,200 | 2 | 6 | 3 |
| 성남시 | 48,585 | 9 | 10 | 1 |
| 부천시 | 16,687 | 4 | 3 | 0 |
| 용인시 | 3,600 | 4 | 1 | 0 |
| 안산시 | 37,825 | 4 | 8 | 4 |
| 안양시 | 29,526 | 6 | 6 | 0 |
| 시흥시 | 85,859 | 10 | 17 | 7 |
| 화성시 | 91,372 | 5 | 18 | 13 |
| 광명시 | 15,079 | 4 | 3 | 0 |
| 군포시 | 22,738 | 2 | 5 | 3 |
| 광주시 | 104,359 | 16 | 21 | 5 |
| 김포시 | 17,001 | 3 | 3 | 0 |
| 하남시 | 71,886 | 11 | 14 | 3 |
| 의왕시 | 45,688 | 8 | 9 | 1 |
| 양평균 | 17,143 | 2 | 3 | 1 |
| 과천시 | 29,751 | 5 | 6 | 1 |
| 고양시 | 119,355 | 15 | 24 | 9 |
| 남양주시 | 226,567 | 7 | 45 | 38 |
| 의정부시 | 57,970 | 6 | 12 | 3 |
| 구리시 | 20,500 | 5 | 4 | 0 |
| 양주시 | 76,544 | 4 | 15 | 11 |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운영계획

1) 표석

-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m 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변을 포함)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 ※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 부여
-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제한구역 표석이 개가 설치되어 있음
- 표석의 경계선 100m당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불확실한 경계지역 및 산업단지, 국책사업 등으로 최근에 해제되는 지역으로 경계표석의 추가 설치 필요
- 표석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에 의거하여 설치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



2) 안내판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처벌 등 홍보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 및 관리 필요
- 개발제한구역내 형성된 자연취락 및 해제 취락 인근이나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지역
 -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기준으로 설치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은 총 개가 있으며, 경기도가 개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개, 인천광역시가 개 순으로 분포

5. 구역관리의 전산망의 운영 및 활용방안

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배경

-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료가 대부분 전산화되지 않아 현황파악은 물론 각종 자료 분석 및 활용의 한계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등 수작업에 의존한 업무에서 벗어나 전산화가 절실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의 전산화 필요
- 현재 「개발제한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1) 개발제한구역 정보관리시스템

- 개발제한구역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관공서 내부시스템)

[도형 및 속성자료 구축범위]

| 구분 | 도형자료 구축사항 |
|--------|---|
| 도형 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변경(해제) 구역 • 입지대상시설 / 집단취락지구 / 주민지원사업 위치도 • 약식현황도(INDEX) / 경계표식 위치도 • 지적도/지형도/각종주제도 등 연계구축 자료 |
| 이미지 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진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 위법행위조사서 관련 이미지 / 경계표식 관련 및 주민지원사업 이미지 |

나. 운영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체 관리전산망간의 표준화와 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개발제한구역 정보관리시스템』에 기초자료 분석·지원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

다. 활성화 방안

- 불법행위단속 현황 등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하여 분기 또는 월간 보고토록 지침개정
 - 분기 또는 월간보고를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및 보고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고해상도 항공영상으로 KLIS 업데이트
 - 타 시스템보다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시스템 접속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생활비용 보조사업 업무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지원
 -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입력 등 시스템 지원 필요
- DB 입력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 항목에 “시스템 입력사항 이행여부” 추가
-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 잦은 인사이동 억제 및 업무교육 강화

라. 업무활용 계획

1) 활용범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 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개발행위허가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 불법행위단속 관리시스템
- 주민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 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 보전부담금 산정, 보전부담금 징수
- 토지매수 관리시스템: 보유토지현황관리
- 개발제한구역현황 관리 등: 필지현황 관리

2) 기대효과

- 관리비용 절감 효과 및 업무 효과 향상

3) 개선방향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DB 연계처리(update)로 자료의 정확성 확보 필요
- 개발제한구역 업무 특성상 건축물 및 형질변경에 따른 불법여부 단속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범위 확대
 -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모바일시스템 도입 필요(중장기적 계획)
- 현재 관공서 내부에서 운영·접근하는 시스템 방식에서 관공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영 변화 필요(일반인도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5] 자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으로 인한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재정 수요의 급속한 팽창에 대비
-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확대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비중 축소를 통한 중양의존적인 재정구조 탈피
- 다양한 지방세원의 발굴,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의 탄력성 및 안정성 유도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계획 운용

나. 자원확충계획

- 지방세와 관련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세수 징수율 제고
-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 공원조성 등 보전 부담금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문 규정 마련
- 공공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개발의 자원수요 절감

다. 단계별 투자계획

1) 기본방향

-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망에 따라 급속한 여건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에 대응하는 투자계획의 융통성 제고
-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2) 소요재원에 대한 부담 원칙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편익시설·복지사업에 지원
-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
-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시설에 지원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국고 지원 비율
 - 취약지구의 지원범위: 지방자치단체 부담 소요 용역비 시비 100%
 - 주민지원사업 지원범위
 - 재정자립도 30%이하: 소요사업비의 90%이내
 - 재정자립도 30~40%미만: 소요사업비의 80%이내
 - 재정자립도 40%이상: 소요사업비의 70%이내
 - 구역관리비 지원범위: 50% 이하로 계획

라. 주민지원사업비(생활비용보조 포함)

- 국고: 소요사업비의 70~90%, 지방비 10~30%

마. 구역관리비

- 일반관리비: 소요사업비의 100% 국고 지원
- 경계 표석 설치비: 소요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12 ~ '15년도 관리비 확정예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전체 산출

〈 수도권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

| 구 분 | 소요자원(백만원) | | | | | | 비 고 | |
|--------|----------------------|--------------------|--------------------|--------------------|--------------------|--------------------|----------|--|
|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합 계 | 324,910 (218,465) | 66,603 (34,439) | 74,934 (56,233) | 75,636 (50,065) | 59,047 (43,277) | 48,094 (34,451) | - | |
| 서울시 | 소계 | 112,209 | 24,196 | 31,285 | 32,645 | 18,527 | 5,556 | |
| | | (72,983) | (7,652) | (25,811) | (19,368) | (15,188) | (4,964) | |
| | 관리운영비 | 200 | 36 | 38 | 40 | 42 | 44 | |
| | | (200) | (36) | (38) | (40) | (42) | (44) | |
| 주민지원사업 | 112,009 | 24,160 | 31,247 | 32,605 | 18,485 | 5,512 | 자본보조 | |
| | (72,783) | (7,616) | (25,773) | (19,328) | (15,146) | (4,920) | 경상보조 | |
| 인천시 | 소계 | 20,085 | 7,656 | 7,160 | 4,678 | 292 | 299 | |
| | | (12,357) | (2,694) | (5,124) | (4,135) | (200) | (204) | |
| | 관리운영비 | 200 | 36 | 38 | 40 | 42 | 44 | |
| | | 0 | 0 | 0 | 0 | 0 | 0 | |
| 주민지원사업 | 19,885 | 7,620 | 7,122 | 4,638 | 250 | 255 | 자본보조 | |
| | (12,357) | (2,694) | (5,124) | (4,135) | (200) | (204) | 경상보조 | |
| 경기도 | 소계 | 192,616 | 34,751 | 36,489 | 38,313 | 40,228 | 42,239 | |
| | | (133,125) | (24,093) | (25,298) | (26,562) | (27,889) | (29,283) | |
| | 관리운영비 | 3,181 | 468 | 492 | 516 | 541 | 568 | |
| | | (2,585) | (468) | (492) | (516) | (541) | (568) | |
| 주민지원사업 | 189,435 | 34,283 | 35,997 | 37,797 | 39,687 | 41,671 | 자본보조 | |
| | (130,540) | (23,625) | (24,806) | (26,046) | (27,348) | (28,715) | 경상보조 | |

〈 서울시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총괄표 〉

| 구분 | 소요자원(백만원) | | | | | | 비고 |
|--------|-----------|---------|----------|----------|----------|---------|----|
|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합계 | 112,209 | 24,196 | 31,285 | 32,645 | 18,527 | 5,556 | |
| | (72,983) | (7,652) | (25,811) | (19,368) | (15,188) | (4,964) | |
| 관리운영비 | 200 | 36 | 38 | 40 | 42 | 44 | |
| | (200) | (36) | (38) | (40) | (42) | (44) | |
| 주민지원사업 | 112,009 | 24,160 | 31,247 | 32,605 | 18,485 | 5,512 | |
| | (72,783) | (7,616) | (25,773) | (19,328) | (15,146) | (4,920) | |

주1) 연차별 소요재원은 2017년 기준으로 매년 5%상승을 가정하여 산정 / 향후 재원금액은 조정 가능
 주2) ()국비 금액임

〈 인천시 연차별 자원조달계획 총괄표 〉

| 구분 | 소요자원(백만원) | | | | | | 비고 |
|--------|-----------|---------|---------|---------|-------|-------|--------------|
|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합계 | 20,085 | 7,656 | 7,160 | 4,678 | 292 | 299 | - |
| | (12,357) | (2,694) | (5,124) | (4,135) | (200) | (204) | |
| 관리운영비 | 200.2 | 36.2 | 38 | 40 | 42 | 44 | |
| | (0) | (0) | (0) | (0) | (0) | (0) | |
| 주민지원사업 | 19,885 | 7,620 | 7,122 | 4,638 | 250 | 255 | 자본보조 경상보조 |
| | (12,357) | (2,694) | (5,124) | (4,135) | (200) | (204) | |

주1) 연차별 소요재원은 2017년 기준으로 매년 5%상승을 가정하여 산정 / 향후 재원금액은 조정 가능
 주2) ()국비 금액임

● 경기도

〈 경기도 재정자립도 및 국비지원범위 총괄표 〉

| 구 분 | 재정자립도 | 국비지원범위 |
|------|-------|--------|
| 경기도 | 55.2 | 70% |
| 수원시 | 60.9 | 70% |
| 성남시 | 61.9 | 70% |
| 고양시 | 50.2 | 70% |
| 용인시 | 61.9 | 70% |
| 부천시 | 47.5 | 70% |
| 안산시 | 48.1 | 70% |
| 안양시 | 54.4 | 70% |
| 남양주시 | 40.3 | 70% |
| 화성시 | 64.2 | 70% |
| 의정부시 | 34.1 | 80% |
| 시흥시 | 55.6 | 70% |
| 광명시 | 46.9 | 70% |
| 김포시 | 50 | 70% |
| 군포시 | 46.2 | 70% |
| 광주시 | 51.6 | 70% |
| 양주시 | 38.9 | 80% |
| 구리시 | 40 | 70% |
| 의왕시 | 46 | 70% |
| 하남시 | 53.8 | 70% |
| 과천시 | 48.2 | 70% |
| 양평군 | 23.3 | 90% |

[관리운영비 재원조달계획 총괄표]

| 구 분 | 금액(백만원) | | | | | | 비 고 |
|----------|---------|-------|-------|-------|-------|-------|-------------------------|
|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관리운영비 합계 | 3,181 | 468 | 492 | 516 | 541 | 568 | - |
| 일반운영비 | 2,251 | 331 | 348 | 365 | 383 | 402 | 여비, 수용비 |
| 항측비 | 270 | 40 | 42 | 44 | 46 | 48 | 항공사진 촬영 (지자체 필요시) |
| 단속장비 | 660 | 97 | 102 | 107 | 112 | 118 | 차량, GPS 등 |

주1) 연차별 소요재원은 2017년 기준으로 매년 5%상승을 가정하여 산정 / 향후 재원금액은 조정 가능
 주2) ()국비 금액임

[경기도 년차별 재원조달계획 총괄표]

| 구 분 | 소요재원(백만원) | | | | | | 비 고 |
|--------|-----------|----------|----------|----------|----------|----------|----------------|
|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합 계 | 192,616 | 34,751 | 36,489 | 38,313 | 40,228 | 42,239 | - |
| | (133,125) | (24,093) | (25,298) | (26,562) | (27,889) | (29,283) | |
| 관리운영비 | 3181 | 468 | 492 | 516 | 541 | 568 | 항공사진판 독차량구입 |
| | (2,585) | (468) | (492) | (516) | (541) | (568) | |
| 주민지원사업 | 189,435 | 34,283 | 35,997 | 37,797 | 39,687 | 41,671 | 자본보조 경상보조 |
| | (130,540) | (23,625) | (24,806) | (26,046) | (27,348) | (28,715) | |

주1) 연차별 소요재원은 2017년 기준으로 매년 5%상승을 가정하여 산정 / 향후 재원금액은 조정 가능
 주2) ()국비 금액임

부 록 **IV**

-
-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주민·관계기관
의견 등
 - ② 환경성검토 결과서
 - ③ 별지서식

IV. 부록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주민·관계기관 의견 등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17. 8. 16
- 심의결과 : 원안가결(일부사항 권고)

|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형질변경 면적(m ²) | 건축 연면적(m ²) | 비고 |
|-----------------------|-----------------------------|---------|---------|-----|--------------------------|-------------------------|----|
| 수도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2021년 수도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 | | | |

- 심의결과: 권고사항

| 구분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2021년 수도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권고사항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평가등급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할 것. - 보전관리용지는 대부분 지정 도시계획시설(공원)임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에 따른 대책마련 등을 강구할 것. | - | 향후 검토 |

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

• 관계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 시 설 명 | 주민의견 청취결과 | | | 관계구청장 의견 | |
|------------------------------------|------------------------|----------------------|-------|----------|------|
| | 공람기간 (14일이상) | 일간신문 (2개 이상) | 의견요지 | 구청별 | 의견요지 |
| 2021수도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2017. 7. 28 ~ 8. 11 | 서울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등 | 의견 없음 | - | 의견없음 |

• 시설별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개별)

| 관계기관 | 시설명 | 협의의견 | 조치계획 |
|-----------------|----------|---|--|
| 한강유역환경청 | 공군제714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자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군사시설 철거지역으로서 훼손지역 위주로 사업 계획 수립이용 할 계획임 - 폐기물 처리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예정 |
| 종로구(문화과) | 공군제714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및 그에 따른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 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한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 요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시행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 할 예정임 |
| 종로구(도로과, 교통행정과) | 공군제714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출입로와 접하는 북악산길은 왕복2차선 도로이므로 부대출입을 위한 차량정차시 북악산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가협의 요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시행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처리 할 예정임 |

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구분 | 주 민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울 나래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이 우선되어야 함. ○ 장애학생 진·출입을 위한 도로확장 선행 ○ 내곡동에는 화장장, 어린이장애병원, 다니엘장애인학교가 있음에도 장애인학교를 추가유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설치하기 바람 ○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없음, 운동장 시설 등을 현대적으로 교체하고, 비장애인용 휘트니스장, 사우나시설 등 설치요구 ○ 서초구 관내 특수학교 대상자들의 교육권 확보 및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없도록 하기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 종상향 건의하였으며 추가협조 요청하겠음 ○ 구 도로 이므로 서초구에 건의하겠음. ○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형평성에 맞게 추가 설립 등 추진 하겠음. ○ 학교주차장, 운동장, 직업훈련 시설 등 학교시설물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겠으며, 운동장 트랙설치, 체력단련실 개방 등은 조경계획 수립 시 반영 ○ 지체장애특수학교인 나래학교 설립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및 증진 노력하겠음. | 반영 |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 구분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초 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과 이해 설득과정 필요하며,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사업 착공 전까지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입완료 및 이에 대한 자원대책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에 지적장애학교인 다니엘학교가 있으나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수요가 높아 나래학교의 신설을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 기회를 마련, 시행하겠음. ○ 법률 검토(자문) 후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교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반영 |

- 중앙부처, 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 의견)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공통 의견 | <공통사항> ○ 주차장은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적용 할 것(대형차량 주차장은 제외 가능) ○ 건물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 옥상은 조경녹화 할 것 ○ 절·성토 사면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우기 시 사면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 실시설계 시 주차장은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적용하겠음 (대형차량 주차장은 제외) ○ 실시설계 시 건물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 옥상은 조경녹화 하겠음 ○ 실시설계 시 절·성토 사면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 실시설계 시 우기 시 사면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음 ○ 실시설계 시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반영 |
| 서울 나래학교 | ○ 단지 내 조경계획 보완 및 타 시도 GB 내 특수학교 사례비교 | ○ 조경계획 마련 및 타 시도 GB 내 특수학교 비교 사례 조사표 첨부 | 반영 |

- 환경부 협의의견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울 나래 학교 (공통 의견) | ○ 본 GB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협의의견은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우리부에 통보하여야 함. | - | 반영 |
| |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은 기 훼손지 내 우선 입지하여야 함. |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학교부지로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 배치계획을 하였음. | |
| | ○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조경수목으로 재활용 등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부지 내 사용 가능한 기존 수목은 실시설계 시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 |
| | ○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후 우리부(한강유역환경청)와 관련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 |

- 국토연구원 협의의견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울 나래 학교 | □ 경관 및 환경적 적정성 ○ 가급적 기존의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을 활용하여 추가 형질변경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기존 건축물이 입지한 지역을 활용하여 추가 형질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였음. | 반영 |
| | ○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색채 등을 계획할 것. | ○ 실시설계 시 주변 경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색채 등을 계획·반영하겠음. | |

- 시 관련부서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 | | | | | | | | |
|--------------------|--|-----------------------|-----------|-------|----------|----------|----------|---------------|-----|-----|-----|-----|-----|--|-----------|
| <p>서울시 물순환 정책과</p> | <p>○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 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 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table border="1" data-bbox="424 768 868 907"> <thead> <tr> <th>구 분</th> <th>공공·교육</th> <th>공원·녹지</th> <th>교통·기반</th> <th>민간 (대규모)</th> <th>민간 (소규모)</th> </tr> </thead> <tbody> <tr> <td>빗물분담량 (mm/hr)</td> <td>6.0</td> <td>7.5</td> <td>5.0</td> <td>5.5</td> <td>3.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 사업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p>○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순환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0,000㎡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건축심의 단계에서 우리시 물순환 시민위원회에게 저영향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문 요청 바람 | 구 분 | 공공·교육 | 공원·녹지 | 교통·기반 | 민간 (대규모) | 민간 (소규모) | 빗물분담량 (mm/hr) | 6.0 | 7.5 | 5.0 | 5.5 | 3.5 | <p>○ 사업시행 시 환경보전 방안검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음</p> <p>○ 사업 인·허가 전 사전협의하겠음</p> | <p>반영</p> |
| | 구 분 | 공공·교육 | 공원·녹지 | 교통·기반 | 민간 (대규모) | 민간 (소규모) | | | | | | | | | |
| 빗물분담량 (mm/hr) | 6.0 | 7.5 | 5.0 | 5.5 | 3.5 | | | | | | | | | | |
| <p>물재이용</p> | <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p> <p>○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 할 것</p> | <p>○ 실시설계 시 반영하겠음</p> | <p>반영</p> | | | | | | | | | | | |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 물순환 정책과 | <p>수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설치공사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겠음 | 반영 |
| | <p>지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후 매 분기말까지 주관부서를 통해 물순환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준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반영하겠음 | 반영 |
| | <p>토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 3.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우려시설이나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는 아니나 사업시행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 시설계획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염곡동 72 일대 특수학교(가칭:나래 학교) 설치 예정부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 초등학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범위가 기 결정되었는 바, 본 학교 건축을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초등학교 → 특수학교) 및 건축범위(건폐율)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 ○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도시 계획포털)’ 을 적용하여 건축유형별 생태면 적률을 확보하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안·허가 전 시설의 종류 및 건축범위 변경을 시행하겠음. ○ 실시설계 시 반영하겠음. | 반영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설: 해당 없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2017. 8.)

| 구 분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수도권(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 의견없음 | - | - |

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

• 관계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 구분 | 주민의견 청취결과 | | | 관계구청장 의견 | |
|--------------------|-------------------------------|-----------------|-------|----------|------|
| | 공람기간 (14일이상) | 일간신문 (2개 이상) | 의견요지 | 구청별 | 의견요지 |
| 수도권(인천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2017. 7. 21. ~ 2017. 8. 7. | | 의견 없음 | | |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계기관 | 협의의견 | 조치계획 |
|------------|--|---|
| 환경정책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에 따라 이루어야 하며,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 시 대상지에 대한 야생 동·식물 보호종에 대한 서식 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을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요조사 상 우리시에는 대규모 입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기에 동 계획과 관련한 의견은 없으나, 훼손지 복구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등 사업시행 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당사업 인근에 국가지정 및 우리시 문화재 등이 입지하였을 경우, 문화재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대상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여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훼손지 복구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 시 관련 사항 반영하며, 사업지 주변 문화재 등이 있을 경우 현상변경 대상 여부를 관할 구청에 확인 하겠음 |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설(22개소)

| 일련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입지관련 | | 사업시행자 | 위치 | 부지면적(㎡) | 신청면적(㎡) | | | 비고 |
|------|-----------------------|--------|------|------|------------------|--|-------------|---------|-------------|------------|----|
| | | | 종별 | 입지유형 | | | | 토지형질변경 | | 건축연면적 | |
| 1 |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 시설(신설) | 하수도 | 2 | 목적달성 | 수원시장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 77,500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증)77,500 | 증)3,175.54 | |
| | | | | | | | | 계 | 77,500 | 3,175.54 | |
| 2 | 성남육군 제2176부대(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41번지 일원 | 284,902 | 기존 | 27,978 | 7,684.71 | |
| | | | | | | | | 변경(금회) | 4,638 | 3,220.12 | |
| | | | | | | | | 계 | 32,616 | 10,904.83 | |
| 3 | 매송 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 | 하수도 | 2 | 목적달성 | 화성시장 |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148 번지 일원(기 정: 야목리 1204-4 일원) | 23,550 | 기존 | 23,550 | 2,112 | |
| | | | | | | | | 변경(금회) | 감)2,480 | 감)712 | |
| | | | | | | | | 계 | 21,070 | 1,400 | |
| 4 |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증설) | 노인요양시설 | 2 | 기존시설 | 경기도지사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53-9번지 일원 | 8,467 | 기존 | 8,647 | 8,386.92 | |
| | | | | | | | | 변경(금회) | 감)114 | 6,675.72 | |
| | | | | | | | | 계 | 8,533 | 15,062.64 | |
| 5 | 광명 육군 제5226부대(신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광명시 가학동 1053-1번지 일원 | 52,299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52,299 | 11,253.49 | |
| | | | | | | | | 계 | 52,299 | 11,253.49 | |
| 6 | 의왕 부곡중학교(증설) | 학교 | 2 | 목적달성 | 의왕장안프로젝트 금융투자(주) | 의왕시 월암동 431번지 일원 | 13,686 | 기존 | 11,052 | 6,732.92 | |
| | | | | | | | | 변경(금회) | 2,634 | 3,212.24 | |
| | | | | | | | | 계 | 13,686 | 9,945.16 | |
| 7 | 의왕 특수학교(신설) | 학교 | 2 | 목적달성 | 경기도교육청 | 의왕시 포일동 28번지 일원 | 15,363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15,363 | 12,085.76 | |
| | | | | | | | | 계 | 15,363 | 12,085.76 | |
| 8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증설) | 공공청사 | 1 | 목적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일원 | 10,256 | 기존 | 434,944.32 | 176,991.69 | |
| | | | | | | | | 변경(금회) | - | 4,552.17 | |
| | | | | | | | | 계 | 434,944.32 | 181,543.86 | |
| 9 | 과천 서울대공원(증설) | 근린공원 | 1 | 보전도움 | 서울특별시시장(서울대공원장) |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 일원 | 6,670,000 | 기존 | 2,554,064 | 187,105.07 | |
| | | | | | | | | 변경(금회) | - | 5,363.20 | |
| | | | | | | | | 계 | 2,554,064 | 192,468.27 | |
| 10 | 과천 서울경마공원(증설) | 체육시설 | 2 | 목적달성 | 한국마사회 |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일원 | 1,042,967.3 | 기존 | 1,042,967.3 | 213,785.05 | |
| | | | | | | | | 변경(금회) | - | 14,873.38 | |
| | | | | | | | | 계 | 1,042,967.3 | 228,658.43 | |
| 11 | 고양 제5161부대(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4-15 일원 | 458,736 | 기존 | 85,468 | 35,230.45 | |
| | | | | | | | | 변경(금회) | 14,679 | 8,512 | |
| | | | | | | | | 계 | 100,147 | 43,742.45 | |

IV. 부록

| 일련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입지관련 | | 사업시행자 | 위치 | 부지면적(㎡) | 신청면적(㎡) | | | 비고 |
|------|-----------------------|---------|------|------|--------------|------------------------|------------|---------|-----------|-----------|----|
| | | | 종별 | 입지유형 | | | | 토지형질변경 | | 건축연면적 | |
| 12 | 고양 제5322부대 (신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71-3번지 일원 | 46,838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13,226 | 9,043 | |
| | | | | | | | | 계 | 13,226 | 9,043 | |
| 13 |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아구장 (신설) | 실외체육시설 | 1 | 보전도움 | 서울시장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8번지 일원 | 902,367 | 기존 | 902,367 | 29,437.43 | |
| | | | | | | | | 변경(금회) | (94,720) | 344 | |
| | | | | | | | | 계 | 902,367 | 29,781.43 | |
| 14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 폐기물처리시설 | 2 | 목적달성 | 윤일용한은실 | 고양시 도내동 707번지 일원 | 16,065 | 기존 | - | 66 | |
| | | | | | | | | 변경(금회) | 16,065 | - | |
| | | | | | | | | 계 | 16,065 | 66 | |
| 15 | 고양휴게소 (서울방향) | 도로시설 | 1 | 선형필수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26,281 | 기존 | 7,740 | - | |
| | | | | | | | | 변경(금회) | 18,541 | 2,941.85 | |
| | | | | | | | | 계 | 26,281 | 2,941.85 | |
| 16 | 고양휴게소 (문산방향) | 도로시설 | 1 | 선형필수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32,590 | 기존 | 11,555 | - | |
| | | | | | | | | 변경(금회) | 21,035 | 2,941.85 | |
| | | | | | | | | 계 | 32,590 | 2,941.85 | |
| 17 | 남양주 제56사단 220연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별내동 2358번지 일원 | 489,798 | 기존 | 48,801.28 | 39,674.34 | |
| | | | | | | | | 변경(금회) | 11,138 | 569 | |
| | | | | | | | | 계 | 59,939.28 | 40,243.34 | |
| 18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6번지 일원 | 822,683.41 | 기존 | 7,956 | 13,043 | |
| | | | | | | | | 변경(금회) | 10,720 | 5,360 | |
| | | | | | | | | 계 | 18,676 | 18,403 | |
| 19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신설) | 도시공원 | 1 | 보전도움 | 의정부시장 |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 | 79,800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79,800 | 45,441.62 | |
| | | | | | | | | 계 | 79,800 | 45,441.62 | |
| 20 | 의정부 장암변전소 (증설) | 전기공급설비 | 2 | 선형필수 | 한국전력공사 | 의정부시 장암동 221번지 일원 | 20,349 | 기존 | 20,349 | 340.5 | |
| | | | | | | | | 변경(금회) | - | 3,165.53 | |
| | | | | | | | | 계 | 20,349 | 3,506.03 | |
| 21 | 양주 육군 제8276부대 (증설) | 국방군사 | 1 | 국방군사 | 국방부장관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47-3 일원 | 220,464 | 기존 | 22,061 | 8,865.09 | |
| | | | | | | | | 변경(금회) | 14,628 | 7,848 | |
| | | | | | | | | 계 | 36,689 | 16,713.09 | |
| 22 | 남양주 월문 자연휴양림 (신설) | 휴양림 | 2 | 보전도움 | (주)싸이칸홀딩스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30번지 일원 | 1,340,630 | 기존 | - | - | |
| | | | | | | | | 변경(금회) | 52,840 | 6,401 | |
| | | | | | | | | 계 | 52,840 | 6,401 | |

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

- 관계 구청장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 구분 | 주민의견 청취결과 | | | 관계시장·군수·구청장 의견 | |
|--------------------|-------------------------------|-----------------|---------------------|----------------|-----------|
| | 공람기간 (14일이상) | 일간신문 (2개 이상) | 의견요지 | 시장·군수·구청장 | 의견요지 |
| 수도권(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2017. 8. 1. ~ 2017. 8. 17. | |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등 3건 | | 사업적기 추진 등 |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 시 설 명 (사업시행자)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21개소 | - | - | - |
|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 -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2020년 유입하수 시설용량 초과 운영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입북·구운·금곡 처리분구 발생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와 이격된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성남육군제2176부대(증설) | - '14- '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병력 및 장비 편제 개편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병영시설, 전력화 장비 저장·정비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병영생활관, 식당, 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 개발제한구역인 매송면, 비봉면, 비봉택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처리구역 내 발생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증설) |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서부지역거점병원으로서 꾸준한 환자 증가로 부족한 병실과 의료복지시설 증축 및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광명 육군 제5226부대(신설) | - '14- '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부대개편 및 인원 수용시설 변경에 따라 현재 지역에서 기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여 병영생활관, 정비 및 작전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의왕 부곡중학교(증설) | -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용과 부곡중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나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 확보를 통해 학급, 급식실, 체육관 등을 포함한 부속동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의왕 특수학교(신설) | - 의왕시가 속한 제6권역(안양·과천·군포·의왕)은 경기도 특수학교 평균 배치율(23.4%)에 미달(18.1%)하는 지역으로서, 제6권역(의왕시 등)의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별 특수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증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1995년 준공되어 사용중이나, 이후 조직·정원 확대에 따라 발생한 시설 부족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구선관위 청사로 분리된 조직의 통합을 위하여 현 여유 부지 내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과천 서울대공원(증설) | - 30년 이상 노후된 동물사 정비를 통한 시 등 질병예방 및 동물생활환경 개선과 동물원 입구에 산발적으로 입지한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관람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IV. 부록

| 시 설 명 (사업시행자)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과천 서울경마공원(증설) | - 중문지역에 산재한 매표소 등 고객지원기능을 집산화하고 노후된 마사시설 리모델링 및 말 운동시설 증축 등을 통해 경주마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고양 제5161부대(증설) | - '14- '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부대개편에 따른 부대시설 증가와 증강된 부대운용을 위하여 의료시설, 차량정비고, 관사, 유류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고양 제5322부대(신설) | - 현재 사용중인 시설의 노후화 및 부대 개편에 따라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급식유통센터, 현대화 중앙조달품 창고, 무기고, 탄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야구장(신설) | - 서울 시내에 야구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내 철거된 재활용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잔디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처리시설(증설) |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계획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2차 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보완(콘크리트 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 |
| 고양휴게소(서울방향) | - 고속국도 17호선 109.7km 구간에 정규 휴게소가 전무한 실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 저감을 위해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 |
| 고양휴게소(문산방향) | - 고속국도 17호선 109.7km 구간에 정규 휴게소가 전무한 실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 저감을 위해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 |
| 남양주 제56사단220연대(증설) | - '18- '22 육군 중기계획에 의한 예비군 훈련시설 신축사업으로 '18년 부대개편으로 예비군 훈련인원 증가되어 부족한사격장과 노후된 기존 시가지전투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 |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증설) | - '14- '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부대개편에 의해 증편되는 인원 약 271명에 대한 생활공간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통합정비고 및 차양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신설) | - 미군으로부터 반환예정인 캠프잭슨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의정부 장암변전소(증설) | - 1968년 준공된 옥외철구형 변전소의 노후화 및 피로도 가속화로 변전기기의 부분적 교체로는 성능확보가 어려워 변전기기 옥내화를 위한 건축물 증축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 양주 육군 제8276부대(증설) | - '14- '30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인한 부대 통합과 재배치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인 병영식당, 창고, 정비공장, 차양대, 유류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 | |

나.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구분 | 주 민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안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 - 석수동 241-14번지 등 3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으로서 해당 지역주민 의견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한 사항임 | 미반영 |
| 광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 -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123-1 번지 소유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제도개선(완화)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민의견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완화) 의견은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움 | 미반영 |
| 남양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년전 입안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재산권만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폐기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실태는 주민 대부분이 범법자로 되어있는 상태로 범칙금을 이용하여 시행정 시설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이런 실태를 개선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폐기하여야 함 - 토지의 이용 및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에게는 농사만 지으라고 제한하고 생존수단으로 다른 변경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지우게 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해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토지이용 및 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법’ 폐지의 의견은 금번관리계획 반영하기 어려움 | 미반영 |
| 남양주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시키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억압하고 그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재산권을 빼앗긴 토지주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됨 -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존치시키고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억압하는 정비는 폐기되어야 함 -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빼앗은 재산권을 이용한 지원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든국민이 갖는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해주기 바람 -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년전에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개선바람 | | |

• 시장·군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 구분 | 시장·군수 의견 | 조치계획 | 반영여부 |
|-----|--|---|-------|
| 과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시설 증설, 서울대공원 조류관, 해양관 변경, 서울경마공원 마사 증설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 하겠음 | 반영 |
| 구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가능지역 내용 중 해제기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종전대로 시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에 바로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기준 2km에서 5km 정하는 경우 우리시 전체 토지를 규제하게 됨 ※ 구리시 행정구역 폭 약 2.6km ~ 5.2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반영토록 하겠음 | 반영 |
| 김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계획 상 2018년 반영액이 3억8천만원(국비 1억9천, 시비 1억9천)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사항으로 신청사항 대로 증액 요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시설명>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고촌읍 풍공리 산194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40m. B=8m - 사업비 : 16.8억원(국비 8.4억, 시비 8.4억) - '18년 사업비요구 : 11.2억(국비 5.6, 시비 5.6) - '19년 사업비요구 : 5.6억(국비 2.8, 시비 2.8)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에서 18년 GB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한 풍곡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GB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4조와, 별표1[지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추가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반영 |
| 시흥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 내 위치한 유일한 노인요양시설로 시흥시 외에도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의왕, 김포 등 경기도 서부권역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09~현재까지 경기도 서부권역 60세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 21년 GB관리계획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에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 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국고지원비율을 해당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음 | 향후 반영 |
| 하남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사업 선정기준 변경요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GB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별표1[주민지원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선정기준 변경 타당성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음 | 향후 반영 |

• 중앙부처, 도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입지대상시설 사전협의 의견)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공통 의견 | ◦ 주차장은 잔디 블록 등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 적용할 것(대형차량 주차장은 제외가능) | ◦ 사업시행 시 옥외 주차장은 투수성이 우수하며, 친환경재질을 사용하여 녹화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 ◦ 건물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건물옥상은 조경 녹화 할것 | ◦ 사업시행 시 건물은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건물 옥상은 조경녹화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 ◦ 절·성토 사면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 사업시행 시 절·성토 사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 ◦ 우기시 사면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 ◦ 사업시행 시 사면은 녹화공법 등을 통해 토사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음 | 반영 |
| | ◦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 ◦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성남 육군 제2176부대 등 6개 부대 (공통) | ◦ 시설별 수요근거 보완 | ◦ 시설별 수요근거를 보완 작성하겠음 | 반영 |
| | ◦ 항공사진에 건물배치도 표시 | ◦ 항공사진상 건물 배치도 표시는 군사보안업무 규정상 제한되어 향후 심의시 항공사진에 건물 배치한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여 회의 후 회수에 정 | 반영 |
| 화성 매송공공하수처리 시설 | ◦ 시설별 현황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크기조정 | ◦ 시설별 현황 크기조정하여 식별이 용이도록 하겠음 | 반영 |
| | ◦ 지상부 시설을 명확히 계획·제시할것 |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상부 시설계획으로는 지역주민 휴게공간으로 파고라, 평의자, 등의자와 운동공간으로 배드민턴장 2면과 체력단련시설 6종, 어린이 체험 및 놀이공간으로 과학놀이터, 처리시설 부지경계지역 식재공간으로 왕 빛나무길 등으로 조경계획 하겠음 | 반영 |
| 의왕 특수학교 | ◦ 개발제한구역 내 특수학교 사례 조사 보완 | ◦ 대전특수학교(행복학교), 서울 강남서초특수학교(나래학교) | 반영 |
| 과천 서울대공원 | ◦ 판매, 편익시설 불가피성 자료보완 | ◦ 테마가든은 동물원, 서울랜드와 독립된 공간으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음 ◦ 테마가든내에는 장미원, 고향숲, 어린이동물원이 있어, 매년 이용객(특히 어린이 이용객)이 많음 ◦ 넓은 면적(82,147㎡)에 비해 식음료 판매시설이 없음 ◦ 이용 시민들을 위해 판매, 편익시설 설치가 필요 | 반영 |
| 과천 서울경마공원 | ◦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설치규모에 대한 자료 보완하여 중도위 심의시 조치 할 것 | ◦ 중도위 심의전까지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및 설치규모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조치하겠음 | 반영 |
|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야구장 | ◦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할 것 |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서울시설공단 등 공공에서 관리·운영하여 공공성 확보 예정 | 반영 |
| 고양 휴게소 (서울·문산방향) | ◦ 입지의 불가피성 및 시설규모 산정근거 제시할 것 | ◦ 고속국도 17호선 109.7km구간내 정규휴게소 설치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주요연계노선과의 휴게소 이격거리 및 입지선정 가능 구간에 대한 상세검토 결과를 제시하겠음 | 반영 |
| | ◦ 1·2등급지는 가능한 제척하고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 ◦ 환경평가 1등급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 방향의 경우 휴게소 위치를 변경하여 2등급지는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음. 다만, 문산방향 2등급지는 부지 중앙부에 위치하여 편입이 불가피하나 건축부지를 외측→내측으로 변경하여 2등급지내 건축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고, 부지형태를 변경하여 2등급지 저축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43.4%→18.7%) ◦ 개발제한구역내 휴게소 설치를 고려하여 부지면적을 최소화 하였으며(유료도로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대비 서울방향 35.7%, 문산방향 44.3%) 시설규모 산정근거를 제시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p> | <p>◦입지 및 신축건물의 불가피성</p> | <p>◦본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거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동 법에 따른 “발전 종합계획”에 근린공원(예술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문화공원”으로 반영 등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이루며, ◦도시특성상(도시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지 내 공원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증가하는 시민의 미술 관람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부지반환이 예정된 캠프잭슨부지를 활용하여 미술을 주제로 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존 군사시설을 재 활용하는 계획(안)으로 변경하였음</p>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시설 및 주차장 규모산정근거</p> | <p>◦전시장 및 사무실, 주차장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보완 하였음</p>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개발제한구역 내 문화공원 중 대규모 전시장 사례 및 구체적 전시계획(안)추가</p> | <p>◦GB내 입지하고 있는 미술전시관 사례</p> <table border="1" data-bbox="790 884 1300 1099"> <thead> <tr> <th>시설명</th> <th>대지면적 (㎡)</th> <th>연면적 (㎡)</th> <th>층 수</th> <th>공원종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여진불교 미술관</td> <td>9,595</td> <td>1,682</td> <td>지상2층</td> <td>근린공원</td> <td>대전</td> </tr> <tr> <td>대구미술관</td> <td>71,202</td> <td>21,701</td> <td>지하1층~지상3층</td> <td>근린공원</td> <td>대구</td> </tr> <tr> <td>현대미술관</td> <td>73,361</td> <td>34,006</td> <td>지하1층~지상3층</td> <td>개별임지</td> <td>과천</td> </tr> <tr> <td>제비울미술관</td> <td>29,000</td> <td>2,300</td> <td>지하1층~지상3층</td> <td>개별임지</td> <td>과천</td> </tr> </tbody> </table> | 시설명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층 수 | 공원종류 | 비고 | 여진불교 미술관 | 9,595 | 1,682 | 지상2층 | 근린공원 | 대전 | 대구미술관 | 71,202 | 21,701 | 지하1층~지상3층 | 근린공원 | 대구 | 현대미술관 | 73,361 | 34,006 | 지하1층~지상3층 | 개별임지 | 과천 | 제비울미술관 | 29,000 | 2,300 | 지하1층~지상3층 | 개별임지 | 과천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시설명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층 수 | 공원종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진불교 미술관 | 9,595 | 1,682 | 지상2층 | 근린공원 | 대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구미술관 | 71,202 | 21,701 | 지하1층~지상3층 | 근린공원 | 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미술관 | 73,361 | 34,006 | 지하1층~지상3층 | 개별임지 | 과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비울미술관 | 29,000 | 2,300 | 지하1층~지상3층 | 개별임지 | 과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미술유형별 관람 및 체험 등을 위해 “서양, 동양, 아동, 현대, 공예, 사진전시” 등 13개 유형별 전시관과 “국제아트페어” 및 “화랑미술제” 개최 등을 위해 국제전시장을 계획하였으며, 전시계획(안)은 기존 행사 사례를 감안하여 “국제아트페어”의 경우 16개국 170여 화랑 유치로 매년10월 전시 예정이며, “화랑미술제”의 경우 국내 87개 화랑 유치로 매년3월 전시 예정임. 또한, 13개 유형별전시관의 경우 년 중상시적인 작품 전시 등 국내·외적인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미술작품 관람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시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작가 및 작품”, “국내·외적인 미술전시 유치” 등 시설관리·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술관련 민간전문기관 및 단체,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한 관리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구체적인 전시계획(안)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계획할 예정임</p>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 장암 변전소</p> | <p>◦토지형질변경 면적 근거 자료보완</p> | <p>◦장암변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의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은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기 취득한 시설로 볼 수 있음</p>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잔여부지 활용방안 명확히 할 것</p> | <p>◦잔여부지는 군 시설관련 고도제한이 있어 전력시설물 신축 등 개발사업이 불가하여 현재 본사 차원에서 매각이 추진중이며, 추후 매각 추진이 어려울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긴급재난 발생시 전력설비의 비상복구 자재 저장소로 운용할 계획임</p> |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공통 의견 | <p>■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시설물의 입지는 지양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p> | <p>○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시설물의 입지는 지양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p> | 반 영 |
| | <p>○사업부지내 양호한 식생은 가급적 원형보전하고, 부지조성은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과도한 개발지양</p> | <p>○사업부지내 양호한 식생은 가급적 원형보전하고, 부지조성은 현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과도한 개발지양하겠음.</p> | 반 영 |
| | <p>○사면발생은 최소화하고, 사면발생부분은 조속히 복원</p> | <p>○사면발생은 최소화하고, 사면발생부분은 조속히 복원하겠음.</p> | 반 영 |
| | <p>○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공사·운영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 강구</p> | <p>○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공사·운영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 강구.</p> | 반 영 |
| | <p>○공사·운영 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발생 오·폐수는 주변 차집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하류수계의 수질을 고려하여 설치</p> | <p>○공사·운영 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발생 오·폐수는 주변 차집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하류수계의 수질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음.</p> | 반 영 |
| | <p>○공사·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외부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7,18)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08.12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매뉴얼('13.7환경부)」에 따라 현지여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p> | <p>○공사·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외부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매뉴얼에 따라 현지여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하겠음.</p> | 반 영 |
| | <p>○포장지역은 최소화하고, 부득이 포장할 경우 투수성 포장재 등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p> | <p>○포장지역은 최소화하고, 부득이 포장할 경우 투수성 포장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p> | 반 영 |
| | <p>○지장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환경오염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조치</p> | <p>○지장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환경오염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조치 하겠음.</p> | 반 영 |
| | <p>■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후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일 경우에는 향후 우리청과 관련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p> | <p>○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후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일 경우에는 향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겠음.</p>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공통 의견 | <p>○ 사업부지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2013.5.9.)」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하며,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8.8.)」에 따라 산정</p> | <p>○ 사업부지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방침」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하며,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하겠음.</p> | 반영 |
| | <p>■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아래지역에 입지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함</p> | <p>○ 아래지역 입지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음</p> | 반영 |
| | <p>○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예상되는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 보전관련 용도지역과 인접한 지역, 산림지역의 5~6부 능선 이상 지역 등)</p> | <p>○ 조건 해당 시 해당 부지에 사업 지양하겠음</p> | 반영 |
| | <p>○ 백두대간·정맥 등 주요 능선축,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및 하천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p> | <p>○ 조건 해당 시 해당 부지에 사업 지양하겠음</p> | 반영 |
| | <p>○ 풍수해, 산사태, 지방붕괴 등 기타 발생 가능한 지역</p> | <p>○ 조건 해당 시 해당 부지에 사업 지양하겠음</p> | 반영 |
| 수원 황구 지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p>○ 동사업은 황구지천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인근 황구지천의 수질현황이 하류수계(안성천)의 목표기준(Ⅲ, 보통)을 초과하므로, 인근 수계에 대하여 오염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p> | <p>○ 해당시설 설치시 인근 수계에 대하여 오염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계획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p> | 반영 |
| | <p>○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므로, 하수처리시설 주요공정은 지하화·밀폐화하여 설치하는 등 악취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p> | <p>○ 하수처리시설 주요 공정등은 지하화 하도록 계획하여, 해당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부지 인근으로의 악취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였음</p> | 반영 |
| 성남 육군 제2176 부대 | <p>○ 동 사업은 부대개편에 따른 인원, 장비증가 및 노후화 된 병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 등재된 건축물 철거 후 신축(철거 후 신축 16동, 신축2동)하는 사업으로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p> | <p>○ 현재 훼손되어있는 부지에 철거 후 신축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추가훼손지역을 최소화 하겠으며, 추가적인 절개지 및 사면생성은 없음.</p> | 반영 |
| 성남 육군 제2176 부대 | <p>○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함</p> | <p>○ 사업간 철거 및 공사자재등 건축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절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겠음.</p> |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화성 매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동화천 인근에 매송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하는 사업으로, 최종방류수가 방류되는 수계에 대하여 오염 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방류수질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류수계인 동화천 오염부하가 가중되지 않도록 방류수질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거한 법적 방류수질기준이하로 방류토록 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시설 주요공정은 지하화·밀폐화하여 설치하는 등 악취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처리시설 주요공정은 완전지하화·밀폐화하고 악취저감설비 및 악취확산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반 영 |
| 시흥 노인 전문 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시설물 설치 등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부지의 계획고는 기존 시설과 연계할수 있도록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함.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축하는 건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 형태, 색채, 재료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외곽 및 건축물 주변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개발로 스카이라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변 녹지대 보존등으로 기존 경관요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관 증축예정지 내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에 대한 정밀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및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훼손수목에 대한 처리계획(양호한 수목은 조건옥지에 이식 등)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지구는 환경부 생태자연도상 3등급 지역에 해당지역이며, 조경수 및 수목과 초본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 환경평가결과 일부 2등급 포함 지역 내에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은 분포하지 않으며 노거수도 분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에 입지할 시설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경수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식재할 계획임. | 일부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의 고속운전 및 편하중에 의한 소음억제 기계의 종류, 작업 시간대설정 등에 유의(주간공사) 장비의 투입시 효율적 투입준수 | 반 영 |
| 광명 육군 제5226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부대개편으로 증가되는 병력 및 장비를 고려하여 기존 군부대 부지 내 경계 및 작전시설을 신축(고가초소 및 정비고 등 8동)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는 기존 훼손된 지역내에 전량 설치할 계획이며 추가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동 시설의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증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용중인 오수처리시설 용량 80톤이며 추가로 신축되어지는 건물(차양대, 고가초소)들은 상수 및 하수 사용이 없는 시설이며 정비고는 사용인원이 10명 미만으로 기존 오수처리시설로 사용이 가능함.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의왕 부곡 중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내 교실, 급식실, 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나대지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공사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재질 등을 선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학교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재질 등을 선정한 교사가 되도록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옆 덕영대로로 인한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교사 내 소음 기준(55dB(A))이하로 저감방안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덕영대로로 인한 소음영향을 예측하여 교사 내 소음 기준(55dB(A))이하로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 | 반 영 |
| 의왕 특수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지형 훼손은 없으나, 공사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공사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옆 소하천이 위치하는 바, 공사 및 운영 시 수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발생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방안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공사 및 운영 시 수계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발생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방안 강구)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도로 개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겠음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과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 <p>○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시설물 설치 등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 <p>○사업대상 지역은 기존 과천 정부종합청사 단지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노후 건축물 철거, 숲속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형질변경 면적 최소화 및 녹지 공간 최대한 보존토록 하였음</p> | 반 영 |
| | <p>○증축하는 건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 형태, 색채, 재료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외곽 및 건축물 주변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p> | <p>○증축하는 건물은 주변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 색채, 재료 등을 선정하겠으며, 사업부지 건축물 주변으로 숲속체육공원 조성, 옥상 녹화 등을 통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p> | 반 영 |
| | <p>○서측 숲속체육공원 조성시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에 대한 정밀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및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기 훼손지 위주로 계획하여 지형변화 및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 <p>○서측 숲속체육공원 조성시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에 대한 정밀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녹지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정밀 식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업부지 내 경사도는 대부분 10% 이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숲속체육공원 조성등 녹지 공간을 최대한 조성하겠음</p> | 반 영 |
| | <p>○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녹지 및 훼손수목에 대한 처리계획(양호한 수목은 조경녹지에 이식 등)을 수립하여야 함</p> | <p>○숲속체육공원 조성 및 옥상녹화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양호한 수목은 녹지에 이식토록 하겠음</p> | 반 영 |
| | <p>○절토시 발생하는 사토(7,120m³)를 임시 적치 시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보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 <p>○토목공사시 발생하는 사토(7,120m³)는 임시 비닐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가배수로 및 간이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함</p> <p>○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식재작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발생하는 사토는 부지내 조경녹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p> | 반 영 |
| | <p>○사업시행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 <p>○공사중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항타 작업등 소음·진동 발생이 큰 작업시 인접지역이 업무시설 지역임을 감안하여 야간작업 및 주말 자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p>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과천 서울대 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토지형질변경 없이 조류지구 (해양관, 조류보전센터, 물새의 습지, 조류 번식장), 안내소, 테마가든(휴게시설)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시설물 설치하고 하류수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강구 후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 반영 |
| 과천 서울 경마 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기 운영중인 경마공원 내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신축 및 증축으로 예상되는 필요용수 및 오수는 기존계획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공급·처리하여 수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 최소화 하겠음 | 반영 |
| 고양 육군 제5161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부대개편에 따른 인원, 장비증가 및 노후화 된 병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 등재된 건축물 철거 후 신축(철거 후 신축 11동, 신축5동)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훼손은 최소화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은 적절한 절차와 계획으로 조치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동 시설의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증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건은 개편 계획에 따른 감소부대 고려 기존시설 운영 계획임.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증설여부 검토하겠음. | 반영 |
| 고양 육군 제5322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기존 군부대 내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가 신축계획 중 대부분이 임야를 훼손하여 설치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종지 내에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재배치 계획에 의거 현재 시설물 건축중인 부대와 설계시기때부터 협조 및 조율을 하였으나, 부대 임무수행에 있어 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부분적인 임야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육본 주관하 사전 타당성검토 중임. * 타당성 검토 : 시설물에 대한 면적, 예산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소요에 확인 | 일부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고양 육군 제5322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등재된 건축물은 없으며, 기존에 이전하는 부대 공사간 시설물 철거는 100% 완료하였고, 시설의 입지는 부대 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일부 추가적인 훼손은 불가피함. | 일부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동 시설의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증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병력의 하수 발생량은 기존 시설 대비 개량 및 증설소요는 없으나 향후 시설설계간 관련사항 정확하게 판단하겠음 | 반 영 |
| 고양 난지물 재생 센터 난지 야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내 재활용 시설이 철거된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점·비점오염원 증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의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수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재질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또한, 공사 및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외부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7,18)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12, 환경부)에 따라 현지어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와 야생생물보호구역이 3km 이격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 및 운영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반 영 |
| 고양 동해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일부 면적을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동측에 창릉천이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비점오염원의 창릉천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 중 일부 면적을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원의 창릉천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이내이지만, 아연, 니켈 등 항목이 고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겠음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고양 휴게소 (서울, 문산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휴게소 위치변경은 환경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보전방안 수립 중인 것으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휴게소 위치변경은 환경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보전방안 수립 중인 것으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으로 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부지와 인접하여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위치하여 공사 및 운영시 영향이 우려되는 바,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운영 시 법정보호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부지와 인접하여(약 500m이격)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를 서식지 및 사업구역주변으로 확대하여 관찰토록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하여 모니터링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음 (6~9월까지 월1회,우천시 조사 2회포함주, 야간 조사실시) ※공사 및 운영시 맹꽁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 에서 제시한 동물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양서,파충류 및 소형포유류의 탈출경사로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환경부)』 를 참고하여 30m간격으로 설치 -유도울타리는 야생동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인공구조물(교량,방음벽등)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양서,파충류용 꺾음망을 덧대어 설치 | 반 영 |
| 고양 휴게소 (서울, 문산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는 최대한 현 자연지형을 이용하고, 절·성토 사면은 최대12m이하로 조성하여야 함 사면발생구간은 환경정화수종의 식재 등 친환경적 생태복원공법을 적용하여 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는 최대한 현 자연지형을 이용하고, 절·성토 사면은 최대12m이하로 조성하겠음, 사면발생구간은 환경정화수종의 식재 등 친환경적 생태복원공법을 적용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수성 포장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소 내 주차장 부지에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잔디블럭)를 적용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정온시설에서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기준 이내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정온시설에서의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기준 이내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색채·소재 등을 선정하여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재료 사용, 건물옥상 녹화, 지역특성을 갖춘 조경계획 수립으로 경관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반 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남양주 제56사단 20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부대개편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인원 증가로 사격장 부족 및 기존 시가지 훈련장 노후화로 활용이 불가하여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철거후 신축 1동, 신축 1동)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의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에 따라 절차 이행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동 시설의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및 증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의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 반영 |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부대개편에 따른 인원, 장비증가 및 노후화 된 병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 등재된 건축물 철거 후 신축(철거 후 신축 4동, 신축4동)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부대개편사업은 기 개발된(기존건물 철거후신축)부지내 사업이며, 부지조성(형질변경)은 최소화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함.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리모델링 폐기물, 신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혼합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및 처리예정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번 계획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이 있으므로 오수발생량 및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처리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은 90ton으로 환경부 고시 및 국방군사시설 오수량 산정에 의하여 용량계산 및 국방시설본부 공법 심의를 통하여 처리공법 강구 | 반영 |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반환공여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 여부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 반환 이후 토양오염치유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후 공원사업을 추진토록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에 포함하므로, 스카이라인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주차장, 광장 등 투수성 포장재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계획은 스카이라인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겠으며, 인공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주차장, 광장 등 투수성 포장재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을 강구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의정부 장암 변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기존 변전소 내 변전기기의 옥내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형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전소 내 부지 중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치계획(부지:15,000㎡) 및 생태자연1등급 구역 보호 및 노후화된 수로정비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 시행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전기기 옥내화 및 연결선로 지중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전파 장애, 건강 열양등을 고려(지중화 구간 상부의 충분한 녹지 확보 등)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전자계 기준이하로 건설[국제(전계:4.16kV/M이하, 자계:200uT이하)[국내(전계:3.5kV/M이하, 자계:83.3uT이하)] 전력설비 건설지중화 구간 중 접근로를 제외한 부분에 녹지 확보함.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대기질 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인근 정온시설(없음) 재조사 실시하며, 옥내 변전소 내 장비의 소음은 흡음재 및 차음재 설치로 최소화 변전시설에서의 별도의 대기질 발생 요인은 없음 | 반 영 |
| 양주 육군 제8276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은 부대개편에 따른 인원, 장비증가 및 노후화 된 병영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 군부대 부지 내 미 등재된 건축물 철거 후 신축(철거 후 신축 8동)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은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적인 훼손은 최소화하겠음. | 반 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와 계획으로 조치하겠음. | 반 영 |
| 양주 육군 제8276 부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번 계획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이 있으므로 오수발생량 및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처리공법을 선정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건은 개편 계획에 따른 감소부대 고려 기존시설 운영 계획임. 처리효율 및 유입량 분석을 통해 증설여부 검토하겠음. | 반 영 |

• 도 관련부서

| 구분 | 협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건축 디자인과 | ○ 202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이 경관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경관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함 | ○ 202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이 경관법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경관 심의 대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득하겠음. | 반영 |
| 노인복지과 | ○ 입지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지 내 유·무연 분묘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개장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입지시설 사업 추진 시 사업 부지 내 유·무연 분묘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개장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 반영 |
| 도로정책과 | ○ 국지도 및 지방도 편입시에는 도로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부서와 별도협의하시기 바람 | ○ 국지도 및 지방도 편입시에는 도로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부서와 별도협의 하겠음. | 반영 |
| 문화유산과 |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 세부 사업 시행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담당자 : 김선미) ※ 사업부지내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함 |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 세부 사업 시행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 반영 |
| | ○ 해당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74조(준용규정),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4조(허가사항), 제29조(신고사항)에 해당될 시에는 제반 규정에 의해 사전에 현상변경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담당자 : 고세욱)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일 경우 문화재청,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서 300미터 이내일 경우 경기도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 ○ 해당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74조(준용규정),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4조(허가사항), 제29조(신고사항)에 해당될 시에는 제반 규정에 의해 사전에 현상변경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겠음. | 반영 |
| 산림과 | ○ 입지대상시설의 전체 산지편입면적이 1,971,053㎡(보전산지 1,956,905㎡, 준보전 14,148㎡)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협의권자인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과 별도협의 | ○ 산지편입 대상 입지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전 산림청장과 협의하겠음(국토교통부 협의 사항)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상하수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상수도 공급계획(공급량, 공급시기 등)과 상수도 공급조건(원인자부담금 등) 등을 해당 시 상수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상수도 공급계획(공급량, 공급시기 등)과 상수도 공급조건(원인자부담금 등) 등을 해당 시 상수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의거 지구 내 해당되는 건축물 등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의거 지구 내 해당되는 건축물 등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대상시설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우·오수를 처리하는 세부계획 및 하수도 관련 사항을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해당 시 하수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대상시설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우·오수를 처리하는 세부계획 및 하수도 관련 사항을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해당 시 하수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대상, 제10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공급 대상 등 관련사항을 해당 시와 별도 협의 후 추진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대상, 제10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공급 대상 등 관련사항을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 후 추진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시설계획 및 시공은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관련 기준지침에 부합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시설계획 및 시공은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관련 기준지침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음. | 반영 |
| 수질관리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하수 발생시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확인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일 경우 해당 시·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협의를 득하여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하수 발생시 하수처리구역 내외를 확인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일 경우 해당 시·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협의를 득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발지역 내의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굴착시설 현황 등은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발지역 내의 굴착시설(지하수이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겠으며, 굴착시설 현황 등은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 반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부서에 신고하겠음. | 반영 |
| 자연재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대상시설 등 개발행위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5조의2 협의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5조의2 협의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환경정책과 | <p>○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5천㎡ 이상일 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업승인 전 실시하여야 함</p> | <p>○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5천㎡ 이상일 때)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업승인 전 실시하겠음.</p> | 반영 |
| | <p>○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 될 경우(사업면적 3만㎡ 이상)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함</p> <p>※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면제대상임</p> | <p>○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 될 경우(사업면적 3만㎡ 이상)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 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p> <p>※ 「국방·군사시설 사업」 제외</p>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수질총량과 | <p>[수원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p>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p> |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습니다.</p> | 반영 |
| | <p>[성남 육군제2176부대]</p>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p> |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습니다.</p> | 반영 |
| | <p>[화성 매송공공하수처리시설]</p>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p> |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습니다.</p> | 반영 |
| | <p>[시흥 노인전문병원]</p>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p> |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습니다.</p> | 반영 |
| | <p>[광명 육군 제5226부대]</p> <p>○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합니다.</p> | <p>○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겠습니다.</p>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수질총량과 | [광명 육군 제5226부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의왕 부곡중학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의왕 특수학교]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 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 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겠음 | 반영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과천 서울 대공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과천 서울 경마공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고양 제5161부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수질총량과 | <p>[고양 제5322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고양 난지물 재생센터 난지야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겠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고양 동해폐기물 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고양 휴게소 서울·문산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겠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남양주 제56사단 20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남양주 육군 제5767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 <p>[남양주 육군 제5767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겠음. | 반영 |

| 구분 | 협 의 의 건 | 조 치 계 획 | 반영 여부 |
|-------|---|--|-------|
| 수질총량과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 ○ 「한강수계법」 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겠음 | 반영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 하겠음 | 반영 |
| | [의정부 장암변전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 하겠음 | 반영 |
| | [양주 육군 제8276부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협의 하겠음 | 반영 |

② 환경성검토 결과

1. 서울특별시

| 구분 | | 환경성검토결과 |
|----|-----------|---|
| 1 | 공군 제714사업 | <협의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 기 훼손지역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 등으로 발생하하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검토의견> - 기존 군사시설 철거지역으로서 훼손지역 위주로 사업계획 수립이용 할 계획임 - 폐기물 처리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예정 |
| 2 | 서울나래학교 | -의견없음 |

2. 인천광역시: 해당 없음

3. 경기도

| 구분 | | 환경성검토결과 |
|----|----------------------------|---|
| 1 | 수원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하수처리시설 건축물을 대부분 지하화함과 동시에 상부에 체육시설 및 조경녹지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2 | 성남육군제2176부대 (증설) | 해당사업은 기존의 등재건축물 철거 후 신축, 기 훼손지역에 신축을 함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3 | 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 4 |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기 운영중인 병원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 5 | 광명 육군 제5226부대(신설) |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부지는 기존 건축물 부지와 '84년초 3623부대 주둔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신축하므로 환경에 악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판단함. |
| 6 | 의왕 부곡중학교(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 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기 운영 중인 학교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 7 | 의왕 특수학교(신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 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기 운영 중인 학교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 8 |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 각종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분뇨 및 생활폐기물 발생 등과 운영시의 근무인원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상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9 | 과천 서울대공원(증설) | 본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번지 일원의 기 공원시설내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나, 공사시 각종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강우시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등과 운영시의 근무인원 및 이용객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상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10 | 과천 서울경마공원(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기 운영중인 경마공원시설과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IV. 부록

| 구분 | | 환경성검토결과 |
|----|----------------------|--|
| 11 | 고양 제5161부대(증설) | 수질종합등급과 농업 적성도 '5' 등급으로 인근 정수시설과 인구밀집 시설은 없으며 하류지역에 속하여 수질오염지수도 0이며,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지 않음. 국방·군사시설 지역으로 과거 무허가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금번 관리계획은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사시설 현대화를 위함. |
| 12 | 고양 제5322부대(신설) |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부지는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대화 군사시설 신축간 환경피해 최소화로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13 |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야구장(신설) | 부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난지물재생센터)의 마포구 재활용시설 철거지역에 사업이 시행되므로 사업지구의 지형 변화 영향은 없으며 토지이용의 변화, 식생의 훼손,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이동로 훼손 및 단절 등의 변화가 미미하여 악영향이 야기되지 않음 |
| 14 | 고양 동해개발 폐기물처리시설(증설) | 본 사업지구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으로 공사시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 15 | 고양휴게소(서울방향)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 16 | 고양휴게소(문산방향)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 17 | 남양주 제56사단220연대(증설) | 해당사업은 기존의 미등재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기 훼손 지역에 신축을 함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18 | 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증설) | 해당사업은 기존의 미등재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기 훼손 지역에 신축을 함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19 | 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신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공원조성사업임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 20 | 의정부 장암변전소(증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상의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공사시에 토사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분뇨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운영시에는 기 운영중인 변전소와 연계한 계획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영향력은 극히 미비함 |
| 21 | 양주 육군 제8276부대(증설) | 8276부대 증설사업은 현 지형이 최대한 변형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절,성토량이 없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토록 시설계획 적정규모의 시설도입, 기존지형에 순응하는 동선 및 시설물계획하고 있으며 환경성 예측을 통한 저감방안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므로 해당지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22 | 남양주 월문 휴양림 | 대상지가 위치한 남양주시는 산지비율이 65.6%로 타지자체에 비해 산지비율 및 산림 자원 활용성의 요구가 높은 지역(경기도 전체 임야비율 52.8%)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되어온 지역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관광객 수요를 근교에서 서비스하여, 주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거리 관광지 이용에 따른 사회적 혼잡과 환경오염을 경감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수도권의 도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③ 별지서식

- 1.현황(별지1~8호), 취락지구 가능지(별지11호)
- 2.입지대상시설 입지타당성 검토서(별지9~10호)

1. 현황(별지1~8호), 취약지구 가능지(별지11호)

가. 서울시

1) 별지 1 인구 및 가구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단위: 가구, 명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 | | | |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 | | | | | |
|-----------|------|-------|-------------|-----|-----|-----|-----|----|-------------|-------|--------|-------|-------|-------|-------|
| | | | 계 | | 자가 | | 세입 | | 계 | | 자가 | | 세입 | | |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 서울 특별시 | 계 | 5,079 | 12,299 | 216 | 535 | 200 | 516 | 16 | 19 | 4,863 | 11,764 | 3,025 | 7,492 | 1,838 | 4,272 |
| | 강남구 | 249 | 626 | 3 | 12 | 3 | 12 | 0 | 0 | 246 | 614 | 246 | 614 | 0 | 0 |
| | 강동구 | 1,050 | 2,450 | 0 | 10 | 0 | 10 | 0 | 0 | 1,050 | 2,440 | 1,050 | 2,440 | 0 | 0 |
| | 강북구 | 193 | 321 | 1 | 2 | 1 | 2 | 0 | 0 | 192 | 319 | 48 | 95 | 144 | 224 |
| | 강서구 | 13 | 49 | 6 | 24 | 4 | 18 | 2 | 6 | 7 | 25 | 6 | 21 | 1 | 4 |
| | 관악구 | 93 | 256 | 0 | 0 | 0 | 0 | 0 | 0 | 93 | 256 | 93 | 256 | 0 | 0 |
| | 광진구 | 92 | 212 | 4 | 10 | 4 | 10 | 0 | 0 | 88 | 202 | 42 | 153 | 46 | 49 |
| | 구로구 | 65 | 177 | 15 | 58 | 15 | 58 | 0 | 0 | 50 | 119 | 22 | 53 | 28 | 66 |
| | 금천구 | 7 | 10 | 0 | 0 | 0 | 0 | 0 | 0 | 7 | 10 | 7 | 10 | 0 | 0 |
| | 노원구 | 365 | 959 | 5 | 14 | 5 | 14 | 0 | 0 | 360 | 945 | 360 | 945 | 0 | 0 |
| | 도봉구 | 941 | 2,616 | 40 | 110 | 40 | 110 | 0 | 0 | 901 | 2,506 | 360 | 1,002 | 541 | 1,504 |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93 | 218 | 2 | 6 | 2 | 6 | 0 | 0 | 91 | 212 | 64 | 166 | 27 | 46 |
| | 서초구 | 69 | 150 | 0 | 0 | 0 | 0 | 0 | 0 | 69 | 150 | 34 | 75 | 35 | 75 |
| | 성북구 | 267 | 466 | 11 | 11 | 3 | 8 | 8 | 3 | 256 | 455 | 49 | 180 | 207 | 275 |
| | 송파구 | 8 | 24 | 0 | 0 | 0 | 0 | 0 | 0 | 8 | 24 | 8 | 24 | 0 | 0 |
| | 양천구 | 16 | 30 | 0 | 0 | 0 | 0 | 0 | 0 | 16 | 30 | 9 | 20 | 7 | 10 |
| | 은평구 | 597 | 1,349 | 120 | 262 | 120 | 262 | 0 | 0 | 477 | 1,087 | 477 | 1,087 | 0 | 0 |
| 종로구 | 870 | 2,214 | 8 | 14 | 2 | 4 | 6 | 10 | 862 | 2,200 | 60 | 181 | 802 | 2,019 | |
| 중랑구 | 91 | 172 | 1 | 2 | 1 | 2 | 0 | 0 | 90 | 170 | 90 | 170 | 0 | 0 | |

2) 별지 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임야 | | 전 | | 답 | | 대지 | | 잡종지 | | 과수원 | | 기타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서울 특별시 | 계 | 39,672 | 149,615,820 | 6,652 | 101,231,451 | 7,083 | 7,246,161 | 5,461 | 7,234,195 | 4,364 | 2,621,688 | 6,784 | 9,386,707 | 19 | 47,711 | 9,309 | 22,032,908 |
| | 강남구 | 7,000 | 6,480,000 | 300 | 4,500,000 | 500 | 490,000 | 700 | 560,000 | 300 | 340,000 | 5,100 | 200,000 | 0 | 0 | 100 | 390,000 |
| | 강동구 | 4,081 | 8,242,000 | 522 | 1,990,000 | 1,143 | 1,087,000 | 569 | 389,452 | 420 | 260,000 | 117 | 286,715 | 2 | 3,000 | 1,308 | 4,225,833 |
| | 강북구 | 966 | 11,670,000 | 368 | 11,147,000 | 48 | 44,000 | 22 | 18,000 | 327 | 176,000 | 26 | 67,000 | 0 | 0 | 175 | 218,000 |
| | 강서구 | 7,030 | 18,923,000 | 420 | 1,161,000 | 790 | 941,000 | 1,450 | 3,121,000 | 270 | 150,000 | 1,090 | 7,190,000 | 0 | 0 | 3,010 | 6,360,000 |
| | 관악구 | 159 | 8,280,000 | 109 | 8,210,000 | 17 | 30,000 | 1 | 10,000 | 4 | 10,000 | 0 | 0 | 0 | 0 | 28 | 20,000 |
| | 광진구 | 182 | 1,899,000 | 70 | 1,043,000 | 1 | 757,000 | 0 | 0 | 55 | 18,000 | 0 | 0 | 0 | 0 | 56 | 81,000 |
| | 구로구 | 1,294 | 3,423,000 | 343 | 2,493,000 | 278 | 250,000 | 125 | 140,000 | 180 | 370,000 | 26 | 30,000 | 0 | 0 | 342 | 140,000 |
| | 금천구 | 303 | 1,692,000 | 127 | 1,540,000 | 44 | 20,000 | 15 | 7,000 | 12 | 2,000 | 0 | 0 | 0 | 0 | 105 | 123,000 |
| | 노원구 | 1,232 | 16,084,820 | 527 | 13,354,451 | 84 | 54,161 | 91 | 83,743 | 170 | 211,688 | 92 | 948,992 | 2 | 4,711 | 266 | 1,427,075 |
| | 도봉구 | 1,824 | 10,200,000 | 491 | 8,680,000 | 339 | 200,000 | 357 | 260,000 | 424 | 150,000 | 63 | 50,000 | 5 | 10,000 | 145 | 850,000 |
| | 마포구 | 45 | 8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5 | 80,000 |
| | 서대문구 | 489 | 1,777,000 | 231 | 1,710,000 | 8 | 0 | 0 | 0 | 188 | 40,000 | 10 | 0 | 0 | 0 | 52 | 27,000 |
| | 서초구 | 8,165 | 23,881,000 | 1,267 | 17,830,000 | 2,381 | 2,080,000 | 1,557 | 2,060,000 | 634 | 420,000 | 75 | 230,000 | 4 | 10,000 | 2,247 | 1,251,000 |
| | 성북구 | 277 | 5,314,000 | 114 | 4,950,000 | 15 | 10,000 | 2 | 0 | 97 | 70,000 | 13 | 10,000 | 0 | 0 | 36 | 274,000 |
| | 송파구 | 577 | 2,635,000 | 75 | 170,000 | 125 | 150,000 | 163 | 250,000 | 20 | 10,000 | 5 | 150,000 | 0 | 0 | 189 | 1,905,000 |
| | 양천구 | 165 | 992,000 | 103 | 876,000 | 10 | 8,000 | 11 | 5,000 | 9 | 3,000 | 0 | 0 | 0 | 0 | 32 | 100,000 |
| | 은평구 | 2,734 | 15,215,000 | 937 | 11,643,000 | 442 | 265,000 | 143 | 150,000 | 575 | 190,000 | 78 | 144,000 | 0 | 0 | 559 | 2,823,000 |
| 종로구 | 1,618 | 8,325,000 | 321 | 7,394,000 | 457 | 570,000 | 0 | 0 | 486 | 121,000 | 80 | 70,000 | 0 | 0 | 274 | 170,000 | |
| 중랑구 | 1,531 | 4,688,000 | 327 | 2,540,000 | 401 | 290,000 | 255 | 180,000 | 193 | 80,000 | 9 | 10,000 | 6 | 20,000 | 340 | 1,568,000 | |

IV. 부록

3) 별지 2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3-1: 토지소유권 분포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사유 | | | | | | | | 국·공유 | | | | | | |
|-----------|-------|-----------|-------------|-----------|------------|-----------|------------|---------|------------|---------|-----------|-----------|------------|---------|------------|-----------|------------|
| | | | 계 | | 개인 | | 법인 | | 종중 | | 소계 | | 국유 | | 공유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서울 특별시 | 계 | 67,584 | 149,615,820 | 48,021 | 67,194,926 | 42,040 | 46,361,357 | 5,543 | 16,508,748 | 438 | 4,324,822 | 19,563 | 89,439,529 | 8,855 | 68,132,370 | 10,708 | 21,307,159 |
| | 강남구 | 7,000 | 6,480,000 | 6,300 | 4,740,000 | 6,000 | 3,000,000 | 200 | 1,240,000 | 100 | 500,000 | 700 | 1,740,000 | 200 | 660,000 | 500 | 1,080,000 |
| | 강동구 | 32,000 | 14,800,000 | 26,680 | 5,020,000 | 23,150 | 1,310,000 | 3,440 | 3,320,000 | 90 | 390,000 | 5,320 | 9,780,000 | 1,080 | 3,680,000 | 4,240 | 6,100,000 |
| | 강북구 | 966 | 11,670,000 | 668 | 2,398,000 | 550 | 1,382,000 | 116 | 1,000,000 | 2 | 16,000 | 298 | 9,272,000 | 184 | 9,091,000 | 114 | 181,000 |
| | 강서구 | 7,030 | 18,913,000 | 2,480 | 8,012,000 | 2,110 | 6,912,000 | 370 | 1,100,000 | 0 | 0 | 4,550 | 10,901,000 | 3,020 | 9,561,000 | 1,530 | 1,340,000 |
| | 관악구 | 159 | 8,280,000 | 49 | 2,060,000 | 34 | 1,960,000 | 4 | 20,000 | 11 | 80,000 | 110 | 6,220,000 | 72 | 6,110,000 | 38 | 110,000 |
| | 광진구 | 182 | 1,889,000 | 100 | 1,491,000 | 82 | 1,235,000 | 16 | 237,000 | 2 | 19,000 | 82 | 398,000 | 10 | 62,000 | 72 | 336,000 |
| | 구로구 | 1,294 | 3,595,700 | 785 | 2,388,100 | 604 | 1,812,100 | 168 | 475,600 | 13 | 100,400 | 509 | 1,207,600 | 200 | 560,600 | 309 | 647,000 |
| | 금천구 | 303 | 1,692,000 | 110 | 1,250,000 | 94 | 1,105,000 | 16 | 145,000 | 0 | 0 | 193 | 442,000 | 70 | 37,000 | 123 | 405,000 |
| | 노원구 | 1,232 | 16,084,820 | 644 | 6,716,870 | 439 | 3,540,537 | 192 | 3,012,476 | 13 | 163,857 | 588 | 9,367,951 | 374 | 8,941,996 | 214 | 425,955 |
| | 도봉구 | 1,817 | 10,200,000 | 1,069 | 6,900,000 | 906 | 3,380,000 | 113 | 2,070,000 | 50 | 1,450,000 | 748 | 3,300,000 | 243 | 990,000 | 505 | 2,310,000 |
| | 마포구 | 45 | 89,532 | 24 | 77,408 | 0 | 0 | 24 | 77,408 | 0 | 0 | 21 | 12,124 | 16 | 8,790 | 5 | 3,334 |
| | 서대문구 | 489 | 1,714,403 | 206 | 210,031 | 192 | 199,224 | 14 | 10,807 | 0 | 0 | 283 | 1,504,372 | 157 | 1,344,751 | 126 | 159,621 |
| | 서초구 | 8,165 | 23,881,000 | 4,395 | 13,329,517 | 3,794 | 10,302,496 | 522 | 2,181,456 | 79 | 845,565 | 3,770 | 10,551,483 | 2,224 | 6,892,234 | 1,546 | 3,659,249 |
| | 성북구 | 277 | 5,440,000 | 139 | 280,000 | 112 | 170,000 | 25 | 110,000 | 2 | 0 | 138 | 5,160,000 | 119 | 5,150,000 | 19 | 10,000 |
| | 송파구 | 577 | 2,630,000 | 325 | 790,000 | 290 | 710,000 | 35 | 80,000 | 0 | 0 | 252 | 1,840,000 | 69 | 830,000 | 183 | 1,010,000 |
| | 양천구 | 165 | 990,000 | 110 | 820,000 | 74 | 450,000 | 25 | 140,000 | 11 | 230,000 | 55 | 170,000 | 11 | 60,000 | 44 | 110,000 |
| | 은평구 | 2,734 | 15,210,000 | 1,938 | 6,760,000 | 1,815 | 6,160,000 | 104 | 410,000 | 19 | 190,000 | 796 | 8,450,000 | 332 | 7,380,000 | 464 | 1,070,000 |
| | 종로구 | 1,618 | 8,325,000 | 1,120 | 1,632,000 | 987 | 1,353,000 | 133 | 279,000 | 0 | 0 | 498 | 6,693,000 | 254 | 6,523,000 | 244 | 170,000 |
| 중랑구 | 1,531 | 4,750,000 | 879 | 2,320,000 | 807 | 1,380,000 | 26 | 600,000 | 46 | 340,000 | 652 | 2,430,000 | 220 | 250,000 | 432 | 2,180,000 |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1: 건축물 현황(총괄)

단위: 동, m²

| 구분 | | 합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서울 특별시 | 계 | 4,252.0 | 2,547,845.4 | 4,078.0 | 2,489,136.6 | 174.0 | 58,708.8 |
| | 강남구 | 205.0 | 61,817.0 | 205.0 | 61,817.0 | 0.0 | 0.0 |
| | 강동구 | 551.0 | 88,958.0 | 529.0 | 87,814.0 | 22.0 | 1,144.0 |
| | 강북구 | 167.0 | 31,095.0 | 142.0 | 25,398.0 | 25.0 | 5,697.0 |
| | 강서구 | 167.0 | 209,691.0 | 167.0 | 209,691.0 | 0.0 | 0.0 |
| | 관악구 | 120.0 | 75,305.0 | 114.0 | 75,166.0 | 6.0 | 139.0 |
| | 광진구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구로구 | 174.0 | 15,258.5 | 172.0 | 15,154.0 | 2.0 | 104.5 |
| | 금천구 | 13.0 | 6,212.5 | 13.0 | 6,212.5 | 0.0 | 0.0 |
| | 노원구 | 435.0 | 1,154,390.3 | 424.0 | 1,153,442.0 | 11.0 | 948.3 |
| | 도봉구 | 280.0 | 104,783.0 | 231.0 | 78,587.0 | 49.0 | 26,196.0 |
| | 마포구 | 7.0 | 12,347.1 | 7.0 | 12,347.1 | 0.0 | 0.0 |
| | 서대문구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서초구 | 375.0 | 121,093.3 | 372.0 | 121,010.1 | 3.0 | 83.2 |
| | 성북구 | 141.0 | 306,846.0 | 139.0 | 306,767.0 | 2.0 | 79.0 |
| | 송파구 | 17.0 | 9,762.0 | 17.0 | 9,762.0 | 0.0 | 0.0 |
| | 양천구 | 31.0 | 120,229.7 | 25.0 | 118,081.0 | 6.0 | 2,148.7 |
| | 은평구 | 1,159.0 | 138,757.0 | 1,149.0 | 118,081.0 | 10.0 | 20,676.0 |
| | 종로구 | 302.0 | 57,243.0 | 264.0 | 55,750.0 | 38.0 | 1,493.0 |
| | 중랑구 | 108.0 | 34,057.0 | 108.0 | 34,057.0 | 0.0 | 0.0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2: 주거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단위: 동, m²

| 구분 | 합계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 시설 | | 종교시설 | | 창고 | | 동물 관련시설 | | 기타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 서울 특별 시 | 계 | 4,297 | 2,396,548 | 2,811 | 364,383 | 30 | 64,688 | 371 | 78,621 | 103 | 22,799 | 87 | 20,502 | 52 | 11,626 | 843 | 1,833,928 |
| | 강남구 | 206 | 61,817 | 152 | 46,280 | 0 | 0 | 18 | 5,530 | 1 | 1,984 | 1 | 421 | 2 | 1,982 | 32 | 5,620 |
| | 강동구 | 529 | 87,814 | 427 | 70,882 | 0 | 0 | 48 | 7,968 | 4 | 1,283 | 5 | 460 | 17 | 1,685 | 28 | 5,536 |
| | 강북구 | 142 | 25,398 | 69 | 9,236 | 8 | 2,829 | 44 | 8,043 | 11 | 1,174 | 1 | 100 | 0 | 0 | 9 | 4,016 |
| | 강서구 | 167 | 209,691 | 7 | 198 | 0 | 0 | 8 | 1,050 | 2 | 899 | 17 | 2,040 | 1 | 45 | 132 | 205,459 |
| | 관악구 | 114 | 75,166 | 0 | 0 | 0 | 0 | 0 | 0 | 11 | 843 | 0 | 0 | 0 | 0 | 103 | 74,323 |
| | 광진구 | 57 | 8,195 | 47 | 7,569 | 0 | 0 | 2 | 30 | 2 | 258 | 0 | 0 | 0 | 0 | 6 | 338 |
| | 구로구 | 172 | 15,155 | 136 | 8,180 | 0 | 0 | 25 | 2,520 | 2 | 157 | 1 | 597 | 3 | 2,382 | 5 | 1,318 |
| | 금천구 | 13 | 6,212 | 1 | 50 | 0 | 0 | 0 | 0 | 6 | 543 | 0 | 0 | 0 | 0 | 6 | 5,620 |
| | 노원구 | 424 | 1,153,442 | 49 | 6,091 | 1 | 200 | 17 | 3,956 | 4 | 1,280 | 2 | 1,622 | 0 | 0 | 351 | 1,140,293 |
| | 도봉구 | 265 | 78,587 | 153 | 12,744 | 5 | 8,285 | 22 | 2,095 | 14 | 1,508 | 0 | 0 | 0 | 0 | 71 | 53,955 |
| | 마포구 | 7 | 12,347 | 0 | 0 | 0 | 0 | 0 | 0 | 0 | 0 | 4 | 11,809 | 0 | 0 | 3 | 538 |
| | 서대문구 | 124 | 9,727 | 80 | 7,453 | 0 | 0 | 4 | 211 | 1 | 275 | 34 | 340 | 0 | 0 | 5 | 1,448 |
| | 서초구 | 372 | 121,010 | 210 | 39,503 | 4 | 7,532 | 79 | 23,302 | 4 | 1,138 | 10 | 1,597 | 20 | 4,286 | 45 | 43,652 |
| | 성북구 | 142 | 306,767 | 59 | 5,150 | 4 | 27,880 | 27 | 2,540 | 16 | 4,157 | 0 | 0 | 0 | 0 | 36 | 267,041 |
| | 송파구 | 17 | 9,762 | 3 | 170 | 0 | 0 | 4 | 471 | 1 | 190 | 1 | 98 | 2 | 298 | 6 | 8,535 |
| | 양천구 | 25 | 7,570 | 21 | 1,428 | 0 | 0 | 3 | 818 | 0 | 0 | 0 | 0 | 0 | 0 | 1 | 5,324 |
| | 은평구 | 1,149 | 118,081 | 1,098 | 102,874 | 0 | 0 | 39 | 11,550 | 10 | 3,368 | 2 | 289 | 0 | 0 | 0 | 0 |
| 종로구 | 264 | 55,750 | 207 | 25,231 | 8 | 17,963 | 31 | 8,538 | 14 | 3,742 | 3 | 228 | 1 | 48 | 0 | 0 | |
| 중랑구 | 108 | 34,057 | 92 | 21,344 | 0 | 0 | 0 | 0 | 0 | 0 | 6 | 900 | 6 | 900 | 4 | 10,913 | |

6) 별지 6 중복규제지역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상수원 보호구역 | | 군사시설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 |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 문화재보호구역 | | 공원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국립공원 | | 도시공원 | | |
| | | | | |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서울 특별시 | 계 | 14,660 | 128,080,248 | 758 | 3,383,406 | 7,327 | 37,553,312 | 0 | 0 | 62 | 503,570 | 171 | 3,986,345 | 1,834 | 37,523,699 | 4,508 | 45,129,916 |
| | 강남구 | 1,263 | 4,784,026 | 0 | 0 | 520 | 2,133,570 | 0 | 0 | 0 | 0 | 0 | 0 | 0 | 0 | 743 | 2,650,456 |
| | 강동구 | 3,457 | 9,048,701 | 758 | 3,383,406 | 2,531 | 4,755,823 | 0 | 0 | 5 | 4,865 | 4 | 78,793 | 0 | 0 | 159 | 825,814 |
| | 강북구 | 741 | 11,910,232 | 0 | 0 | 228 | 2,332 | 0 | 0 | 0 | 0 | 15 | 8,900 | 498 | 11,899,000 | 0 | 0 |
| | 강서구 | 155 | 767,430 | 0 | 0 | 0 | 0 | 0 | 0 | 0 | 0 | 6 | 79,843 | 0 | 0 | 149 | 687,587 |
| | 관악구 | 159 | 8,225,0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59 | 8,225,000 |
| | 광진구 | 197 | 2,386,827 | 0 | 0 | 0 | 0 | 0 | 0 | 0 | 0 | 12 | 378,932 | 0 | 0 | 185 | 2,007,895 |
| | 구로구 | 207 | 1,785,69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7 | 1,785,697 |
| | 금천구 | 49 | 1,692 | 0 | 0 | 0 | 0 | 0 | 0 | 0 | 0 | 3 | 75 | 0 | 0 | 46 | 1,617 |
| | 노원구 | 2,016 | 36,246,479 | 0 | 0 | 1,432 | 20,638,956 | 0 | 0 | 0 | 0 | 26 | 2,679,192 | 0 | 0 | 558 | 12,928,331 |
| | 도봉구 | 564 | 9,051,697 | 0 | 0 | 92 | 438,239 | 0 | 0 | 0 | 0 | 0 | 0 | 472 | 8,613,458 | 0 | 0 |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438 | 1,567,99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5 | 218,000 | 403 | 1,349,994 |
| | 서초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성북구 | 240 | 7,381,402 | 0 | 0 | 144 | 2,769,596 | 0 | 0 | 0 | 0 | 1 | 21,565 | 61 | 3,490,241 | 34 | 1,100,000 |
| | 송파구 | 577 | 2,630,000 | 0 | 0 | 563 | 2,385,796 | 0 | 0 | 2 | 58,909 | 0 | 0 | 0 | 0 | 12 | 185,295 |
| | 양천구 | 147 | 899,78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7 | 899,789 |
| | 은평구 | 1,951 | 16,018,343 | 0 | 0 | 0 | 0 | 0 | 0 | 7 | 169,605 | 2 | 59,045 | 705 | 9,453,000 | 1,237 | 6,336,693 |
| | 종로구 | 2,320 | 12,034,191 | 0 | 0 | 1,817 | 4,429,000 | 0 | 0 | 48 | 270,191 | 102 | 680,000 | 63 | 3,850,000 | 290 | 2,805,000 |
| 중랑구 | 179 | 3,340,74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9 | 3,340,748 | |

7) 별지 7 집단취락지구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합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동)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서울 특별시 | 계 | 22 | 340,814 | 2,712 | 1,037 | 755 | 41 |
| | 강남구 | 3 | 79,612 | 626 | 252 | 148 | - |
| | 강동구 | 10 | 164,737 | 968 | 420 | 352 | 0 |
| | 강북구 | 0 | 0 | 0 | 0 | 0 | 0 |
| | 강서구 | 0 | 0 | 0 | 0 | 0 | 0 |
| | 관악구 | 0 | 0 | 0 | 0 | 0 | 0 |
| | 광진구 | 0 | 0 | 0 | 0 | 0 | 0 |
| | 구로구 | 1 | 1,500 | 92 | 35 | 34 | 0 |
| | 금천구 | 0 | 0 | 0 | 0 | 0 | 0 |
| | 노원구 | 0 | 0 | 0 | 0 | 0 | 0 |
| | 도봉구 | 0 | 0 | 0 | 0 | 0 | 0 |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1 | 19,300 | 190 | 70 | 59 | 11 |
| | 서초구 | 0 | 0 | 0 | 0 | 0 | 0 |
| | 성북구 | 3 | 20,691 | 104 | 44 | 42 | 13 |
| | 송파구 | 0 | 0 | 0 | 0 | 0 | 0 |
| | 양천구 | 0 | 0 | 0 | 0 | 0 | 0 |
| | 은평구 | 0 | 0 | 0 | 0 | 0 | 0 |
| | 종로구 | 4 | 54,974 | 732 | 216 | 120 | 17 |
| | 중랑구 | 0 | 0 | 0 | 0 | 0 | 0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1: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서울 특별시 | 계 | 1,721 | 476,509 | 753 | 313,691 | 968 | 162,818 |
| | 강남구 | 0 | 0 | 0 | 0 | 0 | 0 |
| | 강동구 | 572 | 157,796 | 17 | 1,876 | 555 | 155,920 |
| | 강북구 | 22 | 5,658 | 0 | 0 | 22 | 5,658 |
| | 강서구 | 251 | 145,000 | 251 | 145,000 | 0 | 0 |
| | 관악구 | 0 | 0 | 0 | 0 | 0 | 0 |
| | 광진구 | 0 | 0 | 0 | 0 | 0 | 0 |
| | 구로구 | 301 | 111,659 | 301 | 111,659 | 0 | 0 |
| | 금천구 | 0 | 0 | 0 | 0 | 0 | 0 |
| | 노원구 | 0 | 0 | 0 | 0 | 0 | 0 |
| | 도봉구 | 0 | 0 | 0 | 0 | 0 | 0 |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0 | 0 | 0 | 0 | 0 | 0 |
| | 서초구 | 0 | 0 | 0 | 0 | 0 | 0 |
| | 성북구 | 0 | 0 | 0 | 0 | 0 | 0 |
| | 송파구 | 0 | 0 | 0 | 0 | 0 | 0 |
| | 양천구 | 0 | 0 | 0 | 0 | 0 | 0 |
| | 은평구 | 403 | 12 | 16 | 12 | 387 | |
| | 종로구 | 172 | 56,384 | 168 | 55,144 | 4 | 1,240 |
| 중랑구 | 0 | 0 | 0 | 0 | 0 | 0 |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2: 이촉적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 |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
| | | | 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소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계 | 425 | 77,577 | 16 | 3,728 | 16 | 3,728 | 0 | 0 | 409 | 73,849 | 409 | 73,849 | 0 | 0 |
| 강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동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북구 | 22 | 5,658 | 0 | 0 | 0 | 0 | 0 | 0 | 22 | 5,658 | 22 | 5,658 | 0 | 0 |
| 강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관악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진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구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노원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도봉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대문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서초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성북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송파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양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은평구 | 403 | 71,919 | 16 | 3,728 | 16 | 3,728 | 0 | 0 | 387 | 68,191 | 387 | 68,191 | 0 | 0 |
| 종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중랑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별지 9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 총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서울특별시 | 계 | 12 | 200,037 | 1,174 | 500 | 425 | 11 |
| | 강남구 | 0 | 0 | 0 | 0 | 0 | 0 |
| | 강동구 | 10 | 164,737 | 968 | 420 | 352 | |
| | 강북구 | 0 | 0 | 0 | 0 | 0 | 0 |
| | 강서구 | 0 | 0 | 0 | 0 | 0 | 0 |
| | 관악구 | 0 | 0 | 0 | 0 | 0 | 0 |
| | 광진구 | 0 | 0 | 0 | 0 | 0 | 0 |
| | 구로구 | 0 | 0 | 0 | 0 | 0 | 0 |
| | 금천구 | 0 | 0 | 0 | 0 | 0 | 0 |
| | 노원구 | 0 | 0 | 0 | 0 | 0 | 0 |
| | 도봉구 | 0 | 0 | 0 | 0 | 0 | 0 |
| | 마포구 | 0 | 0 | 0 | 0 | 0 | 0 |
| | 서대문구 | 1 | 19,300 | 190 | 70 | 59 | 11 |
| | 서초구 | 0 | 0 | 0 | 0 | 0 | 0 |
| | 성북구 | 0 | 0 | 0 | 0 | 0 | 0 |
| | 송파구 | 0 | 0 | 0 | 0 | 0 | 0 |
| | 양천구 | 0 | 0 | 0 | 0 | 0 | 0 |
| | 은평구 | 0 | 0 | 0 | 0 | 0 | 0 |
| | 종로구 | 1 | 16,000 | 16 | 10 | 14 | 0 |
| | 중랑구 | 0 | 0 | 0 | 0 | 0 | 0 |

나. 인천광역시

1) 별지 1 인구 및 가구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단위: 가구, 명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 | | | |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 | | | | | |
|-------|-----|-----|-------------|----|----|----|----|----|-------------|-----|-------|-----|-----|-----|-----|
| | | | 계 | | 자가 | | 세입 | | 계 | | 자가 | | 세입 | | |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 인천광역시 | 계 | 651 | 1,377 | 24 | 56 | 20 | 45 | 4 | 11 | 627 | 1,321 | 414 | 932 | 213 | 389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8 | 13 | 0 | 0 | 0 | 0 | 0 | 0 | 8 | 13 | 8 | 13 | 0 | 0 |
| | 남동구 | 214 | 432 | 11 | 25 | 9 | 18 | 2 | 7 | 203 | 407 | 155 | 326 | 48 | 81 |
| | 부평구 | 86 | 225 | 0 | 0 | 0 | 0 | 0 | 0 | 86 | 225 | 86 | 225 | 0 | 0 |
| | 계양구 | 131 | 278 | 7 | 12 | 7 | 12 | 0 | 0 | 124 | 266 | 87 | 199 | 37 | 67 |
| | 서구 | 212 | 429 | 6 | 19 | 4 | 15 | 2 | 4 | 206 | 410 | 78 | 169 | 128 | 241 |

2) 별지 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임야 | | 전 | | 답 | | 대지 | | 잡종지 | | 과수원 | | 기타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인천광역시 | 계 | 24,690 | 72,048,451 | 3,876 | 31,267,322 | 7,391 | 10,695,589 | 4,238 | 16,477,101 | 1,037 | 1,114,745 | 751 | 3,592,298 | 131 | 193,000 | 7,266 | 9,475,396 |
| | 남구 | 0 | 88,000 | 0 | 0 | 0 | 16,000 | 0 | 35,000 | 0 | 0 | 0 | 0 | 0 | 0 | 0 | 37,000 |
| | 연수구 | 485 | 690,451 | 10 | 31,322 | 191 | 342,589 | 66 | 99,101 | 7 | 3,745 | 10 | 1,298 | 0 | 0 | 201 | 212,396 |
| | 남동구 | 12,901 | 24,020,000 | 1,521 | 10,013,000 | 4,940 | 4,735,000 | 1,703 | 3,519,000 | 537 | 498,000 | 280 | 571,000 | 100 | 173,000 | 3,820 | 4,511,000 |
| | 부평구 | 1,131 | 7,813,000 | 329 | 4,733,000 | 203 | 440,000 | 42 | 890,000 | 154 | 219,000 | 140 | 1,370,000 | 0 | 0 | 263 | 161,000 |
| | 계양구 | 0 | 24,650,000 | | 7,840,000 | | 3,220,000 | | 8,940,000 | | 260,000 | | 760,000 | | 10,000 | | 3,620,000 |
| | 서구 | 10,173 | 15,554,000 | 2,016 | 8,650,000 | 2,057 | 1,942,000 | 2,427 | 2,994,000 | 339 | 134,000 | 321 | 890,000 | 31 | 10,000 | 2,982 | 934,000 |

IV. 부록

3) 별지 2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3-1: 토지소유권 분포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사 유 | | | | | | | | 국 · 공유 | | | | | | |
|-------|-----|--------|------------|--------|------------|--------|------------|-------|-----------|-----|-----------|--------|------------|-------|------------|-------|-----------|
| | | | 계 | | 개인 | | 법인 | | 종중 | | 소계 | | 국유 | | 공유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인천광역시 | 계 | 32,807 | 72,048,629 | 20,986 | 42,904,894 | 19,461 | 37,585,795 | 1,281 | 4,051,261 | 244 | 1,267,838 | 11,821 | 29,144,735 | 6,148 | 19,388,960 | 5,673 | 9,755,775 |
| | 남구 | 116 | 88,00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88,000 | 12 | 10,000 | 104 | 78,000 |
| | 연수구 | 485 | 718,554 | 248 | 322,773 | 241 | 306,174 | 1 | 3,300 | 6 | 13,299 | 237 | 395,781 | 237 | 395,781 | 0 | 0 |
| | 남동구 | 12,901 | 24,023,000 | 8,040 | 13,375,000 | 7,882 | 12,140,000 | 86 | 819,000 | 72 | 416,000 | 4,861 | 10,648,000 | 1,693 | 5,401,000 | 3,168 | 5,247,000 |
| | 부평구 | 1,131 | 7,012,000 | 575 | 1,643,000 | 438 | 788,000 | 135 | 804,000 | 2 | 51,000 | 556 | 5,369,000 | 469 | 4,813,000 | 87 | 556,000 |
| | 계양구 | 8,001 | 24,654,075 | 7,099 | 18,173,775 | 6,946 | 17,630,226 | 88 | 216,948 | 65 | 326,601 | 902 | 6,480,300 | 707 | 5,234,271 | 195 | 1,246,029 |
| | 서구 | 10,173 | 15,554,000 | 5,024 | 9,390,346 | 3,954 | 6,721,395 | 971 | 2,208,013 | 99 | 460,938 | 5,149 | 6,163,654 | 3,030 | 3,534,908 | 2,119 | 2,628,746 |

3) 별지 2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3-2: 구역지정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1년미만 | | 3년미만 | | 5년미만 | | 10년미만 | | 15년미만 | | 20년미만 | | 20년이상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인천광역시 | 계 | 17,011 | 36,616,252 | 956 | 1,765,859 | 2,170 | 3,734,516 | 2,541 | 4,465,806 | 3,072 | 6,540,364 | 2,827 | 5,094,738 | 2,368 | 6,549,561 | 3,077 | 8,465,408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485 | 702,133 | 0 | 0 | 71 | 89,460 | 96 | 145,200 | 107 | 187,530 | 123 | 201,480 | 63 | 67,100 | 25 | 11,363 |
| | 남동구 | 6,018 | 12,308,000 | 350 | 645,000 | 860 | 1,697,000 | 629 | 1,181,000 | 823 | 1,931,000 | 692 | 1,539,000 | 1,464 | 3,032,000 | 1,200 | 2,283,000 |
| | 부평구 | 351 | 1,010,000 | 0 | 0 | 11 | 150,000 | 38 | 110,000 | 100 | 300,000 | 71 | 110,000 | 51 | 160,000 | 80 | 180,000 |
| | 계양구 | 5,972 | 14,850,000 | 376 | 710,000 | 428 | 780,000 | 959 | 1,930,000 | 1,190 | 2,250,000 | 1,395 | 3,120,000 | 549 | 2,780,000 | 1,075 | 3,280,000 |
| | 서구 | 4,185 | 7,746,119 | 230 | 410,859 | 800 | 1,018,056 | 819 | 1,099,606 | 852 | 1,871,834 | 546 | 124,258 | 241 | 510,461 | 697 | 2,711,045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1: 건축물 현황(총괄)

단위: 동, m²

| 구분 | | 합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인천광역시 | 계 | 1,666.0 | 420,585.3 | 1,372.0 | 386,458.2 | 294.0 | 34,127.1 |
| | 남구 | 0.0 | 0.0 | 0.0 | 0.0 | 0.0 | 0.0 |
| | 연수구 | 17.0 | 3,395.9 | 14.0 | 3,347.9 | 3.0 | 48.0 |
| | 남동구 | 544.0 | 168,014.0 | 447.0 | 160,047.0 | 97.0 | 7,967.0 |
| | 부평구 | 93.0 | 10,144.0 | 72.0 | 4,273.2 | 21.0 | 5,870.8 |
| | 계양구 | 535.0 | 168,424.3 | 399.0 | 153,981.0 | 136.0 | 14,443.3 |
| | 서구 | 477.0 | 70,607.0 | 440.0 | 64,809.0 | 37.0 | 5,798.0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2: 주거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단위: 동, m²

| 구분 | 합계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 시설 | | 종교시설 | | 창고 | | 동물 관련시설 | | 기타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 인천광역시 | 계 | 1,372 | 386,758 | 447 | 62,799 | 0 | 0 | 191 | 30,500 | 11 | 2,328 | 131 | 14,224 | 178 | 41,511 | 414 | 235,396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14 | 3,348 | 2 | 457 | 0 | 0 | 2 | 334 | 1 | 261 | 2 | 163 | 1 | 300 | 6 | 1,833 |
| | 남동구 | 447 | 160,047 | 75 | 16,441 | | | 80 | 10,062 | 4 | 621 | 73 | 7,475 | 47 | 5,700 | 168 | 119,748 |
| | 부평구 | 72 | 4,573 | 69 | 4,064 | 0 | 0 | 3 | 509 | 0 | 0 | 0 | 0 | 0 | 0 | 0 | 0 |
| | 계양구 | 399 | 153,981 | 116 | 13,971 | 0 | 0 | 73 | 15,614 | 3 | 968 | 34 | 3,879 | 107 | 32,167 | 66 | 87,382 |
| | 서구 | 440 | 64,809 | 185 | 27,866 | 0 | 0 | 33 | 3,981 | 3 | 478 | 22 | 2,707 | 23 | 3,344 | 174 | 26,433 |

IV. 부록

5) 별지 5 도시계획시설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합계 | | 합계 | | | | 도로 | | | | | | 공원 | | | | | | 기타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계 | 234 | 10,988,943 | 155 | 8,669,886 | 79 | 2,319,057 | 134 | 2,039,487 | 78 | 1,899,283 | 56 | 140,204 | 25 | 6,949,024 | 12 | 4,919,477 | 13 | 2,029,546 | 75 | 2,000,432 | 65 | 1,851,125 | 10 | 149,307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연수구 | 1 | 19,504 | 0 | 0 | 1 | 19,504 | 0 | 0 | 0 | 0 | 0 | 0 | 1 | 19,504 | 0 | 0 | 1 | 19,504 | 0 | 0 | 0 | 0 | 0 | 0 |
| 남동구 | 102 | 7,332,327 | 72 | 7,084,334 | 30 | 247,993 | 55 | 1,848,623 | 34 | 1,731,334 | 21 | 117,289 | 8 | 4,512,742 | 7 | 4,509,274 | 1 | 3,468 | 39 | 970,962 | 31 | 843,726 | 8 | 127,236 |
| 부평구 | 19 | 791,849 | 16 | 523,066 | 3 | 268,783 | 11 | 103,520 | 11 | 103,520 | 0 | 0 | 5 | 644,969 | 2 | 376,186 | 3 | 268,783 | 3 | 43,360 | 3 | 43,360 | 0 | 0 |
| 계양구 | 76 | 827,341 | 42 | 796,599 | 34 | 30,742 | 54 | 71,162 | 23 | 51,235 | 31 | 19,927 | 6 | 44,832 | 3 | 34,017 | 3 | 10,815 | 16 | 711,347 | 16 | 711,347 | 0 | 0 |
| 서구 | 36 | 2,017,922 | 25 | 265,886 | 11 | 1,752,036 | 14 | 16,182 | 10 | 13,194 | 4 | 2,988 | 5 | 1,726,977 | 0 | 0 | 5 | 1,726,977 | 17 | 274,763 | 15 | 252,692 | 2 | 22,071 |

6) 별지 6 중복규제지역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상수원 보호구역 | | 군사시설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 |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 문화재보호구역 | | 공원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국립공원 | | 도시공원 | | |
| | | | | |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인천 광역시 | 계 | 18,361 | 20,362,991 | 0 | 0 | 16,061 | 14,662,436 | 0 | 0 | 0 | 0 | 1,285 | 2,702,020 | 0 | 0 | 1,015 | 2,998,535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남동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평구 | 299 | 3,329,406 | 0 | 0 | 221 | 2,521,536 | 0 | 0 | 0 | 0 | 0 | 0 | 0 | 0 | 78 | 807,870 |
| | 계양구 | 14,024 | 8,280,017 | 0 | 0 | 14,019 | 8,246,00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34,017 |
| | 서구 | 4,038 | 8,753,568 | 0 | 0 | 1,821 | 3,894,900 | 0 | 0 | 0 | 0 | 1,285 | 2,702,020 | 0 | 0 | 932 | 2,156,648 |

7) 별지 7 집단취락지구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 합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동)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인천 광역시 | 계 | 11 | 251,710 | 268 | 113 | 154 | 27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0 | 0 | 0 | 0 | 0 | 0 |
| | 남동구 | 2 | 66,560 | 73 | 21 | 32 | 6 |
| | 부평구 | 0 | 0 | 0 | 0 | 0 | 0 |
| | 계양구 | 4 | 74,410 | 67 | 30 | 67 | 21 |
| | 서구 | 5 | 110,740 | 128 | 62 | 55 | 0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1: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인천광역시 | 계 | 373 | 222,405 | 282 | 183,424 | 91 | 38,981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4 | 0 | 1 | | 3 | |
| | 남동구 | 114 | 0 | 69 | | 45 | |
| | 부평구 | 103 | 123,874 | 85 | 110,758 | 18 | 13,116 |
| | 계양구 | 132 | 94,211 | 107 | 68,346 | 25 | 25,865 |
| | 서구 | 20 | 4,320 | 20 | 4,320 | 0 | 0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 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2: 이축적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 |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
|-------|-----|-----|------------|----|----|----|------|----|------------|-----|--------|----|--------|-----|--------|
| | | | 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소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인천광역시 | 계 | 151 | 74,684 | 0 | 0 | 0 | 0 | 0 | 0 | 151 | 74,684 | 49 | 19,365 | 102 | 55,319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남동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평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계양구 | 151 | 74,684 | 0 | 0 | 0 | 0 | 0 | 0 | 151 | 74,684 | 49 | 19,365 | 102 | 55,319 |
| | 서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별지 9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 총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인천광역시 | 계 | 0 | 0 | 0 | 0 | 0 | 0 |
| | 남구 | 0 | 0 | 0 | 0 | 0 | 0 |
| | 연수구 | 0 | 0 | 0 | 0 | 0 | 0 |
| | 남동구 | 0 | 0 | 0 | 0 | 0 | 0 |
| | 부평구 | 0 | 0 | 0 | 0 | 0 | 0 |
| | 계양구 | 0 | 0 | 0 | 0 | 0 | 0 |
| | 서구 | 0 | 0 | 0 | 0 | 0 | 0 |

다. 경기도

1) 별지 1 인구 및 가구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단위: 가구, 명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 | | | | | | 구역지정 이후 거주자 | | | | | | |
|------|-------|--------|-------------|-------|-------|-------|-------|-----|-------------|--------|--------|--------|--------|-------|--------|
| | | | 계 | | 자가 | | 세입 | | 계 | | 자가 | | 세입 | | |
|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가구 | 인구 | |
| 경기도 | 계 | 22,186 | 47,894 | 1,787 | 4,644 | 1,252 | 3,095 | 535 | 1,549 | 20,399 | 43,250 | 10,878 | 22,014 | 9,521 | 21,236 |
| | 남부 | 11,210 | 23,586 | 1,045 | 2,641 | 822 | 2,051 | 223 | 590 | 10,165 | 20,945 | 5,315 | 11,502 | 4,850 | 9,443 |
| | 수원시 | 136 | 372 | 30 | 40 | 30 | 40 | 0 | 0 | 106 | 332 | 80 | 270 | 26 | 62 |
| | 성남시 | 279 | 506 | 14 | 34 | 14 | 34 | 0 | 0 | 265 | 472 | 99 | 181 | 166 | 291 |
| | 부천시 | 208 | 443 | 1 | 1 | 1 | 1 | 0 | 0 | 207 | 442 | 65 | 169 | 142 | 273 |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안산시 | 746 | 1,823 | 85 | 217 | 58 | 161 | 27 | 56 | 661 | 1,606 | 253 | 657 | 408 | 949 |
| | 안양시 | 176 | 363 | 2 | 3 | 2 | 3 | 0 | 0 | 174 | 360 | 83 | 157 | 91 | 203 |
| | 시흥시 | 2,150 | 4,113 | 135 | 346 | 124 | 317 | 11 | 29 | 2,015 | 3,767 | 1,857 | 3,532 | 158 | 235 |
| | 화성시 | 1,190 | 2,840 | 180 | 470 | 170 | 460 | 10 | 10 | 1,010 | 2,370 | 810 | 1,970 | 200 | 400 |
| | 광명시 | 290 | 632 | 0 | 0 | 0 | 0 | 0 | 0 | 290 | 632 | 170 | 401 | 120 | 231 |
| | 군포시 | 35 | 117 | 3 | 5 | 3 | 5 | 0 | 0 | 32 | 112 | 32 | 112 | 0 | 0 |
| | 광주시 | 407 | 972 | 123 | 362 | 91 | 261 | 32 | 101 | 284 | 610 | 153 | 362 | 131 | 248 |
| | 김포시 | 119 | 210 | 52 | 97 | 52 | 97 | 0 | 0 | 67 | 113 | 61 | 100 | 6 | 13 |
| | 하남시 | 2,567 | 4,881 | 54 | 94 | 31 | 52 | 23 | 42 | 2,513 | 4,787 | 781 | 1,623 | 1,732 | 3,164 |
| | 의왕시 | 1,185 | 2,573 | 237 | 564 | 198 | 481 | 39 | 83 | 948 | 2,009 | 603 | 1,283 | 345 | 726 |
| | 양평군 | 453 | 1,158 | 71 | 210 | 29 | 86 | 42 | 124 | 382 | 948 | 98 | 264 | 284 | 684 |
| | 과천시 | 1,269 | 2,583 | 58 | 198 | 19 | 53 | 39 | 145 | 1,211 | 2,385 | 170 | 421 | 1,041 | 1,964 |
| | 북부 | 10,976 | 24,308 | 742 | 2,003 | 430 | 1,044 | 312 | 959 | 10,234 | 22,305 | 5,563 | 10,512 | 4,671 | 11,793 |
| | 고양시 | 3,709 | 6,056 | 184 | 395 | 148 | 254 | 36 | 141 | 3,525 | 5,661 | 3,248 | 5,097 | 277 | 564 |
| 의정부시 | 1,939 | 4,401 | 117 | 235 | 60 | 129 | 57 | 106 | 1,822 | 4,166 | 601 | 1,315 | 1,221 | 2,851 | |
| 남양주시 | 3,300 | 7,413 | 200 | 700 | 100 | 300 | 100 | 400 | 3,100 | 6,713 | 400 | 13 | 2,700 | 6,700 | |
| 구리시 | 713 | 1,730 | 101 | 245 | 85 | 220 | 16 | 25 | 612 | 1,485 | 402 | 1,107 | 210 | 378 | |
| 양주시 | 1,315 | 4,708 | 140 | 428 | 37 | 141 | 103 | 287 | 1,175 | 4,280 | 912 | 2980 | 263 | 1300 | |

2) 별지 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임야 | | 전 | | 답 | | 대지 | | 잡종지 | | 과수원 | | 기타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경기도 | 계 | 389,077 | 1,171,235,782 | 62,680 | 712,356,811 | 95,426 | 113,873,569 | 88,403 | 123,219,240 | 17,718 | 12,084,174 | 9,231 | 15,328,042 | 2,860 | 3,462,563 | 112,759 | 197,705,382 |
| | 남부 | 240,192 | 677,553,391 | 41,935 | 422,704,431 | 62,010 | 68,959,070 | 57,743 | 77,673,241 | 10,987 | 6,422,910 | 4,870 | 10,573,387 | 545 | 1,243,000 | 62,102 | 89,977,351 |
| | 수원시 | 10,585 | 29,446,206 | 1,800 | 18,730,007 | 2,548 | 3,416,000 | 3,506 | 4,531,000 | 374 | 228,000 | 98 | 80,000 | 30 | 55,110 | 2,229 | 2,406,089 |
| | 성남시 | 12,301 | 48,788,000 | 2,591 | 35,434,000 | 2,961 | 3,348,000 | 2,429 | 2,925,000 | 186 | 188,000 | 420 | 4,131,000 | 61 | 87,000 | 3,653 | 2,675,000 |
| | 부천시 | 7,447 | 16,340,000 | 881 | 6,260,000 | 1,764 | 2,276,000 | 2,173 | 3,529,000 | 694 | 469,000 | 91 | 696,000 | 15 | 39,000 | 1,829 | 3,071,000 |
| | 용인시 | 669 | 9,540,815 | 492 | 9,263,900 | 78 | 110,796 | 37 | 32,190 | 4 | 1,630 | 3 | 1,676 | 1 | 3,204 | 54 | 127,419 |
| | 안산시 | 20,701 | 37,970,000 | 2,000 | 19,167,000 | 6,000 | 6,534,000 | 5,000 | 6,208,000 | 1,000 | 272,000 | 700 | 296,000 | 1 | 77,000 | 6,000 | 5,416,000 |
| | 안양시 | 5,315 | 30,141,768 | 1,462 | 25,750,293 | 872 | 598,023 | 303 | 337,956 | 598 | 206,412 | 422 | 1,250,491 | 7 | 24,333 | 1,651 | 1,974,260 |
| | 시흥시 | 32,688 | 85,857,000 | 6,460 | 35,505,000 | 12,090 | 14,748,000 | 9,380 | 14,715,000 | 2,090 | 795,000 | 1,040 | 1,107,000 | 90 | 283,000 | 1,538 | 18,704,000 |
| | 화성시 | 42,200 | 92,185,000 | 5,760 | 51,729,000 | 10,840 | 11,376,000 | 14,750 | 21,817,000 | 1,430 | 733,000 | 140 | 230,000 | 30 | 104,000 | 9,250 | 6,196,000 |
| | 광명시 | 5,600 | 15,306,000 | 1,210 | 10,254,000 | 1,690 | 1,341,000 | 380 | 352,000 | 300 | 582,000 | 150 | 420,000 | 0 | 0 | 1,870 | 2,357,000 |
| | 군포시 | 8,121 | 22,737,486 | 1,721 | 15,036,000 | 2,102 | 2,228,040 | 1,366 | 1,388,446 | 122 | 71,626 | 39 | 246,173 | 8 | 16,431 | 2,763 | 3,750,770 |
| | 광주시 | 21,246 | 104,359,163 | 5,071 | 79,514,834 | 5,481 | 6,018,530 | 5,269 | 6,143,239 | 572 | 203,275 | 201 | 213,000 | 61 | 143,000 | 4,591 | 12,123,285 |
| | 김포시 | 10,689 | 17,033,673 | 1,068 | 2,854,017 | 2,544 | 3,124,912 | 3,555 | 5,828,309 | 526 | 166,027 | 137 | 114,082 | 33 | 30,103 | 2,826 | 4,916,223 |
| | 하남시 | 28,609 | 71,886,000 | 5,626 | 47,415,311 | 5,228 | 4,892,769 | 4,424 | 4,092,076 | 1,119 | 486,097 | 894 | 1,320,404 | 136 | 230,039 | 11,182 | 13,449,305 |
| | 의왕시 | 16,100 | 46,688,000 | 2,800 | 30,288,000 | 3,800 | 4,703,000 | 1,800 | 2,114,000 | 800 | 956,000 | 400 | 196,000 | 20 | 45,000 | 6,480 | 8,386,000 |
| | 양평군 | 8,089 | 17,152,280 | 1,333 | 13,373,069 | 1,431 | 1,525,001 | 1,374 | 1,476,026 | 547 | 179,843 | 40 | 19,561 | 46 | 87,780 | 3,318 | 491,000 |
| | 과천시 | 9,832 | 32,122,000 | 1,660 | 22,130,000 | 2,581 | 2,719,000 | 1,997 | 2,184,000 | 625 | 885,000 | 95 | 252,000 | 6 | 18,000 | 2,868 | 3,934,000 |
| | 북부 | 148,885 | 500,476,391 | 20,745 | 289,652,380 | 33,416 | 44,914,499 | 30,660 | 45,545,999 | 6,731 | 5,661,264 | 4,361 | 4,754,655 | 2,315 | 2,219,563 | 50,657 | 107,728,031 |
| | 고양시 | 34,797 | 118,278,000 | 4,753 | 65,374,000 | 7,993 | 17,778,000 | 7,797 | 19,425,000 | 1,333 | 1,700,000 | 1,646 | 579,000 | 1,370 | 390,000 | 9,905 | 13,032,000 |
| 의정부시 | 15,530 | 57,970,000 | 3,460 | 44,908,000 | 3,520 | 3,445,000 | 2,100 | 2,272,000 | 1,190 | 1,316,000 | 560 | 1,113,000 | 100 | 155,000 | 4,600 | 4,761,000 | |
| 남양주시 | 72,700 | 226,568,000 | 10,000 | 139,750,000 | 15,000 | 15,558,000 | 16,000 | 17,053,000 | 3,000 | 1,921,000 | 1,000 | 1,471,000 | 700 | 1,282,000 | 27,000 | 49,533,000 | |
| 구리시 | 8,598 | 20,499,679 | 1,412 | 10,701,503 | 2,778 | 3,526,281 | 853 | 755,842 | 391 | 274,482 | 737 | 880,386 | 88 | 240,528 | 2,339 | 4,120,657 | |
| 양주시 | 17,260 | 77,160,712 | 1,120 | 289,188,877 | 4,125 | 460,7218 | 3,910 | 604,0157 | 817 | 449,782 | 418 | 7,112,69 | 57 | 152,035 | 6,813 | 36,281,374 | |

IV. 부록

3) 별지 2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3-1: 토지소유권 분포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사 유 | | | | | | | | | | 국 · 공유 | | | | | |
|------|--------|-------------|---------------|-------------|-------------|-------------|-------------|------------|-------------|------------|------------|------------|-------------|------------|-------------|-----------|-------------|
| | | 계 | | 개인 | | 법인 | | 종중 | | 소계 | | 국유 | | 공유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경기도 | 계 | 394,937 | 1,171,235,782 | 246,766 | 716,662,163 | 213,984 | 537,507,852 | 22,046 | 101,295,838 | 10,736 | 77,858,474 | 148,171 | 358,788,732 | 90,224 | 254,998,148 | 57,947 | 103,790,584 |
| | 남부 | 248,684 | 630,567,505 | 155,064 | 422,541,235 | 134,262 | 337,684,152 | 13,910 | 42,287,547 | 6,892 | 42,569,537 | 93,620 | 208,026,269 | 53,465 | 140,715,433 | 40,155 | 67,310,836 |
| | 수원시 | 10,447 | 29,447,475 | 6,525 | 20,607,130 | 5,714 | 16,004,812 | 664 | 2,880,101 | 147 | 1,722,217 | 3,922 | 8,840,345 | 2,209 | 5,295,272 | 1,713 | 3,545,073 |
| | 성남시 | 12,300 | 48,788,000 | 6,400 | 30,055,000 | 5,700 | 24,413,000 | 500 | 3,128,000 | 200 | 2,514,000 | 5,900 | 18,733,000 | 4,400 | 16,154,000 | 1,500 | 2,579,000 |
| | 부천시 | 7,447 | 16,340,000 | 4,948 | 11,006,000 | 4,436 | 8,854,000 | 424 | 1,073,000 | 88 | 1,079,000 | 2,499 | 5,334,000 | 1,742 | 1,800,000 | 757 | 3,534,000 |
| | 용인시 | 669 | 9,540,820 | 598 | 8,482,736 | 539 | 7,513,471 | 24 | 455,350 | 35 | 513,915 | 71 | 1,058,084 | 65 | 713,089 | 6 | 344,995 |
| | 안산시 | 22,000 | 37,956,000 | 15,000 | 28,458,000 | 13,000 | 23,582,000 | 1,000 | 1,732,000 | 1,000 | 3,144,000 | 7,000 | 9,498,000 | 5,000 | 7,571,000 | 2,000 | 1,927,000 |
| | 안양시 | 5,315 | 30,141,768 | 2,415 | 9,326,933 | 2,074 | 7,718,896 | 314 | 1,213,793 | 27 | 394,245 | 2,900 | 20,814,835 | 1,955 | 15,138,722 | 945 | 5,676,113 |
| | 시흥시 | 46,540 | 85,857,000 | 31,240 | 66,579,000 | 28,190 | 53,205,000 | 2,280 | 8,234,000 | 770 | 5,140,000 | 15,300 | 19,278,000 | 6,830 | 12,922,000 | 8,470 | 6,356,000 |
| | 화성시 | 42,200 | 92,185,000 | 31,450 | 75,927,000 | 28,760 | 67,904,000 | 960 | 2,496,000 | 1,730 | 5,527,000 | 10,750 | 16,258,000 | 6,560 | 14,344,000 | 4,190 | 1,914,000 |
| | 광명시 | 5,600 | 15,306,000 | 3,169 | 7,824,000 | 2,800 | 7,166,000 | 199 | 421,000 | 170 | 237,000 | 2,431 | 7,482,000 | 1,520 | 3,815,000 | 911 | 3,667,000 |
| | 군포시 | 8,121 | 24,509,050 | 4,371 | 15,985,476 | 3,723 | 9,653,436 | 434 | 3,166,020 | 214 | 3,166,020 | 3,750 | 8,523,574 | 2,675 | 4,108,840 | 1,075 | 4,414,734 |
| | 광주시 | 21,246 | 104,359,163 | 12,443 | 70,284,511 | 11,444 | 55,627,320 | 300 | 5,228,191 | 699 | 9,429,000 | 8,803 | 34,074,652 | 8,751 | 31,962,201 | 52 | 2,112,451 |
| | 김포시 | 10,689 | 17,033,673 | 6,264 | 10,087,238 | 5,358 | 9,040,178 | 815 | 634,017 | 91 | 413,043 | 4,425 | 6,946,435 | 3,424 | 6,213,271 | 1,001 | 733,164 |
| | 하남시 | 22,089 | 23,150,285 | 10,771 | 9,470,941 | 5,228 | 4,892,769 | 4,424 | 4,092,076 | 1,119 | 486,097 | 11,318 | 13,679,344 | 136 | 230,039 | 11,182 | 13,449,305 |
| | 의왕시 | 16,100 | 46,688,000 | 9,100 | 30,440,000 | 7,500 | 18,542,000 | 1,200 | 5,904,000 | 400 | 5,994,000 | 7,000 | 16,248,000 | 3,400 | 9,373,000 | 3,600 | 6,875,000 |
| | 양평군 | 8,089 | 17,143,270 | 4,864 | 14,276,270 | 4,465 | 11,628,270 | 266 | 571,000 | 133 | 2,077,000 | 3,225 | 2,867,000 | 2,921 | 2,531,000 | 304 | 336,000 |
| | 과천시 | 9,832 | 32,122,000 | 5,506 | 13,731,000 | 5,331 | 11,939,000 | 106 | 1,059,000 | 69 | 733,000 | 4,326 | 18,391,000 | 1,877 | 8,544,000 | 2,449 | 9,847,000 |
| | 북부 | 146,253 | 444,883,391 | 91,702 | 294,120,928 | 79,722 | 199,823,700 | 8,136 | 59,008,291 | 3,844 | 35,288,937 | 54,551 | 150,762,463 | 36,759 | 114,282,715 | 17,792 | 36,479,748 |
| | 고양시 | 32,496 | 61,633,000 | 23,081 | 15,085,000 | 20,338 | 6,424,000 | 1,971 | 6,211,000 | 772 | 2,450,000 | 9,415 | 46,548,000 | 6,627 | 32,731,000 | 2,788 | 13,817,000 |
| 의정부시 | 15,530 | 57,970,000 | 8,150 | 36,530,000 | 6,930 | 26,754,000 | 710 | 4,239,000 | 510 | 5,537,000 | 7,380 | 21,440,000 | 4,230 | 12,018,000 | 3,150 | 9,422,000 | |
| 남양주시 | 72,000 | 227,620,000 | 44,300 | 174,049,000 | 38,400 | 119,424,000 | 4,500 | 36,424,000 | 1,400 | 18,201,000 | 27,700 | 53,571,000 | 19,000 | 44,877,000 | 8,700 | 8,694,000 | |
| 구리시 | 8,967 | 20,499,679 | 5,841 | 12,008,158 | 5,016 | 9,132,893 | 415 | 2,441,566 | 410 | 433,699 | 3,126 | 8,491,521 | 1,952 | 7,029,135 | 1,174 | 1,462,386 | |
| 양주시 | 17,260 | 77,160,712 | 10,330 | 56,448,770 | 9,038 | 38,088,807 | 540 | 9,692,725 | 752 | 8,667,238 | 6,930 | 20,711,942 | 4,950 | 17,627,580 | 1,980 | 3,084,362 | |

3) 별지 2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3-2: 구역지정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1년미만 | | 3년미만 | | 5년미만 | | 10년미만 | | 15년미만 | | 20년미만 | | 20년이상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경기도 | 계 | 143,673 | 483,338,611 | 7,357 | 21,536,750 | 16,680 | 45,838,050 | 12,233 | 36,030,544 | 35,398 | 104,174,484 | 24,719 | 103,416,538 | 14,746 | 53,449,711 | 32,540 | 118,892,534 |
| | 남부 | 99,823 | 350,088,766 | 4,026 | 12,040,433 | 10,099 | 27,151,776 | 7,740 | 26,783,403 | 25,931 | 91,618,667 | 18,293 | 85,351,597 | 10,997 | 33,851,596 | 22,737 | 73,291,294 |
| | 수원시 | 10,278 | 28,425,139 | 11 | 7,578 | 484 | 990,025 | 1,078 | 2,814,006 | 659 | 2,782,095 | 1,672 | 4,864,932 | 1,653 | 3,245,542 | 4,721 | 13,720,961 |
| | 성남시 | 4,000 | 23,245,000 | 300 | 1,642,000 | 500 | 3,677,000 | 300 | 1,899,000 | 1,100 | 4,608,000 | 700 | 3,928,000 | 500 | 4,488,000 | 600 | 3,003,000 |
| | 부천시 | 17,000 | 92,395,000 | 0 | 0 | 0 | 0 | 0 | 0 | 7,000 | 39,521,000 | 4,000 | 40,870,000 | 1,000 | 1,091,000 | 5,000 | 10,913,000 |
| | 용인시 | 466 | 7,384,195 | 0 | 0 | 39 | 264,662 | 57 | 742,158 | 80 | 2,671,254 | 66 | 1,080,082 | 67 | 642,950 | 157 | 1,983,089 |
| | 안산시 | 10,000 | 22,617,000 | 1,000 | 2,090,000 | 2,000 | 4,559,000 | 1,000 | 3,423,000 | 2,000 | 4,502,000 | 2,000 | 4,615,000 | 1,000 | 2,816,000 | 1,000 | 612,000 |
| | 안양시 | 5,315 | 30,141,463 | 782 | 4,437,471 | 812 | 4,605,059 | 591 | 3,349,051 | 951 | 5,391,759 | 1,004 | 5,693,478 | 325 | 1,841,963 | 850 | 4,822,682 |
| | 시흥시 | 13,930 | 37,786,000 | 250 | 529,000 | 2,750 | 5,161,000 | 1,840 | 6,929,000 | 3,710 | 8,896,000 | 1,720 | 4,896,000 | 1,350 | 4,331,000 | 2,310 | 7,044,000 |
| | 화성시 | 12,520 | 38,717,000 | 20 | 29,000 | 1,200 | 2,708,000 | 940 | 1,944,000 | 3,680 | 9,412,000 | 2,150 | 6,649,000 | 1,850 | 5,174,000 | 2,680 | 12,801,000 |
| | 광명시 | 753 | 3,382,000 | 13 | 82,000 | 57 | 101,000 | 77 | 389,000 | 84 | 415,000 | 130 | 329,000 | 80 | 242,000 | 312 | 1,824,000 |
| | 군포시 | 3,091 | 11,536,750 | 26 | 25,551 | 20 | 25,570 | 14 | 20,365 | 521 | 2,013,863 | 160 | 569,320 | 397 | 1,848,644 | 1,953 | 7,033,437 |
| | 광주시 | 1,512 | 7,383,916 | 61 | 74,123 | 141 | 204,521 | 142 | 426,888 | 302 | 1,383,888 | 393 | 2,111,987 | 271 | 1,909,528 | 202 | 1,272,981 |
| | 김포시 | 2,011 | 3,853,729 | 159 | 272,085 | 270 | 554,242 | 212 | 426,013 | 494 | 931,008 | 322 | 618,146 | 170 | 347,091 | 384 | 705,144 |
| | 하남시 | 4,088 | 4,498,574 | 73 | 34,625 | 163 | 80,697 | 241 | 1,562,922 | 2,215 | 1,169,800 | 1,386 | 1,637,652 | 10 | 12,878 | 0 | 0 |
| | 의왕시 | 9,500 | 20,170,000 | 700 | 1,382,000 | 800 | 1,586,000 | 900 | 1,751,000 | 1,900 | 4,647,000 | 1,800 | 3,788,000 | 1,600 | 3,564,000 | 1,800 | 3,452,000 |
| | 양평군 | 1,910 | 8,730,000 | 410 | 825,000 | 400 | 1,553,000 | 100 | 334,000 | 400 | 913,000 | 200 | 1,936,000 | 100 | 431,000 | 300 | 2,738,000 |
| | 과천시 | 3,449 | 9,823,000 | 221 | 610,000 | 463 | 1,082,000 | 248 | 773,000 | 835 | 2,361,000 | 590 | 1,765,000 | 624 | 1,866,000 | 468 | 1,366,000 |
| | 북부 | 43,850 | 133,249,845 | 3,331 | 9,496,317 | 6,581 | 18,686,274 | 4,493 | 9,247,141 | 9,467 | 12,555,817 | 6,426 | 18,064,941 | 3,749 | 19,598,115 | 9,803 | 45,601,240 |
| | 고양시 | 11,480 | 22,999 | 673 | 1,424 | 1,585 | 2,782 | 835 | 1,558 | 1,984 | 2,941 | 2,404 | 4,681 | 1,155 | 2,728 | 2,844 | 6,885 |
| 의정부시 | 5,189 | 26,602,840 | 410 | 1,604,970 | 700 | 3,814,350 | 570 | 2,396,510 | 1,069 | 3,834,950 | 680 | 3,990,060 | 510 | 2,693,710 | 1,250 | 8,268,290 | |
| 남양주시 | 20,600 | 69,912,000 | 1,800 | 6,397,000 | 3,500 | 10,802,000 | 2,200 | 5,309,000 | 5,000 | 2,391,000 | 2,300 | 9,265,000 | 1,300 | 7,789,000 | 4,500 | 27,959,000 | |
| 구리시 | 2,406 | 3,017,052 | 143 | 195,586 | 389 | 744,625 | 376 | 191,524 | 557 | 522,698 | 432 | 562,485 | 243 | 421,549 | 266 | 378,585 | |
| 양주시 | 4,175 | 33,694,954 | 305 | 1297337 | 407 | 3322517 | 512 | 1348549 | 857 | 5804228 | 610 | 4242715 | 541 | 8691128 | 943 | 8988480 |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1: 건축물 현황(총괄)

단위: 동, m²

| 구분 | | 합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경기도 | 계 | 47,884.0 | 12,069,244.3 | 38,820.0 | 11,570,923.0 | 9,064.0 | 498,321.4 |
| | 남부 | 28,268.0 | 7,626,957.7 | 22,173.0 | 7,241,841.9 | 6,095.0 | 385,115.7 |
| | 수원시 | 294.0 | 7,701.0 | 282.0 | 7,098.0 | 12.0 | 603.0 |
| | 성남시 | 331.0 | 210,927.0 | 312.0 | 208,043.0 | 19.0 | 2,884.0 |
| | 부천시 | 989.0 | 323,980.0 | 652.0 | 299,456.0 | 337.0 | 24,524.0 |
| | 용인시 | 2.0 | 495.0 | 2.0 | 495.0 | 0.0 | 0.0 |
| | 안산시 | 1,739.0 | 314,632.1 | 1,307.0 | 302,650.1 | 432.0 | 11,982.0 |
| | 안양시 | 377.0 | 280,509.9 | 330.0 | 279,854.0 | 47.0 | 655.9 |
| | 시흥시 | 10,432.0 | 2,711,691.0 | 7,732.0 | 2,545,385.0 | 2,700.0 | 166,306.0 |
| | 화성시 | 5,037.0 | 796,381.0 | 3,817.0 | 719,369.0 | 1,220.0 | 77,012.0 |
| | 광명시 | 335.0 | 392,872.0 | 320.0 | 389,865.0 | 15.0 | 3,007.0 |
| | 군포시 | 288.0 | 422,415.0 | 243.0 | 399,796.0 | 45.0 | 22,619.0 |
| | 광주시 | 716.0 | 126,118.0 | 637.0 | 118,898.0 | 79.0 | 7,220.0 |
| | 김포시 | 1,323.0 | 159,744.0 | 792.0 | 130,126.0 | 531.0 | 29,618.0 |
| | 하남시 | 3,183.0 | 1,374,454.7 | 3,173.0 | 1,373,250.8 | 10.0 | 1,203.9 |
| | 의왕시 | 1,842.0 | 337,325.0 | 1,509.0 | 321,743.0 | 333.0 | 15,582.0 |
| | 양평군 | 657.0 | 55,184.0 | 417.0 | 43,137.0 | 240.0 | 12,047.0 |
| | 과천시 | 723.0 | 112,528.0 | 648.0 | 102,676.0 | 75.0 | 9,852.0 |
| | 북부 | 19,616.0 | 4,442,286.7 | 16,647.0 | 4,329,081.0 | 2,969.0 | 113,205.7 |
| | 고양시 | 4,084.0 | 806,020.0 | 4,058.0 | 803,612.0 | 26.0 | 2,408.0 |
| | 의정부시 | 3,328.0 | 763,383.0 | 2,036.0 | 753,639.0 | 1,292.0 | 9,744.0 |
| 남양주시 | 7,108.0 | 2,225,108.7 | 7,024.0 | 2,218,451.0 | 84.0 | 6,657.7 | |
| 구리시 | 2,212.0 | 369,593.0 | 2,015.0 | 355,135.0 | 197.0 | 14,458.0 | |
| 양주시 | 2,884.0 | 278,182.0 | 1,514 | 198,244 | 1,370 | 79,938 | |

4) 별지 4 건축물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4-2: 주거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단위: 동, m²

| 구분 | 합계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 시설 | | 종교시설 | | 창고 | | 동물 관련시설 | | 기타 | | |
|-------------|-------|-----------|------------|---------|-----------|----|---------|---------|-----------|--------|--------|---------|---------|-----------|-----------|---------|-----------|
|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동수 | 면적 | |
| 경 기 도 | 계 | 40,432 | 11,636,904 | 16,808 | 3,198,187 | 4 | 7,841 | 3,361 | 1,023,787 | 375 | 74,059 | 3,411 | 480,999 | 8,613 | 3,170,961 | 7,860 | 3,681,070 |
| | 남부 | 22,193 | 7,315,823 | 10,397 | 2,136,720 | 4 | 7,841 | 2,483 | 573,280 | 248 | 47,199 | 1,920 | 290,424 | 5,020 | 1,816,958 | 2,121 | 2,443,402 |
| | 수원시 | 282 | 70,798 | 157 | 25,730 | 0 | 0 | 44 | 8,209 | 3 | 4,448 | 26 | 2,818 | 32 | 8,945 | 20 | 20,648 |
| | 성남시 | 312 | 208,034 | 99 | 17,636 | 1 | 6,823 | 110 | 40,886 | 10 | 1,209 | 11 | 1,462 | 33 | 10,428 | 48 | 129,590 |
| | 부천시 | 652 | 299,456 | 200 | 14,874 | 2 | 686 | 149 | 33,766 | 3 | 1,066 | 21 | 14,422 | 103 | 29,095 | 174 | 205,547 |
| | 용인시 | 2 | 49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495 |
| | 안산시 | 1,307 | 302,650 | 504 | 133,918 | | | 133 | 32,352 | 11 | 1,164 | 251 | 23,358 | 315 | 88,445 | 93 | 23,414 |
| | 안양시 | 330 | 280,853 | 136 | 18,273 | 0 | 0 | 80 | 13,936 | 29 | 6,353 | 4 | 369 | 7 | 2,257 | 74 | 239,665 |
| | 시흥시 | 7,732 | 2,545,385 | 5,002 | 1,456,593 | 0 | 0 | 387 | 63,320 | 43 | 9,028 | 368 | 43,843 | 1,266 | 311,048 | 666 | 661,553 |
| | 화성시 | 3,817 | 719,367 | 1,512 | 121,816 | 0 | 0 | 325 | 63,573 | 49 | 3,004 | 429 | 23,095 | 1,211 | 434,396 | 291 | 73,483 |
| | 광명시 | 320 | 389,865 | 112 | 21,841 | 0 | 0 | 105 | 26,331 | 7 | 1,261 | 4 | 348 | 23 | 8,895 | 69 | 331,189 |
| | 군포시 | 263 | 409,089 | 36 | 4,203 | 0 | 0 | 40 | 6,415 | 11 | 1,576 | 6 | 260 | 48 | 15,349 | 122 | 381,285 |
| | 광주시 | 637 | 118,898 | 397 | 53,057 | 0 | 0 | 126 | 24,583 | 8 | 1,632 | 61 | 5,256 | 23 | 6,007 | 22 | 28,363 |
| | 김포시 | 792 | 130,126 | 427 | 51,466 | 0 | 0 | 67 | 14,977 | 4 | 714 | 91 | 24,085 | 156 | 19,999 | 47 | 18,885 |
| | 하남시 | 3,173 | 1,373,251 | 494 | 92,615 | 1 | 332 | 514 | 179,198 | 13 | 3,573 | 470 | 103,774 | 1,529 | 823,002 | 152 | 170,757 |
| | 의왕시 | 1,509 | 321,743 | 621 | 49,324 | 0 | 0 | 345 | 56,845 | 55 | 11,824 | 93 | 23,996 | 140 | 29,707 | 255 | 150,047 |
| | 양평군 | 417 | 43,137 | 291 | 25,556 | 0 | 0 | 3 | 743 | 1 | 149 | 53 | 5,287 | 22 | 4,452 | 47 | 6,950 |
| | 과천시 | 648 | 102,676 | 409 | 49,817 | 0 | 0 | 55 | 8,147 | 1 | 198 | 32 | 18,051 | 112 | 24,932 | 39 | 1,531 |
| | 북부 | 18,239 | 4,321,081 | 6,411 | 1,061,467 | 0 | 0 | 878 | 450,507 | 127 | 26,860 | 1,491 | 190,576 | 3,593 | 1,354,003 | 5,739 | 1,237,668 |
| | 고양시 | 4,058 | 803,612 | 851 | 164,155 | 0 | 0 | 494 | 89,979 | 9 | 3,856 | 159 | 29,953 | 335 | 105,688 | 2,210 | 409,981 |
| 의정부시 | 2,036 | 753,639 | 1,535 | 305,999 | 0 | 0 | 186 | 37,739 | 56 | 11,616 | 65 | 4,520 | 18 | 3,594 | 176 | 390,171 | |
| 남양주시 | 5,849 | 2,210,451 | 1,961 | 335,726 | 0 | | 0 | 287,362 | 20 | 3,422 | 1,112 | 139,073 | 2,501 | 1,103,932 | 255 | 340,936 | |
| 구리시 | 2,015 | 355,135 | 1,214 | 192,563 | 0 | 0 | 37 | 5,435 | 8 | 5,446 | 21 | 3,722 | 711 | 136,469 | 24 | 11,500 | |
| 양주시 | 4,281 | 198,244 | 850 | 63,024 | - | - | 161 | 29,992 | 34 | 2,520 | 134 | 13,308 | 28 | 4,320 | 3,074 | 85,080 | |

IV. 부록

5) 별지 5 도시계획시설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합계 | | 합계 | | | | 도로 | | | | | | 공원 | | | | | | 기타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계 | | 조성완료 | | 미조성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계 | 3,098 | 171,101,375 | 1,699 | 132,579,250 | 1,399 | 38,522,125 | 1,720 | 40,381,311 | 891 | 32,972,753 | 829 | 7,408,558 | 286 | 45,974,131 | 102 | 21,922,607 | 184 | 24,051,524 | 1,092 | 84,745,932 | 706 | 77,683,890 | 386 | 7,062,043 |
| 남부 | 1,796 | 83,461,405 | 906 | 56,137,748 | 890 | 27,323,657 | 926 | 17,245,356 | 431 | 14,949,617 | 495 | 2,295,739 | 205 | 30,500,078 | 62 | 11,338,471 | 143 | 19,161,607 | 665 | 35,715,971 | 413 | 29,849,660 | 252 | 5,866,311 |
| 수원시 | 76 | 7,035,293 | 60 | 1,975,838 | 16 | 5,059,455 | 54 | 1,071,458 | 41 | 1,009,786 | 13 | 61,672 | 7 | 5,015,507 | 4 | 17,724 | 3 | 4,997,783 | 15 | 948,328 | 15 | 948,328 | 0 | 0 |
| 성남시 | 64 | 6,901,405 | 51 | 3,349,685 | 13 | 3,551,720 | 32 | 2,197,241 | 32 | 2,197,241 | | | 10 | 3,305,156 | 4 | 122,545 | 6 | 3,182,611 | 22 | 1,399,008 | 15 | 1,029,899 | 7 | 369,109 |
| 부천시 | 147 | 7,566,154 | 122 | 3,590,265 | 25 | 3,975,889 | 64 | 928,820 | 49 | 766,015 | 15 | 162,805 | 17 | 4,603,178 | 7 | 790,094 | 10 | 3,813,084 | 66 | 2,034,156 | 66 | 2,034,156 | 0 | 0 |
| 용인시 | 1 | 328 | 1 | 32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328 | 1 | 328 | 0 | 0 |
| 안산시 | 35 | 2,233,615 | 25 | 2,213,571 | 10 | 20,044 | 15 | 200,441 | 5 | 180,397 | 10 | 20,044 | 1 | 100,060 | 1 | 100,060 | | | 19 | 1,933,114 | 19 | 1,933,114 | 0 | 0 |
| 안양시 | 111 | 2,789,335 | 108 | 2,681,488 | 3 | 107,847 | 51 | 782,219 | 50 | 777,792 | 1 | 4,427 | 4 | 334,887 | 3 | 236,487 | 1 | 98,400 | 56 | 1,672,229 | 55 | 1,667,209 | 1 | 5,020 |
| 시흥시 | 335 | 3,509,499 | 28 | 1,869,104 | 307 | 1,640,395 | 199 | 268,783 | 2 | 2,533 | 197 | 266,250 | 45 | 2,080,817 | 3 | 1,552,608 | 42 | 528,209 | 91 | 1,159,899 | 23 | 313,963 | 68 | 845,936 |
| 화성시 | 226 | 6,519,338 | 82 | 3,394,667 | 144 | 3,124,671 | 131 | 2,208,675 | 51 | 2,074,653 | 80 | 134,022 | 11 | 5,103 | 11 | 5,103 | | | 84 | 4,305,560 | 20 | 1,314,911 | 64 | 2,990,649 |
| 광명시 | 46 | 4,536,992 | 35 | 3,032,313 | 11 | 1,504,679 | 6 | 144,443 | 5 | 137,799 | 1 | 6,644 | 6 | 2,632,596 | 3 | 1,281,181 | 3 | 1,351,415 | 34 | 1,759,953 | 27 | 1,613,333 | 7 | 146,620 |
| 군포시 | 62 | 5,656,897 | 38 | 3,232,099 | 24 | 2,424,798 | 29 | 1,607,595 | 19 | 1,152,318 | 10 | 455,277 | 9 | 1,794,912 | 1 | 8,782 | 8 | 1,786,130 | 24 | 2,254,390 | 18 | 2,070,999 | 6 | 183,391 |
| 광주시 | 57 | 1,256,074 | 22 | 1,201,895 | 35 | 54,179 | 30 | 1,130,617 | 12 | 1,099,185 | 18 | 31,432 | 9 | 9,588 | 1 | 700 | 8 | 8,888 | 18 | 115,869 | 9 | 102,010 | 9 | 13,859 |
| 김포시 | 82 | 2,187,857 | 37 | 1,970,040 | 45 | 217,817 | 59 | 808,849 | 26 | 603,469 | 33 | 205,380 | 5 | 2,700 | 0 | 0 | 5 | 2,700 | 18 | 1,376,308 | 11 | 1,366,571 | 7 | 9,737 |
| 하남시 | 244 | 16,150,075 | 81 | 12,647,301 | 163 | 3,502,774 | 115 | 2,731,708 | 39 | 1,899,047 | 76 | 832,661 | 15 | 1,512,180 | 6 | 115,156 | 9 | 1,397,024 | 114 | 11,906,187 | 36 | 10,633,098 | 78 | 1,273,089 |
| 의왕시 | 198 | 8,042,455 | 152 | 6,382,265 | 46 | 1,660,190 | 100 | 2,045,140 | 62 | 1,949,559 | 38 | 95,581 | 8 | 1,668,273 | 4 | 131,999 | 4 | 1,536,274 | 90 | 4,329,042 | 86 | 4,300,707 | 4 | 28,335 |
| 양평군 | 8 | 440,867 | 6 | 417,387 | 2 | 23,480 | 6 | 424,935 | 5 | 409,035 | 1 | 15,900 | 1 | 7,580 | 0 | 0 | 1 | 7,580 | 1 | 8,352 | 1 | 8,352 | 0 | 0 |
| 과천시 | 104 | 8,635,221 | 58 | 8,179,502 | 46 | 455,719 | 35 | 694,432 | 33 | 690,788 | 2 | 3,644 | 57 | 7,427,541 | 14 | 6,976,032 | 43 | 451,509 | 12 | 513,248 | 11 | 512,682 | 1 | 566 |
| 북부 | 1,302 | 87,639,970 | 793 | 76,441,502 | 509 | 11,198,468 | 794 | 23,135,955 | 460 | 18,023,136 | 334 | 5,112,819 | 81 | 15,474,053 | 40 | 10,584,136 | 41 | 4,889,917 | 427 | 49,029,961 | 293 | 47,834,230 | 134 | 1,195,732 |
| 고양시 | 625 | 51,532,929 | 466 | 46,896,651 | 159 | 4,636,278 | 447 | 12,026,573 | 304 | 10,118,115 | 143 | 1,908,458 | 26 | 7,135,670 | 20 | 4,646,529 | 6 | 2,489,141 | 152 | 32,370,686 | 142 | 32,132,007 | 10 | 238,679 |
| 의정부시 | 169 | 3,024,904 | 31 | 1,153,426 | 138 | 1,871,478 | 99 | 1,849,680 | 17 | 763,851 | 82 | 1,085,829 | 9 | 748,180 | 0 | 0 | 9 | 748,180 | 61 | 427,044 | 14 | 389,575 | 47 | 37,469 |
| 남양주시 | 304 | 10,927,546 | 166 | 9,180,071 | 138 | 1,747,475 | 155 | 5,689,595 | 79 | 4,978,539 | 76 | 711,056 | 32 | 2,510,853 | 11 | 1,877,495 | 21 | 633,358 | 117 | 2,727,098 | 76 | 2,324,037 | 41 | 403,061 |
| 구리시 | 87 | 15,222,749 | 76 | 14,031,968 | 11 | 1,190,781 | 39 | 1,356,458 | 35 | 1,170,432 | 4 | 186,026 | 11 | 4,382,397 | 7 | 3,413,667 | 4 | 968,730 | 37 | 9,483,894 | 34 | 9,447,869 | 3 | 36,025 |
| 양주시 | 117 | 6,931,842 | 54 | 5,179,386 | 63 | 1,752,456 | 54 | 2,213,649 | 25 | 992,199 | 29 | 1,221,450 | 3 | 696,953 | 2 | 646,445 | 1 | 50,508 | 60 | 4,021,239 | 27 | 3,540,742 | 33 | 480,498 |

6) 별지 6 중복규제지역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상수원 보호구역 | | 군사시설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 |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 문화재보호구역 | | 공원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국립공원 | | 도시공원 | | |
| | | | | | | |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경기도 | 계 | 151,902 | 538,691,142 | 38,858 | 158,866,242 | 63,712 | 207,577,997 | 26,513 | 37,306,891 | 0 | 0 | 11,919 | 44,262,736 | 1,808 | 40,671,567 | 8,092 | 50,005,709 |
| | 남부 | 67,084 | 240,157,698 | 28,247 | 116,147,429 | 11,069 | 43,652,380 | 17,247 | 25,317,668 | 0 | 0 | 2,806 | 13,605,817 | 0 | 0 | 6,715 | 41,434,404 |
| | 수원시 | 6,173 | 18,064,790 | 2,345 | 10,277,787 | 0 | 0 | 1,811 | 2,722,988 | 0 | 0 | 30 | 48,508 | 0 | 0 | 1,987 | 5,015,507 |
| | 성남시 | 1,769 | 10,712,917 | 0 | 0 | 1,197 | 6,595,421 | 0 | 0 | 0 | 0 | 6 | 20,718 | 0 | 0 | 566 | 4,096,778 |
| | 부천시 | 797 | 4,608,864 | 0 | 0 | 6 | 5,686 | 0 | 0 | 0 | 0 | 0 | 0 | 0 | 0 | 791 | 4,603,178 |
| | 용인시 | 21 | 286,862 | 0 | 0 | 0 | 0 | 0 | 0 | 0 | 0 | 21 | 286,862 | 0 | 0 | 0 | 0 |
| | 안산시 | 1,356 | 356,991 | 0 | 0 | 0 | 0 | 1,341 | 333,123 | 0 | 0 | 15 | 23,868 | 0 | 0 | 0 | 0 |
| | 안양시 | 1,633 | 14,763,943 | 0 | 0 | 1,178 | 9,044,000 | 0 | 0 | 0 | 0 | 0 | 0 | 0 | 0 | 455 | 5,719,943 |
| | 시흥시 | 671 | 2,408,329 | 0 | 0 | 666 | 2,384,912 | 0 | 0 | 0 | 0 | 5 | 23,417 | 0 | 0 | 0 | 0 |
| | 화성시 | 11,502 | 18,436,517 | 0 | 0 | 113 | 463,572 | 10,583 | 16,552,840 | 0 | 0 | 697 | 1,406,662 | 0 | 0 | 109 | 13,443 |
| | 광명시 | 645 | 4,514,930 | 0 | 0 | 320 | 1,746,856 | 0 | 0 | 0 | 0 | 33 | 135,478 | 0 | 0 | 292 | 2,632,596 |
| | 군포시 | 1,027 | 1,994,806 | 0 | 0 | 0 | 0 | 132 | 139,351 | 0 | 0 | 11 | 62,254 | 0 | 0 | 884 | 1,793,201 |
| | 광주시 | 20,277 | 89,116,009 | 17,010 | 81,626,372 | 473 | 3,185,374 | 1,995 | 2,701,864 | 0 | 0 | 757 | 1,592,829 | 0 | 0 | 42 | 9,570 |
| | 김포시 | 5,382 | 10,266,454 | 0 | 0 | 5,280 | 10,157,120 | 102 | 109,334 | 0 | 0 | 0 | 0 | 0 | 0 | 0 | 0 |
| | 하남시 | 3,690 | 14,042,114 | 803 | 7,100,000 | 1,608 | 5,176,187 | 0 | 0 | 0 | 0 | 162 | 351,553 | 0 | 0 | 117 | 1,414,374 |
| | 의왕시 | 1,381 | 8,554,116 | 0 | 0 | 0 | 0 | 0 | 0 | 0 | 0 | 659 | 6,885,843 | 0 | 0 | 722 | 1,668,273 |
| | 양평군 | 9,772 | 22,661,072 | 8,089 | 17,143,270 | 0 | 0 | 1,283 | 2,758,168 | 0 | 0 | 400 | 2,759,634 | 0 | 0 | 0 | 0 |
| | 과천시 | 988 | 19,368,984 | 0 | 0 | 228 | 4,893,252 | 0 | 0 | 0 | 0 | 10 | 8,191 | 0 | 0 | 750 | 14,467,541 |
| | 북부 | 84,818 | 298,533,444 | 10,611 | 42,718,813 | 52,643 | 163,925,617 | 9,266 | 11,989,223 | 0 | 0 | 9,113 | 30,656,919 | 1,808 | 40,671,567 | 1,377 | 8,571,305 |
| | 고양시 | 32,656 | 97,908,848 | 0 | 0 | 22,003 | 62,353,339 | 8,375 | 10,764,973 | 0 | 0 | 586 | 5,570,259 | 979 | 16,093,297 | 713 | 3,126,980 |
| 의정부시 | 4,803 | 31,246,567 | 9 | 343,045 | 4,207 | 19,736,535 | 147 | 445,804 | 0 | 0 | 30 | 338,290 | 314 | 9,736,480 | 96 | 646,413 | |
| 남양주시 | 31,902 | 100,457,362 | 10,389 | 42,017,069 | 13,071 | 36,202,550 | 29 | 12,116 | 0 | 0 | 8,369 | 21,810,112 | 0 | 0 | 44 | 415,515 | |
| 구리시 | 6,959 | 18,218,887 | 0 | 0 | 6,338 | 10,937,258 | 0 | 0 | 0 | 0 | 97 | 2,899,232 | 0 | 0 | 524 | 4,382,397 | |
| 양주시 | 8,498 | 50,701,780 | 213 | 358,699 | 7,024 | 34,695,935 | 715 | 766,330 | - | - | 31 | 39,026 | 515 | 14,841,790 | - | - | |

7) 별지 7 집단취락지구 현황

〈별지 제7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합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동)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경기도 | 계 | 225 | 5,707,675 | 12,595 | 4,370 | 10,229 | 3,398 |
| | 남부 | 125 | 3,353,831 | 5,789 | 2,009 | 7,068 | 2,535 |
| | 수원시 | 0 | 0 | 0 | 0 | 0 | 0 |
| | 성남시 | 0 | 0 | 0 | 0 | 0 | 0 |
| | 부천시 | 2 | 41,921 | 120 | 47 | 27 | 0 |
| | 용인시 | 2 | 495 | 0 | 0 | 495 | 0 |
| | 안산시 | 6 | 133,773 | 243 | 81 | | |
| | 안양시 | 0 | 0 | 0 | 0 | 0 | 0 |
| | 시흥시 | 28 | 1,165,376 | 1,457 | 638 | 5,399 | 2,201 |
| | 화성시 | 24 | 542,285 | 624 | 233 | 278 | 108 |
| | 광명시 | 3 | 58,406 | 175 | 72 | 60 | 7 |
| | 군포시 | 0 | 0 | 0 | 0 | 0 | 0 |
| | 광주시 | 10 | 275,275 | 190 | 121 | 115 | 33 |
| | 김포시 | 5 | 162,450 | 220 | 88 | 115 | 18 |
| | 하남시 | 10 | 234,980 | 1,021 | 222 | 87 | 0 |
| | 의왕시 | 23 | 364,257 | 991 | 251 | 249 | 21 |
| | 양평군 | 6 | 225,261 | 286 | 146 | 135 | 118 |
| | 과천시 | 6 | 149,352 | 462 | 110 | 108 | 29 |
| | 북부 | 100 | 2,353,844 | 6,806 | 2,361 | 3,161 | 863 |
| | 고양시 | 20 | 449,636 | 977 | 389 | 1,563 | 0 |
| | 의정부시 | 16 | 545,105 | 825 | 363 | 307 | 70 |
| 남양주시 | 54 | 1,129,029 | 4,165 | 1,310 | 1,021 | 672 | |
| 구리시 | 3 | 74,607 | 545 | 190 | 183 | 29 | |
| 양주시 | 7 | 155,467 | 294 | 109 | 87 | 92 |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1: 조성시기별 나대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경기도 | 계 | 4,814 | 1,968,550 | 3,489 | 1,427,555 | 1,325 | 540,995 |
| | 남부 | 2,445 | 1,083,800 | 1,399 | 600,722 | 1,046 | 483,078 |
| | 수원시 | 75 | 13,737 | 47 | 1,285 | 28 | 12,452 |
| | 성남시 | 76 | 19,953 | 9 | 4,555 | 67 | 15,398 |
| | 부천시 | 552 | 338,565 | 116 | 49,482 | 436 | 289,083 |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 | 안산시 | 70 | 18,554 | 40 | 14,218 | 30 | 4,336 |
| | 안양시 | 29 | 18,363 | 27 | 17,704 | 2 | 659 |
| | 시흥시 | 348 | 142,478 | 192 | 88,112 | 156 | 54,366 |
| | 화성시 | 432 | 158,274 | 432 | 158,274 | 0 | 0 |
| | 광명시 | 0 | 0 | 0 | 0 | 0 | 0 |
| | 군포시 | 0 | 0 | 0 | 0 | 0 | 0 |
| | 광주시 | 68 | 23,789 | 40 | 16,078 | 28 | 7,711 |
| | 김포시 | 132 | 55,606 | 72 | 31,783 | 60 | 23,823 |
| | 하남시 | 93 | 29,333 | 93 | 29,333 | 0 | 0 |
| | 의왕시 | 205 | 148,896 | 184 | 142,314 | 21 | 6,582 |
| | 양평군 | 156 | 51,865 | 81 | 21,303 | 75 | 30,562 |
| | 과천시 | 209 | 64,387 | 66 | 26,281 | 143 | 38,106 |
| | 북부 | 2,369 | 884,750 | 2,090 | 826,833 | 279 | 57,917 |
| | 고양시 | 276 | 100,208 | 272 | 98,885 | 4 | 1,323 |
| 의정부시 | 397 | 135,497 | 288 | 111,273 | 109 | 24,224 | |
| 남양주시 | 1,476 | 594,715 | 1,476 | 594,715 | 0 | 0 | |
| 구리시 | 141 | 26,352 | 15 | 3,672 | 126 | 22,680 | |
| 양주시 | 79 | 27,978 | 39 | 18,288 | 40 | 9,690 | |

8) 별지 8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8-2: 이촉적지 현황

단위: 필지, m²

| 구분 | 합계 | | 구역지정 이전 조성 | | | | | | 구역지정 이후 조성 | | | | | | |
|------|-----|-----------|------------|-----------|------------|---------|---------|-----------|------------|--------|---------|-------|--------|-------|--------|
| | | | 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소계 | | 대지 | | 기타지목 |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경기도 | 계 | 1,486 | 10,683,774 | 1,345 | 10,570,409 | 814 | 612,463 | 531 | 9,957,946 | 141 | 113,365 | 75 | 30,660 | 66 | 82,705 |
| | 남부 | 737 | 1,973,260 | 617 | 1,878,177 | 365 | 236,343 | 252 | 1,641,834 | 120 | 95,083 | 61 | 21,383 | 59 | 73,700 |
| | 수원시 | 4 | 2,822 | 2 | 2,274 | 2 | 2,274 | 0 | 0 | 2 | 548 | 2 | 548 | 0 | 0 |
| | 성남시 | 44 | 22,734 | 8 | 7,091 | 8 | 7,091 | | | 36 | 15,643 | 15 | 6,329 | 21 | 9,314 |
| | 부천시 | 58 | 82,403 | 16 | 17,010 | 10 | 8,013 | 6 | 8,997 | 42 | 65,393 | 33 | 11,219 | 9 | 54,174 |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안산시 | 147 | 811,776 | 121 | 803,196 | 63 | 3,612 | 58 | 799,584 | 26 | 8,580 | 0 | 0 | 26 | 8,580 |
| | 안양시 | 2 | 330 | 0 | 0 | 0 | 0 | 0 | 0 | 2 | 330 | 0 | 0 | 2 | 330 |
| | 시흥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화성시 | 226 | 568,251 | 224 | 567,491 | 133 | 102,887 | 91 | 464,604 | 2 | 760 | 2 | 760 | | |
| | 광명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군포시 | 1 | 305 | 0 | 0 | 0 | 0 | 0 | 0 | 1 | 305 | 1 | 305 | 0 | 0 |
| | 광주시 | 60 | 21,856 | 58 | 20,220 | 34 | 13,666 | 24 | 6,554 | 2 | 1,636 | 1 | 334 | 1 | 1,302 |
| | 김포시 | 35 | 51,022 | 28 | 49,134 | 20 | 38,125 | 8 | 11,009 | 7 | 1,888 | 7 | 1,888 | 0 | 0 |
| | 하남시 | 94 | 151,074 | 94 | 151,074 | 60 | 40,770 | 34 | 110,304 | 0 | 0 | 0 | 0 | 0 | 0 |
| | 의왕시 | 23 | 90,985 | 23 | 90,985 | 16 | 7,838 | 7 | 83,147 | 0 | 0 | 0 | 0 | 0 | 0 |
| | 양평군 | 24 | 43,085 | 24 | 43,085 | 14 | 6,496 | 10 | 36,589 | 0 | 0 | 0 | 0 | 0 | 0 |
| | 과천시 | 19 | 126,617 | 19 | 126,617 | 5 | 5,571 | 14 | 121,046 | 0 | 0 | 0 | 0 | 0 | 0 |
| | 북부 | 749 | 8,710,514 | 728 | 8,692,232 | 449 | 376,120 | 279 | 8,316,112 | 21 | 18,282 | 14 | 9,277 | 7 | 9,005 |
| | 고양시 | 272 | 26,716 | 270 | 26,685 | 188 | 17,024 | 82 | 9,661 | 2 | 31 | 2 | 31 | 0 | 0 |
| 의정부시 | 68 | 254,047 | 63 | 250,939 | 32 | 51,880 | 31 | 199,059 | 5 | 3,108 | 5 | 3,108 | 0 | 0 | |
| 남양주시 | 389 | 8,423,468 | 375 | 8,408,325 | 213 | 302,231 | 162 | 8,106,094 | 14 | 15,143 | 7 | 6,138 | 7 | 9,005 | |
| 구리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양주시 | 20 | 6,283 | 20 | 6,283 | 16 | 4,985 | 4 | 1,298 | 0 | 0 | - | - | - | - | |

9) 별지 9 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

〈별지 제9호 서식〉

단위: 개소, m²

| 구분 | | 총괄 | | 인구 · 가구 | | 건축물 | |
|------|------|----|---------|---------|-----|------|-------|
| | | 개소 | 면적 | 인구(명) | 가구수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경기도 | 계 | 13 | 228,102 | 546 | 401 | 174 | 91 |
| | 남부 | 8 | 138,980 | 450 | 125 | 98 | 91 |
| | 수원시 | 0 | 0 | 0 | 0 | 0 | 0 |
| | 성남시 | 2 | 4,200 | 65 | 35 | 33 | |
| | 부천시 | 0 | 0 | 0 | 0 | 0 | 0 |
| | 용인시 | 0 | 0 | 0 | 0 | 0 | 0 |
| | 안산시 | 6 | 134,780 | 385 | 90 | 65 | 91 |
| | 안양시 | 0 | 0 | 0 | 0 | 0 | 0 |
| | 시흥시 | 0 | 0 | 0 | 0 | 0 | 0 |
| | 화성시 | 0 | 0 | 0 | 0 | 0 | 0 |
| | 광명시 | 0 | 0 | 0 | 0 | 0 | 0 |
| | 군포시 | 0 | 0 | 0 | 0 | 0 | 0 |
| | 광주시 | 0 | 0 | 0 | 0 | 0 | 0 |
| | 김포시 | 0 | 0 | 0 | 0 | 0 | 0 |
| | 하남시 | 0 | 0 | 0 | 0 | 0 | 0 |
| | 의왕시 | 0 | 0 | 0 | 0 | 0 | 0 |
| | 양평군 | 0 | 0 | 0 | 0 | 0 | 0 |
| | 과천시 | 0 | 0 | 0 | 0 | 0 | 0 |
| | 북부 | 5 | 89,122 | 96 | 276 | 76 | 0 |
| | 고양시 | 5 | 89,122 | 96 | 276 | 76 | 0 |
| | 의정부시 | 0 | 0 | 0 | 0 | 0 | 0 |
| 남양주시 | 0 | 0 | 0 | 0 | 0 | 0 | |
| 구리시 | 0 | 0 | 0 | 0 | 0 | 0 | |
| 양주시 | 0 | 0 | 0 | 0 | 0 | 0 | |

- 도시계획시설명: 학교[서울나래학교]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2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72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10,162m² (기정 10,175m², 감 13m²)
 - 건 축 연 면 적: 9,870.23m² (기정 1,940.84m², 증7,929.39m²)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교육감
- 환경평가결과: 2등급(0.98%), 3등급(98.99%), 4등급(0.03%)
- 입지의 불가피성
 - 기존부지의 활용
 - 1950년 부터 언남초등학교로 사용되어 왔던 부지로서 2014년 09월 내곡보금자리 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학생 수용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한 부지로서
 - 현재 행정재산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남초 학교이적지를 활용
 - 교육재산의 체계적 관리
 - 교육재산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 재정 효율적 관리
 -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과 특수학교 용지의 탐색과정 없이 안정적인 학교 설립이 가능
 - 특수학교용지 조성의 어려움
 -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 일반 초·중·고의 경우만 동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교 설립 가능
 -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기피 현상으로 새로이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지역별균형 배치고려
 - 강남·서초지역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재로 지적장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해당학교들의 학사운영에 어려움 발생
 - 강남·서초지역에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없어 지체장애 학생이 원거리통학 (30분~1시간 이상)
 - 지체장애 수용을 위해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무리한 학급 증설 (87% 증가)로 인해 교육 여건 악화 및 순회학급 증가(2011년 34학급→2016년 41학급)
 - 인근지역 지체장애 특수학교(강동구, 관악구) 의 수용여력 한계 직면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제도적 여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5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실시
 - 무상교육 :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
 - 의무교육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 진로 및 직업교육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전공과를 설치·운영
- 서울시 여건
 - 서울시의 특수학교 29교 중 지체장애학교는 6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로는 신설된 특수학교가 없음 (같은 기간 일반학교 초중고 118교 신설)
 - 지체장애학교 부족으로 지체장애학생(1,738명) 약 54%(948명)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학사운영에 어려움 및 교육환경 악화로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저하
 - 지체장애학교 부족으로 기존 특수학교의 무리한 학급 증설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강남·서초지역에 특수학교 부재로 장애영역 혼재와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
 - 또한 지체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지역 인근 지체장애학교의 수용여력도 한계에 직면하여 지체장애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구 분 | 계 | 연도별 투자금액(백만원) | | | |
|-----|--------|---------------|------|--------|-------|
| | | 계 | 2017 | 2018 | 2019 |
| 계 | 17,150 | 17,150 | 635 | 13,212 | 3,303 |
| 국비 | 17,150 | 17,150 | 635 | 13,212 | 3,030 |
| 시비 | - | - | - | - | - |

※ 서울시 교육청 및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 적정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 되어있는 부지로서 시가지 외곽에 위치하며 부지전체가 국·공유지로 되어있음
-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기피현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일부 반대가 예상되나 본 설립예정지는 기존에 학교가 있던 위치이며, 염곡마을 가구수가 적어(151가구) 주민밀집도가 낮고, 고연령대 주민들이 많아 인구 고밀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용이함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와 서울시교육감 면담 실시 (2016. 12. 07)
- 주민과의 소통방안 강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실시 (2017. 6. 14)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민과의 협력 및 소통방안 지속 추진

나. 경기도

- 도시계획시설명: 수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
- 위 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77,500㎡
 - 건축연면적: 3,175.54㎡
- 사업시행자: 수원시장
- 환경평가결과: 2등급(100%)
- 입지의 불가피성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황구지천 좌안)은 기존 시가지 인접(50m이내)으로 사업 집행시 집단민원이 예상됨
 - 그 외 미개발지역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수원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가능지로 공공기관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임
 - 기존 시가지와 이격 거리가 확보되고, 주변 지형으로 공간이 적절히 분할되어 민원발생 최소화로 사업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부하(가동률 96%)로 유입하수량의 시설용량 초과일수가 약 117일로 1년중 32%에 달할 정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어려우므로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함.[적정 가동률 70~80%(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 또한,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가 및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부족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BOD 5mg/l)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및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 사업추진 시급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 114,929백만원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하수처리시설은 냄새 발생으로 기피시설로 인식, 기존 시가지와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지형으로 공간이 적절히 분할된 개발제한구역 부지(호매실동 205번지일원)로 입지할 경우 민원발생 최소화로 사업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 처리 분구와 적정한 거리에 위치하여 재원 증감에 따른 별도 재원 협의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준공기한 내 완료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매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3
- 위치: (기정)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204-4번지 일원
(변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076-14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감) 2,480㎡(기존 23,550㎡, 계 21,070㎡)
 - 건축연면적: 감) 712㎡(기존 2,112㎡, 계 1,400㎡)
-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 환경평가결과: 1등급(100%)
- 입지의 불가피성
 - 매송처리구역의 미처리구역(A=6.07km²)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8,500m³/일(계획처리인구:21,853인)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로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를 통해 서해로 유입하는 동화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처리구역내의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 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현재 부지의 입지가 불가피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비봉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시기(2017년 입주)가 임박하여 개발계획에 의한 발생 하수의 적정 처리를 고려 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 또한, 비봉면, 매송면의 취약지역의 미처리 하수로 인한 동화천의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지역의 민원제기가 빈번한 실정임.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사업의 추진을 위한 2017년 환경부 사업예산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기재부의 중앙민투 심의, 환경부 자원협의 등을 거쳐 설치재원을 확보할 예정임.
 - LH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고, 2017년~2019년 연도별 투자계획에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예정임.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2011년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015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변경 수요에 적합한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 및 건설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및 소음방지를 위한 완전지하화 계획 및 상부 공원화 계획하였으며 주변지역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차질 없이 시설을 설치계획 하겠음.

- 도시계획시설명: 사회복지시설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4
- 위치: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53-9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감 114㎡(기정 8,647㎡, 계 8,533㎡)
 - 건축연면적: 증 6,675.72㎡(기정 8,386.92㎡, 계 15,062.64㎡)
- 사업시행자: 경기도지사
- 환경평가결과: 2등급(25%), 3등급(62%), 4등급(13%)
- 시설증설의 불가피성
 - 2008년 8월 12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된 「경기도립 서부노인치매요양병원」(현.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에 부족한 병실과 의료복지시설 증축 및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1,2,3,4층의 건축연면적 확대필요. 노인전문병원에 진료 및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을 증대하고자 함.
- 시설증설의 필요성
 - 경기도 노인전문 시흥병원은 2010년 6월 개원 이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64병상을 연평균 90%이상 가동하고 있으며 인공신장실, 집중관찰실, 전문재활센터를 갖추고 다양한 아급성 및 만성 질환의 고령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보는 노인전문병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
 -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서부지역거점병원으로서 치매관련 교육 및 사업을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의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반 마련 시급.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사업비(안) : 50억원 (20% 경미한 변경 10억원 포함)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기존 시설의 주변 환경이 도로와 농지 및 임야가 산재한 지역으로 주변 주거지와는 이격된 지역으로 기존시설의 증축은 도로 쪽으로 증축되며 시설의 특성상 주변 환경이 쾌적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증축 될 예정임

- 대규모 시설명: 국방·군사[광명육군 제5226부대 신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5
-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053-1번지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52,999㎡(신설)
 - 건축연면적: 11,253.49㎡(신설)
-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 환경평가결과: 1등급(78.26%), 2등급(7.71%), 3등급(3.1%), 4등급(10.93%)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 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국방개혁 14-30계획(안)에 따라 부대 개편 및 인원 수용시설 변경
 - 미래부대 개편에 따라 장비 및 인원증가에 따른 시설 신축 공사임.
 - 추가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훼손된 부지 활용
-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및 시급성
 - 현재 지역에서의 부대증편에 따른 시설물 신축이 필요함
 -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개편 시기가 확정되어 시설 설치가 시급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17~'21 국방 중기계획 예산편성 건의 완료
-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기존 부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명: 학교[부곡중학교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6
- 위치: 의왕시 월암동 43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2,634㎡(기존 11,052㎡, 계 13,686㎡)
 - 건축연면적: 증) 3,212.24㎡(기존 6,732.92㎡, 계 9,945.16㎡)
- 사업시행자: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 환경평가결과: 3등급(98.3%), 4등급 (1.7%)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기존 부곡중학교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좌측은 한국교통대학교가 위치, 남측은 도로 및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진입로 확보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 기존건물 인근부지에 부속동 및 체육관을 건립하여 최소 이동경로 확보 등 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교육청 및 학생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
 - 부곡중학교의 입지 특성을 고려할 시 가용할 수 있는 용지는 덕영대로와 부곡중학교 사이의 나대지가 유일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2018년 12월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추가부지 확보 및 부속동 및 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안지구 공동주택 입주(19년 2월) 전 학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함
 - 부곡중학교 기존 시설이 열악하여 체육활동을 위해 덕영대로 건너편 부곡체육공원을 대관하여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 예산금액 : 약 68억원(추후 실시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부곡중학교 기존 건물 우측에 콩나물 공장(428답)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농작물 재배지역임
 - 학교 추가부지는 학생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학교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하기로 함

- 도시계획시설명: 학교[의왕특수학교 신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7
- 위치: 의왕시 포일동 2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15,363m²(신설)
 - 건축연면적: 12,085.76m²(신설)
- 사업시행자: 경기도교육청
- 환경평가결과: 2등급(1.0%), 3등급(15.4%), 4등급(83.6%)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특수학교의 성격 상 도심지 내 존재가 어려우며, 외곽지역이나 통학에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
 - 특수학교가 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택가 인근에서 떨어진 민원 발생률이 적은 장소를 선정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제6권역(안양, 과천, 군포, 의왕)에 특수학교 1교(안양해솔),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는 1,295명이나 특수학교 배치학생은 234명으로 특수학교 배치율은 18.1%로 경기도 평균 배치율 23.4%에 미달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 예산금액: 약 290억원(추후 실시설계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약 290억원 예산 확보(용지보상비, 건축시설비 포함)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계획부지는 서울구치소와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가 입지하여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민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학교 신설부지는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하기로 함
 -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예산으로 진행토록 함

- 도시계획시설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8
- 위 치: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감 없음(기존 434,944.32㎡)
 - 건축연면적: 증) 4,552.17㎡(기존 176,991.69㎡, 계 181,543.86㎡)
- 사업시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환경평가결과: 2등급(14.5%), 3등급(85.5%)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 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축은 서울 관악구 소재 구선관위 청사에 분리되어 운영중인 조직 일부를 통합하기 위하여 현 여유 부지 내에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지역에 설치시는 업무의 유기적 협업이 곤란
 -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부지가 최적의 입지임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지난 20년 동안 업무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조직이 167명에서 29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부족한 업무공간으로 서울소재 구선관위 청사에 조직을 분산하여 운영중이나 선거업무의 특성상 조직간 상호 협업이 중요하나 원거리 입지에 따른 원활한 업무 협력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가 시급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현황
 - 총사업비 194.4억원이 확보되어 금년까지 70.0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12.44억원, 2018년 111.93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 시설의 집행가능성
 - 사업 총 예산 194.4억원 중 2015년 66억원을 집행하여 토지매입(유상관리전환)을 완료하였고, 2016년 4월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 하고 201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임

- 도시계획시설명: 도시공원 [서울대공원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9
- 위 치: 과천시(군) 막계동(면) 159-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감없음(2,554,064㎡)
 - 건축연면적: 증) 5,363.20㎡ (기존 187,105.07㎡, 계 192,468.27㎡)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
- 환경평가결과: 3등급(6.7%), 4등급(93.2%), 5등급(0.1%)
- 입지의 불가피성
 - 현재 노후된 일부 동물사 시설, 고객관람 환경 및 동물 복지 등 업그레이드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대공원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동물사 정비, 편의 시설 등 시설개선 및 호수지구개발을 통한 시민육구 충족 및 동물복지향상을 도모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근린공원 내 시설의 증설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별도로 입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조류지구는 30년이 되어 노후된 건축물 및 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관람환경 및 동물들의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관람고객, 관리자 및 동물들의 복지향상 및 기대수준에 맞도록 신축·정비가 필요
 - 동물원입구에 산발적으로 입지한 가건축물(주상, 기념품판매장, 안내소)은 불량경관 및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출입구의 위치를 고려한 통합적인 건축계획을 통한 편의시설개선이 필요
 - 호수지구는 서울랜드와 동물원을 연결하는 대공원의 상징적인 중심호수로 서울대공원의 미래비전(생태 문화공원)에 부합하고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의 개념의 과천저수지 및 주변지역 개발이 필요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사업비: 620 억원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서울대공원 내 기 토지형질변경 부지를 이용한 사업으로 민원제기 가능성은 없음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집행이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명: 체육시설 [과천 서울경마공원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0
- 위 치: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감 없음(1,042,967.3㎡)
 - 건축연면적: 증) 14,873.48㎡ (기존 213,785.05㎡, 계 228,658.43㎡)
- 환경평가결과: 2등급(17.6%), 3등급(251.%), 4등급(53.8%), 5등급(3.5%)
- 사업시행자: 한국마사회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경마공원내 북측에 입지하고 있는 삼포마사와 인접하여 주암뉴스테이가 입지 계획됨으로써 마사에서 발생하는 분노 약취 등에 따른 주민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재에 노후화 된 삼포마사를 멸실 철거하고, 주암마사 지역에 집단 조성하고자 하며,
 - 아울러, 삼포마사 멸실 후 주암마사 집단화를 계기로 마사의 복층화 등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하고,경마접점 인력 및 이용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설, 가족공원내 말문화체험 시설, 박물관, 고객지원시설, 직원휴게소, 마방, 마차정류장 등을 추가 증설함.
 - 기타 삼포마사의 주암마사 이전에 따른 기존 시설의 이전 신축(조교사, 관리사 숙소, 마필보건소, 워킹머신, 원형마장, 건초창고 등)과 구관람대 방송실, 복지관, 중환마입원실 증축 등을 통해 건전 경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반 계획시설들은 경마공원내 입지가 절대적이며 구역 내 입지는 불가피함.
- 시설증축의 시급성
 - 국내 말관련 산업 및 문화 수준은 국가 경제수준 및 선진국 대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말관련 산업 및 문화를 확충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 건전 경마문화 육성 및 사랑과 생명의 공기업으로써 한국마사회의 비전달성을 위해 조속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임.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1,500억원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가능성 포함)
 - 기 운영중인 공원시설에 대한 증축 사업으로 시행시 민원 제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명: 실외체육시설[고양 난지물재생센터 난지야구장](하수도시설과 중복)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3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8번지 일원
- 면적
 - 부지면적: 902,367㎡
 - 토지형질변경면적: 변경없음(기정 902,367㎡)
 - ※ 기형질변경된 난지물재생센터 902,367㎡ 중 94,720㎡에 야구장 조성
 - 건축연면적: (증) 344㎡ (기정 29,437.43㎡, 계 29,781.43㎡)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 환경평가결과: 3등급(100%)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야구장 1면 조성에는 11,300㎡이상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나 서울시내에는 야구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중인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잔디야구장 4면을 조성하고,
 - 또한 교육장, 연습장,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난지물재생센터는 하수도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슬러지소각시설 등의 중요 환경기초시설들이 가동 중으로 인근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므로 해당부지에 친환경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소득수준 증가와 주5일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건강과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생활체육활동이 활성화 되고있어 생활권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요구도 증대되고 있음
 -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주요 프로스포츠 중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한 야구관중이 2007년 51%에서 2014년 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753만으로 최대 관중수를 달성하였고, 여성 및 가족동반 관중이 늘어남에 따라 관중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야구 관중수 증가와 더불어 직접 체육활동을 하는 야구 참여인구수도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청소년층 및 여성층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야구장 공급수는 축구장과 비교할 때 1:5 비율로 현저히 낮고, 특히 사회인 야구인 수 대비 야구장 공급은 매우 부족함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체육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 야구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 시민의 증가 추세에 비해, 서울시내 야구장 시설 수는 매우 적어 이용률이 포화상태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난지물재생센터내에 잔디야구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야구장) 수요에 대한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성인,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13,101백만원
 -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2015.3월)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사업대상지는 서울 근교 경기권내(서울시계에서 자동차로 5분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사회인 야구인의 이용이 용이하고,
 - 야구장 확충을 요구하는 야구동호인, 야구협회의 지속적인 건립 요구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임
 - 또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단기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명: 폐기물처리시설 [고양 동해개발폐기물처리시설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4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16,065㎡ [기정 0㎡, 계 16,065㎡] (콘크리트 포장 11,100㎡)
 - 건축연면적: 변경없음 [기정 66㎡]
- 사업시행자: 동해개발 (윤일용,한은실)
- 환경평가결과: 3등급(98%), 5등급(2%)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본 시설은 건설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재처리 가공을 통한 순환골재 생산자원 재활용이 주목적 사업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는 기피시설임에 따라 민원발생 방지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입지(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시가지 주거밀집지역과 이격되어 있고 장래 시가화 가능성이 적은 상기 지역(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상태임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및 부처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관내 설치된 처리시설 대부분이 개별입지 및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증가추세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의 한계가 예상되는 바, 정부의 자원순환형 정책에 부합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재처리 가공을 위한 계획입지(도시계획시설)를 통한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순환골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재처리 가공시설의 설비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임
- 설치자원 예산확보 현황
 - 총 사업비는 약 12억(자체조달)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당해 지역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5년간 허가운영 되어오는 부지로서 토지주의 직접 사업시행으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변의 주거밀집지역과 이격되어 있어당해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명: 도로[고양휴게소 신설(서울방향)]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5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18,541㎡(기정 7,740㎡, 계26,281㎡)
 - ※ 기형질변경(도로선형) 면적: 7,740㎡, 금회 형질변경면적 : 18,541㎡
 - 건축연면적: 2,941.85㎡(신설)
- 사업시행자: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환경평가결과: 2등급(6.4%), 3등급(7.1%), 4등급(87.5%)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 저축을 최소화하고 도로기하구조에 적합하도록 노선을 계획하여 주무관청(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 분석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노선 및 고양휴게소를 계획하였음.
 - 도로노선 및 휴게소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저축 최소화를 위하여 검토하였으나 인근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은 휴게소 배치간격 및 터널과의 이격거리 등이 부적절하여 지역적, 지형적 여건과 휴게소 설치 간격에 대한 규정,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 고양휴게소를 계획하게 되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는 도로노선 및 휴게소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였음.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 택지조성중인(원흥·삼송지구 등) 활발히 진행되는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 수도권 교통기능 회복 및 이용자의 경제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2020년 도로의 사용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188억원(국비 89억원, 민자 99억원)
 - 토지매입비: 89억원(국비 89억원), 민간사업비 : 99억원(민간자본)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양휴게소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민원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시설집행이 지연 또는 무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민원 발생 또한 없음.

- 도시계획시설명: 도로[고양휴게소 신설(문산방향)]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6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21,035㎡(기정 11,555㎡, 계32,590㎡)
 - ※ 기형질변경(도로선형) 면적: 11,555㎡, 금회 형질변경면적 : 21,035㎡
 - 건축연면적: 2,941.85㎡(신설)
- 사업시행자: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환경평가결과: 2등급(21.6%), 3등급(66.8%), 4등급(11.6%)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 저축을 최소화하고 도로기하구조에 적합하도록 노선을 계획하여 주무관청(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 분석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노선 및 고양휴게소를 계획하였음.
 - 도로노선 및 휴게소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저축 최소화를 위하여 검토하였으나 인근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은 휴게소 배치간격 및 터널과의 이격거리 등이 부적절하여 지역적, 지형적 여건과 휴게소 설치 간격에 대한 규정,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 고양휴게소를 계획하게 되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는 도로노선 및 휴게소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였음.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 택지조성중인(원흥·삼송지구 등) 활발히 진행되는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 수도권 교통기능 회복 및 이용자의 경제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2020년 도로의 사용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158억원(국비 73억원, 민자 85억원)
 - 토지매입비: 73억원(국비 73억원), 민간사업비: 85억원(민간자본)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양휴게소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민원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시설집행이 지연 또는 무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민원 발생 또한 없음.

- 대규모 시설명: 국방·군사[남양주 제56사단 220연대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7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358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형질변경면적: 증) 11,138㎡ (기정 48,801.28㎡, 계 59,939.28㎡)
 - 건축연면적: 증) 569㎡ (기존 39,674.34㎡, 계 40,243.34㎡)
-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 환경평가결과: 1등급(6%), 2등급(57%), 3등급(37%)
- 행위허가 근거규정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1항 제1호 라목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입지의 불가피성
 - 現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현 위치에 주둔하였으며, 동부지 내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 요망되며, 주둔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
 -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작전계획(국가방위, 민사작전 등) 및 부대운영,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 시설설치의 시급성
 - '18년 부대개편으로 예비군 훈련인원 증가로 사격장 부족과 기존 시가지전투훈련장 노후화로 인해 활용불가, 신축이 시급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총 사업비 30.3억원)
 - 2019년: 5.2억원, 2020년: 15.6억원, 2021년: 9.5억원
-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모든시설이 주둔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신뢰도가 깊어 민원제기 가능성 없음.

- 대규모 시설명: 국방·군사[남양주 육군 제5797부대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8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26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형질변경면적: 증) 10,720㎡ (기정 7,956㎡, 계 18,676㎡)
 - 건축연면적: 증) 5,360㎡ (기정 13,043㎡, 계 18,403㎡)
-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 환경평가결과: 1등급(6.78%), 2등급(85.1%), 3등급(8.12%)
- 행위허가 근거규정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1항 제1호 라목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입지의 불가피성
 - 국방개혁 추진계획 14-30에 의거 부대개편에 의해 증편되는 인원 약271명에 대한 생활공간 및 부대시설을 건축,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전투준비를 위해 있어야 하는 필수시설임
 - 육군 제5797부대 임부수행 목적상 타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당 부지에 설치 필요
- 시설설치의 시급성
 - 현 주둔지 내에는 증축건물 외 기존 건립된 군사시설이 있어 14-30 국방개혁에 의거 순차적 철거 후 신축이 시급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총 사업비 103억원)
 - 2018년: 41억원, 2019년: 62억원
-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입지시설이 군 주둔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 없음.

- 도시계획시설명: 도시공원[의정부 호원동 근린공원 신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19
- 위 치: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79,800㎡(신설)
 - 건축연면적: 45,441.62㎡(신설)
- 사업시행자: 의정부시장
- 환경평가결과: 1등급(98.76%), 2등급(0.84%), 3등급(0.4%)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본 대상지는 1953년 12월 23일 미군에 공여한 부지로서, 2016년 12월 이후 반환 예정인 이전적 지로서, 상위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 의정부시청 인근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을 제외하면 전무한 문화예술시설을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것으로 의정부 남측 공원 입지가 절실한 상황
 - 반환공여지역을 예술공원 형태로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 입지가 불가피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의정부시는 2015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43.8만명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로서 시민의 문화욕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문화 기반시설은 부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예술인들의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저하되고 있는바,
 - 2016년 12월 이후 반환예정인 캠프잭슨(CAMP JACKSON)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 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및 우리나라 문화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근린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설치하여야 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총사업비 1,500억원(국비 222억원, 시비 1,278억원)
 - 토지매입비: 317억원(국비 222억, 시비 95억) → 기확보(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 공원조성비: 1,183억원(시비)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 캠프잭슨(CAMP JACKSON) 이전 시기에 맞춰 반환공여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시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계획시설명: 전기공급시설[의정부 장암변전소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20
- 위치: 의정부시 장암동 22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변경없음 (기정 20,349㎡)
 - 건축연면적: 증) 3,165.53㎡ (기정 340.5㎡, 계 3,506.03㎡)
- 환경평가결과: 2등급(11.2%), 3등급(88.8%)
-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 입지의 불가피성(타당성)
 - 옥외 철구형 기존 장암변전소의 설비 노후에 따른 변전설비를 옥내화하여 변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혐오인식을 개선하고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장암변전소의 옥내화하여 증축.
- 시설설치의 시급성
 - 옥외 철구형 장암변전소의 설비 노후에 따른 변전설비를 옥내화하여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계 | 기투자 | 연도별 투자 계획 | | | |
|---------|--------|-----|-----------|-------|--------|--------|
| | | | 계 | 2018 | 2019 | 2020 |
| 계 | 25,000 | - | 25,000 | 5,000 | 10,000 | 10,000 |

- 시설의 집 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기존 부지 내 증축이며 옥외변전소를 옥내화하여 장암변전소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 별도의 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시설명: 국방·군사[양주 육군 제8276부대 증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21
- 위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산47-3번지 일원
- 면적
 - 토지형질변경면적: 증) 14,628㎡ (기정 22,061㎡, 계 36,689㎡)
 - 건축연면적: 증) 7,848㎡ (기정 8,865.09㎡, 계 16,713.09㎡)
- 환경평가결과: 1등급 9%, 2등급 55%, 3등급 17%, 4등급 15%, 5등급 4%
-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 개발제한구역 밖의 설치가능 여부
 - 현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현 위치에 주둔하였으며, 동 부지내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건축이 요망되며, 개발제한구역 외는 설치가 불가함.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여부
 - 현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현 위치에 주둔하였으며, 동 부지내 군사 시설이 위치하여 조정가능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함.
- 입지의 불가피성
 - 군 작전계획 및 부대운영상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최적의 입지
- 시설설치의 시급성
 - 국방개혁 14~30 계획(안)에 의거 부대의 통합 및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군 전력 증강을 위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현황
 - 시설 신축: 133.99억원
 - 국방 및 군사시설: 전력운영비 예산 확보 완료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군 주둔지내 공사 진행으로 민원제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시설명: 휴양림[남양주 월문 자연휴양림 신설]
- 해당조서번호: ○ 일련번호: 22
- 위치: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30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토지형질변경면적: 67,477㎡(신설)
 - 건축연면적: 6,265.50㎡(신설)
- 사업시행자: ㈜싸이칸홀딩스
- 환경평가결과: 1등급(92.0%), 2등급(8.0%),
-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 존재여부 포함)
 -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되어온 월문리의 양호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낙후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의 관광객 수요를 근교에서 서비스하여, 주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거리 관광지 이용에 따른 사회적 혼잡과 환경오염을 경감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수도권의 도시발전에 이바지 함
 - 특히, 사업대상지는 양호한 산림과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남양주시민 및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림휴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숲속의 자연치유 자원을 활용한 치유, 교육,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을 제공하고자 함
- 건축물(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및 시급성
 -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형질변경 면적 100,000㎡ 이하, 건축연면적 10,000㎡ 이하, 개별건축물연면적 900㎡이하(음식점 200㎡이하)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도입
 - 서울동북부에 근접하여 수도권의 산림여가수요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며,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공익적 기능을 특화시켜 청소년을 위한 힐링 휴양림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총사업비: 105억원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월문 자연휴양림은 사업시행자 (주)싸이칸홀딩스의 소유토지로서, 사업진행에 직접적인 민원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 절차 이행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음